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18호

2024. 10. 31.(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2962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행정예고]

제2024-295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16
제2024-295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33
제2024-2953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68

◈ 고 시

제2024-49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77
제2024-507호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8
제2024-51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73
제2024-5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75
제2024-512호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 사업 실시계획 고시 ····· 185
제2024-513호 강북구 번동3지역 (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86
제2024-514호 중랑캠핑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0
제2024-515호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0
제2024-517호 강서구 염창동 27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213
제2024-518호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26
제2024-519호 청파 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56
제2024-520호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83
제2024-521호 도시철도 역명 개정 확정 고시 ····· 293

제2024-522호 도시관리계획[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94
제2024-523호 신내4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 354

◈ 공 고

제2024-2900호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 360
제2024-2901호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 364
제2024-2910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374
제2024-291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375
제2024-2921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 376
제2024-293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 379
제2024-2934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380
제2024-2936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81
제2024-2937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83
제2024-2958호 공유재산 변상금 확정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384
제2024-2963호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385
제2024-296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86
제2024-296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88
제2024-297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390
제2024-2979호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 ····· 391
제2024-2981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 392
제2024-298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395
제2024-3935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96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7호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 397

◈ 구 고 시

제2024-131호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7차) 고시(용산구) ····· 405
제2024-9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 407
제2024-194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이용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 ····· 411
제2024-1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 415

제2024-17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 422

◈ 구 공 고

제2024-1331호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종로구) ····· 424
제2024-119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광진구) ····· 425
제2024-1368호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동대문구) ····· 427
제2024-1485호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중랑구) ····· 428
제2024-140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강북구) ····· 429
제2024-19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안)(양천구) ····· 432
제2024-1858호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영등포구) ····· 434
제2024-199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동작구) ····· 440
제2024-250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강남구) ····· 445
제2024-2124호 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강동구) ····· 447
제2024-2127호 도시관리계획(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강동구) ····· 449

◈ 사업소고시

제2024-3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0
제2024-313호 하천점용허가(미래한강본부) ····· 451
제2024-3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1

◈ 사업소공고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강동소방서) ····· 452
제2024-2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강동소방서) ····· 453

◈ 기 타

제2024-43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54
제2024-4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55
제2024-442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56
제2024-4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57
제2024-445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58
제2024-446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59
제2024-447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60
제2024-448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61
제2024-4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62
제2024-4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63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62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위원회) 운영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사이클링’을 ‘새활용’으로 순화(안 제2조~제4조, 제6조, 제10조)
   나. 위원회 비상설화 및 부위원장직 삭제(안 제16조)
   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조항 정비(안 제17조~제18조)
   라. 그 밖의 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 02-2133-3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026
      2) 이메일: 2015012245@seoul.go.kr
      3) 우 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업사이클링” 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용답동)에 위치해있으며, 새활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업사이클링” 이란” 을 “ “새활용” 이란” 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업사이클링” 을 각각 “새활용” 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업사이클링” 을 각각 “새활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이하 “소재은행” 이라 한다)” 을 “시설”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업사이클링” 을 “새활용”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을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업사이클링” 을 “새활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을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으로, “시행령,「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를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업사이클링” 을 “새활용”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위촉직과 당연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을 “위원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서울새활용플라자”란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용답동)에 위치해있으며, 새활용----------.
2.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새활용”이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 새활용----------
2.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2. 새활용----------
3.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문화 확산	3. 새활용----------

4.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에 대한 교육, 전시, 체험 공간 제공	4. 새활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
1. 국내·외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1. ------ 새활용----------
2.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생산·연구하는 공간	2. 새활용----------
3.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작품의 생산·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시설(이하 “소재은행”이라 한다)	3. 새활용---------- 시설
4.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	4. 새활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① (생 략)	제6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② ------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1. 새활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입주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등 지원) ① ----------새활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제16조(구성) ① ------ 위촉직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과 당연직----------.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삭 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	

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삭 제>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20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제18조(운영) <삭 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①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5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현 규정 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규정의 제명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
나. 서울시 무형유산 조례 및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 주체에 ‘전승교육사’ 추가(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제8조, 안 별지 제2호서식)
다. 개인종목에 대한 상세 설명 추가(안 제2조제6호)
라. 이수심사 대상자 일부 제외한 내용 반영(안 제3조제1항)
마. 조항 제목 변경(안 제4조, 안 제9조)
바. 약칭한 조항 변경(안 제5조)
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5호, 안 제9조제3항, 안 제13조제2항)
아. 재검토기한 조항 삭제(현행 제15조)
자.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유산보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보존과(전화: 02-2133-2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15

2) 이메일: forang3@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유산보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 호

이 고시(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자”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로, “보유단체”를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로”를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5조제1항과 시행”을 “제35조제1항과”로, “판단되어”를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심사하여”를 “심사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인정하는”을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시행”을 “및”으로, “다음과 같다”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상 개인종목에 한함),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이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보유자와”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와”로,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을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의 전수교육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유단체”를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무형문화재”를 “실시할 때는 해당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수심사 평가자”를 “평가자”로, “작성시 예산의 범위 내”를 “작성 시 예산의 범위”로 한다.

2.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7조제1항 중 “공고시 당해연도”를 “공고 시 해당 연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를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자료로서[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발급받아 서울시장”을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시장”으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을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유자”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득한”을 “얻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이수심사의 항목 및 지표)”를 “(이수심사의 평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등을”을 “등 별표 1의 항목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수심사 결과 평가자의 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중복 되면”을 각각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중복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칙 제20조 제1항”을 “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수하는 시무형유산 종목의 기능·예능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 3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내 분야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제11조 앞의 “제4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종합점수”를 “피평가자 당사자로 한정하여 종합점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때 조사자 개인을”을 “이 때 평가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그 밖에”를 “관한 그 밖의”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이수심사의 기록은”을 “제1항에 따라 이수심사를 기록할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제9조제2항 관련)”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제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제8조 제2항”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1호 중 “보유자·보유단체에”를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에”로, “보유자·보유단체의”를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의 서명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신청 분야 (기능·예능)	
	연 락 처		전자우편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응시하는 전수생은 보유자·보유단체에서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정함
2. 증빙 서류 제출 누락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첨 부 서 류

○ 신청자 이력서 1부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 서울특별시 접 수 → 신청인에게 심사 7일 전까지 통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자---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전수교육”이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 ---------- -----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
2. “전수자”란 조례 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 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	2. ----------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

유단체로부터 그 종목의 기능·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
3. “이수심사”란 조례 제3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이수증”이란 조례 제35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 제35조제1항과 ---------- - 판단되는 ----------.
5. “이수자”란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5. ---------- -- 심사받아 ----------.
6. “개인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는 종	6. ---------- ----- 시무형유산을 ------ ---------- 인정하고 보

목을 말한다.	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
7. “단체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 시무형유산을 ---------- ----------.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조례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 및 ----------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상 개인종목에 한함),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이다.
1.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삭 제>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삭 제>
②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기간은 해제된 보유자와 그를 승	② 시무형유산---------- ---------- 보유자 또는 전승교

계한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육사와 ---------- ---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의 전수교육 기간-------- ----.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시무형유산 --- ---------- ---------- ---------- ----------.
제5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 ---------- --------- 서울특별시 ---- ----------.
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이수심사 평가자(이	제6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 --- 실시할 때는 해당 시무형유산---------- ---------- ----------

상 “평가자”라 한다)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② ----------.
1.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1. ---------- -- 시무형유산 -------
2.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2.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 ---------- ---------- ----------
4.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무형유산----------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이수심사 평가자가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자---------- ---------- - 작성 시 예산의 범위-------.
제7조(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① 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	제7조(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① ---------- 공고시 해당 연도 ----------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시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수심사 30일 전까지 시장에 제출한다.	제8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시무형유산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시장에게 ------.
② 이수심사 신청자는 시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발급받아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시무형유산 ----------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시장----------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
③ 보유자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시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시무형유산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이수심사 신청자가	⑥ ----------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심사 대상 자격을 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 ---------- ---------- ---------- ---- 얻은 ---------- ----------.
제9조(이수심사의 항목 및 지표) ① 이수심사에 따른 평가는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예능의 실연능력을 평가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실연능력에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시연능력을 포함한다.	제9조(이수심사의 평가방법) ① ---------- ---------- 시무형유산---------- ---------- ---------- ---------- ----------.
② 평가자는 심사 대상 전수자의 종목 이해도, 그 기능·예능 및 합동시연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1]과 같다.	② ---------- ---------- ---------- 등 별표 1의 항목을 --. <후단 삭제>
③ 이수 여부는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로 한다. 단, 심사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③ 이수심사 결과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 ----------

평균하고,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중복 되면 중복되는 평가자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중복되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무형유산 ----------.
제10조(이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이수심사 결과 이수한 전수자에 대하여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① ------ --- 규칙 제20조제1항-------.
② 이수하는 서울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은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별첨 2]의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의 분야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이수하는 시무형유산 종목의 기능·예능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 3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내 분야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삭 제>
<신 설>	제3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제11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① 이수심사 결과는 이수심사 후 30일 이내에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① - ------- 서울특별시 ------.

② 시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종합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조사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 ---------- 피평가자 당사자로 한정하여 종합점수----------. 이 때 평가자를 ---.
③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③ ---------- 관한 그 밖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이수심사의 기록) ① (생략)	제13조(이수심사의 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수심사의 기록은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문자(원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수심사를 기록할 때는 ----------. ---------- -.
③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과 별개로 이수심사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개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 범위---------- ----------.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2월 19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1]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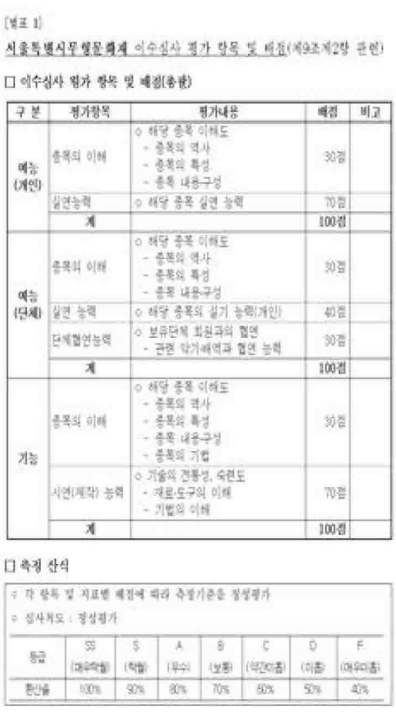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비점(제9조제2항 관련)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능력	○ 해당 종목 실연 능력	7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 능력	○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40점	
	단체협연능력	○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해역과 협연 능력	30점	
	계		100점	
기능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 종목의 기법	30점	
	시연(제작) 능력	○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 재료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	70점	
	계		100점	

□ 측정 산식

○ 각 항목 및 지표별 배점에 따라 측정기준을 정성평가

○ 심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약간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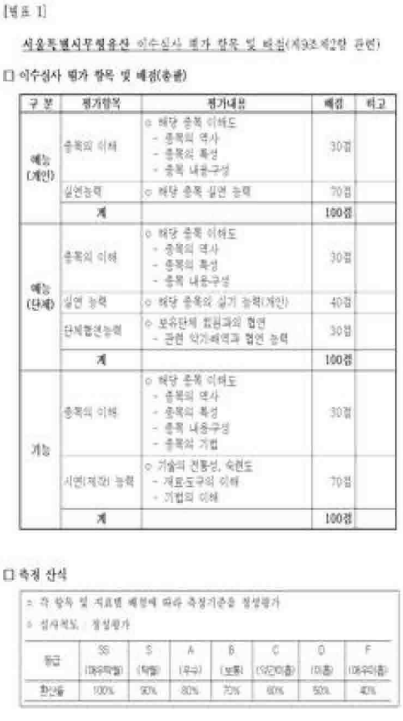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비점(제9조제2항 관련)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능력	○ 해당 종목 실연 능력	7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 능력	○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40점	
	단체협연능력	○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해역과 협연 능력	30점	
	계		100점	
기능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 종목의 기법	30점	
	시연(제작) 능력	○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 재료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	70점	
	계		100점	

□ 측정 산식

○ 각 항목 및 지표별 배점에 따라 측정기준을 정성평가

○ 심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약간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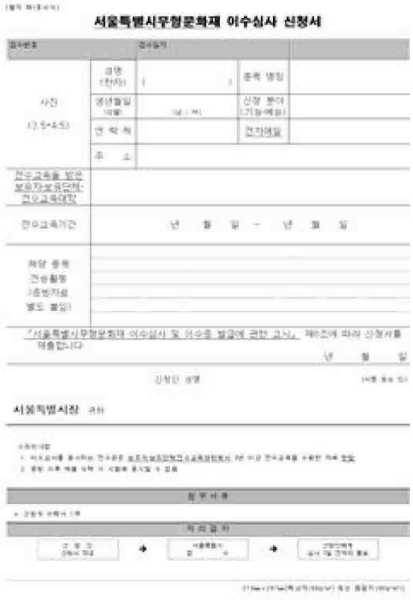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신청 분야 (기능/예능)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및 전수교육대장				
전수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첨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처리절차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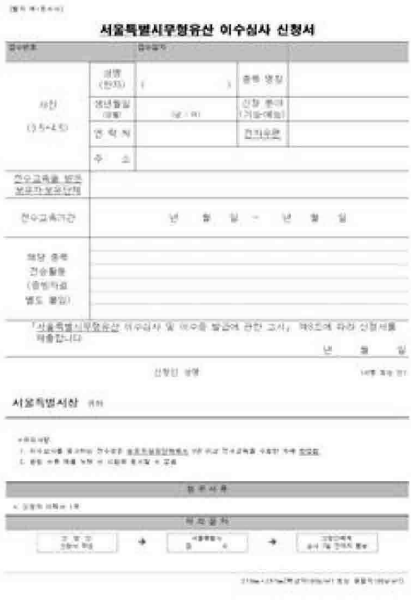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신청 분야 (기능/예능)	
	연 락 처		전자우편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첨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 )	
종목명칭		보유자 · 보유단체	
전수교육 입문일	년 월 일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에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을 확인한 뒤, 보유자(보유단체)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 )	
종목명칭		보유자 · 보유단체	
전수교육 입문일	년 월 일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에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을 확인한 뒤,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5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현 규정 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규정의 제명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 용어를 ‘전승교육사’로 일괄 변경
나. 정의 규정 표준안으로 변경(안 제2조)
다. 규정의 적용 범위 조항 신설(안 제3조)
라. 공개행사 주관 대상 추가(안 제4조제1항)
마. 공개 방법 중 영상물 전시 방법 내용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바.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등 요구 조건 추가(안 제12조제3항)
사. 전수교육 비용 지원 조항 신설(안 제14조)
아. 전수교육 점검 대상 선정 조건 추가(안 제15조제2항제4호)
자.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6조)
차. 지원 제한 조건에 제출 서류 추가(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카. 별지 서식 ‘공개’ 용어를 ‘공개행사’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조항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5호서식까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4조)
타. ‘모니터링’ 용어를 일괄 ‘점검’으로 변경(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별지 제5호서식)
파.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유산보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보존과(전화: 02-2133-2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15

2) 이메일: forang3@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유산보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 호

이 고시(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수교육”이란 보유자등이 시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3. “전승활동”이란 보유자등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전수교육”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을 “조례 제37조제1항 각 호의”로, “이상”을 “이상 자신 또는 시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공개에”를 “공개행사에”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무형유산의 기능·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서울특별

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앞의 “제2장 공개”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공개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를 “공개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행사”로,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 계획”을 “공개행사 계획”으로, “공개 변경신청서”를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로, “공개 취소신청서”를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을 “마친 후에는 공개일”로,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비용 집행 정산서류”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전단 중 “일반시민”을 “일반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일반시민”을 각각 “일반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되, 공정별로 편집하고 설명문을 삽입하는 등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공개”를 “공개행사”로, “이에”를 “공개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특성상”을 “특성상 지원이”로, “주관의 공개”를 “주관으로 공개하기”로,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위탁”을 “점검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제14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니터링의”를 “점검 평가서”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전수교육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출결관리일지”를 “출결관리 일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해”를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13의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제출 할”을 “제출할”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제1항 중 “공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을 “공개행사 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및”으로,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공개한”을 “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으로,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전수교육 비용 지원)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때”로, “사항을 우선적”을 “경우를 우선적 점검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4장의 제목 “지원 제한”을 “포상 및 제한”으로 한다.

제4장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제출자 서울특별시문화재”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일자”를 “교육날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계획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 승 교 육 사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 참관 대상자 및 행사 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내역	

지출항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 고 (시비/자부담 등)
합계			

※ 첨부 : 비용 신청서 및 통장사본

○ 첨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자</td><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기관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고유번호
(사업자번호)</td><td></td></tr>
<tr><td>신청액</td><td colspan="4">금 원(₩)</td></tr>
<tr><td rowspan="2">총행사비
(단위:천원)</td><td>계</td><td>시비</td><td>자부담</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은행정보</td><td colspan="4">◦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td></tr>
</table>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table>
<tr><td>지정번호</td><td colspan="2">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td><td>명칭</td><td colspan="2"></td></tr>
<tr><td>행 사 명</td><td colspan="5"></td></tr>
<tr><td>주 관</td><td colspan="5"></td></tr>
<tr><td>주 최</td><td colspan="5"></td></tr>
<tr><td>후 원</td><td colspan="5"></td></tr>
<tr><td>공개일시</td><td colspan="2"></td><td>공개장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출연자</td><td>보 유 자</td><td colspan="4"></td></tr>
<tr><td>전승교육사</td><td colspan="4"></td></tr>
<tr><td>이 수 자</td><td colspan="4"></td></tr>
<tr><td>전 수 생</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집행금액</td><td>계</td><td>시비</td><td>자체부담</td><td colspan="2">기타</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관람인원</td><td colspan="5">명</td></tr>
</table>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뒤쪽)

1.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2.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3.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점검 평가서

【공개개요】

지정번호/명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 』			
조사자	성명		(인)	주관자	
	소속				
기 간		OOOO. . . ~ OOOO . . .		시비 지원액	
장 소					

【확인사항】

항 목		확 인 사 항	유	무
기획	언론홍보	- 인터넷 뉴스 기사로 확인 가능 ※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의 매체인 경우 (유)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포스터 또는 현수막	- 현수막 1개 설치 또는 포스터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 공개용 포스터이어야 함		
	리플렛	- 공개행사명 기재 여부 확인		
		- 시간, 날짜, 장소 기재 여부 확인		
		- 해당 종목 소개 기재 여부 확인		
		- 프로그램 순서 기재 여부 확인		
		- 출연진 명단 및 사진 기재 여부 확인		
행사 참여	보유자	- 보유자는 행사 당일 ○○○ 역할을 담당함		
		- 보유자는 행사 당일 ○○시 ○○분을 공연 및 시연함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는 행사 당일 ○○○ 역할을 담당함		
		- 전승교육사는 행사 당일 ○○시 ○○분을 공연 및 시연함		

【평 가 표】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점수
기획 (20)	사업 계획서 (15)	- 공개행사 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행사명, 행사의의, 일시, 장소, 참여자 명단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구분) · 행사기대 효과 **※ 별첨 1 양식에 따라 참석자 기재**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준비 (5)	- 악기·의물·재료·도구·시설 등의 공개 준비의 적절성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행사 (70)	장소 (10)	-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정성평가) - 핵심기능의 실연에 적정한 장소인가(전승지역 및 종목 특성에 적합한 무대) - 일반인의 접근 및 관람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인가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실연내용 평가 (60)	**※ 별첨 2의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평가지표에 의함**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호응 (10)	관람객 수 및 관람객의 관심도	- 관람객 수 및 관람객의 호응도 - 관람객의 관심도 평가(정성평가)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100점			
총평	전체 평가	-조사자 총평(서술형으로 작성) ①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설명/ 관람객 대응) ② 보유자 및 전승자의 기·예능 실연능력 수준 - 보유자등이 전수교육 및 공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③ 해당 종목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첨부	** 확인사항 증빙자료로 이미지 자료 제출 - 언론보도, 포스터, 리플릿, 공개 사진 이미지 4컷		

※ 별첨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예능	참여 여부 (○,×)	공개행사 내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승 교육사					
이수자					

※ 별첨 2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평가지표

가. 음악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25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공력의 깊이(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나. 무용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춤 동작의 전통성(4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복식의 전통성(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춤의 미적 완성도(5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공간과 춤의 어울림(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춤과 음악의 어울림(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다. 놀이 분야(10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th><th>평가점수</th></tr>
<tr><td>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td><td>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50점)</td><td>
<table>
<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td></tr>
<tr><td rowspan="2">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td><td>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td><td>
<table>
<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td></tr>
<tr><td>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td><td>
<table>
<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td></tr>
</table>

라. 연극 분야(10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th><th>평가점수</th></tr>
<tr><td>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td><td>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50점)</td><td>
<table>
<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td></tr>
<tr><td rowspan="2">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td><td>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td><td>
<table>
<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td></tr>
<tr><td>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td><td>
<table>
<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td></tr>
</table>

마. 음식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40점)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 (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 (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2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기능적 숙련도 및 음식의 완성도(60점)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 능력(4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2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바. 의식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5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3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사. 무예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40점)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도 (40점)	등급: SS(매우탁월)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다소미흡) / F(매우미흡) 환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40점)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40점)	등급: SS(매우탁월)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다소미흡) / F(매우미흡) 환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특수성(20점)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20점)	등급: SS(매우탁월)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다소미흡) / F(매우미흡) 환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아. 공예기술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여부 (25점)	재료의 적합성(10점)	등급: SS(매우탁월)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다소미흡) / F(매우미흡) 환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15점)	등급: SS(매우탁월)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다소미흡) / F(매우미흡) 환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기능의 숙련도 (50점)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50점)	등급: SS(매우탁월)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다소미흡) / F(매우미흡) 환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완성품의 심미성·가치성·기능성 (25점)	완성품의 심미성·가치성·기능성 정도(25점)	등급: SS(매우탁월)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다소미흡) / F(매우미흡) 환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 ----------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시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수교육”이란 보유자등이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시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3. “전승활동”이란 보유자등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적용 범위) 시무형유산의 기능·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삭 제>
제2장 공개	제2장 공개
<신 설>	
제3조(공개 주관) ① 보유자등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그 기능·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주관) ① ---------- 조례 제37조제1항 각 호의 ---------- ---------- ---------- ---------- 이상 자신 또는 시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

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 전승교육사---------- 공개행사에 ----------.
제4조(공개 절차)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절차) ① ---------- ---------- ---------- -- 공개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행사 ----------이하 -- ---------- ------.
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개행사 계획---------- ---------- -----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 -- ----------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
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마친 후에는 공개일---------- ----------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비용 집행 정산서류----------.
제5조(공개 방법)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개 방법) ① ---------- ----------.
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	1. ---------- ---------- 일

반시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	반 시민----------.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3. ---------- ---------- ---------- ---------- 전승교육사 ---------- ----------. -- -- 전승교육사 ---------- ---------- ----------.
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일반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	4. ---------- ---------- ----------. ---------- ---------- ---------- 일반 시민--- ---------- ---------- ---------- ---------- ----------.
5. 공개 장소: 무대나 광장 등	5. ----------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일반시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일반 시민----- ---------- ---------- -----.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되, 공정별로 편집하고 설명문을 삽입하는 등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비용)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	제7조(공개 비용) ① ---------- 공개행사 -------- 공개에 --

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시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개 후원) ① 시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시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개 후원) ① ---------- 특성상 지원이 ---------- 주관으로 공개하기---------- 시무형유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모니터링) ① 시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 점검------ ---------- 점검을 위탁--.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1. 국가유산 ---------- --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10조 ---------- 제14조까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고등교육법」 제2조---------- 국가유산 ----------
② 시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② ---------- 점검 ----------.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 점검 평가서 ----------.
제9조(자료관리) 시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자료관리) ---------- 점검 ----------.
제10조(공개 촉구) 시장은 조례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촉구) ----------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 않는 ----------.
제3장 전수교육	<삭 제>
<신 설>	제3장 전수교육
제11조(전수교육 이행) ① (생략)	제12조(전수교육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 출결관리 일지---------- --.
③ 보유자등은 규칙 제18조에 따라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 시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13의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보유자등은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 제출할 --------. 제14조(전수교육 비용 지원)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3조(전수교육 점검) ① (생략)	제15조(전수교육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 때 ---------- 경우를 우선적 점검 대상--.

1. 공개 모니터링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1. --- 점검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지원 제한	제4장 포상 및 제한
<신 설>	제16조(포상) 시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제한) ① 시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 제한) ① ---------- 공개행사 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및 ---------- 제7조제1항----------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② ---------- 점검 ----------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사명			
주관			
주최			
후원			
공개일자		공개장소	
출연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소요예산	금 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계획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사명			
주관			
주최			
후원			
공개일자		공개장소	
출연자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		
소요예산	금 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표]

1. 공개 행사명	
2. 공개 세부계획(공개 장면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 소요예산내역	

지출항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 고 (시비/자부담 등)
합계			

※ 첨부 : 이용 신청서 및 동의서류

[별표]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 장면 대상자 및 행사 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내역	

지출항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 고 (시비/자부담 등)
합계			

※ 첨부 : 이용 신청서 및 동의서류

※ 첨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이용 신청서

신청자	주소			
	기관명		담당자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신청액	금	원(₩)		
출연사비 (단위:천원)	계	시비	자부담	기타
은행정보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회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이용 신청서

신청자	주소			
	기관명		담당자	
	대표자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신청액	금	원(₩)		
출연사비 (단위:천원)	계	시비	자부담	기타
은행정보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회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재 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재 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공개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공개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결과보고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사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공개장소	
출연자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집행금액	계	시비	국비	기금	자체부담	기타
관람인원	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1. 공개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2. 공개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연자 명단

3.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사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공개장소	
출연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 수 생		
집행금액	계	시비	자체부담	기타
관람인원	명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1.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2.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연자 명단

3.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모니터링 평가서

【공개개요】

지정번호/명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 」			
조사자	성명		(인)	주관자	
	소속				
기 간		0000. . . ~ 0000. . .		시비 지원액	
장 소					

【확인사항】

항 목		확 인 사 항	유	무
기획	언론홍보	- 인터넷 뉴스 기사로 확인 가능 ■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의 매체만 경우 1회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포스터 또는 현수막	- 현수막 1개 설치 또는 포스터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현수막 세로 0.5 X 가로 3.5m 크기 이상을 1개 설치, 또는 포스터 1종 50부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 공개용 포스터이어야 함		
	리플렛	- 공개 행사명 기재 여부 확인		
		- 시간, 날짜, 장소 기재 여부 확인		
		- 해설종목 소개 기재 여부 확인		
		- 프로그램 순서 기재 여부 확인		
		- 출연진 명단 및 사진 기재 여부 확인		
행사 참여	보유자	- 보유자는 행사 당일 OOO 역할을 담당함		
		- 보유자는 행사 당일 OO시 OO분을 공연 및 시연함		
	조교	- 보유자는 행사 당일 OOO 역할을 담당함		
		- 보유자는 행사 당일 OO시 OO분을 공연 및 시연함		

【평 가 표】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점수
기획 (20)	사업 계획서 (15)	- 공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행사명, 행사목적, 일시, 장소, 참여자 명단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구분)) 행사기대 효과 ■ 별첨 1 양식에 따라 참석자 기재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준비 (5)	- 무기이물재료도구사설 등의 공개 준비의 적절성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행사 (70)	장소 (10)	-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적정성평가) - 핵심기능의 실연에 적합한 장소인가(전승지역 및 종목 특성에 적합한 무대) 일반인의 접근편의 용이한 공개된 장소인가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실연내용 평가 (60)	■ 별첨 2의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평가표에 의함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호응 (10)	관련자 수 및 관람객의 관심도	관객수 및 관람객의 호응도 -관람객의 관심도 평가(정성평가)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100점			
종합	전체 평가	-조사자 종평(서술형으로 작성) ①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실행/ 관람객 대응) ② 보유자 및 전승자의 기예능 실연능력 수준 - 보유자등이 전수교육 및 공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③ 해당종목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첨부	** 확인사항 증빙자료로 이미지 자료 제출 - 언론보도, 포스터, 리플렛, 공개 사진 이미지 4장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점검 평가서

【공개개요】

지정번호/명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 」			
조사자	성명		(인)	주관자	
	소속				
기 간		0000. . . ~ 0000. . .		시비 지원액	
장 소					

【확인사항】

항 목		확 인 사 항	유	무
기획	언론홍보	- 인터넷 뉴스 기사로 확인 가능 ■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의 매체만 경우 1회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포스터 또는 현수막	- 현수막 1개 설치 또는 포스터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 공개용 포스터이어야 함		
	리플렛	- 공개행사명 기재 여부 확인		
		- 시간, 날짜, 장소 기재 여부 확인		
		- 해설 종목 소개 기재 여부 확인		
		- 프로그램 순서 기재 여부 확인		
		- 출연진 명단 및 사진 기재 여부 확인		
행사 참여	보유자	- 보유자는 행사 당일 OOO 역할을 담당함		
		- 보유자는 행사 당일 OO시 OO분을 공연 및 시연함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는 행사 당일 OOO 역할을 담당함		
		- 전승교육사는 행사 당일 OO시 OO분을 공연 및 시연함		

【평 가 표】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점수
기획 (20)	사업 계획서 (15)	- 공개행사 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행사명, 행사목적, 일시, 장소, 참여자 명단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구분)) 행사기대 효과 ■ 별첨 1 양식에 따라 참석자 기재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준비 (5)	- 무기이물재료도구사설 등의 공개 준비의 적절성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행사 (70)	장소 (10)	-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적정성평가) - 핵심기능의 실연에 적합한 장소인가(전승지역 및 종목 특성에 적합한 무대) - 일반인의 접근 및 편의 용이한 공개된 장소인가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실연내용 평가 (60)	■ 별첨 2의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평가지표에 의함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호응 (10)	관련자 수 및 관람객의 관심도	- 관람객 수 및 관람객의 호응도 - 관람객의 관심도 평가(정성평가)	최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아주미흡(60%)
100점			
종합	전체 평가	-조사자 종평(서술형으로 작성) ①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실행/ 관람객 대응) ② 보유자 및 전승자의 기예능 실연능력 수준 - 보유자등이 전수교육 및 공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③ 해당 종목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첨부	** 확인사항 증빙자료로 이미지 자료 제출 - 언론보도, 포스터, 리플렛, 공개 사진 이미지 4장		

※별첨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 예능	참여 여부 (○,×)	공개의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승 교육사					
이수자					

※별첨 2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평가지표

가. 음악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25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음색의 깊이(1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나. 무용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춤 동작의 전통성(4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복식의 전통성(1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춤의 미적 완성도(5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공간과 춤의 어울림(1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음과 음악의 어울림(1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별첨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 예능	참여 여부 (○,×)	공개행사 내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승 교육사					
이수자					

※별첨 2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평가지표

가. 음악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25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음색의 깊이(1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나. 무용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춤 동작의 전통성(4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복식의 전통성(1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춤의 미적 완성도(5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공간과 춤의 어울림(1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음과 음악의 어울림(10점)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다. 놀이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요한 정도(50점)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결 능력(50점)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대사 구연과 가무 악(樂)을 통한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라. 연극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요한 정도(50점)	연극 대본의 구조 능력 정도(50점)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대사 구연과 가무 악(樂)을 통한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마. 음식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요한 정도(40점)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절성(10점)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10점)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20점)	
기능적 숙련도 및 음식의 완성도(60점)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업 요사 능력(40점)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20점)	

바. 의식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요한 정도(50점)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50점)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30점)	
	재물아픈 및 제상 배치의 능력(10점)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10점)	

다. 놀이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요한 정도(50점)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결 능력(50점)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대사 구연과 가무 악(樂)을 통한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라. 연극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요한 정도(50점)	연극 대본의 구조 능력 정도(50점)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대사 구연과 가무 악(樂)을 통한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마. 음식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요한 정도(40점)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절성(10점)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10점)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20점)	
기능적 숙련도 및 음식의 완성도(60점)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업 요사 능력(40점)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20점)	

바. 의식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요한 정도(50점)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50점)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30점)	
	재물아픈 및 제상 배치의 능력(10점)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10점)	

사. 두께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설천 정도(40점)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도 (40점)	5개 4.5개 4개 3.5개 3개 2.5개 2개 미만 만점 100% 90% 80% 70% 60% 50%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40점)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40점)	5개 4.5개 4개 3.5개 3개 2.5개 2개 미만 만점 100% 90% 80% 70% 60% 50% 40%
특수성(20점)	공격과 방어 특수기에와 관련한 특이성(20점)	5개 4.5개 4개 3.5개 3개 2.5개 2개 미만 만점 100% 90% 80% 70% 60% 50% 40%

아. 공예기술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설천여부(25점)	재료의 적합성(10점)	5개 4.5개 4개 3.5개 3개 2.5개 2개 미만 만점 100% 90% 80% 70% 60% 50% 40%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15점)	5개 4.5개 4개 3.5개 3개 2.5개 2개 미만 만점 100% 90% 80% 70% 60% 50% 40%
기능의 숙련도(50점)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50점)	5개 4.5개 4개 3.5개 3개 2.5개 2개 미만 만점 100% 90% 80% 70% 60% 50% 40%
완성품의 실제적 가치성 기능성(25점)	완성품의 실제생가치성 기능성 정도(25점)	5개 4.5개 4개 3.5개 3개 2.5개 2개 미만 만점 100% 90% 80% 70% 60% 50% 40%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제 ___ 호 _____)

교육구분	정기교육 / 특별교육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지도자	

출 석 현 황

전승구분 (이수증전수생)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입문일	기예능	출석여부

※ 첨부 : 개회 전수교육원장지침(사진 등)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제 ___ 호 _____)

교육구분	정기교육 / 특별교육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지도자	

출 석 현 황

전승구분 (이수증전수생)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입문일	기예능	출석여부

※ 첨부 : 개회 전수교육원장지침(사진 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53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규정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라.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우수 이수자 추천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선정 기간(안 제7조)
아.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안 제8조)
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비용 지원(안 제9조)
차.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상황 보고(안 제10조)
카. 우수 이수자 지원금 사용 확인(안 제11조)
타.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유산보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보존과(전화: 02-2133-2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15

2) 이메일: forang3@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유산보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 호

이 고시(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이수자”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4항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이수자”란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전수교육”이란 조례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을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개인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6. “단체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종목전승 종목”이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8. “지원금”은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우수 이수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장려금”은 우수 이수자에게 전승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서울특별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우수 이수자 선정

제4조(선정 대상)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종목 중에서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및 전승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전승 종목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우수 이수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선정 신청)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

제6조(추천) ①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수자는 추천할 수 없다.

1.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②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우수 이수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수 이수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수 이수자로 선정된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우수 이수자 지원 및 관리 등

제8조(장려금) 시장은 우수 이수자에 대하여 선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서 전승활동 지속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시장은 우수 이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외에 해당 종목 전형의 보전·전승을 위한 우수 이수자의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상황 보고 등) ① 보유자 등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수 이수자는 전승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획된 전승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우수 이수자는 제5조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사용 확인)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우수 이수자가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수 이수자에게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우수 이수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이수자가 된 경우
3.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승활동 중단을 알려온 경우
4.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승활동 계획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5.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4항의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우수 이수자가 제출한 제5조제2호의 전승활동 계획서에 따른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수종목	
전수교육주체	
이수인정일	년 월 일(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천주체		구분	□ 보유자 □ 보유단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수집기관에서 우수 이수자 활동 종료 시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수 이수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

전승자	종목명칭	
	성 명	
	생년월일	
	이수인정일	
전승활동 계획	1. 활 동 명 2. 목 적 3. 개 요 1)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장 소 : 3) 세부내용 4. 기대효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1. 전승활동 세부 계획서 1부
2. 전승활동 계획은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결과보고서

보고자	종목명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주 소	
전승활동 결 과	개 요	
	추진실적	
	성 과	
	기타사항	
집 행 액	금 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1. 전승활동 결과(사진, 홍보물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

신청자	종목명칭	
	성 명	
구 분	□ 변경 □ 취소	※ 해당 사항에 표시(V)
변경(취소) 사유		
변경내용 ※ 변경에 표시한 경우만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난지2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50	미래한강본부(시설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1.토목분야 - 바. 그 밖의 시설물 제3종시설물 지저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5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 · 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7호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58호(2023.08.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6호)」에 따른 공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원 내 책쉼터 등을 조성하여 고품격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77 일대
3. 공원면적: 897,270.8㎡
4.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및 도면: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2091-3753), 노원구청 푸른도시과(☎2116-3946)

조성계획도[변경전]

초안산근린공원

SCALE=1/6,000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NONE

초안산근린공원(총괄)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897,270.8	149,722.1	767	
기반시설	소 계		73,943.01	51,574.01		
	도 로	㉮	65,333.0	42,964.0 (22,369.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진입광장	가	4,400.08	4,400.08		
		가-1	175.25	175.25	(1)	
		가-2	122.0	122.0		
		가-3	859.4	859.4	(14)	
		가-5	374.6	374.6	(1)	
		가-6	174.0	174.0		
		가-7	358.76	358.76		
		가-8	486.67	486.67		
		가-10	628.7	628.7	(7)	
		가-11	435.0	435.0		
		가-12	187.83	187.83		
		가-13	206.69	206.69		
		가-14	49.61	49.61		
		가-15	31.32	31.32		
		가-16	30.25	30.25		
		가-18	122.0	122.0		
		가-19	158.0	158.0		
	휴게광장	나	3,572.96	3,572.96		
		나-4	150.25	150.25	(1)	
		나-6	67.25	67.25	(1)	
		나-7	366.5	366.5	(2)	
		나-10	220.0	220.0		
		나-12	110.0	110.0		
		나-13	979.0	979.0		
		나-16	188.0	188.0		
		나-17	24.18	24.18		
		나-18	137.0	137.0		
		나-19	93.73	93.73		
		나-20	93.9	93.9		
		나-21	44.3	44.3		
		나-22	812.32	812.32		
		나-23	306.53	306.53		
	열린광장	너	505.0	505.0		
	작은광장	카	131.97	131.97		
조경시설	소 계		21,448.3	18,553.09	56	
	전디광장	다	436.96	436.96		
	언덕	라	1,818.5	769.4	(1)	
	피크닉장	머	1,846.11	0		
	지압보도	버	278.57	278.57		
	화계	서	632.80	632.80		
		서-1	448.00	448.00		
		서-2	184.80	184.80		
	야생초화원	아	2,945.8	2,945.8		
		아-1	584.88	584.88	(1)	
		아-5	640.92	640.92		
		아-6	259	259		
		아-7	1,461	1,461		
	억새원	자	470.16	470.16		
	생태목교	ⓑ			1	
	생태계류	파	320.60	320.60		
	생태습지	바	285.29	285.29	(1)	
	생태연못	커	128.93	128.93		
		커-1	100.53	100.53		
		커-3	28.4	28.4		
	상지	로	128.1	128.1		
	하지	구	56.3	56.3		
	연결수로	뮤	53.2	53.2		
	겨류	터	598.61	598.61		
		터-1	519.71	519.71	(2)	
		터-3	78.9	78.9		
	파고라A	①	(72)	(72)	1	
	파고라B	②			9	
		②-1	(20.25)	(20.25)	1	
		②-2	(20.25)	(20.25)	1	
		②-4	(20.25)	(20.25)	1	
		②-5	(20.25)	(20.25)	1	
		②-6	(20.25)	(20.25)	1	
		②-7	(20.25)	(20.25)	1	
		②-8	(20.25)	(20.25)	1	
		②-9	(20.25)	(20.25)	1	
		②-10	(25)	(25)	1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조경시설	파고라C	㉯			8	
		㉯-28	(25)	(25)	1	
		㉯-29	(25)	(25)	1	
		㉯-30	(25)	(25)	1	
		㉯-31	(25)	(25)	1	
		㉯-32	(25)	(25)	1	
		㉯-33	(25)	(25)	1	
		㉯-34	(25)	(25)	1	
		㉯-35	(25)	(25)	1	
	파고라E	⑯			9	
		⑯-1	(21)	(21)	1	
		⑯-2	(21)	(21)	1	
		⑯-3	(21)	(21)	1	
		⑯-4	(21)	(21)	1	
		⑯-5	(21)	(21)	1	
		⑯-6	(21)	(21)	1	
		⑯-7	(21)	(21)	1	
		⑯-8	(21)	(21)	1	
		⑯-9	(21)	(21)	1	
	파고라F	⑰			4	
		⑰-1	(14)	(14)	1	
		⑰-2	(14)	(14)	1	
		⑰-3	(14)	(14)	1	
		⑰-4	(14)	(14)	1	
	딱구조꼬고라	⑱	(108)	(108)	1	
	조합파고라	㉮	(152)	(152)	1	
	수목보호홀딜개	⑲			10	
		⑲-1	(1)	(1)	1	
		⑲-2	(1)	(1)	1	
		⑲-3	(1)	(1)	1	
		⑲-4	(1)	(1)	1	
		⑲-5	(1)	(1)	1	
		⑲-6	(1)	(1)	1	
		⑲-7	(1)	(1)	1	
		⑲-8	(1)	(1)	1	
		⑲-9	(1)	(1)	1	
		⑲-10	(1)	(1)	1	
	초정	⑳	29.02	29.02	2	
		⑳-1	14.51	14.51	1	
		⑳-2	14.51	14.51	1	
	관찰데크 A	어-7	39.18	39.18		
	관찰데크 B	어-8	57.74	57.74		
	전망데크 A	어-9	70.0	70.0		
	전망데크 B	어-10	19.32	19.32		
	목교	㉑			3	
		㉑-1	(4.4)	(4.4)	1	
		㉑-2	(5.4)	(5.4)	1	
		㉑-3	(6)	(6)	1	
	휴게데크A	어-14	148.5	148.5		
	휴게데크B	어-15	170.0	170.0		
	물레방아	㉒			1	
	음벽A	㉓			1	
	음벽B	㉔			1	
	음벽C	㉕			1	
	음벽D	㉖			1	
	음벽E	㉗			1	
	야생화정원	우-1	914.61	914.61		
	돌탑터	㉘			1	
	화단	하	10,000.0	10,000.0		
휴양시설	소 계		13,640.52	13,640.52	358	
	휴게소	가	4,784.26	4,784.26		
		가-1	1,045	1,045	(7)	
		가-6	83.0	83.0	(1)	
		가-8	54.0	54.0	(1)	
		가-9	66.5	66.5		
		가-13	372.16	372.16		
		가-16	14.6	14.6		
		가-17	6.0	6.0		
		가-18	21.0	21.0		
		가-19	11.0	11.0		
		가-21	148.0	148.0		
		가-23	1,185.0	1,185.0	(1)	
		가-24	284.0	284.0		
		가-25	214.0	214.0		
		가-26	16.0	16.0		
		가-27	13.0	13.0		
		가-30	196.0	196.0		
		가-31	385.0	385.0		
		가-33	173.0	173.0		
		가-35	497.0	497.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휴양시설	이야학자				64	
	장의자				145	
	점의자	⑭			76	
	시각의자	⑮			14	
	앙료목	⑯			27	
	원의자	⑰			29	
	연식의자A	라-1			1	
	연식의자B	라-2			1	
	연식의자C	라-3			1	
	야영장	어	8,655.40	8,655.40		
	야영장1	어-1	4,464.52	4,464.52		
	야영장2	어-2	1,167.86	1,167.86		
	야영장3	어-3	2,710.56	2,710.56		
		어-4	292.46	292.46		
	부속동	1B	200.86	200.86		
	부속4동	1B-1	83.60	83.60		
	부속5동	1B-2	71.74	71.74		
	부속6동	1B-3	45.52	45.52		
유희시설	소 계		1,270.08	1,270.08	3	
	조합놀이대	원-1			1	
	트리하우스	원-2			1	
	사면슬라이드	원-3			1	
	생태놀이터	나	492.08	492.08		
	생태놀이터1	나-1	292.44	292.44		
	생태놀이터2	나-2	199.64	199.64		
	놀이터	다	778	778		
운동시설	소 계		43,200.45	42,264.45	21	
	롯삼경기장	아	1,192	1,192	(2)	
	대니스장	자	4,221.45	4,221.45		
		자-3	2,497.25	2,497.25	(2)	
		자-4	1,724.2	1,724.2		
	농구장	라	703	703		
	축구장	거	17,523	16,781	21	
		거-1	7,020	6,278		
		거-2	10,503	10,503	21	
	골프연습장	6	13,870	13,676		
		6-2	5,920	5,726		
		6-3	7,950	7,950		
	체력단련장	파	1,617	1,617		
		파-9	899	899		
		파-10	139	139		
		파-14	310	310		
		파-16	215	215		
		파-17	54	54		
	배드민턴장	타	348	348		
	족구장	퍼	956	956		
	실내배드민턴장	허	2,770	2,770		
		허-1	1,748	1,748		
		허-2	1,022	1,022		
교양시설	소 계		13,265.76	10,890.06	1	
	도서관	7	4,977.5	3,357.5	1	
		7-1	4,950	3,330		
		7-2	27.5	27.5	1	
	도자기체험장	8	278.54	278.54		
	이외교실	저	252.5	252.5		
	이외무대	처	463.5	463.5		
	참여형텃밭	퍼	3,737.38	3,737.38		
		퍼-1	339.24	339.24		
		퍼-2	2,756.85	2,756.85		
		퍼-3	641.29	641.29		
	생태학습원	표	1,801.6	1,801.6		
		표-1	1,137.6	1,137.6		
		표-2	408.0	408.0		
		표-3	256.0	256.0		
	목재문화체험장	17	217.11	217.11		
	기드남센터 및 온실	18	392.28	392.28		
	예술공방	19	111.13	111.13		
	정원	아	124.52	124.52		
		아-1	46.57	46.57		
		아-2	60.45	60.45		
		아-3	17.50	17.50		
	어린이집	2	781.70	126.00		
	습극형부부모	24	128	128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편의시설	소 계		10,066.19	9,796.19	22	
	주차장	하	9,375.71	9,105.71		
		하-2	1,313	1,119		
		하-4	3,006.0	3,006.0		
		하-8	2,536.8	2,460.8		
		하-9	546.88	546.88		
		하-10	296.79	296.79		
		하-11	219.29	219.29		
		하-12	1,456.95	1,456.95		
	장애인주차장	노-2	34.76	34.76		
	화장실	9	282.2	282.2		
		9-4	115.5	115.5		
		9-5	115.5	115.5		
		9-6	51.2	51.2		
	스탠드	⑲			1	
	음수전A	⑦			1	
	세족대	㉑			1	
	석교	㉘	4.8	4.8	1	
	계단1	㉘	7.4	7.4	1	
	계단2	㉙	13.86	13.86	1	
	계단6	㉙	1.4	1.4	1	
	계단7	㉙	2.2	2.2	1	
	계단8	㉙	33.00	33.00	1	
	화장실 및 세면장	타	310.86	310.86		
		타-1	178.62	178.62	(2)	
		타-2	132.24	132.24		
	야외스파	㉙-1	(8)	(8)	2	
	야외테이블A	㉙-2			1	
	야외테이블B	㉙-3			10	
관리시설	소 계		1,025.84	833.70	306	
	관리사무소	10	581.4	389.26		
		10-2	120.36	120.36		
		10-3	440.00	247.86		
		10-5	21.04	21.04		
	방문자센터	20	302.03	302.03		
	동풍점	21	80.68	80.68		
	참고	22	36.00	36.00		
	안내판				23	
	방향안내판				4	
	종합안내판	⑧			6	
		⑧-1			1	
		⑧-2			1	
		⑧-3			1	
		⑧-4			2	
					1	
	휴지통	⑨			26	
		⑨-1			2	
		⑨-2			24	
	분리수거장	23	25.73	25.73		
	조명등				216	
	CCTV				22	
	펜스	㉙			1	
	게이트	㉚			4	
	주차 차단기	㉛			2	
녹지및기타	소 계		719,410.65			
	녹지		718,610.65			
	동물놀이터	짜	800	800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NONE

초안산근린공원(도봉구)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408,034.5	87,227.43	312	
기반시설	소 계		43,023.36	30,226.36		
	도 로	(공)	36,472.0	23,675.0 (12,797.0)		도시계획도로 시설선적 비도함
	진입광장	가	3,257.4	3,257.4		
		가-3	859.4	859.4	(14)	
		가-5	374.6	374.6	(1)	
		가-6	174.0	174.0		
		가-10	626.7	626.7	(7)	
		가-11	435.0	435.0		
		가-12	187.83	187.83		
		가-13	206.69	206.69		
		가-14	49.61	49.61		
		가-15	31.32	31.32		
		가-16	30.25	30.25		
		가-18	122	122		
		가-19	158	158		
	휴게광장	나	2,788.96	2,788.96		
		나-12	110	110		
		나-13	979	979		
		나-16	188.0	188.0		
		나-17	24.18	24.18		
		나-18	137	137		
		나-19	93.73	93.73		
		나-20	93.9	93.9		
		나-21	44.3	44.3		
		나-22	812.32	812.32		
		나-23	306.53	306.53		
	열린광장	녀	505.0	505.0		
조경시설	소 계		18,709.49	15,814.28	46	
	연못	러	1,818.5	769.4	(1)	
	피크닉장	머	1,846.11	0		
	지압보도	버	278.57	278.57		
	화계	서	632.8	632.8		
		서-1	448.00	448.00		
		서-2	184.80	184.80		
	야생초화원	쏘	1,720	1,720		
		쏘-6	259	259		
		쏘-7	1,461	1,461		
	생태학교	쌍			1	
	생태연못	커	128.93	128.93		
		커-1	100.53	100.53		
		커-3	28.4	28.4		
	삼지	코	128.1	128.1		
	하지	쿠	56.3	56.3		
	연결수로	퓨	53.2	53.2		
	계류	히	598.61	598.61		
		히-1	519.71	519.71	(2)	
		히-3	78.9	78.9		
	파고라B	②			2	
		②-9	(20.25)	(20.25)	1	
		②-10	(25)	(25)	1	
	파고라C	③			8	
		③-28	(25)	(25)	1	
		③-29	(25)	(25)	1	
		③-30	(25)	(25)	1	
		③-31	(25)	(25)	1	
		③-32	(25)	(25)	1	
		③-33	(25)	(25)	1	
		③-34	(25)	(25)	1	
		③-35	(25)	(25)	1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조경시설	파고라E	⑥			9	
		⑥-1	(21)	(21)	1	
		⑥-2	(21)	(21)	1	
		⑥-3	(21)	(21)	1	
		⑥-4	(21)	(21)	1	
		⑥-5	(21)	(21)	1	
		⑥-6	(21)	(21)	1	
		⑥-7	(21)	(21)	1	
		⑥-8	(21)	(21)	1	
		⑥-9	(21)	(21)	1	
	파고라F	⑦			4	
		⑦-1	(14)	(14)	1	
		⑦-2	(14)	(14)	1	
		⑦-3	(14)	(14)	1	
		⑦-4	(14)	(14)	1	
	막구조파고라	⑧	(108)	(108)	1	
	조합파고라	⑧	(152)	(152)	1	
	수목보호홀딩개	⑨			10	
		⑨-1	(1)	(1)	1	
		⑨-2	(1)	(1)	1	
		⑨-3	(1)	(1)	1	
		⑨-4	(1)	(1)	1	
		⑨-5	(1)	(1)	1	
		⑨-6	(1)	(1)	1	
		⑨-7	(1)	(1)	1	
		⑨-8	(1)	(1)	1	
		⑨-9	(1)	(1)	1	
		⑨-10	(1)	(1)	1	
	초형	㉮	29.02	29.02	2	
		㉮-1	14.51	14.51	1	
		㉮-2	14.51	14.51	1	
	관찰데크 A	어-7	39.18	39.18		
	관찰데크 B	어-8	57.74	57.74		
	전망데크 A	어-9	70.0	70.0		
	전망데크 B	어-10	19.32	19.32		
	목교	㉯			2	
		㉯-1	(4.4)	(4.4)	1	
		㉯-2	(5.4)	(5.4)	1	
	휴게데크A	어-14	148.5	148.5		
	휴게데크B	어-15	170.0	170.0		
	옹벽A	㉰			1	
	옹벽B	㉱			1	
	옹벽C	㉲			1	
	옹벽D	㉳			1	
	옹벽E	㉴			1	
	야생화정원	무-1	914.61	914.61		
	플랜터	㉵			1	
	화단	㉶	10,000.0	10,000.0		
휴양시설	소 계		3,882.26	3,882.26	90	
	휴게소	가	3,882.26	3,882.26		
		가-1	1,045.00	1,045.00	(7)	
		가-6	83.0	83.0	(1)	
		가-8	54.0	54.0	(1)	
		가-9	66.5	66.5		
		가-13	372.16	372.16		
		가-16	14.6	14.6		
		가-17	6.0	6.0		
		가-18	21.0	21.0		
		가-19	11.0	11.0		
		가-23	1,185.0	1,185.0	(1)	
		가-24	284.0	284.0		
		가-25	214.0	214.0		
		가-26	16.0	16.0		
		가-27	13.0	13.0		
		가-35	497.0	497.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휴양시설	이뮤락자				16	
	장의자				36	
	음의자	㉠			19	
	사각의자	㉡			3	
	입점벽	㉢			6	
	협의자	㉣			7	
	언식의자A	탄-1			1	
	언식의자B	탄-2			1	
	언식의자C	탄-3			1	
유희시설	소 계		778.0	778.0		
	놀이터	다	778.0	778.0		
운동시설	소 계		21,709.2	21,515.2	21	
	풋살경기장	아	1,192	1,192		
	테니스장	자-4	1,724.2	1,724.2		
	축구장	거-2	10,503	10,503	21	
	골프연습장	6-2	5,920	5,726		
	체력단련장	파	1,348	1,348		
		파-9	899	899		
		파-10	139	139		
		턱-14	310	310		
	실내버드민턴장	허-2	1,022.0	1,022.0		
교양시설	소 계		12,859.22	10,583.52	1	
	도서관	7	4,977.5	3,357.5	1	
		7-1	4,950	3,330		
		7-2	27.50	27.50	1	
	야외교실	저	252.5	252.5		
	야외무대	처	463.5	463.5		
	참여형텃밭	퍼	3,737.38	3,737.38		
		퍼-1	339.24	339.24		
		퍼-2	2,756.85	2,756.85		
		퍼-3	641.29	641.29		
	생태학습원	표	1,801.6	1,801.6		
		표-1	1,137.6	1,137.6		
		표-2	408.0	408.0		
		표-3	256	256		
	목재문화체험장	17	217.11	217.11		
	기드닝센터 및 온실	18	392.28	392.28		
	예술공방	19	111.13	111.13		
	정원	아	124.52	124.52		
		아-1	46.57	46.57		
		아-2	60.45	60.45		
		아-3	17.50	17.50		
	어린이집	2	781.70	126.00		
편익시설	소 계		4,413.95	4,143.95	8	
	주차장	하	4,069.09	3,799.09		
		하-2	1,313	1,119		
		하-8	2,536.8	2,460.8		
		하-11	219.29	219.29		
	화장실	9	282.2	282.2		
		9-4	115.5	115.5		
		9-5	115.5	115.5		
		9-6	51.2	51.2		
	스탠드	15			1	
	세족대	21			1	
	식교	26	4.8	4.8	1	
	계단1	27	7.4	7.4	1	
	계단2	28	13.86	13.86	1	
	계단6	29	1.4	1.4	1	
	계단7	28	2.2	2.2	1	
	계단8	25	33.00	33.00	1	
관리시설	소 계		476.00	283.86	146	
	관리사무소	10-3	440.00	247.86		
	창고	22	36.00	36.00		
	안내판				11	
	방향안내판				2	
	종합안내판	④-4			1	
	휴지통	⑨-2			12	
	조명등				109	
	CCTV				11	
녹지및기타	소 계		302,183.02			
	녹지		301,383.02			
	동물놀이터	파	800	800		

조성계획도[변경전]

초안산근린공원(노원구)

SCALE=NONE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연체(㎡)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489,236.3	61,694.67	455	
기반시설	소 계		30,919.65	21,347.65		
	도 로	㉮	28,861	19,289 (9572)		도시계획도로 시설연체 미포함
	진입광장	가	1,142.68	1,142.68		
		가-1	175.25	175.25		
		가-2	122.0	122.0		
		가-7	358.76	358.76		
		가-8	486.67	486.67		
	휴게광장	나	784.0	784.0		
		나-4	130.25	130.25		
		나-6	67.25	67.25		
		나-7	366.5	366.5		
		나-10	220.0	220.0		
	작은광장	카	131.97	131.97		
조경시설	소 계		2,738.81	2,738.81	10	
	잔디광장	다	436.96	436.96		
	아생초화원	까	1,225.8	1,225.8		
		까-1	584.88	584.88	(1)	
		까-5	640.92	640.92		
	억새원	까	470.16	470.16		
	생태계류	라	320.60	320.60		
	생태습지	바	285.29	285.29	(1)	
	파고라A	①	(72)	(72)	1	
	파고라B	②			7	
		②-1	(20.25)	(20.25)	1	
		②-2	(20.25)	(20.25)	1	
		②-4	(20.25)	(20.25)	1	
		②-5	(20.25)	(20.25)	1	
		②-6	(20.25)	(20.25)	1	
		②-7	(20.25)	(20.25)	1	
		②-8	(20.25)	(20.25)	1	
	특고	㉯-3	(6)	(6)	1	
	물레방아	㉰			1	
휴양시설	소 계		9,758.26	9,758.26	268	
	휴게소	가	902	902		
		가-21	148	148		
		가-30	196	196		
		가-31	385	385		
		가-33	173	173		
	야외학자				48	
	참의자				109	
	참의자	㉱			57	
	사각의자	㉲			11	
	입품벽	㉳			21	
	참의자	㉴			22	
	야생장	어	8,655.40	8,655.40		
	야생장1	어-1	4,484.52	4,484.52		
	야생장2	어-2	1,167.86	1,167.86		
	야생장3	어-3	2,710.56	2,710.56		
		어-4	292.46	292.46		
	부속동	16	200.86	200.86		
	부속4동	16-1	83.60	83.60		
	부속5동	16-2	71.74	71.74		
	부속6동	16-3	45.52	45.52		
유희시설	소 계		492.08	492.08	3	
	조합놀이대	타-1			1	
	트리하우스	타-2			1	
	사면슬라이드	타-3			1	
	생태놀이터	나	492.08	492.08		
	생태놀이터1	나-1	292.44	292.44		
	생태놀이터2	나-2	199.64	199.64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연체(㎡)	공 작 물(기)	비 고
운동시설	소 계		21,491.25	20,749.25		
	테니스장	차-3	2,497.25	2,497.25	(2)	
	농구장	라	703	703		
	축구장	거-1	7,020	6,278		
	골프연습장	하-3	7,950	7,950		
	체력단련장	파	269	269		
		파-16	215	215		
		파-17	54	54		
	배드민턴장	타	348	348		
	족구장	퍼	956	956		
	실내배드민턴장	허-1	1,748	1,748		
교양시설	소 계		406.54	406.54		
	도자기체험장	8	278.54	278.54		
	습극철부부묘	24	128	128		
편익시설	소 계		5,652.24	5,652.24	14	
	주차장	하	5,306.62	5,306.62		
		하-4	3,006	3,006		
		하-9	546.88	546.88		
		하-10	296.79	296.79		
		하-12	1,456.95	1,456.95		
	장애인주차장	노-2	34.76	34.76		
	음수전A	⑦			1	
	화장실 및 세면장	타	310.86	310.86		
		타-1	178.62	178.62	(2)	
		타-2	132.24	132.24		
	야외스파	㉰-1	(8)	(8)	2	
	야외테이블A	㉰-2			1	
	야외테이블B	㉰-3			10	
관리시설	소 계		549.84	549.84	160	
	관리사무소	10	141.40	141.40		
		10-2	120.36	120.36		
		10-5	21.04	21.04		
	방문자센터	20	302.03	302.03		
	종합안내판	21	80.66	80.66		
	안내판				12	
	방향안내판				2	
	종합안내판	⑤			5	
		⑤-1			1	
		⑤-2			1	
		⑤-3			1	
		⑤-4			2	
	휴지통	⑥			14	
		⑥-1			2	
		⑥-2			12	
	분리수거장	23	25.73	25.73		
	조명등				109	
	CCTV				11	
	펜스	㉯			1	
	게이트	㉯			4	
	주차 차단기	㉰			2	
녹지및기타	소 계		417,227.63			
	녹지		417,227.63			

조성계획도[변경후]

초안산근린공원

SCALE=1/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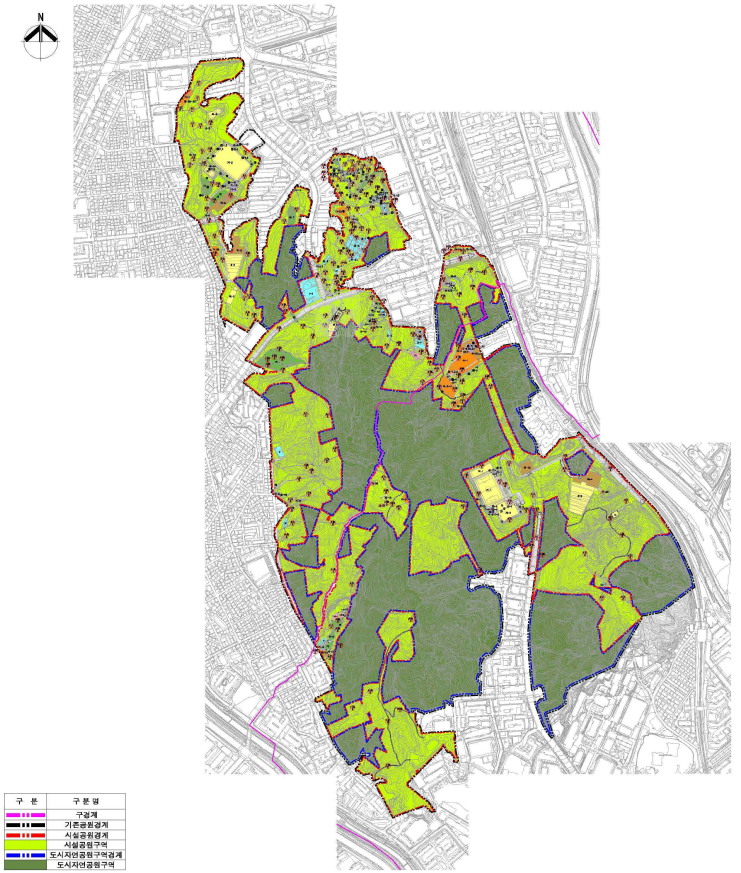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NONE

초안산근린공원(총괄)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893,866.8	148,154.80	767	
기반시설	소 계		74,037.11	51,668.11		
	도 로	㉮	65,333.0	42,964.0 (22,369.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진입광장	가	4,400.08	4,400.08		
		가-1	175.25	175.25	(1)	
		가-2	122.0	122.0		
		가-3	859.4	859.4	(14)	
		가-5	374.6	374.6	(1)	
		가-6	174.0	174.0		
		가-7	358.76	358.76		
		가-8	486.67	486.67		
		가-10	628.7	628.7	(7)	
		가-11	435.0	435.0		
		가-12	187.83	187.83		
		가-13	206.69	206.69		
		가-14	49.61	49.61		
		가-15	31.32	31.32		
		가-16	30.25	30.25		
		가-18	122.0	122.0		
		가-19	158.0	158.0		
	휴게광장	나	3,572.96	3,572.96		
		나-6	130.25	130.25	(1)	
		나-8	67.25	67.25	(1)	
		나-7	366.5	366.5	(2)	
		나-10	220.0	220.0		
		나-12	110.0	110.0		
		나-13	979.0	979.0		
		나-16	188.0	188.0		
		나-17	24.18	24.18		
		나-18	137.0	137.0		
		나-19	93.73	93.73		
		나-20	188.0	188.0		
		나-21	44.3	44.3		
		나-22	812.32	812.32		
		나-23	306.53	306.53		
	열린광장	너	505.0	505.0		
	직선광장	카	131.97	131.97		
조경시설	소 계		21,228.3	18,333.09	56	
	전다광장	다	436.96	436.96		
	언덕	리	1,818.5	769.4	(1)	
	피크닉장	머	1,846.11	0		
	지압보도	버	278.57	278.57		
	회계	서	632.80	632.80		
		서-1	448.00	448.00		
		서-2	184.80	184.80		
	아생초화원	아	2,945.8	2,945.8		
		아-1	584.88	584.88	(1)	
		아-5	640.92	640.92		
		아-6	259	259		
		아-7	1,461	1,461		
	억새원	까	470.16	470.16		
	생태학교	ⓜ			1	
	생태계류	리	320.60	320.60		
	생태습지	비	285.29	285.29	(1)	
	생태연못	커	128.93	128.93		
		커-1	100.53	100.53		
		커-3	28.4	28.4		
	상지	코	128.1	128.1		
	하지	쿠	56.3	56.3		
	연결수로	타	53.2	53.2		
	계류	티	598.61	598.61		
		티-1	519.71	519.71	(2)	
		티-3	78.9	78.9		
	파고라A	①	(72)	(72)	1	
	파고라B	②			9	
		②-1	(20.25)	(20.25)	1	
		②-2	(20.25)	(20.25)	1	
		②-4	(20.25)	(20.25)	1	
		②-5	(20.25)	(20.25)	1	
		②-6	(20.25)	(20.25)	1	
		②-7	(20.25)	(20.25)	1	
		②-8	(20.25)	(20.25)	1	
		②-9	(20.25)	(20.25)	1	
		②-10	(25)	(25)	1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조경시설	파고라C	㉯			8	
		㉯-28	(25)	(25)	1	
		㉯-29	(25)	(25)	1	
		㉯-30	(25)	(25)	1	
		㉯-31	(25)	(25)	1	
		㉯-32	(25)	(25)	1	
		㉯-33	(25)	(25)	1	
		㉯-34	(25)	(25)	1	
		㉯-35	(25)	(25)	1	
	파고라E	㉰			9	
		㉰-1	(21)	(21)	1	
		㉰-2	(21)	(21)	1	
		㉰-3	(21)	(21)	1	
		㉰-4	(21)	(21)	1	
		㉰-5	(21)	(21)	1	
		㉰-6	(21)	(21)	1	
		㉰-7	(21)	(21)	1	
		㉰-8	(21)	(21)	1	
		㉰-9	(21)	(21)	1	
	파고라F	㉱			4	
		㉱-1	(14)	(14)	1	
		㉱-2	(14)	(14)	1	
		㉱-3	(14)	(14)	1	
		㉱-4	(14)	(14)	1	
	딱구조파고라	㉲	(108)	(108)	1	
	조합파고라	㉳	(152)	(152)	1	
	수목보호홀암개	㉴			10	
		㉴-1	(1)	(1)	1	
		㉴-2	(1)	(1)	1	
		㉴-3	(1)	(1)	1	
		㉴-4	(1)	(1)	1	
		㉴-5	(1)	(1)	1	
		㉴-6	(1)	(1)	1	
		㉴-7	(1)	(1)	1	
		㉴-8	(1)	(1)	1	
		㉴-9	(1)	(1)	1	
		㉴-10	(1)	(1)	1	
	초정	㉵	29.02	29.02	2	
		㉵-1	14.51	14.51	1	
		㉵-2	14.51	14.51	1	
	관찰데크 A	㉶-7	39.18	39.18		
	관찰데크 B	㉶-8	57.74	57.74		
	전망데크 A	㉶-9	70.0	70.0		
	전망데크 B	㉶-10	19.32	19.32		
	목교	㉷			3	
		㉷-1	(4.4)	(4.4)	1	
		㉷-2	(5.4)	(5.4)	1	
		㉷-3	(6)	(6)	1	
	휴게데크A	㉶-14	98.5	98.5		
	쉼터방아	㉸			1	
	음벽A	㉹			1	
	음벽B	㉺			1	
	음벽C	㉻			1	
	음벽D	㉼			1	
	음벽E	㉽			1	
	아생화정원	루-1	914.61	914.61		
	물레터	㉾			1	
	화단	하	10,000.0	10,000.0		
휴양시설	소 계		13,640.52	13,640.52	358	
	휴게소	가	4,784.26	4,784.26		
		가-1	1,045	1,045	(7)	
		가-6	83.0	83.0	(1)	
		가-8	54.0	54.0	(1)	
		가-9	66.5	66.5		
		가-13	372.16	372.16		
		가-16	14.6	14.6		
		가-17	6.0	6.0		
		가-18	21.0	21.0		
		가-19	11.0	11.0		
		가-21	148.0	148.0		
		가-23	1,185.0	1,185.0	(1)	
		가-24	284.0	284.0		
		가-25	214.0	214.0		
		가-26	16.0	16.0		
		가-27	13.0	13.0		
		가-30	196.0	196.0		
		가-31	385.0	385.0		
		가-33	173.0	173.0		
		가-35	497.0	497.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휴양시설	야외극장				64	
	참의자				145	
	등의자	㉠			76	
	사각의자	㉡			14	
	입석대	㉢			27	
	봉의자	㉣			29	
	연식의자A	㉤-1			1	
	연식의자B	㉤-2			1	
	연식의자C	㉤-3			1	
	이정장	여	8,655.40	8,655.40		
	이정장1	여-1	4,464.52	4,464.52		
	이정장2	여-2	1,167.86	1,167.86		
	이정장3	여-3	2,710.56	2,710.56		
		여-4	292.46	292.46		
	부속동	16	200.86	200.86		
	부속A동	16-1	83.60	83.60		
	부속B동	16-2	71.74	71.74		
	부속C동	16-3	45.52	45.52		
유희시설	소 계		1,270.08	1,270.08	3	
	조합놀이대	㉮-1			1	
	트리하우스	㉮-2			1	
	사면슬라이드	㉮-3			1	
	생태놀이터	나	492.08	492.08		
	생태놀이터1	나-1	292.44	292.44		
	생태놀이대2	나-2	199.64	199.64		
	놀이터	다	778	778		
운동시설	소 계		42,211.25	41,275.25	21	
	돗실경기장	아	1,192	1,192	(2)	
	테니스장	자-3	2,497.25	2,497.25	(2)	
	농구장	차	703	703		
	축구장	거	17,523	16,781	21	
		거-1	7,020	6,278		
		거-2	10,503	10,503	21	
	골프연습장	터	13,870	13,676		
		터-2	5,920	5,726		
		터-3	7,950	7,950		
	게릭단련장	파	1,617	1,617		
		파-9	899	899		
		파-10	139	139		
		파-14	310	310		
		파-16	215	215		
		파-17	54	54		
	배드민턴장	탁	348	348		
	족구장	퍼	1,691.0	1,691.0		
	삼내배드민턴장	허	2,770	2,770		
		허-1	1,748	1,748		
		허-2	1,022	1,022		
교양시설	소 계		13,634.76	11,359.06	1	
	도서관	7	4,977.5	3,357.5	1	
		7-1	4,950	3,330		
		7-2	27.5	27.5	1	
	특성터	차	369.0	369.0		
	도자기계획장	표	278.54	278.54		
	야외교실	지	262.5	262.5		
	야외무대	치	463.5	463.5		
	참여형텃밭	퍼	3,737.38	3,737.38		
		퍼-1	339.24	339.24		
		퍼-2	2,756.85	2,756.85		
		퍼-3	641.29	641.29		
	생태학습원	표	1,801.6	1,801.6		
		표-1	1,137.6	1,137.6		
		표-2	408.0	408.0		
		표-3	256.0	256.0		
	목재문화체험장	17	217.11	217.11		
	가드닝센터 및 온실	18	392.28	392.28		
	예술공방	19	111.13	111.13		
	정원	아	124.52	124.52		
		아-1	46.57	46.57		
		아-2	60.45	60.45		
		아-3	17.50	17.50		
	이르이집	2	781.70	126.00		
	승격형부부교	24	128	128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편익시설	소 계		10,044.99	9,774.99	22	
	주차장	하	9,375.71	9,105.71		
		하-2	1,313	1,119		
		하-4	3,006.0	3,006.0		
		하-8	2,536.8	2,460.8		
		하-9	546.88	546.88		
		하-10	296.79	296.79		
		하-11	219.29	219.29		
		하-12	1,456.95	1,456.95		
	참여인주차장	노-2	34.76	34.76		
	화장실	9	261.0	261.0		
		9-3	30.0	30.0		
		9-4	115.5	115.5		
		9-5	115.5	115.5		
	스탠드	⑲			1	
	음수전A	⑦			1	
	세족대	⑳			1	
	쉬교	㉑	4.8	4.8	1	
	계단1	㉒	7.4	7.4	1	
	계단2	㉓	13.86	13.86	1	
	계단6	㉔	1.4	1.4	1	
	계단7	㉕	2.2	2.2	1	
	계단8	㉖	33.00	33.00	1	
	화장실 및 세면장	다	310.86	310.86		
		다-1	178.62	178.62	(2)	
		다-2	132.24	132.24		
	아외스파	㉗-1	(8)	(8)	2	
	아외데이블A	㉗-2			1	
	아외데이블B	㉗-3			10	
관리시설	소 계		1,025.84	833.70	306	
	관리사무소	10	581.4	389.26		
		10-2	120.36	120.36		
		10-3	440.00	247.86		
		10-5	21.04	21.04		
	방문자센터	20	302.03	302.03		
	옹동점	21	80.68	80.68		
	창고	22	36.00	36.00		
	안내판				23	
	방향안내판				4	
	종합안내판	⑧			6	
		⑧-1			1	
		⑧-2			1	
		⑧-3			1	
		⑧-4			2	
					1	
	휴지통	⑨			26	
		⑨-1			2	
		⑨-2			24	
	분리수거장	23	25.73	25.73		
	초음종				216	
	CCTV				22	
	휀스	㉘			1	
	게이트	㉙			4	
	주차 차단기	㉚			2	
녹지및기타	소 계		716,773.95			
	녹지		715,973.95			
	등물놀이터	파	800	800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NONE

초안산근린공원(도봉구)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404,630.5	87,416.13	312	
기반시설	소 계		43,117.46	30,320.46		
	도 로	(공)	36,472.0	23,675.0 (12,797.0)		도시계획도로 세분계획도로
	진입광장	가	3,257.4	3,257.4		
		가-3	859.4	859.4	(14)	
		가-5	374.6	374.6	(1)	
		가-6	174.0	174.0		
		가-10	628.7	628.7	(7)	
		가-11	435.0	435.0		
		가-12	187.83	187.83		
		가-13	206.69	206.69		
		가-14	49.61	49.61		
		가-15	31.32	31.32		
		가-16	30.25	30.25		
		가-18	122	122		
		가-19	158	158		
	휴게광장	나	2,788.96	2,788.96		
		나-12	110	110		
		나-13	979	979		
		나-16	188.0	188.0		
		나-17	24.18	24.18		
		나-18	137	137		
		나-19	93.73	93.73		
		나-20	188.0	188.0		
		나-21	44.3	44.3		
		나-22	812.32	812.32		
		나-23	306.53	306.53		
	열린광장	너	505.0	505.0		
조경시설	소 계		18,489.49	15,594.28	46	
	연못	러	1,818.5	769.4	(1)	
	피크닉장	머	1,846.11	0		
	지압보도	버	278.57	278.57		
	화계	서	632.8	632.8		
		서-1	448.00	448.00		
		서-2	184.80	184.80		
	야생초화원	쟈	1,720	1,720		
		쟈-6	259	259		
		쟈-7	1,461	1,461		
	생태학교	장			1	
	생태연못	커	128.93	128.93		
		커-1	100.53	100.53		
		커-3	28.4	28.4		
	삼지	코	128.1	128.1		
	하지	쿠	56.3	56.3		
	연결수로	퓨	53.2	53.2		
	계류	히	598.61	598.61		
		히-1	519.71	519.71	(2)	
		히-3	78.9	78.9		
	파고라B	㉡			2	
		㉡-9	(20.25)	(20.25)	1	
		㉡-10	(25)	(25)	1	
	파고라C	㉢			8	
		㉢-28	(25)	(25)	1	
		㉢-29	(25)	(25)	1	
		㉢-30	(25)	(25)	1	
		㉢-31	(25)	(25)	1	
		㉢-32	(25)	(25)	1	
		㉢-33	(25)	(25)	1	
		㉢-34	(25)	(25)	1	
		㉢-35	(25)	(25)	1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조경시설	파고라E	㉣			9	
		㉣-1	(21)	(21)	1	
		㉣-2	(21)	(21)	1	
		㉣-3	(21)	(21)	1	
		㉣-4	(21)	(21)	1	
		㉣-5	(21)	(21)	1	
		㉣-6	(21)	(21)	1	
		㉣-7	(21)	(21)	1	
		㉣-8	(21)	(21)	1	
		㉣-9	(21)	(21)	1	
	파고라F	㉤			4	
		㉤-1	(14)	(14)	1	
		㉤-2	(14)	(14)	1	
		㉤-3	(14)	(14)	1	
		㉤-4	(14)	(14)	1	
	막구조파고라	㉥	(108)	(108)	1	
	조합파고라	㉦	(152)	(152)	1	
	수목보호홈덮개	㉧			10	
		㉧-1	(1)	(1)	1	
		㉧-2	(1)	(1)	1	
		㉧-3	(1)	(1)	1	
		㉧-4	(1)	(1)	1	
		㉧-5	(1)	(1)	1	
		㉧-6	(1)	(1)	1	
		㉧-7	(1)	(1)	1	
		㉧-8	(1)	(1)	1	
		㉧-9	(1)	(1)	1	
		㉧-10	(1)	(1)	1	
	초형	㉨	29.02	29.02	2	
		㉨-1	14.51	14.51	1	
		㉨-2	14.51	14.51	1	
	관찰데크 A	어-7	39.18	39.18		
	관찰데크 B	어-8	57.74	57.74		
	전망데크 A	어-9	70.0	70.0		
	전망데크 B	어-10	19.32	19.32		
	목교	㉩			2	
		㉩-1	(4.4)	(4.4)	1	
		㉩-2	(5.4)	(5.4)	1	
	휴게데크A	어-14	98.5	98.5		
	옴벽A	㉪			1	
	옴벽B	㉫			1	
	옴벽C	㉬				
	옴벽D	㉭			1	
	옴벽E	㉮			1	
	야생화정원	무-1	914.61	914.61		
	올랜터	㉯			1	
	화단	햐	10,000.0	10,000.0		
	소 계		3,882.26	3,882.26	90	
휴양시설	휴게소	가	3,882.26	3,882.26		
		가-1	1,045.00	1,045.00	(7)	
		가-6	83.0	83.0	(1)	
		가-8	54.0	54.0	(1)	
		가-9	66.5	66.5		
		가-13	372.16	372.16		
		가-16	14.6	14.6		
		가-17	6.0	6.0		
		가-18	21.0	21.0		
		가-19	11.0	11.0		
		가-23	1,185.0	1,185.0	(1)	
		가-24	284.0	284.0		
		가-25	214.0	214.0		
		가-26	16.0	16.0		
		가-27	13.0	13.0		
		가-35	497.0	497.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휴양시설	이뮤학자				16	
	상의자				36	
	의의자	㉱			19	
	사각의자	㉲			3	
	임점벽	㉳			6	
	벨의자	햐			7	
	언식의자A	탄-1			1	
	언식의자B	탄-2			1	
	언식의자C	탄-3			1	
유희시설	소 계		778.0	778.0		
	놀이터	다	778.0	778.0		
운동시설	소 계		21,676.0	21,482.0	21	
	풋살경기장	아	1,192	1,192		
	축구장	거-2	10,503	10,503	21	
	골프연습장	5-2	5,920	5,726		
	체력단련장	파	1,348	1,348		
		파-9	899	899		
		파-10	139	139		
		파-14	310	310		
	축구장	퍼	1,691.0	1,691.0		
	실내버드민턴장	허-2	1,022.0	1,022.0		
교양시설	소 계		13,228.22	10,952.52	1	
	도서관	7	4,977.5	3,357.5	1	
		7-1	4,950	3,330		
		7-2	27.50	27.50	1	
	휘성터	차	369.0	369.0		
	야외교실	저	252.5	252.5		
	야외무대	처	463.5	463.5		
	참여형학발	퍼	3,737.38	3,737.38		
		표-1	339.24	339.24		
		표-2	2,756.85	2,756.85		
		표-3	641.29	641.29		
		표	1,801.6	1,801.6		
	생태학습장	표-1	1,137.6	1,137.6		
		표-2	408.0	408.0		
		표-3	256	256		
	목재문화체험장	17	217.11	217.11		
	가드닝센터 및 온실	18	392.28	392.28		
	예술공방	19	111.13	111.13		
	정원	아	124.52	124.52		
		아-1	46.57	46.57		
		아-2	60.45	60.45		
		아-3	17.50	17.50		
	어린이집	2	781.70	126.00		
편익시설	소 계		4,392.75	4,122.75	8	
	주차장	하	4,066.09	3,799.09		
		하-2	1,313	1,119		
		하-8	2,536.8	2,460.8		
		하-11	219.29	219.29		
	화장실	9	261.0	261.0		
		9-3	30.0	30.0		
		9-4	115.5	115.5		
		9-5	115.5	115.5		
	스탠드	15			1	
	세족대	21			1	
	석교	28	4.8	4.8	1	
	계단1	27	7.4	7.4	1	
	계단2	26	13.86	13.86	1	
	계단6	20	1.4	1.4	1	
	계단7	29	2.2	2.2	1	
	계단8	25	33.00	33.00	1	
관리시설	소 계		476.00	283.86	146	
	관리사무소	10-3	440.00	247.86		
	창고	22	36.00	36.00		
	안내판				11	
	방향안내판				2	
	종합안내판	㉣-4			1	
	휴지통	㉣-2			12	
	조명등				109	
	CCTV				11	
녹지및기타	소 계		298,590.32			
	녹지		297,790.32			
	동물놀이터	파	800	800		

조성계획도[변경후]

초안산근린공원(노원구)

SCALE=NONE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연체(㎡)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489,236.3	60,738.67	455	
기반시설	소 계		30,919.65	21,347.65		
	도 로	㉮	28,861	19,289 (9572)		도시계획도로 시설연체 미포함
	진입광장	가	1,142.68	1,142.68		
		가-1	175.25	175.25		
		가-2	122.0	122.0		
		가-7	358.76	358.76		
		가-8	486.67	486.67		
	휴게광장	나	784.0	784.0		
		나-4	130.25	130.25		
		나-6	67.25	67.25		
		나-7	366.5	366.5		
		나-10	220.0	220.0		
	작은광장	카	131.97	131.97		
조경시설	소 계		2,738.81	2,738.81	10	
	잔디광장	다	436.96	436.96		
	아생초화원	까	1,225.8	1,225.8		
		까-1	584.88	584.88	(1)	
		까-5	640.92	640.92		
	억새원	까	470.16	470.16		
	생태계류	라	320.60	320.60		
	생태습지	바	285.29	285.29	(1)	
	파고라A	①	(72)	(72)	1	
	파고라B	②			7	
		②-1	(20.25)	(20.25)	1	
		②-2	(20.25)	(20.25)	1	
		②-4	(20.25)	(20.25)	1	
		②-5	(20.25)	(20.25)	1	
		②-6	(20.25)	(20.25)	1	
		②-7	(20.25)	(20.25)	1	
		②-8	(20.25)	(20.25)	1	
	특고	㉯-3	(6)	(6)	1	
	물레방아	㉰			1	
휴양시설	소 계		9,758.26	9,758.26	268	
	휴게소	가	902	902		
		가-21	148	148		
		가-30	196	196		
		가-31	385	385		
		가-33	173	173		
	야외학자				48	
	참의자				109	
	참의자	㉱			57	
	사각의자	㉲			11	
	입음벽	㉳			21	
	원의자	㉴			22	
	야생장	어	8,655.40	8,655.40		
	야생장1	어-1	4,484.52	4,484.52		
	야생장2	어-2	1,167.86	1,167.86		
	야생장3	어-3	2,710.56	2,710.56		
		어-4	292.46	292.46		
	부속동	16	200.86	200.86		
	부속4동	16-1	83.60	83.60		
	부속5동	16-2	71.74	71.74		
	부속6동	16-3	45.52	45.52		
유희시설	소 계		492.08	492.08	3	
	조합놀이대	랑-1			1	
	트리하우스	랑-2			1	
	사면슬라이드	랑-3			1	
	생태놀이터	나	492.08	492.08		
	생태놀이터1	나-1	292.44	292.44		
	생태놀이터2	나-2	199.64	199.64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연체(㎡)	공 작 물(기)	비 고
운동시설	소 계		20,535.25	19,793.25		
	테니스장	자-3	2,497.25	2,497.25	(2)	
	농구장	라	703	703		
	축구장	거-1	7,020	6,278		
	골프연습장	6-3	7,950	7,950		
	체육단련장	사	269	269		
		사-16	215	215		
		사-17	54	54		
	배드민턴장	타	348	348		
	실내배드민턴장	허-1	1,748	1,748		
교양시설	소 계		406.54	406.54		
	도자기체험장	8	278.54	278.54		
	승마협회부모	24	128	128		
편익시설	소 계		5,652.24	5,652.24	14	
	주차장	하	5,306.62	5,306.62		
		하-4	3,006	3,006		
		하-9	546.88	546.88		
		하-10	296.79	296.79		
		하-12	1,456.95	1,456.95		
	장애인주차장	노-2	34.76	34.76		
	음수전A	⑦			1	
	화장실 및 세면장	타	310.86	310.86		
		타-1	178.62	178.62	(2)	
		타-2	132.24	132.24		
	야적소파	㉱-1	(8)	(8)	2	
	야외테이블A	㉱-2			1	
	야외테이블B	㉱-3			10	
관리시설	소 계		549.84	549.84	160	
	관리사무소	10	141.40	141.40		
		10-2	120.36	120.36		
		10-5	21.04	21.04		
	방문자센터	20	302.03	302.03		
	음용원	21	80.68	80.68		
	안내판				12	
	방향안내판				2	
	종합안내판	⑧			5	
		⑧-1			1	
		⑧-2			1	
		⑧-3			1	
		⑧-4			2	
	휴지통	⑨			14	
		⑨-1			2	
		⑨-2			12	
	분리수거장	23	25.73	25.73		
	조명등				109	
	CCTV				11	
	펜스	㉯			1	
	게이트	㉯			4	
	주차 차단기	㉰			2	
녹지및기타	소 계		418,183.63			
	녹지		418,183.63			

세부계획결정도[변경전]

초안산근린공원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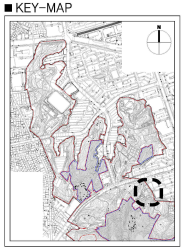

■ 책쉼터

SCALE=1/250

세부계획결정도[변경후]

초안산근린공원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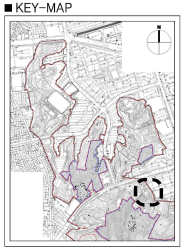

■ 책쉼터

SCALE=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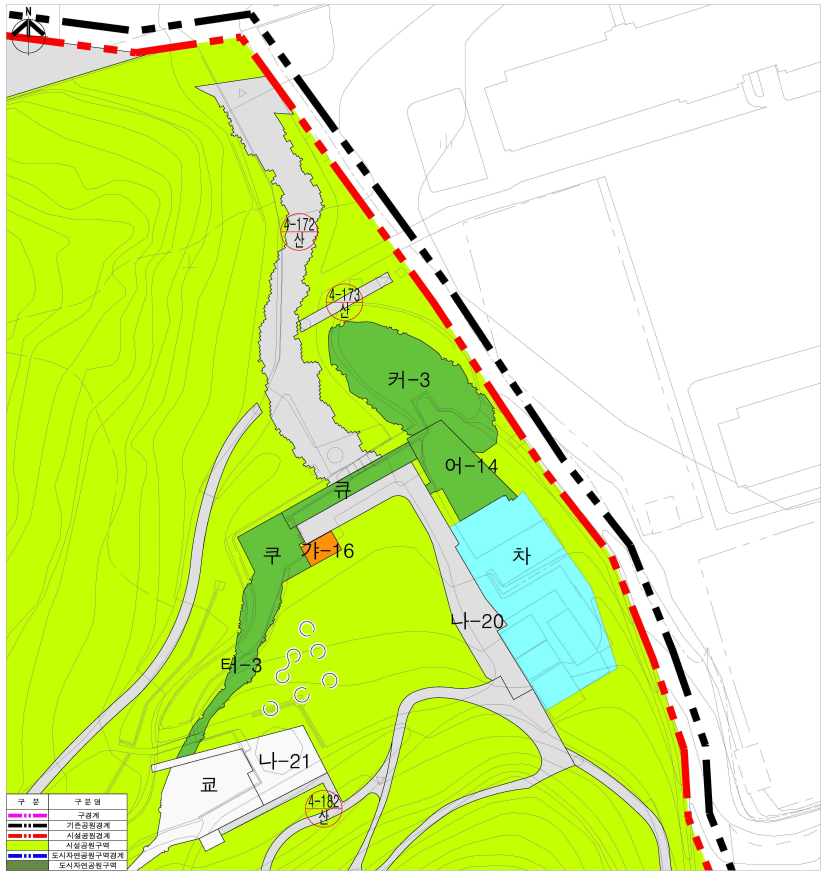

세부계획결정도[변경전]

초안산근린공원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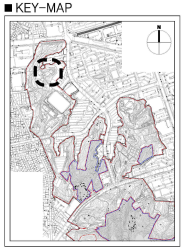

■ 화장실 반영

SCALE=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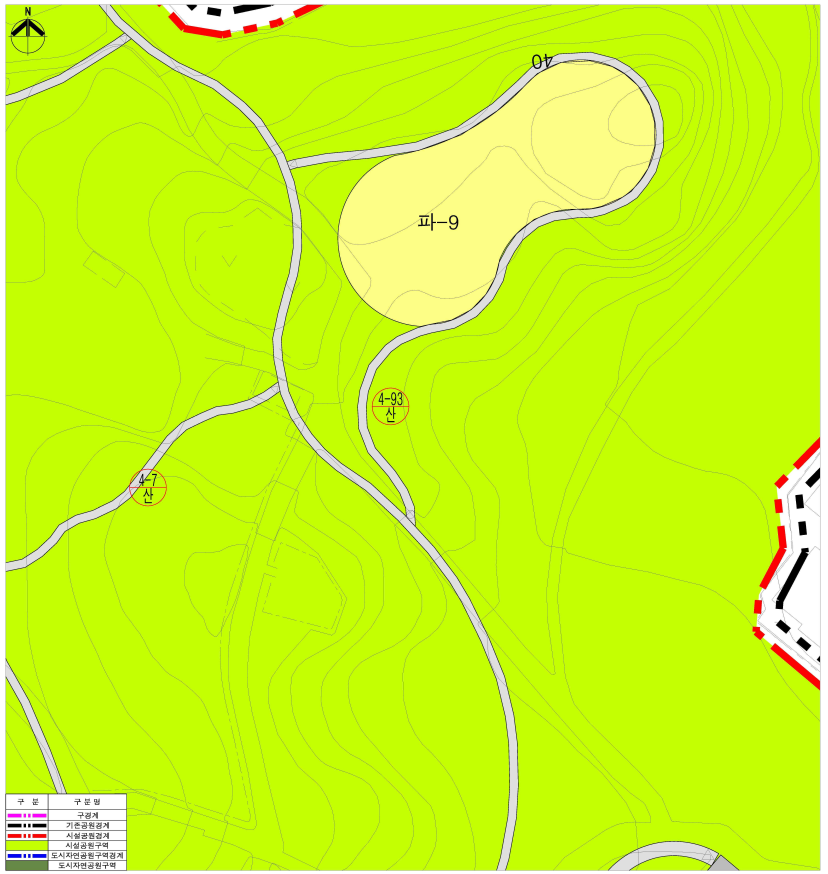

세부계획결정도[변경후]

초안산근린공원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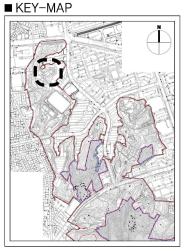

■ 화장실 반영

SCALE=1/250

세부계획결정도[변경전]

초안산근린공원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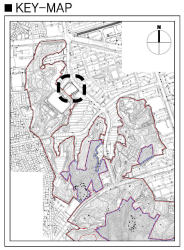

■ 문화시설로 변경

SCALE=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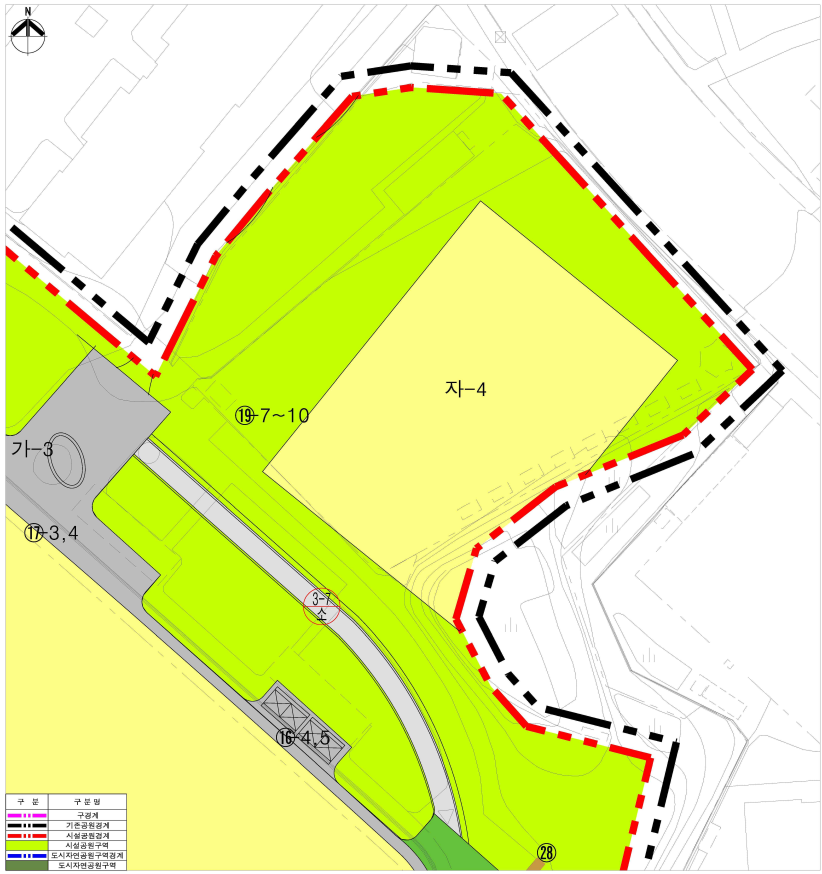

세부계획결정도[변경후]

초안산근린공원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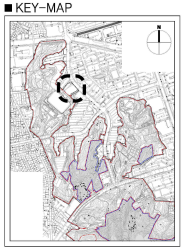

■ 문화시설로 변경

SCALE=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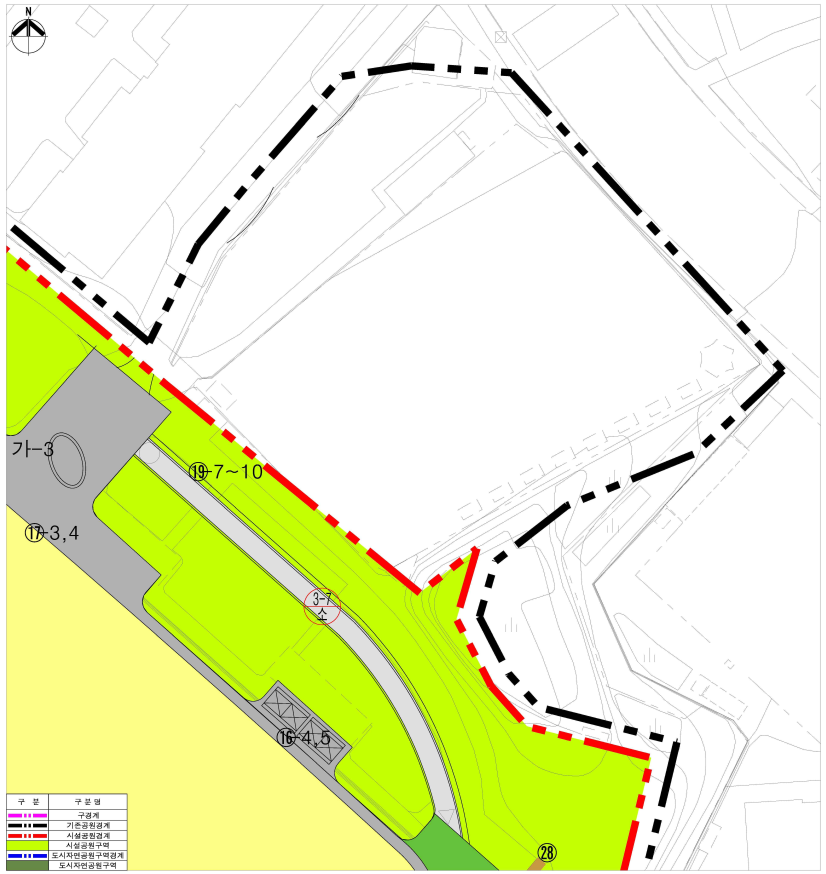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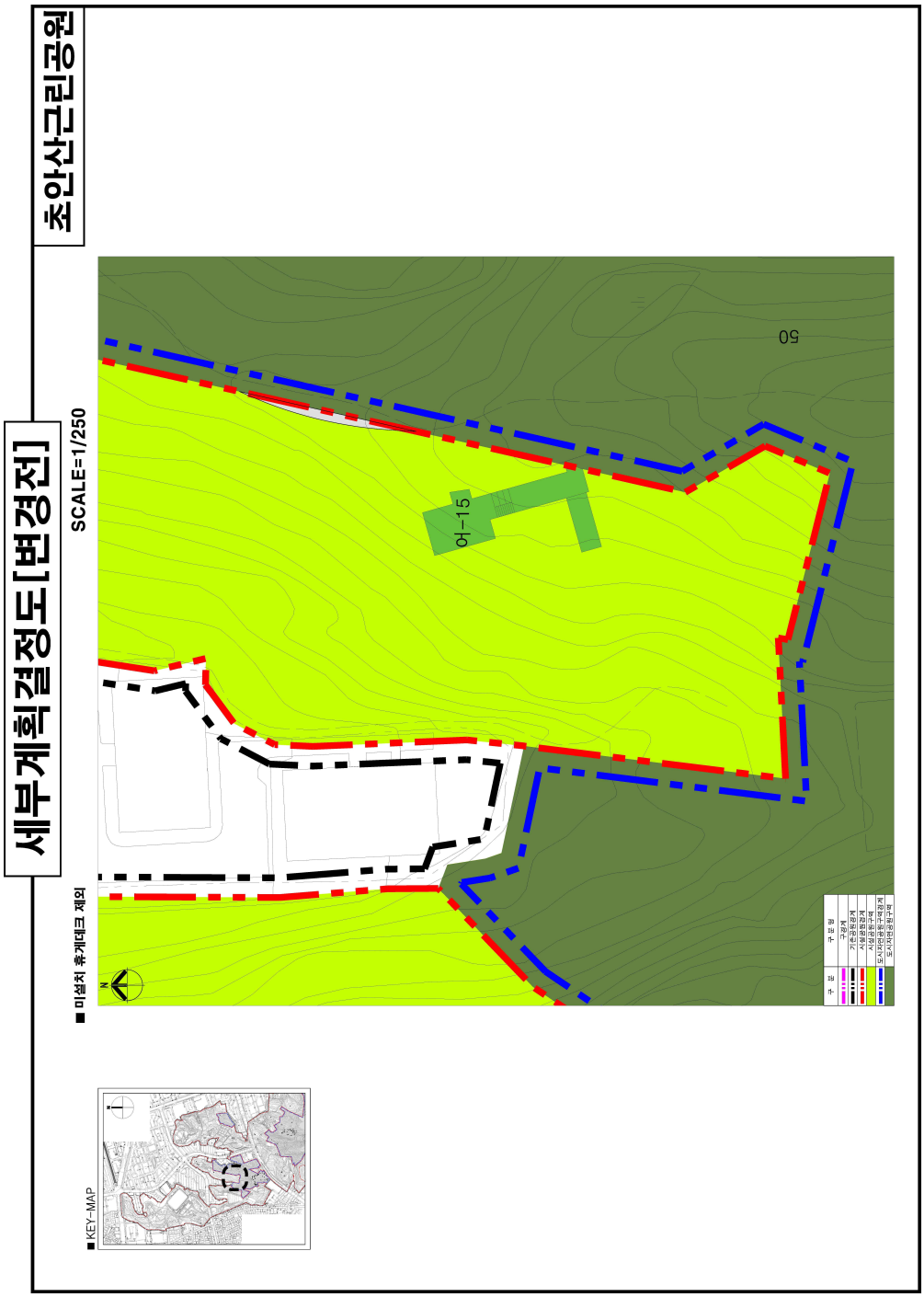
세부계획결정도[변경전]
초안산근린공원
SCALE=1/250
■ 미설치 휴게데크 제외
N
KEY-MAP
어-15
50
구 분
구분선
기존공원경계
시설녹지경계
시설용도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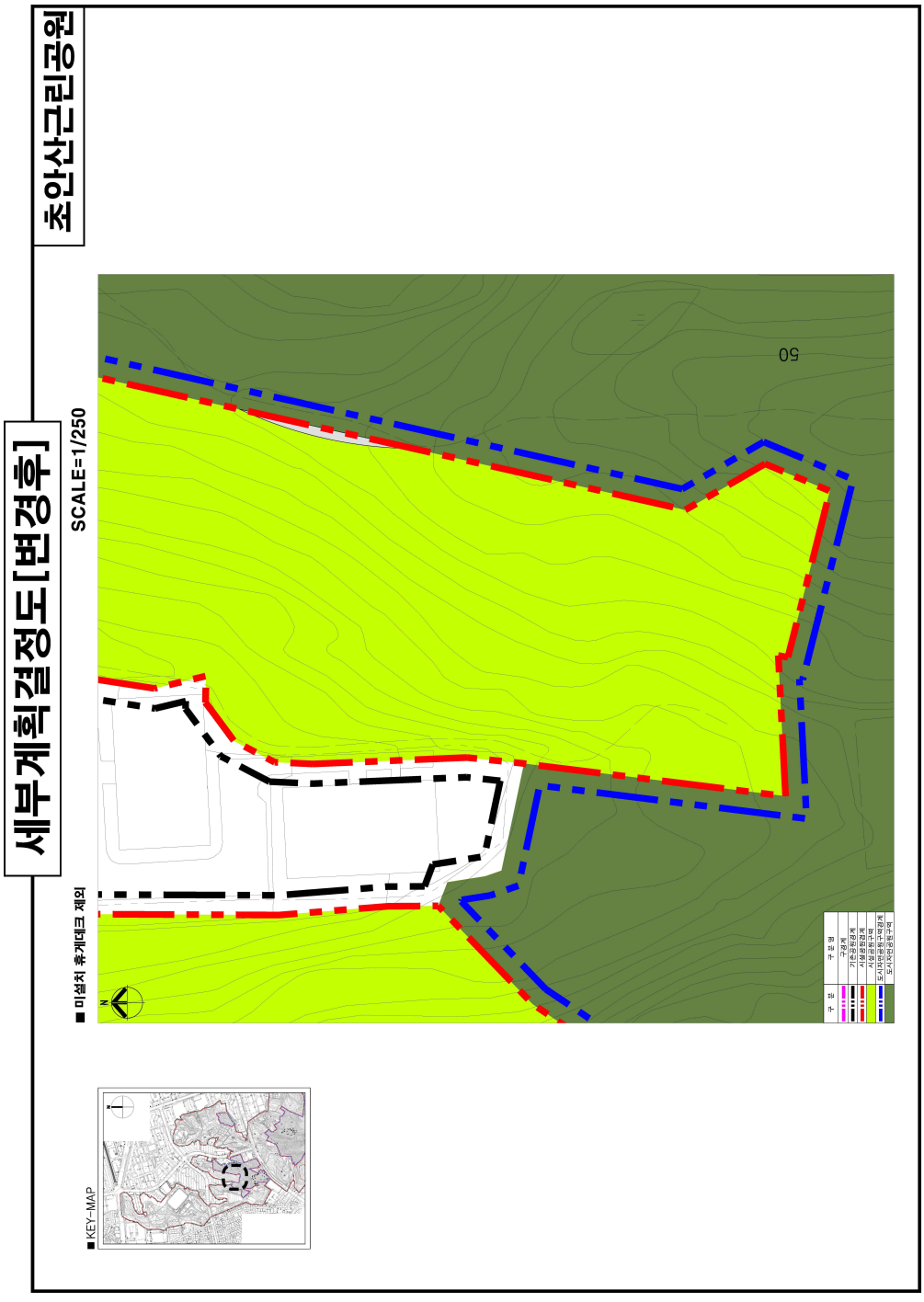
초안산근린공원
세부계획결정도[변경후]
SCALE=1/250
■ 미설치 휴게데크 제외
N
50
KEY-MAP
구 분
구 분 명
구분계
기존공원계
시설공원계
자연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계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세부계획결정도[변경전]

초안산근린공원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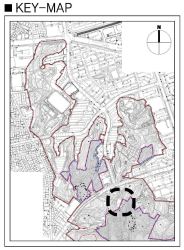

■ 족구장 반영

SCALE=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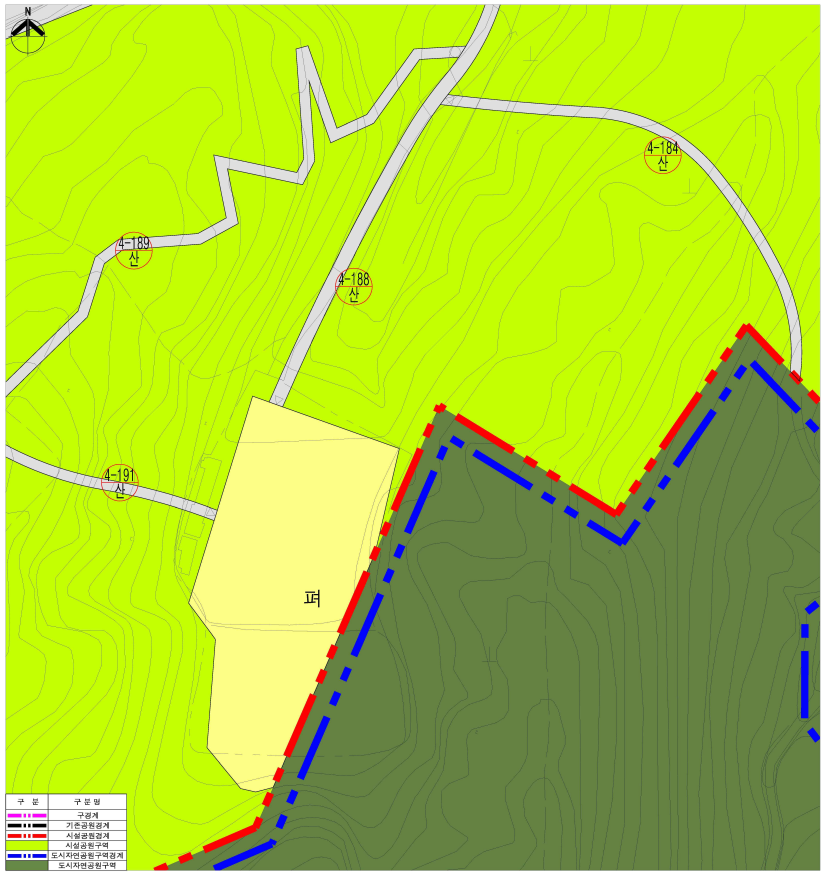

세부계획결정도[변경후]

초안산근린공원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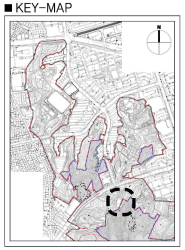

■ 족구장 반영

SCALE=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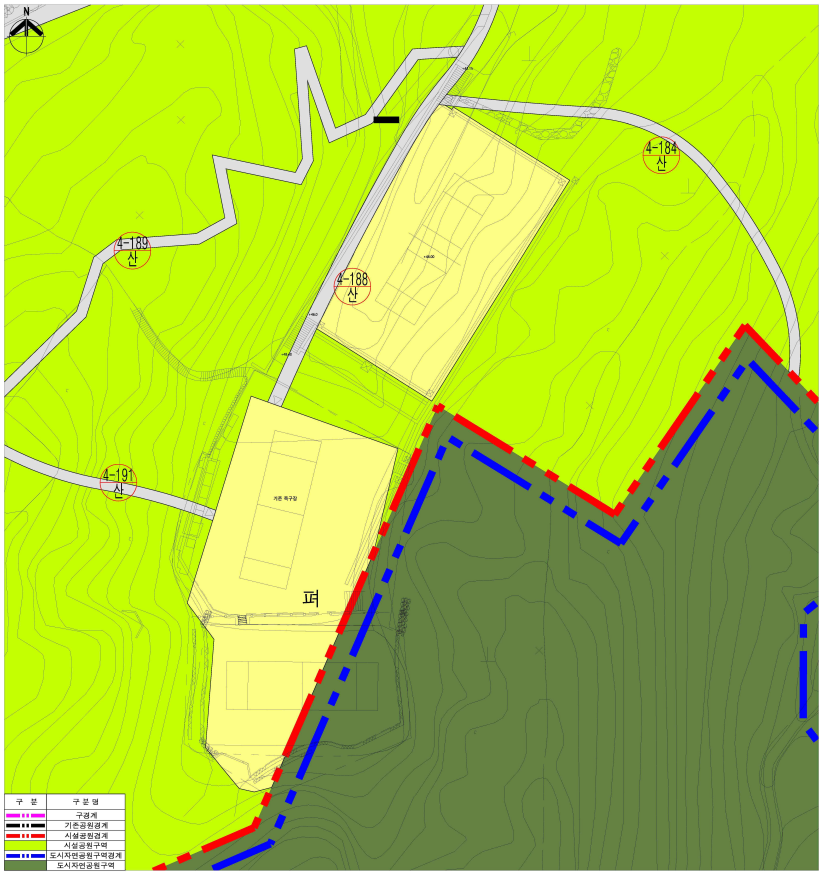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대) (도봉구 + 노원구)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897,270.8	149,722.1	29동	7,816.75	13,470.47	767	893,866.80	148,954.80	30동	8,088.34	13,736.08	767	감) 3,404.0
시설면적	기반시설	소 계	73,943.01	51,574.01					74,037.11	51,668.11					증) 94.1
		도 로	65,333.0	42,964.0 (22,369.0)					65,333.0	42,964.0 (22,369.0)					
		광 장	8,610.01	8,610.01					8,704.11	8,704.11					증) 94.1
	조경시설		21,448.3	18,553.09				56	21,228.30	18,333.09				56	감) 220.0
	휴양시설		13,640.52	13,640.52	6동	157.14	157.14	358	13,640.52	13,640.52	6동	157.14	157.14	358	
	유희시설		1,270.08	1,270.08				3	1,270.08	1,270.08				3	
	운동시설		43,200.45	42,264.45	5동	4,514.25	7,849.72	21	42,211.25	41,275.25	5동	4,514.25	7,849.72	21	감) 989.2
	교양시설		13,265.76	10,990.06	7동	2,274.85	4,528.90	1	13,634.76	11,359.06	8동	2,567.64	4,476.5	1	증) 369.0
	편익시설		10,066.19	9,796.19	5동	400.22	400.22	22	10,044.99	9,774.99	5동	379.02	379.02	22	감) 21.2
	관리시설		1,025.84	833.70	6동	470.29	534.49	306	1,025.84	833.70	6동	470.29	534.49	306	
녹지·기타	녹지		718,610.65						715,973.95						감) 2,636.7
	동물놀이터		800	800					800	800					
공원시설률(법정40%)			(149,722.1㎡/ 897,270.8㎡) x 100% = 16.68%						(148,954.8㎡/ 893,866.8㎡) x 100% = 16.66%						
공원건폐율(법정 20%)			(7,816.75㎡/ 897,270.8㎡) x 100% = 0.87%						(8,088.34㎡/ 893,866.8㎡) x 100% = 0.90%						

※총괄표(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계	897,270.8	149,722.1	29동	7,816.75	13,470.47	767	893,866.8	148,954.80	30동	8,088.34	13,736.08	767	
도봉구	408,034.5	88,027.43	12동	4,165.46	8,310.38	312	404,630.5	87,416.13	13동	4,437.05	8,575.99	312	
노원구	489,236.3	61,694.67	17동	3,651.29	5,160.09	455	489,236.3	60,738.67	17동	3,651.29	5,160.09	455	

나. 시설조서(총괄)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계				897,270.80	149,722.1		29동	7,816.75	13,470.47	767			893,866.80	148,204.80		30동	8,088.34	13,736.08	767	
기반시설	소 계			73,943.01	51,574.01								74,037.11	51,668.11						증)94.1
	도 로			65,333.0	42,964.0								65,333.0	42,964.0						
					(22,369)	( ) 도시계획도로								(22,369)	( ) 도시계획도로					
	진입광장	가	16개소	4,400.08	4,400.08						가	16개소	4,400.08	4,400.08						
		가-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5.25	175.25					(1)	가-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5.25	175.25					(1)	
		가-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22.0	122.0						가-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22.0	122.0						
		가-3	도봉구 창동 677공	859.4	859.4					(14)	가-3	도봉구 창동 677공	859.4	859.4					(14)	
		가-5	도봉구 창동 산194-2공	374.6	374.6					(1)	가-5	도봉구 창동 산194-2공	374.6	374.6					(1)	
		가-6	도봉구 창동 677공	174.0	174.0						가-6	도봉구 창동 677공	174.0	174.0						
		가-7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58.76	358.76						가-7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58.76	358.76						
		가-8	노원구 월계동 916-4전	486.67	486.67						가-8	노원구 월계동 916-4전	486.67	486.6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가-10	도봉구 창동 677공	628.7	628.7					(7)	가-10	도봉구 창동 677공	628.7	628.7					(7)	
		가-11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35.0	435.0						가-11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35.0	435.0						
		가-1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87.83	187.83						가-1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87.83	187.83						
기반시설	진입광장	가-1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06.69	206.69						가-1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06.69	206.69						
		가-14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9.61	49.61						가-14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9.61	49.61						
		가-15	도봉구 창동 산159-2과	31.32	31.32						가-15	도봉구 창동 산159-2과	31.32	31.32						
		가-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30.25	30.25						가-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30.25	30.25						
		가-18	도봉구 창동 산163-5임	122	122						가-18	도봉구 창동 산163-5임	122	122						
		가-19	도봉구 창동 357-1공	158	158						가-19	도봉구 창동 357-1공	158	158						
	휴게광장	나	14개소	3,572.96	3,572.96						나	13개소	3,667.06	3,667.06						증)94.1
		나-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30.25	130.25					(1)	나-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30.25	130.25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나-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67.25	67.25					(1)	나-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67.25	67.25					(1)	
		나-7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366.5	366.5					(2)	나-7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366.5	366.5					(2)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220.0	220.0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220.0	220.0						
		나-1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0.0	110.0						나-1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0.0	110.0						
		나-13	도봉구 창동 428공	979.0	979.0						나-13	도봉구 창동 428공	979.0	979.0						
		나-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8.0	188.0						나-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8.0	188.0						
		나-17	도봉구 창동 산157임	24.18	24.18						나-17	도봉구 창동 산157임	24.18	24.18						
		나-18	도봉구 창동 산157임	137.0	137.0						나-18	도봉구 창동 산157임	137.0	137.0						
기반시설	휴게광장	나-19	도봉구 창동 산157임	93.73	93.73						나-19	도봉구 창동 산157임	93.73	93.73						
		나-20	도봉구 창동 산183임	93.9	93.9						나-20	도봉구 창동 산183임	188.0	188.0						즉)94.1
		나-21	도봉구 창동 산183임	44.3	44.3						나-21	도봉구 창동 산183임	44.3	44.3						
		나-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812.32	812.32						나-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812.32	812.32						
		나-23	도봉구 창동 산156-1임	306.53	306.53						나-23	도봉구 창동 산156-1임	306.53	306.5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열린광장	녀	도봉구 창동 산177임	505.0	505.0						녀	도봉구 창동 산177임	505.0	505.0						
	작은광장	캬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31.97	131.97						캬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31.97	131.97						
조경시설	소 계			21,448.3	18,553.09					56			21,228.30	18,333.09					56	감)220.0
	잔디광장	다	노원구 월계동 916전	436.96	436.96						다	노원구 월계동 916전	436.96	436.96						
	연 못	러	도봉구 창동 677공	1,818.5	769.4					(1)	러	도봉구 창동 677공	1,818.5	769.4					(1)	
	피크닉장	머	도봉구 창동 677공	1,846.11	0						머	도봉구 창동 677공	1,846.11	0						
	지압보도	버	도봉구 창동 677공	278.57	278.57						버	도봉구 창동 677공	278.57	278.57						
	화 계	서	2개소	632.8	632.8						서	2개소	632.8	632.8						
		서-1	도봉구 창동 677공	448.00	448.00						서-1	도봉구 창동 677공	448.00	448.00						
		서-2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4.8	184.8						서-2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4.8	184.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야생초화원	까	4개소	2,945.8	2,945.8						까	4개소	2,945.8	2,945.8						
		까-1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584.88	584.88					(1)	까-1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584.88	584.88					(1)	
		까-5	노원구 월계동 912-9구	640.92	640.92						까-5	노원구 월계동 912-9구	640.92	640.92						
		까-6	도봉구 창동 산165공	259	259						까-6	도봉구 창동 산165공	259	259						
		까-7	도봉구 창동 산144임	1,461	1,461						까-7	도봉구 창동 산144임	1,461	1,461						
	억새원	꺄	노원구 월계동 산24-1임	470.16	470.16						꺄	노원구 월계동 산24-1임	470.16	470.16						
	생태육교	⑪	도봉구 창동 산136도							1	⑪	도봉구 창동 산136도							1	
	생태계류	라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320.60	320.60						라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320.60	320.60						
	생태습지	바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285.29	285.29					(1)	바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285.29	285.29					(1)	
	생태연못	커	2개소	128.93	128.93						커	2개소	128.93	128.93						
		커-1	도봉구 창동 산157임	100.53	100.53						커-1	도봉구 창동 산157임	100.53	100.5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커-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8.4	28.4						커-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8.4	28.4						
	상지	쿄	도봉구 창동 산183임	128.1	128.1						쿄	도봉구 창동 산183임	128.1	128.1						
	하지	쿠	도봉구 창동 440임	56.3	56.3						쿠	도봉구 창동 440임	56.3	56.3						
	연결수로	큐	도봉구 창동 산183임	53.2	53.2						큐	도봉구 창동 산183임	53.2	53.2						
조경시설	계류	터	2개소	598.61	598.61						터	2개소	598.61	598.61						
		터-1	도봉구 창동 산157임	519.71	519.71					(2)	터-1	도봉구 창동 산157임	519.71	519.71					(2)	
		터-3	도봉구 창동 440임	78.9	78.9						터-3	도봉구 창동 440임	78.9	78.9						
	파고라									34									34	
	파고라A	①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72)	(72)	탄소강				1	①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72)	(72)	탄소강				1	
	파고라B	②	9개소			목재				9	②	9개소			목재				9	
		②-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20.25)	(20.25)					1	②-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20.25)	(20.25)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주정시설	파고라B	②-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에쎈초원(가-1) 내)	(20.25)	(20.25)					1	②-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에쎈초원(가-1) 내)	(20.25)	(20.25)					1	
		②-4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4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5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5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9) 내)	(20.25)	(20.25)					1	②-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9) 내)	(20.25)	(20.25)					1	
		②-7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휴게광장(나-4) 내)	(20.25)	(20.25)					1	②-7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휴게광장(나-4) 내)	(20.25)	(20.25)					1	
		②-8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전입광장(가-1) 내)	(20.25)	(20.25)					1	②-8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전입광장(가-1) 내)	(20.25)	(20.25)					1	
		②-9	도봉구 창동 산137-1임 (휴게소(가-6) 내)	(20.25)	(20.25)					1	②-9	도봉구 창동 산137-1임 (휴게소(가-6) 내)	(20.25)	(20.25)					1	
		②-10	도봉구 창동 428공 (휴게소(가-8) 내)	(25)	(25)					1	②-10	도봉구 창동 428공 (휴게소(가-8) 내)	(25)	(25)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파고라C		㉰	8개소							8	㉰	8개소							8	
		㉰-28	도봉구 창동 산194-2공 (잔일괄창가-5 내)	(25)	(25)					1	㉰-28	도봉구 창동 산194-2공 (잔일괄창가-5 내)	(25)	(25)					1	
		㉰-29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29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0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0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1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1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2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2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3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3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4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4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파고라 C	⑫-35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⑫-35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⑯	9개소							9	⑯	9개소							9	
	파고라 E	⑯-1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1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2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2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3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3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4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4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5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5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6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6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7	도봉구 창동 677공 (푸실경기장(아) 내)	(21)	(21)					1	⑯-7	도봉구 창동 677공 (푸실경기장(아) 내)	(21)	(21)					1	
		⑯-8	도봉구 창동 677공 (푸실경기장(아) 내)	(21)	(21)					1	⑯-8	도봉구 창동 677공 (푸실경기장(아) 내)	(21)	(21)					1	
		⑯-9	도봉구 창동 677공 (연못(라) 내)	(21)	(21)					1	⑯-9	도봉구 창동 677공 (연못(라) 내)	(21)	(21)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정시설	파고라F	⑰	4개소							4	⑰	4개소							4	
		⑰-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2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2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3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3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4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4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마구조파고라	⑱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08)	(108)					1	⑱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08)	(108)					1	
	조형파고라	㉔	도봉구 창동 산156-4임 (휴게소가-23) 내)	(152)	(152)					1	㉔	도봉구 창동 산156-4임 (휴게소가-23) 내)	(152)	(152)					1	
	수목보호홀 덮개	⑲	10개소							10	⑲	10개소							10	
		⑲-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2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2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10) 내)	(1)	(1)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면적 / 연면적		
조경시설	수목보호홀 덮개	⑲-3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3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4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4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5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5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6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6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7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7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8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8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9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9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10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10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초정	㉚	2개소	29.02	29.02					2	㉚	2개소	29.02	29.02					2	
		㉚-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㉚-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㉚-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㉚-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관찰데크 A	어-7	도봉구 창동 산157임	39.18	39.18						어-7	도봉구 창동 산157임	39.18	39.18						
	관찰데크 B	어-8	도봉구 창동 산157임	57.74	57.74						어-8	도봉구 창동 산157임	57.74	57.74						
	전망데크 A	어-9	도봉구 창동 산157임	70.0	70.0						어-9	도봉구 창동 산157임	70.0	70.0						
	전망데크 B	어-10	도봉구 창동 산157임	19.32	19.32						어-10	도봉구 창동 산157임	19.32	19.32						
조경시설	목교	㉛	3개소							3	㉛	3개소							3	
		㉛-1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4.4)	(4.4)					1	㉛-1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4.4)	(4.4)					1	
		㉛-2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5.4)	(5.4)					1	㉛-2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5.4)	(5.4)					1	
		㉛-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생태습지(바) 내)	(6)	(6)					1	㉛-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생태습지(바) 내)	(6)	(6)					1	
	휴게데크A	어-14	도봉구 창동 산183임	148.5	148.5						어-14	도봉구 창동 산183임	98.5	98.5						감)5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게데크B	어-15	도봉구 창동 산137-62	170.0	170.0						어-15	도봉구 창동 산137-62	0 (현황반영)	0 (현황반영)					감170.0
	몰래방아	㉲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옹벽A	㉳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옹벽B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C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D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E	㉷	도봉구 창동 산157임							1	㉷	도봉구 창동 산157임							1
	야생화정원	우-1	도봉구 창동 67-1전	914.61	914.61						우-1	도봉구 창동 67-1전	914.61	914.61					
	플랜터	㉸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화단	하	도봉구 창동 산192-7	10,000	10,000						하	도봉구 창동 산192-7	10,000	10,0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계			13,640.52	13,640.52		6동	157.14	157.14	358			13,640.52	13,640.52		6동	157.14	157.14	358	
	휴게소	가	19개소	4,784.26	4,784.26		3동	108.00	108.00		가	19개소	4,784.26	4,784.26		3동	108.00	108.00		
		가-1	도봉구 창동 677공	1,045.00	1,045.00					(7)	가-1	도봉구 창동 677공	1,045.00	1,045.00					(7)	
		가-6	도봉구 창동 산135-1도	83.0	83.0					(1)	가-6	도봉구 창동 산135-1도	83.0	83.0					(1)	
		가-8	도봉구 창동 428-1공	54.0	54.0					(1)	가-8	도봉구 창동 428-1공	54.0	54.0					(1)	
		가-9	도봉구 창동 산194-2공	66.5	66.5						가-9	도봉구 창동 산194-2공	66.5	66.5						
		가-13	도봉구 창동 산157임	372.16	372.16						가-13	도봉구 창동 산157임	372.16	372.16						
		가-16	도봉구 창동 산183임	14.6	14.6						가-16	도봉구 창동 산183임	14.6	14.6						
		가-17	도봉구 창동 산183임	6.0	6.0						가-17	도봉구 창동 산183임	6.0	6.0						
		가-18	도봉구 창동 산183임	21.0	21.0						가-18	도봉구 창동 산183임	21.0	21.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휴게소	가-19	도봉구 창동 산183임	11.0	11.0						가-19	도봉구 창동 산183임	11.0	11.0						
		가-21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148.0	148.0						가-21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148.0	148.0						
		가-23	도봉구 창동 산156-3임	1,185.0	1,185.0					(1)	가-23	도봉구 창동 산156-3임	1,185.0	1,185.0					(1)	
		가-24	도봉구 창동 산163-5임	284.0	284.0						가-24	도봉구 창동 산163-5임	284.0	284.0						
		가-25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14.0	214.0						가-25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14.0	214.0						
		가-2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6.0	16.0						가-2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6.0	16.0						
		가-27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3.0	13.0						가-27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3.0	13.0						
		가-30	노원구 월계동 산6임	196.0	196.0	목조	1동	36.00	36.00		가-30	노원구 월계동 산6임	196.0	196.0	목조	1동	36.00	36.00		
		가-31	노원구 월계동 산8-2임	385.0	385.0	목조	1동	36.00	36.00		가-31	노원구 월계동 산8-2임	385.0	385.0	목조	1동	36.00	36.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가-33	노원구 월계동 산66-3임	173.0	173.0	목조	1동	36.00	36.00		가-33	노원구 월계동 산66-3임	173.0	173.0	목조	1동	36.00	36.00		
		가-35	도봉구 창동 산126-1임	497.0	497.0						가-35	도봉구 창동 산126-1임	497.0	497.0						
옥외시설	야외탁자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64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64	
	장의자		전지역			목재				145		전지역			목재				145	
	등의자		③ 전지역			목재				76		③ 전지역			목재				76	
	사각의자		⑥ 전지역			목재				14		⑥ 전지역			목재				14	
	앉음벽		⑱ 전지역							27		⑱ 전지역							27	
	평의자		㉙ 전지역			목재				29		㉙ 전지역			목재				29	
옥외시설	연석의자A		㉑-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㉑-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연석의자B		㉑-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㉑-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설	연식의자C	㉜-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㉜-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야영장	여	4개소	8,655.40	8,655.40						여	4개소	8,655.40	8,655.40						
	야영장1	여-1	노원구 월계동 749전	4,484.52	4,484.52						여-1	노원구 월계동 749전	4,484.52	4,484.52						
	야영장2	여-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167.86	1,167.86						여-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167.86	1,167.86						
	야영장3	여-3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710.56	2,710.56						여-3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710.56	2,710.56						
		여-4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92.46	292.46						여-4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92.46	292.46						
	부속동	16	3개소	200.86	200.86		3동	49.14	49.14		16	3개소	200.86	200.86		3동	49.14	49.14		
	부속4동	16-1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83.60	83.60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16-1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83.60	83.60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부속5동	16-2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71.74	71.74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16-2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71.74	71.74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부속6동	16-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45.52	45.52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16-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45.52	45.52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유희시설	소계			1,270.08	1,270.08					3			1,270.08	1,270.08					3	
	조합놀이대	⑭-1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⑭-1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트리하우스	⑭-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⑭-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사면슬라이드	⑭-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⑭-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생태놀이터	냐	2개소	492.08	492.08						냐	2개소	492.08	492.0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태놀이터1	나-1	노원구 월계동 산17-8임	292.44	292.44						냐-1	노원구 월계동 산17-8임	292.44	292.44						
유희시설	생태놀이터2	나-2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199.64	199.64						냐-2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199.64	199.64						
	놀이터	댜	도봉구 창동 산177-1임	778.0	778.0						댜	도봉구 창동 산177-1임	778.0	778.0						
운동시설	소계			43,200.45	42,264.45		5동	4,514.25	7,849.72	21			42,211.25	41,275.25		5동	4,514.25	7,849.72	21	감)989.2
	풋살경기장	아	도봉구 창동 677공	1,192	1,192					(2)	아	도봉구 창동 677공	1,192	1,192					(2)	
	테니스장	자	2개소	4,221.45	4,221.45		1동	72	72		자	1개소	2,497.25	2,497.25		1동	72	72		
		자-3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2,497.25	2,497.25					(2)	자-3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2,497.25	2,497.25					(2)	
		자-4	도봉구 창동 산48-3임	1,724.2	1,724.2						자-4	도봉구 창동 산48-3임	0 (공원구역 해제)	0 (공원구역 해제)						감)1,724.2
	농구장	랴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703	703						랴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703	703						
	축구장	거	2개소	17,523	16,781					21	거	2개소	17,523	16,781					21	
		거-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7,020	6,278						거-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7,020	6,278						
		거-2	도봉구 창동 677공	10,503	10,503					21	거-2	도봉구 창동 677공	10,503	10,503					2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6	2개소	13,870	13,676		2동	1,898.14	4,978.11		6	2개소	13,870	13,676		2동	1,898.14	4,978.11		
		6-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5,920	5,726	R.C	1동	732.50	2,303.67		6-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5,920	5,726	R.C	1동	732.50	2,303.67		
		6-3	노원구 월계동 산65-4임	7,950	7,950	R.C	1동	1,165.64	2,674.44		6-3	노원구 월계동 산65-4임	7,950	7,950	R.C	1동	1,165.64	2,674.44		
	배드민턴장	타	노원구 월계동 산69임	348.0	348.0						타	노원구 월계동 산69임	348.0	348.0						
	체력단련장	파	4개소	1,617	1,617						파	4개소	1,617	1,617						
		파-9	도봉구 창동 677공	899	899						파-9	도봉구 창동 677공	899	899						
		파-10	도봉구 창동 산51-1임	139	139						파-10	도봉구 창동 산51-1임	139	139						
		파-14	도봉구 창동 677공	310	310						파-14	도봉구 창동 677공	310	310						
		파-16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215	215						파-16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215	215						
		파-17	노원구 월계동 912-9구	54	54						파-17	노원구 월계동 912-9구	54	5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족구장	펴	노원구 월계동 산183임	956.0	956.0						펴	도봉구 창동 산183임(현황반영)	1,691.0 (현황반영)	1,691.0 (현황반영)						증)735.0
	실내배드민턴장	허	2개소	2,770.0	2,770.0		2동	2,544.11	2,799.61		허	2개소	2,770.0	2,770.0		2동	2,544.11	2,799.61		
		허-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48.0	1,748.0		1동	1,522.11	1,522.11		허-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48.0	1,748.0		1동	1,522.11	1,522.11		
		허-2	도봉구 창동 산131공	1,022.0	1,022.0		1동	1,022.00	1,277.5		허-2	도봉구 창동 산131공	1,022.0	1,022.0		1동	1,022.00	1,277.5		
교양시설	소계			13,265.76	10,990.06		7동	2,274.85	4,189.69	1			13,634.76	11,359.06		8동	2,567.64	4,476.5	1	증)369.0
	도서관	7	2개소	4,977.5	3,357.5		1동	1,134.58	3,111.46	1	7	2개소	4,977.5	3,357.5		1동	1,134.58	3,111.46	1	
		7-1	도봉구 창동 418대	4,950.0	3,330.0		1동	1,134.58	3,111.46		7-1	도봉구 창동 418대	4,950.0	3,330.0		1동	1,134.58	3,111.46		
		7-2	도봉구 창동 428-1공	27.50	27.50					1	7-2	도봉구 창동 428-1공	27.50	27.50					1	
	책쉼터										차	도봉구 창동 산183임	369.0	369.0		1동	292.79	286.81		증)369.0
	도자기체험장	8	노원구 월계동 산17-7임	278.54	278.54		1동	278.54	278.54		8	노원구 월계동 산17-7임	278.54	278.54		1동	278.54	278.54		
	야외교실	저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52.5	252.5						저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52.5	252.5						
	야외무대	처	도봉구 창동 산194-2공	463.5	463.5						처	도봉구 창동 산194-2공	463.5	463.5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참여형 텃밭	퍼	3개소	3,737.38	3,737.38						퍼	3개소	3,737.38	3,737.38						
		퍼-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339.24	339.24						퍼-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339.24	339.24						
		퍼-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2,756.85	2,756.85						퍼-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2,756.85	2,756.85						
		퍼-3	도봉구 창동 산154-1임	641.29	641.29						퍼-3	도봉구 창동 산154-1임	641.29	641.29						
교양시설	생태학습원	표	3개소	1,801.6	1,801.6						표	3개소	1,801.6	1,801.6						
		표-1	도봉구 창동 432전	1,137.6	1,137.6						표-1	도봉구 창동 432전	1,137.6	1,137.6						
		표-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08.0	408.0						표-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08.0	408.0						
		표-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56.0	256.0						표-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56.0	256.0						
	목재문화체험장	17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7.11	217.11		1동	217.11	253.11		17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7.11	217.11		1동	217.11	253.11		
	가족센터 및 옹실	18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92.28	392.28		1동	392.28	435.45		18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92.28	392.28		1동	392.28	435.45		
	예술공방	19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11.13	111.13		1동	111.13	111.13		19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11.13	111.13		1동	111.13	111.1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원	야	3개소	124.52	124.52						야	3개소	124.52	124.52						
		야-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6.57	46.57						야-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6.57	46.57						
		야-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60.45	60.45						야-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60.45	60.45						
		야-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7.50	17.50						야-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7.50	17.50						
	어린이집	2	도봉구 창동 산194-2임	781.70	126.00	조적조	1동	126	324		2	도봉구 창동 산194-2임	781.70	126.00	조적조	1동	126	324		
	승극철부부묘	24	노원구 월계동 산68-2임	128	128	목조	1동	15.21	15.21		24	노원구 월계동 산68-2임	128	128	목조	1동	15.21	15.21		
편의시설	소계			10,066.19	9,796.19		5동	400.22	400.22	22			10,044.99	9,774.99		5동	379.02	379.02	22	감)21.2
	주차장	하	7개소	9,375.71	9,105.71						하	7개소	9,375.71	9,105.71						
		하-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1,313	1,119						하-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1,313	1,119						
		하-4	노원구 월계동 산65-1임	3,006.0	3,006.0						하-4	노원구 월계동 산65-1임	3,006.0	3,006.0						
		하-8	도봉구 창동 677공	2,536.8	2,460.8						하-8	도봉구 창동 677공	2,536.8	2,460.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9	노원구 월계동 749-2전	546.88	546.88						하-9	노원구 월계동 749-2전	546.88	546.88						
		하-10	노원구 월계동 912-9구	296.79	296.79						하-10	노원구 월계동 912-9구	296.79	296.79						
		하-1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9.29	219.29						하-1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9.29	219.29						
		하-12	노원구 월계동 산4-9임	1,456.95	1,456.95						하-12	노원구 월계동 산4-9임	1,456.95	1,456.95						
	장애인주차장	노-2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4.76	34.76						노-2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4.76	34.76						
편의시설	화장실	9	4개소	282.2	282.2		3동	210.2	210.2		9	3개소	261.0	261.0		3동	189.0	189.0		감)21.2
	화장실										9-3	도봉구 창동 677공	30.0 (현황반영)	30.0 (현황반영)		1동	30.0 (현황반영)	30.0 (현황반영)		증)30.0
		9-4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5.5	115.5		1동	79.5	79.5		9-4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5.5	115.5		1동	79.5	79.5		
		9-5	도봉구 창동 산173공	115.5	115.5		1동	79.5	79.5		9-5	도봉구 창동 산173공	115.5	115.5		1동	79.5	79.5		
		9-6	도봉구 창동 산183임	51.2	51.2		1동	51.2	51.2		9-6	도봉구 창동 산183임	0.0	0.0			0.0	0.0		감)51.2
	스탠드	⑮	도봉구 창동 677공							1	⑮	도봉구 창동 677공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편익시설	음수전 A	⑦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스테인레스				1	⑦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스테인레스				1	
	세족대	㉑	도봉구 창동 677공							1	㉑	도봉구 창동 677공							1	
	석교	㉖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4.8	4.8					1	㉖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4.8	4.8					1	
	계단 1	㉗	도봉구 창동 산157임	7.4	7.4					1	㉗	도봉구 창동 산157임	7.4	7.4					1	
	계단 2	⑩	도봉구 창동 산157임 (화계(서-2) 내)	13.86	13.86					1	⑩	도봉구 창동 산157임 (화계(서-2) 내)	13.86	13.86					1	
	계단 6	⑳	도봉구 창동 677공 (연못(러) 내)	1.4	1.4					1	⑳	도봉구 창동 677공 (연못(러) 내)	1.4	1.4					1	
	계단 7	㉘	도봉구 창동 677공	2.2	2.2					1	㉘	도봉구 창동 677공	2.2	2.2					1	
	계단 8	㉕	도봉구 창동 산159-5과	33	33					1	㉕	도봉구 창동 산159-5과	33	33					1	
	화장실 및 세면장	타	2개소	310.86	310.86		2동	190.02	190.02		타	2개소	310.86	310.86		2동	190.02	190.02		
		타-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78.62	178.62	조적조	1동	95.01	95.01	(2)	타-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78.62	178.62	조적조	1동	95.01	95.01	(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타-2	노원구 월계동 750대	132.24	132.24	조적조	1동	95.01	95.01		타-2	노원구 월계동 750대	132.24	132.24	조적조	1동	95.01	95.01		
	야외스파	㉓-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화장실및샤워장1개내	(8)	(8)	반고정용				2	㉓-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화장실및샤워장1개내	(8)	(8)	반고정용				2	
	야외테이블A	㉓-2	노원구 월계동 749-7전			반고정용				1	㉓-2	노원구 월계동 749-7전			반고정용				1	
	야외테이블B	㉓-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반고정용				10	㉓-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반고정용				10	
관리시설	소계			1,025.84	833.70		6동	470.29	534.49	306			1,025.84	833.70		6동	470.29	534.49	306	
	관리사무소	10	3개소	581.4	389.26		3동	310.02	374.22		10	3개소	581.4	389.26		3동	310.02	374.22		
		10-2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120.36	120.36	조적	1동	120.36	120.36		10-2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120.36	120.36	조적	1동	120.36	120.36		
		10-3	도봉구 창동 677공	440.00	247.86	R.C	1동	183.66	247.86		10-3	도봉구 창동 677공	440.00	247.86	R.C	1동	183.66	247.86		
	관리사무소	10-5	노원구 월계동 749-7전	21.04	21.04	목구조	1동	6	6		10-5	노원구 월계동 749-7전	21.04	21.04	목구조	1동	6	6		
	방문자센터	20	노원구 월계동 749-7전	302.03	302.03	목구조	1동	75.85	75.85		20	노원구 월계동 749-7전	302.03	302.03	목구조	1동	75.85	75.85		
	용품점	21	노원구 월계동 749-7전	80.68	80.68	조적조	1동	48.42	48.42		21	노원구 월계동 749-7전	80.68	80.68	조적조	1동	48.42	48.42		
관	창고	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6.00	36.00	목구조	1동	36.00	36.00		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6.00	36.00	목구조	1동	36.00	36.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리시설	안내판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23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23	
	방향안내판		전지역			목재				4		전지역			목재				4	
	종합안내판	⑧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6	⑧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6	
		⑧-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목재				2	⑧-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목재				2	
			도봉구 창동 산183임			목재				1		도봉구 창동 산183임			목재				1	
		⑧-1	노원구 월계동 749-2전			목재				1	⑧-1	노원구 월계동 749-2전			목재				1	
	종합안내판	⑧-2	노원구 월계동 692임			목재				1	⑧-2	노원구 월계동 692임			목재				1	
		⑧-3	노원구 월계동 675전			목재				1	⑧-3	노원구 월계동 675전			목재				1	
	휴지통	⑨	전지역			목재				26	⑨	전지역			목재				26	
		⑨-2	전지역			목재				24	⑨-2	전지역			목재				24	
		⑨-1	노원구 월계동 748-7답			목재				2	⑨-1	노원구 월계동 748-7답			목재				2	
	분리수거장	23	노원구 월계동 748-7답	25.73	25.73	목재					23	노원구 월계동 748-7답	25.73	25.73	목재					
	조명등		전지역							218		전지역							218	
										(184)									(184)	
										(34)									(3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CCTV		전지역							22		전지역							22	
										(22)									(22)	
	휀스	㉒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철재,목재				1	㉒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철재,목재				1	
	게이트	㊶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목재				4	㊶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목재				4	
	주차 차단기	㊵	노원구 월계동 749-2전			-				2	㊵	노원구 월계동 749-2전			-				2	
녹지 및 기타	소계			719,410.65									716,773.95							감)2,636.7
	녹지			718,610.65									715,973.95							감)2,636.7
	동물놀이터	퍄	도봉구 창동 677공	800	800						퍄	도봉구 창동 677공	800	800						

다. 도로조서(총괄)

- 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계				1,314	22,369				
	대로	계			1,088	18,776				
	대로	3	38	15	458	6,877	도시계획도로	청동 산192-1 임	창동 산184-3 임	
	대로	2	74	20	116	2,327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379-1	도봉구 창동 379-1	
	대로	3	61	20	309	6,180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9-3	노원구 월계동 산65-21	
	대로	3	1	11~20	205	3,392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7-2	노원구 월계동 산64-4	
	중로	계			226	3,593				
	중로	1	78	15	159	2,384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418-4	대로 3-38 (분기점)	
	중로	1	79	18	67	1,209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산107-223	도봉구 창동 산107-223	

- 공원시설 계획도로(총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계				16,965	42,964				
	소로	계			4,746	17,794				
	소로	3	4	10	334	3,343	진입로	도봉구 창동 452-3	도봉구 창동 산206-6	
	소로	3	7	3	70	211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3)	지압보도(버)	
	소로	3	8	3~8	70	369	연결로	지압보도 (버)	진입광장 (가-10)	
	소로	3	9	7	119	719	부진입로	중로 1-79 (분기점)	골프연습장 6-2	소형주차 20대포함
	소로	3	10	6.5	220	1,427	연결로	대로 3-61	소로 3-11 (기점)	
	소로	3	11	6.5	230	1,493	연결로	소로 3-10 (종점)	산책로 4-69 (분기점)	
	소로	3	12	6	242	1,452	연결로	대 3-61	창동177-1	
	소로	3	14	9.5	88	837	연결로	소로 3-10 (분기점)	주차장 (하-4)	
	소로	3	15	2	123	246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29-3	도봉구 창동 산126-1	
	소로	3	16	3	14	52	연결로	대로 3-1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4-5	
	소로	3	17	2.5	120	301	연결로	산책로 4-222 (기점)	휴게광장 (나-10)	
	소로	3	18	4	131	524	연결로	소로 3-9 (분기점)	소로 3-15 (분기점)	소형주차 3대포함
	소로	3	19	2	159	317	연결로	연못 (러)	진입광장 (가-3)	
	소로	3	20	2	21	41	연결로	풋살경기장 (아)	소로 3-19 (분기점)	
	소로	3	21	2.5	14	35	연결로	소로 3-22 (기점)	연못 (러)	
	소로	3	22	3	41	124	연결로	소로 3-21 (기점)	소로 3-23 (분기점)	
	소로	3	23	3	126	378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6)	진입광장 (가-10)	
	소로	3	24	1.5	20	30	연결로	소로 3-23 (분기점)	연못 (러)	
	소로	3	25	2	26	53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677	관리사무소 (10-3)	
	소로	3	26	2	24	47	부진입로	주차장 (하-8)	소로 3-23 (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3	27	6.5	120	284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62	산책로 4-116 (기점)	
	소로	3	28	5	103	516	연결로	진입광장 (가-11)	휴게소 (갸-25)	
	소로	3	29	2	28	56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57-1	휴게광장 (나-18)	
	소로	3	30	2	56	111	연결로	휴게광장 (나-18)	전망데크B (어-10)	
	소로	3	31	2	73	146	연결로	휴게광장 (나-18)	전망데크A (어-9)	
	소로	3	32	1.5	55	82	연결로	소로 3-33 (분기점)	휴게광장 (나-19)	
	소로	3	33	1.5	69	104	연결로	도봉구 창동 산157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	34	2	41	82	연결로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33 (분기점)	
	소로	3	36	4	69	277	연결로	도봉구 창동 산157	휴게광장 (나-16)	
	소로	3	37	3.5	19	68	연결로	휴게광장 (나-16)	휴게광장 (나-18)	
	소로	3	38	2	54	108	연결로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51 (기점)	
	소로	3	39	2	13	25	연결로	목교 (㉛-1)	휴게광장 (나-17)	
	소로	3	40	2	49	97	연결로	휴게광장 (나-17)	휴게광장 (나-18)	
	소로	3	41	1.5	106	159	연결로	소로 3-51 (종점)	전망데크A (어-9)	
	소로	3	42	1.5	31	46	연결로	소로 3-31 (분기점)	목교 (㉛-2)	
	소로	3	43	2.5	84	211	연결로	참여형텃밭 (퍼-3)	참여형텃밭 (퍼-1)	
	소로	3	44	2	106	212	연결로	소로 3-49 (분기점)	소로 3-43 (분기점)	
	소로	3	45	1.5	26	38	연결로	소로 3-48	소로 3-49	
	소로	3	46	2	19	38	연결로	소로 3-48	소로 3-49	
	소로	3	47	2	12	24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 3-49	
	소로	3	48	2	104	207	연결로	소로 3-49	참여형텃밭 (퍼-3)	
	소로	3	49	2	134	268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 3-43	
	소로	3	50	1.5	40	60	연결로	소로 3-36 (종점)	소로 3-32 (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3	51	2	9	19	연결로	소로3-38	목교(㉮-1)	
	소로	3	52	2	38	76	연결로	휴게광장(나-23)	휴게소(가-23)	
	소로	3	196	4	136	595	연결로	진입광(가-7)	작은광장(카)	
	소로	3	197	3	125	375	연결로	진입광장(가-7)	소로 3-196(분기점)	
	소로	3	198	4	118	529	연결로	주차장(하-9/노-2)	작은광장(카)	
	소로	3	199	4	68	343	연결로	작은광장(카)	소로 3-200(기점)	
	소로	3	200	3.5	42	147	연결로	소로 3-199(종점)	부속 6동(16-3)	
	소로	3	201	1.5	151	226	연결로	산책로 4-109(분기점)	소로 3-200(기점)	
	소로	3	202	2	109	218	산책로	소로 3-200(종점)	노원구 월계동 산5-2	
	소로	3	205	5	144	688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59-6과	휴게광장(나-23)	
	소로	3	206	1.5	20	30	진입로	주차장(하-11)	소로 3-205(기점)	
	소로	3	207	3.5	1	5	연결로	진입광장(가-12)	진입광장(가-13)	
	소로	3	208	2	5	9	진입로	대로 3-1(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7	
	소로	3	209	2	218	435	진입로	노원구 월계동 779	산책로 4-51(분기점)	
	소로	3	210	1.2	45	54	진입로	노원구 월계동 914-1	산책로 4-221(분기점)	
	소로	3	211	1.5	62	93	진입로	도봉구 창동 164	산책로 4-209(분기점)	
	소로	3	212	2	87	173	진입로	도봉구 창동 379-1	진입광장(가-13)	
	소로	3	213	2	7	13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63-5	산책로 4-210(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계			12,219	25,170				
	산책로	4	1	1.2	350	420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분기점)	
	산책로	4	2	1.2	78	94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	3	1.2	121	145	산책로	산책로 4-2 (분기점)	산책로 4-4 (분기점)	
	산책로	4	4	1.2	44	53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분기점)	
	산책로	4	6	1.2	56	67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분기점)	
	산책로	4	7	1.2	49	59	산책로	산책로 4-3 (분기점)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	8	1.2	94	113	산책로	산책로 4-6 (분기점)	산책로 4-4 (분기점)	
	산책로	4	9	1.2	38	45	산책로	산책로 4-10 (분기점)	소로 3-9 (분기점)	
	산책로	4	10	1.2	203	243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26-1	중로 1-79 (분기점)	
	산책로	4	11	2	72	144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37-9	산책로 4-13 (분기점)	
	산책로	4	13	2	38	75	산책로	소로 3-15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31	
	산책로	4	14	2	123	245	산책로	진입광장 (가-14)	도봉구 창동 산137-6	
	산책로	4	15	2	43	85	산책로	야생초화원 (까-7)	도봉구 창동 산144	
	산책로	4	28	1.5	119	178	산책로	산책로 4-181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78	
	산책로	4	31	1.5	441	502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94-2	도봉구 창동 산193-4	
	산책로	4	32	1.5	238	357	산책로	산책로 4-33 (분기점)	대로 3-38 (기점)	
	산책로	4	33	1.5	235	353	산책로	산책로 4-192 (종점)	도봉구 창동 산189-3	
	산책로	4	36	1.5	197	296	산책로	산책로 4-106 (분기점)	소로 3-4 (분기점)	
	산책로	4	39	2	123	246	산책로	휴게광장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2	
	산책로	4	40	1.5	121	181	산책로	산책로 4-106 (분기점)	휴게소 (갸-28,도자구역)	
	산책로	4	43	2	38	76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2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50	1.5	35	52	산책로	산책로 4-75 (종점)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51	2	511	1,022	산책로	산책로 4-214 (분기점)	산책로 4-53 (분기점)	
	산책로	4	53	2	153	30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799-4	노원구 월계동 77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54	2	225	449	산책로	산책로 4-55 (종점)	산책로 4-99 (분기점)	
	산책로	4	55	2	80	160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265-2	산책로 4-54 (기점)	
	산책로	4	57	2	61	121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82	산책로 4-55 (종점)	
	산책로	4	61	2	94	187	산책로	대로 3-61 (분기점)	배드민턴장 (타)	
	산책로	4	66	2	473	945	산책로	산책로 4-54 (분기점)	산책로 4-54 (분기점)	
	산책로	4	68	1.2	61	121	산책로	산책로 4-108 (종점)	열린광장 (녀)	
	산책로	4	69	3.5~15	151	1,42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3-1	진입광장 (가-1)	
	산책로	4	70	10	207	2,065	산책로	진입광장 (가-2)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	71	3	111	332	산책로	산책로 4-70 (분기점)	산책로 4-75 (기점)	
	산책로	4	72	3.5~8	170	1,105	산책로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73 (종점)	
	산책로	4	73	4.5	280	1,122	산책로	테니스장 (자-3)	산책로 4-72 (종점)	
	산책로	4	75	1.7	117	199	산책로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50 (기점)	
	산책로	4	80	2	241	481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26-3	소로 3-15 (분기점)	
	산책로	4	85	1.5	235	353	산책로	산책로 4-31 (기점)	산책로 4-31 (분기점)	
	산책로	4	86	1.5	45	68	산책로	산책로 4-212 (분기점)	산책로 4-87 (분기점)	
	산책로	4	87	1.5	309	464	산책로	소로 3-4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201	
	산책로	4	90	2	25	50	산책로	산책로 4-95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37-6	
	산책로	4	93	1.2	149	169	산책로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	95	2	44	88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 137-6	생태육교 (㉱)	
	산책로	4	97	1.2	74	89	산책로	휴게소 갸-1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	98	1.2	16	19	산책로	산책로 4-2 (분기점)	휴게소 갸-1	
	산책로	4	99	2	150	300	산책로	소로 3-10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4-5	
	산책로	4	100	2	18	36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4-5	노원구 월계동 산60-1	
	산책로	4	102	2	133	26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37-1	산책로 4-51 (분기점	
	산책로	4	106	1.5	441	662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207-1	도봉구 창동 산189-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107	1.5	90	135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108 (기점)	
	산책로	4	108	2	17	34	산책로	산책로 4-107 (종점)	산책로 4-109 (기점)	
	산책로	4	109	2	60	120	산책로	산책로 4-108 (종점)	도봉구 창동 산167-4	
	산책로	4	113	2	82	164	산책로	진입광장 (가-11)	휴게광장 (나-12)	
	산책로	4	114	2	78	155	산책로	소로 3-28 (분기점)	생태학습원 (표-2)	
	산책로	4	115	2	60	120	산책로	야외교실 (저)	생태학습원 (표-2)	
	산책로	4	116	2	198	395	산책로	소로 3-27 (종점)	소로 3-27 (분기점)	
	산책로	4	117	2	39	77	산책로	휴게소 (가-9)	도봉구 창동 462-2	
	산책로	4	118	2	105	209	산책로	휴게소 (가-9)	산책로 4-87 (분기점)	
	산책로	4	119	1.8	50	90	산책로	산책로 4-116 (기점)	도봉구 창동 산176-11	
	산책로	4	120	1.8	137	274	산책로	산책로 4-116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67-4	
	산책로	4	121	1.8	87	156	산책로	휴게소 (가-6)	소로 3-28 (분기점)	
	산책로	4	122	1.8	12	22	산책로	산책로 4-121 (분기점)	소로 3-28 (분기점)	
	산책로	4	123	1.3	46	60	산책로	도봉구 창동 462-2	야외무대 (처)	
	산책로	4	124	1.5	77	115	산책로	산책로 4-36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204-1	
	산책로	4	162	1.5	15	22	산책로	산 4-165 (분기점)	산 4-164 (분기점)	
	산책로	4	163	1.5	29	44	산책로	산책로 4-168 (분기점)	전망데크A (어-9)	
	산책로	4	164	1.5	115	173	산책로	도봉구 창동 368	진입광장 (가-16)	
	산책로	4	165	1.5	39	58	산책로	도봉구 창동 368	도봉구 창동 369-2	
	산책로	4	166	2.8~5	26	86	산책로	열린광장 (녀)	생태학습원 (표-1)	
	산책로	4	167	1.5	2	3	산책로	열린광장 (녀)	산책로 4-166 (종점)	
	산책로	4	168	1.5	189	283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소로 3-51 (기점)	
	산책로	4	169	3.0	9	26	산책로	산책로 4-168 (분기점)	휴게소 (가-23)	
	산책로	4	170	1.2	33	40	산책로	산책로 4-168 (분기점)	소로 3-205 (분기점)	
	산책로	4	171	1.2	192	237	산책로	소로 3-205 (분기점)	휴게소 (가-2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172	5~7.5	61	364	산책로	연결수로 (큐)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	173	1.5	15	22	산책로	산책로 4-172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	181	1.5	155	232	산책로	상지 (쿄)	산책로 4-181 (분기점)	
	산책로	4	182	1.2	73	87	산책로	산책로 4-181 (분기점)	산책로 4-181 (분기점)	
	산책로	4	184	1.5	160	240	산책로	산책로 4-172 (분기점)	산책로 4-188 (분기점)	
	산책로	4	188	2	87	174	산책로	대로 3-38 (분기점)	족구장 (펴)	
	산책로	4	189	2	116	231	산책로	산책로 4-188 (분기점)	산책로 4-32 (기점)	
	산책로	4	191	1.5	35	52	산책로	산책로 4-189 (분기점)	족구장 (펴)	
	산책로	4	192	1.2	48	58	산책로	생태육교 (㉱)	산책로 4-33 (기점)	
	산책로	4	194	1.5	75	113	산책로	산책로 4-40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8-9	
	산책로	4	195	1.5	30	45	산책로	체력단련장 (파-16)	휴게소 (갸-21)	
	산책로	4	203	1.2	82	98	산책로	소로 3-198 (분기점)	소로 3-199 (분기점)	
	산책로	4	204	1.2	45	54	산책로	소로 3-198 (분기점)	산책로 4-203 (분기점)	
	산책로	4	205	1.5	141	211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 4-206 (분기점)	
	산책로	4	206	2.5	58	146	산책로	소로 3-17 (분기점)	휴게광장 (나-10)	
	산책로	4	207	2	94	187	산책로	산책로 4-68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78	
	산책로	4	208	1.5	73	110	산책로	산책로 4-207 (분기점)	산책로 4-28 (분기점)	
	산책로	4	209	1.5	73	146	산책로	산책로 4-120 (분기점)	산책로 4-120 (분기점)	
	산책로	4	210	2	45	90	연결로	소로 3-206 (분기점)	소로 3-206 (분기점)	
	산책로	4	211	2	13	25	산책로	소로 3-202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212	1.5	104	156	산책로	산책로 4-33 (분기점)	산책로 4-85 (분기점)	
	산책로	4	213	2	107	214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214 (분기점)	
	산책로	4	214	2	119	338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8-2	노원구 월계동 산8-6	
	산책로	4	215	2	27	54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	노원구 월계동 산62	
	산책로	4	216	2	30	60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4-5	진입광장 (가-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217	2	22	44	산책로	산책로 4-66 (분기점)	배드민턴장 (타)	
	산책로	4	218	2	28	57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73	산책로 4-66 (분기점)	
	산책로	4	219	2	44	88	산책로	산책로 4-99 (분기점)	대로 3-1 (분기점)	
	산책로	4	220	1.5	14	28	산책로	산책로 4-221 (분기점)	소로 3-210 (분기점)	
	산책로	4	221	2.5	45	113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 4-205 (분기점)	
	산책로	4	222	2	84	170	산책로	산책로 4-13 (분기점)	산책로 4-13 (분기점)	
	산책로	4	223	1.5	41	61	산책로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224 (분기점)	
	산책로	4	224	1.5	75	112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226 (분기점)	
	산책로	4	225	1.5	56	84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226 (분기점)	
	산책로	4	226	1.5	70	105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	227	1.5	205	307	산책로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3	205	1.5	140	168	산책로	진입광장 (가-13)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6	3	14	44	산책로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7	1.5	9	14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8	1.5	73	88	산책로	진입광장 가-15	산책로 3-208 (기점)	
	산책로	3	209	1.5	129	171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소로 3-205 (분기점)	
	산책로	3	210	1.5	30	41	산책로	산책로 3-211 (분기점)	휴게광장 (나-23)	
	산책로	3	21 1	1.5	14	44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56-3	휴게광장 (나-23)	
	산책로	3	212	1.5	53	77	산책로	휴게광장 (나-23)	소로 3-44 (분기점)	
	산책로	3	213	1.5	41	68	산책로	산책로 3-212 (분기점)	산책로 3-214 (분기점	
	산책로	3	214	1.5	33	50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54-1	소로 3-44 (분기점)	

라. 총괄표(도봉구)

구 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404,630.50	87,416.13	13동	4,437.05	8,575.99	312	
시설면적	기반시설	소 계	43,117.46	30,320.46					
		도 로	36,472.0	23,675.0 (12,797.0)					( ) 도시계획도로
		광 장	6,645.46	6,645.46					
	조경시설		18,489.49	15,594.28				46	
	휴양시설		3,882.26	3,882.26				90	
	유희시설		778.0	778.0					
	운동시설		21,676.0	21,482.0	2동	1,754.50	3,581.17	21	
	교양시설		13,228.22	10,952.52	6동	2,273.89	4,521.96	1	
	편익시설		4,392.75	4,122.75	3동	189.0	189.0	8	
	관리시설		476.00	283.86	2동	219.66	283.86	146	
녹지 · 기타	녹지		297,790.32						
	동물놀이터		800	800					
공원시설율 (법정40%)			(87,416.13㎡ / 404,630.5㎡) x 100% = 21.60%						
공원건폐율 (법정 20%)			(4,437.05㎡ / 404,630.5㎡) x 100% = 1.09%						

마. 시설조서(도봉구)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계				404,630.5	87,416.13		13동	4,437.05	8,575.99	312	감)3,404.0
기반시설	소계			43,117.46	30,320.46						증)94.1
	도로			36,472.0	23,675.0						
					(12,797.0)	( ) 도시계획도로					
	진입광장	가	12개소	3,257.4	3,257.4						
		가-3	도봉구 창동 677공	859.4	859.4					(14)	
		가-5	도봉구 창동 산194-2공	374.6	374.6					(1)	
		가-6	도봉구 창동 677공	174.0	174.0						
		가-10	도봉구 창동 677공	628.7	628.7					(7)	
		가-11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35.0	435.0						
		가-1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87.83	187.83						
		가-1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06.69	206.69						
		가-14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9.61	49.6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가-15	도봉구 창동 산159-2과	31.32	31.32						
		가-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30.25	30.25						
		가-18	도봉구 창동 산163-5임	122	122						
		가-19	도봉구 창동 357-1공	158	158						
기반시설	휴게광장	나	10개소	2,883.06	2,883.06						증)94.1
		나-1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0	110						
		나-13	도봉구 창동 428공	979	979						
		나-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8.0	188.0						
		나-17	도봉구 창동 산157임	24.18	24.18						
		나-18	도봉구 창동 산157임	137.0	137.0						
		나-19	도봉구 창동 산157임	93.73	93.73						
		나-20	도봉구 창동 산183임	188.0	188.0						증)94.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나-21	도봉구 창동 산183임	44.3	44.3						
		나-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812.32	812.32						
		나-23	도봉구 창동 산156-1임	306.53	306.53						
	열린광장	녀	도봉구 창동 산177임	505.0	505.0						
조경시설	소 계			18,489.49	15,594.28					46	감)220.0
	연 못	러	도봉구 창동 677공	1,818.5	769.4					(1)	
	피크닉장	머	도봉구 창동 677공	1,846.11	0						
	지압보도	버	도봉구 창동 677공	278.57	278.57						
	화 계	서	2개소	632.8	632.8						
		서-1	도봉구 창동 677공	448.00	448.00						
		서-2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4.80	184.80						
조경	야생초화원	까	2개소	1,720	1,720						
		까-6	도봉구 창동 산165공	259	259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		까-7	도봉구 창동 산144임	1,461	1,461						
	생태육교	⑪	도봉구 창동 산136도							1	
	생태연못	커	2개소	128.93	128.93						
		커-1	도봉구 창동 산157임	100.53	100.53						
		커-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8.4	28.4						
	상지	쿄	도봉구 창동 산183임	128.1	128.1						
	하지	쿠	도봉구 창동 440임	56.3	56.3						
	연결수로	큐	도봉구 창동 산183임	53.2	53.2						
	계 류	터	2개소	598.61	598.61						
		터-1	도봉구 창동 산157임	519.71	519.71					(2)	
		터-3	도봉구 창동 440임	78.9	78.9						
	파 고 라 B	②	2개소							2	
		②-9	도봉구 창동 산137-1임 (휴게소(갸-6) 내)	(20.25)	(20.25)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②-10	도봉구 창동 428공 (휴게소(갸-8) 내)	(20.25)	(20.25)					1	
	파고라C	⑫	8개소							8	
		⑫-28	도봉구 창동 산194-2공 (진입광장(가-5) 내)	(25)	(25)					1	
		⑫-29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0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1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2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조경시설	파고라C	⑫-33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4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5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파고라E	⑯	9개소							9	
		⑯-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⑯-2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3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4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5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6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21)	(21)					1	
		⑯-7	도봉구 창동 677공(풋살경기장(아) 내)	(21)	(21)					1	
		⑯-8	도봉구 창동 677공(풋살경기장(아) 내)	(21)	(21)					1	
		⑯-9	도봉구 창동 677공(연못(러) 내)	(21)	(21)					1	
	파고라 F	⑰	4개소							4	
		⑰-1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2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3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4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4)	(14)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막구조파고라	⑱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08)	(108)					1	
	조형파고라	㉔	도봉구 창동 산156-4임(휴게소(가-23) 내)	(152)	(152)					1	
조경시설	수목보호홀 덮개	⑲	10개소							10	
		⑲-1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2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3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4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5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6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7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	(1)					1	
		⑲-8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	(1)					1	
		⑲-9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	(1)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⑲-10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	(1)					1	
	초정	㉚	2개소	29.02	29.02					2	
		㉚-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㉚-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관찰데크 A	어-7	도봉구 창동 산157임	39.18	39.18						
	관찰데크 B	어-8	도봉구 창동 산157임	57.74	57.74						
	전망데크 A	어-9	도봉구 창동 산157임	70.0	70.0						
	전망데크 B	어-10	도봉구 창동 산157임	19.32	19.32						
	목교	㉛	2개소							2	
		㉛-1	도봉구 창동 산157임(계류(터-1) 내)	(4.4)	(4.4)					1	
		㉛-2	도봉구 창동 산157임(계류(터-1) 내)	(5.4)	(5.4)					1	
조경시설	휴게데크A	어-14	도봉구 창동 산183임	98.5	98.5						감)50.0
	휴게데크B	어-15	도봉구 창동 산137-62	0 (현황반영)	0 (현황반영)						감)170.0
	옹벽A	㉜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옹벽B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C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D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E	㉲	도봉구 창동 산157임							1	
	야생화정원	우-1	도봉구 창동 67-1전	914.61	914.61						
	플랜터	㉳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화단	하	도봉구 창동 산192-7	10,000	10,000						
휴양시설	소 계			3,882.26	3,882.26					90	
	휴게소	갸	15개소	3,882.26	3,882.26						
		갸-1	도봉구 창동 677공	1,045.00	1,045.00					(7)	
		갸-6	도봉구 창동 산135-1도	83.0	83.0					(1)	
		갸-8	도봉구 창동 428-1공	54.0	54.0					(1)	
		갸-9	도봉구 창동 산194-2공	66.5	66.5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가-13	도봉구 창동 산157임	372.16	372.16						
		가-16	도봉구 창동 산183임	14.6	14.6						
		가-17	도봉구 창동 산183임	6.0	6.0						
		가-18	도봉구 창동 산183임	21.0	21.0						
		가-19	도봉구 창동 산183임	11.0	11.0						
휴양시설	휴게소	가-23	도봉구 창동 산156-3임	1,185.0	1,185.0					(1)	
		가-24	도봉구 창동 산163-5임	284.0	284.0						
		가-25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14.0	214.0						
		가-2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6.0	16.0						
		가-27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3.0	13.0						
		가-35	도봉구 창동 산126-1임	497.0	497.0						
	야외탁자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16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장의자		전지역			목재				36	
	등의자	③	전지역			목재				19	
	사각의자	⑤	전지역			목재				3	
	앉음벽	⑬	전지역							6	
	평의자	⑱	전지역			목재				7	
	연식의자A	㉒-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연식의자B	㉒-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연식의자C	㉒-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유희시설	소 계			778.0	778.0						
	놀이터	댜	도봉구 창동 산177-1임	778.0	778.0						
운동시설	소 계			21,676.0	21,482.0		2동	1,754.50	3,581.17	21	증)989.2
	풋살경기장	아	도봉구 창동 677공	1,192	1,192						
	테니스장	자-4	도봉구 창동 산48-3임	0 (공원구역 해제)	0 (공원구역 해제)						감)1,724.2
	축구장	거-2	도봉구 창동 677공	10,503	10,503					21	
운동	골프연습장	6-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5,920	5,726	R.C	1동	732.50	2,303.67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	체력단련장	파	3개소	1,348	1,348						
		파-9	도봉구 창동 677공	899	899						
		파-10	도봉구 창동 산51-1임	139	139						
		파-14	도봉구 창동 677공	310	310						
	족구장	펴	도봉구 창동 산183임 (현황반영)	1,691.0 (현황반영)	1,691.0 (현황반영)						증)735.0
	실내배드민턴장	허-2	도봉구 창동 산131공	1,022.0	1,022.0		1동	1,022.00	1,277.5		
	소 계			13,228.22	10,952.52		6동	2,273.89	4,521.96	1	증)369.0
교양시설	도서관	7	2개소	4,977.5	3,357.5		1동	1,134.58	3,111.46	1	
		7-1	도봉구 창동 418대	4,950.0	3,330.0		1동	1,134.58	3,111.46		
		7-2	도봉구 창동 428-1공	27.5	27.5					1	
	책쉼터	차	도봉구 창동 산183임	369.0	369.0		1동	292.79	286.81		증)369.0
	야외교실	저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52.5	252.5						
	야외무대	처	도봉구 창동 산194-2공	463.5	463.5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참여형 텃밭	퍼	3개소	3,737.38	3,737.38						
		퍼-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339.24	339.24						
		퍼-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2,756.85	2,756.85						
		퍼-3	도봉구 창동 산154-1임	641.29	641.29						
	생태학습원	표	3개소	1,801.6	1,801.6						
		표-1	도봉구 창동 432전	1,137.6	1,137.6						
		표-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08.0	408.0						
		표-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56.0	256.0						
	목재문화체험장	17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7.11	217.11		1동	217.11	253.11		
교양시설	가드닝센터 및 온실	18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92.28	392.28		1동	392.28	435.45		
	예술공방	19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11.13	111.13		1동	111.13	111.13		
	정원	야	3개소	124.52	124.52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야-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6.57	46.57						
		야-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60.45	60.45						
		야-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7.50	17.50						
	어린이집	2	도봉구 창동 산194-2임	781.70	126.00	조적조	1동	126	324		
편익시설	소 계			4,392.75	4,122.75		3동	189.0	189.0	8	감)21.2
	주차장	하	3개소	4,069.09	3,799.09						
		하-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1,313	1,119						
		하-8	도봉구 창동 677공	2,536.8	2,460.8						
		하-1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9.29	219.29						
	화장실	9	도봉구 창동 산173공	261.0	261.0		3동	189.0	189.0		
		9-3	도봉구 창동 677공	30.0	30.0		1동	30.0	30.0		증)30.0
		9-4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5.5	115.5		1동	79.5	79.5		
		9-5	도봉구 창동 산173공	115.5	115.5		1동	79.5	79.5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9-6	도봉구 창동 산183임	0.0	0.0			0.0	0.0		감)51.2
	스탠드	⑮	도봉구 창동 677공							1	
	세족대	㉑	도봉구 창동 677공							1	
	석교	㉖	도봉구 창동 산157임	4.8	4.8					1	
	계단 1	㉗	도봉구 창동 산157임	7.4	7.4					1	
편익시설	계단 2	⑩	도봉구 창동 산157임	13.86	13.86					1	
	계단 6	㉑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4	1.4					1	
	계단 7	㉘	도봉구 창동 677공	2.2	2.2					1	
	계단 8	㉕	도봉구 창동 산159-5과	33	33					1	
관리시설	소계			476.00	283.86		2동	219.66	283.86	146	
	관리사무소	10-3	도봉구 창동 677공	440.00	247.86	R.C	1동	183.66	247.86		
	창고	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6.00	36.00	목구조	1동	36.00	36.00		
	안내판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11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방향안내판		전지역			목재				2	
	종합안내판	⑧-4	도봉구 창동 산183임			목재				1	
	휴지통	⑨-2	전지역			목재				12	
	조명등		전지역							109	
	CCTV		전지역							11	
녹지 및 기타	소계			298,590.32							
	녹지			297,790.32							
	동물놀이터	퍄	도봉구 창동 677공	800	800						

바. 도로조서(도봉구)

– 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800	12,797				
	대로	계			574	9,204				
	대로	3	38	15	458	6,877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산192-1	도봉구 창동 산184-3	
	대로	2	74	20	116	2,327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379-1	도봉구 창동 379-1	
	대로	3	1	11~20	205	3,392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7-2	노원구 월계동 산64-4	
	중로	계			226	3,593				
	중로	1	78	15	159	2,384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418-4	대로 3-38 (분기점)	
	중로	1	79	18	67	1,209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산107-223	도봉구 창동 산107-223	

- 공원시설 계획도로(도봉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계				11,167	23,675				
	소로	계			3,079	10,786				
	소로	3	4	10	334	3,343	진입로	도봉구 창동 452-3	도봉구 창동 산206-6	
	소로	3	7	3	70	211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3)	지압보도(버)	
	소로	3	8	3~8	70	369	연결로	지압보도 (버)	진입광장 (가-10)	
	소로	3	9	7	119	719	부진입로	중로 1-79 (분기점)	골프연습장 6-2	소형주차 20대포함
	소로	3	15	2	123	246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29-3	도봉구 창동 산126-1	
	소로	3	18	4	131	524	연결로	소로 3-9 (분기점)	소로 3-15 (분기점)	소형주차 3대포함
	소로	3	19	2	159	317	연결로	연못 (러)	진입광장 (가-3)	
	소로	3	20	2	21	41	연결로	풋살경기장 (아)	소로 3-19 (분기점)	
	소로	3	21	2.5	14	35	연결로	소로 3-22 (기점)	연못 (러)	
	소로	3	22	3	41	124	연결로	소로 3-21 (기점)	소로 3-23 (분기점)	
	소로	3	23	3	126	378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6)	진입광장 (가-10)	
	소로	3	24	1.5	20	30	연결로	소로 3-23 (분기점)	연못 (러)	
	소로	3	25	2	26	53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677	관리사무소 (10-3)	
	소로	3	26	2	24	47	부진입로	주차장 (하-8)	소로 3-23 (분기점)	
	소로	3	27	6.5	120	284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62	산책로 4-116 (기점)	
	소로	3	28	5	103	516	연결로	진입광장 (가-11)	휴게소 (갸-25)	
	소로	3	29	2	28	56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57-1	휴게광장 (나-18)	
	소로	3	30	2	56	111	연결로	휴게광장 (나-18)	전망데크B (어-10)	
	소로	3	31	2	73	146	연결로	휴게광장 (나-18)	전망데크A (어-9)	
	소로	3	32	1.5	55	82	연결로	소로 3-33 (분기점)	휴게광장 (나-19)	
	소로	3	33	1.5	69	104	연결로	도봉구 창동 산157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	34	2	41	82	연결로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33 (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3	36	4	69	277	연결로	도봉구 창동 산157	휴게광장 (나-16)	
	소로	3	37	3.5	19	68	연결로	휴게광장 (나-16)	휴게광장 (나-18)	
	소로	3	38	2	54	108	연결로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51 (기점)	
	소로	3	39	2	13	25	연결로	목교 (㉛-1)	휴게광장 (나-17)	
	소로	3	40	2	49	97	연결로	휴게광장 (나-17)	휴게광장 (나-18)	
	소로	3	41	1.5	106	159	연결로	소로 3-51 (종점)	전망데크A (어-9)	
	소로	3	42	1.5	31	46	연결로	소로 3-31 (분기점)	목교 (㉛-2)	
	소로	3	43	2.5	84	211	연결로	참여형텃밭 (퍼-3)	참여형텃밭 (퍼-1)	
	소로	3	44	2	106	212	연결로	소로 3-49 (분기점)	소로 3-43 (분기점)	
	소로	3	44	2	106	212	연결로	소로 3-49 (분기점)	소로 3-43 (분기점)	
	소로	3	46	2	19	38	연결로	소로 3-48	소로 3-49	
	소로	3	47	2	12	24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 3-49	
	소로	3	48	2	104	207	연결로	소로 3-49	참여형텃밭 (퍼-3)	
	소로	3	49	2	134	268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 3-43	
	소로	3	50	1.5	40	60	연결로	소로 3-36 (종점)	소로 3-32 (분기점)	
	소로	3	51	2	9	19	연결로	소로3-38	목교 (㉛-1)	
	소로	3	52	2	38	76	연결로	휴게광장 (나-23)	휴게소 (갸-23)	
	소로	3	201	1.5	22	33	연결로	산책로 4-109 (분기점)	소로 3-200 (기점)	
	소로	3	205	5	144	688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59-6과	휴게광장 (나-23)	
	소로	3	206	1.5	20	30	진입로	주차장 (하-11)	소로 3-205 (기점)	
	소로	3	207	3.5	1	5	연결로	진입광장 (가-12)	진입광장 (가-13)	
	소로	3	211	1.5	62	93	진입로	도봉구 창동 164	산책로 4-209 (분기점)	
	소로	3	212	2	87	173	진입로	도봉구 창동 379-1	진입광장 (가-13)	
	소로	3	213	2	7	13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63-5	산책로 4-210 (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계			8,088	12,889				
	산책로	4	1	1.2	350	420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산책로 4-2	
	산책로	4	2	1.2	78	94	산책로	산책로 4-4	산책로 4-4	
	산책로	4	3	1.2	121	145	산책로	산책로 4-98	산책로 4-2	
	산책로	4	4	1.2	44	53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산책로	4	6	1.2	56	67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산책로	4	7	1.2	49	59	산책로	산책로 4-2	소로 3-19	
	산책로	4	8	1.2	94	113	산책로	산책로 4-6	산책로 4-4	
	산책로	4	9	1.2	38	45	산책로	산책로 4-10 (분기점)	소로 3-9 (분기점)	
	산책로	4	10	1.2	203	243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26-1	중로 1-79 (분기점)	
	산책로	4	11	2	72	144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37-9	산책로 4-13 (분기점)	
	산책로	4	13	2	38	75	산책로	소로 3-15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31	
	산책로	4	14	2	123	245	산책로	진입광장 (가-14)	도봉구 창동 산137-6	
	산책로	4	15	2	43	85	산책로	야생초화원 (까-7)	도봉구 창동 산144	
	산책로	4	28	1.5	119	178	산책로	산책로 4-181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78	
	산책로	4	31	1.5	441	502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94-2	도봉구 창동 산193-4	
	산책로	4	32	1.5	238	357	산책로	산책로 4-33 (분기점)	대로 3-38 (기점)	
	산책로	4	33	1.5	235	353	산책로	산책로 4-192 (종점)	도봉구 창동 산189-3	
	산책로	4	36	1.5	197	296	산책로	산책로 4-106 (분기점)	소로 3-4 (분기점)	
	산책로	4	68	1.2	61	121	산책로	산책로 4-108 (종점)	열린광장 (녀)	
	산책로	4	80	2	241	481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26-3	소로 3-15 (분기점)	
	산책로	4	85	1.5	235	353	산책로	산책로 4-31 (기점)	산책로 4-31 (분기점)	
	산책로	4	86	1.5	45	68	산책로	산책로 4-212 (분기점)	산책로 4-87 (분기점)	
	산책로	4	87	1.5	309	464	산책로	소로 3-4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201	
	산책로	4	90	2	25	50	산책로	산책로 4-95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37-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93	1.2	149	169	산책로	산책로 4-7 (분기점)	산책로 4-2 (분기점)	
	산책로	4	95	2	44	88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 137-6	생태육교 (㈜)	
	산책로	4	97	2.5	74	89	산책로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98 (기점)	
	산책로	4	98	1.2	16	19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도봉구 창동 677	
	산책로	4	106	1.5	441	662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207-1	도봉구 창동 산189-3	
	산책로	4	107	1.5	90	135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108 (기점)	
	산책로	4	108	2	17	34	산책로	산책로 4-107 (종점)	산책로 4-109 (기점)	
	산책로	4	109	2	60	120	산책로	산책로 4-108 (종점)	도봉구 창동 산167-4	
	산책로	4	113	2	82	164	산책로	진입광장 (가-11)	휴게광장 (나-12)	
	산책로	4	114	2	78	155	산책로	소로 3-28 (분기점)	생태학습원 (표-2)	
	산책로	4	115	2	60	120	산책로	야외교실 (저)	생태학습원 (표-2)	
	산책로	4	116	2	198	395	산책로	소로 3-27 (종점)	소로 3-27 (분기점)	
	산책로	4	117	2	39	77	산책로	휴게소 (갸-9)	도봉구 창동 462-2	
	산책로	4	118	2	105	209	산책로	휴게소 (갸-9)	산책로 4-87 (분기점)	
	산책로	4	119	1.8	50	90	산책로	산책로 4-116 (기점)	도봉구 창동 산176-11	
	산책로	4	120	1.8	137	274	산책로	산책로 4-116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67-4	
	산책로	4	121	1.8	87	156	산책로	휴게소 (갸-6)	소로 3-28 (분기점)	
	산책로	4	122	1.8	12	22	산책로	산책로 4-121 (분기점)	소로 3-28 (분기점)	
	산책로	4	123	1.3	46	60	산책로	도봉구 창동 462-2	야외무대 (처)	
	산책로	4	124	1.5	77	115	산책로	산책로 4-36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204-1	
	산책로	4	162	1.5	15	22	산책로	산 4-165 (분기점)	산 4-164 (분기점)	
	산책로	4	163	1.5	29	44	산책로	산책로 4-168 (분기점)	전망데크A (어-9)	
	산책로	4	164	1.5	115	173	산책로	도봉구 창동 368	진입광장 (가-16)	
	산책로	4	165	1.5	39	58	산책로	도봉구 창동 368	도봉구 창동 369-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166	2.8~5	26	86	산책로	열린광장(녀)	생태학습원(표-1)	
	산책로	4	167	1.5	2	3	산책로	열린광장(녀)	산책로 4-166(종점)	
	산책로	4	168	1.5	189	283	산책로	진입광장(가-16)	소로 3-51(기점)	
	산책로	4	169	3.0	9	26	산책로	산책로 4-168(분기점)	휴게소(갸-23)	
	산책로	4	170	1.2	33	40	산책로	산책로 4-168(분기점)	소로 3-205(분기점)	
	산책로	4	171	1.2	192	237	산책로	소로 3-205(분기점)	휴게소(갸-25)	
	산책로	4	172	5~7.5	61	364	산책로	연결수로 (큐)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	173	1.5	15	22	산책로	산책로 4-172(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	181	1.5	155	232	산책로	상지 (쿄)	산책로 4-181(분기점)	
	산책로	4	182	1.2	73	87	산책로	산책로 4-181(분기점)	산책로 4-181(분기점)	
	산책로	4	184	1.5	160	240	산책로	산책로 4-172(분기점)	산책로 4-188(분기점)	
	산책로	4	188	2	87	174	산책로	대로 3-38(분기점)	족구장(펴)	
	산책로	4	189	2	116	231	산책로	산책로 4-188(분기점)	산책로 4-32(기점)	
	산책로	4	191	1.5	35	52	산책로	산책로 4-189(분기점)	족구장(펴)	
	산책로	4	192	1.2	48	58	산책로	생태육교(㉦)	산책로 4-33(기점)	
	산책로	4	207	2	94	187	산책로	산책로 4-68(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78	
	산책로	4	208	1.5	73	110	산책로	산책로 4-207(분기점)	산책로 4-28(분기점)	
	산책로	4	209	1.5	73	146	산책로	산책로 4-120(분기점)	산책로 4-120(분기점)	
	산책로	4	210	2	45	90	연결로	소로 3-206(분기점)	소로 3-206(분기점)	
	산책로	4	212	1.5	104	156	산책로	산책로 4-33(분기점)	산책로 4-85(분기점)	
	산책로	4	222	2	84	170	산책로	산책로 4-13(분기점)	산책로 4-13(분기점)	
	산책로	4	223	1.5	41	61	산책로	산책로 4-32(분기점)	산책로 4-224(분기점)	
	산책로	4	224	1.5	75	112	산책로	산책로 4-227(분기점)	산책로 4-226(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225	1.5	56	84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226 (분기점)	
	산책로	4	226	1.5	70	105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	227	1.5	205	307	산책로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3	205	1.5	140	168	산책로	진입광장 (가-13)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6	3	14	44	산책로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7	1.5	9	14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8	1.5	73	88	산책로	진입광장 가-15	산책로 3-208 (기점)	
	산책로	3	209	1.5	129	171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소로 3-205 (분기점)	
	산책로	3	210	1.5	30	41	산책로	산책로 3-211 (분기점)	휴게광장 (나-23)	
	산책로	3	211	1.5	14	44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56-3	휴게광장 (나-23)	
	산책로	3	212	1.5	53	77	산책로	휴게광장 (나-23)	소로 3-44 (분기점)	
	산책로	3	213	1.5	41	68	산책로	산책로 3-212 (분기점)	산책로 3-214 (분기점)	
	산책로	3	214	1.5	33	50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54-1	소로 3-44 (분기점)	

사. 총괄표(노원구)

구 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489,236.3	60,738.67	17동	3,651.29	5,160.09	455	
시설면적	기반시설	소 계	30,919.65	21,347.65					
		도 로	28,861	19,289 (9,572)					( ) 도시계획도로
		광 장	2,058.65	2,058.65					
	조경시설		2,738.81	2,738.81				10	
	휴양시설		9,758.26	9,758.26	6동	157.14	157.14	268	
	유희시설		492.08	492.08				3	
	운동시설		20,535.25	19,793.25	3동	2,759.75	4,268.55		감)956.0
	교양시설		406.54	406.54	2동	293.75	293.75		
	편익시설		5,652.24	5,652.24	2동	190.02	190.02	14	
	관리시설		549.84	549.84	4동	250.63	250.63	160	
녹지 · 기타	녹지		418,183.63						
공원시설율 (법정40%)			(60,738.67㎡ / 489,236.3㎡) x 100% = 12.41%						
공원건폐율 (법정 20%)			(3,389㎡ / 489,236.3㎡) x 100% = 0.83%						

아. 시설조서(노원구)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계				489,236.3	60,738.67		17동	3,651.29	5,160.09	455	
기반시설	소계			30,919.65	21,347.65						
	도로			28,861	19,289						
					(9,572)	( ) 도시계획도로					
	진입광장	가	4개소	1,142.68	1,142.68						
		가-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5.25	175.25						
		가-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22.0	122.0						
		가-7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58.76	358.76						
		가-8	노원구 월계동 916-4전	486.67	486.67						
	휴게광장	나	4개소	784.0	784.0						
		나-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30.25	130.25						
		나-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67.25	67.25						
		나-7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366.5	366.5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220.0	220.0						
	작은광장	카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31.97	131.97						
조경시설	소계			2,738.81	2,738.81					10	
	잔디광장	다	노원구 월계동 916전	436.96	436.96						
	야생초화원	까	2개소	1,225.8	1,225.8						
		까-1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584.88	584.88					(1)	
		까-5	노원구 월계동 912-9구	640.92	640.92						
조경시설	억새원	꺄	노원구 월계동 산24-1임	470.16	470.16						
	생태계류	라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320.60	320.60						
	생태습지	바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285.29	285.29					(1)	
	파고라A	①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72)	(72)	탄소강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파고라B	②	7개소			목재				7	
		②-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20.25)	(20.25)					1	
		②-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야생초화원(까-1) 내)	(20.25)	(20.25)					1	
		②-4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5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6) 내)	(20.25)	(20.25)					1	
		②-7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휴게광장(나-4) 내)	(20.25)	(20.25)					1	
		②-8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진입광장(가-1) 내	(20.25)	(20.25)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목교	㉛-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생태습지(바) 내)	(6)	(6)					1	
	물레방아	㉜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휴양시설	소 계			9,758.26	9,758.26		6동	157.14	157.14	268	
	휴게소	갸	4개소	902.0	902.0		3동	108	108		
		갸-21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148.0	148.0						
		갸-30	노원구 월계동 산6임	196.0	196.0	목조	1동	36	36		
		갸-31	노원구 월계동 산8-2임	385.0	385.0	목조	1동	36	36		
		갸-33	노원구 월계동 산66-3임	173.0	173.0	목조	1동	36	36		
	야외탁자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48	
	장의자		전지역			목재				109	
	등의자	③	전지역			목재				57	
	사각의자	⑤	전지역			목재				11	
	앉음벽	⑬	전지역							2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평의자	㉞								22	
	야영장	여	4개소	8,655.40	8,655.40						
	야영장1	여-1	노원구 월계동 749전	4,484.52	4,484.52						
	야영장2	여-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167.86	1,167.86						
	야영장3	여-3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710.56	2,710.56						
		여-4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92.46	292.46						
	부속동	16	3개소	200.86	200.86		3동	49.14	49.14		
	부속4동	16-1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83.60	83.60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부속5동	16-2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71.74	71.74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부속6동	16-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45.52	45.52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유희시설	소 계			492.08	492.08					3	
	조합놀이대	⑭-1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트리하우스	⑭-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사면슬라이드	⑭-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생태놀이터	냐	2개소	492.08	492.08						
	생태놀이터1	냐-1	노원구 월계동 산17-8임	292.44	292.44						
	생태놀이터2	냐-2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199.64	199.64						
운동시설	소 계			20,535.25	19,793.25		3동	2,759.75	4,268.55		감)956.0
	테니스장	자-3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2,497.25	2,497.25		1동	72	72	(2)	
	농구장	랴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703	703						
	축구장	거-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7,020	6,278						
	골프연습장	6-3	노원구 월계동 산65-4임	7,950	7,950	R.C	1동	1,165.64	2,674.44		
	배드민턴장	타	노원구 월계동 산69임	348.0	348.0						
	체력단련장	파	2개소	269	269						
		파-16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215	215						
		파-17	노원구 월계동 912-9구	54	54						
	실내배드민턴장	허-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48.0	1,748.0		1동	1,522.11	1,522.11		
교	소 계			406.54	406.54		2동	293.75	293.75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양시설	도자기체험장	8	노원구 월계동 산17-7임	278.54	278.54		1동	278.54	278.54		
	승극철부부묘	24	노원구 월계동 산68-2임	128	128	목조	1동	15.21	15.21		
편익시설	소 계			5,652.24	5,652.24		2동	190.02	190.02	14	
	주차장	하	4개소	5,306.62	5,306.62						
		하-4	노원구 월계동 산65-1임	3,006.0	3,006.0						
		하-9	노원구 월계동 749-2전	546.88	546.88						
		하-10	노원구 월계동 912-9구	296.79	296.79						
		하-12	노원구 월계동 산4-9임	1,456.95	1,456.95						
	장애인주차장	노-2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4.76	34.76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음수전A	⑦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스테인레스				1	
	화장실 및 세면장	탸	2개소	310.86	310.86		2동	190.02	190.02		
		탸-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78.62	178.62	조적조	1동	95.01	95.01	(2)	
		탸-2	노원구 월계동 750대	132.24	132.24	조적조	1동	95.01	95.01		
	야외스파	㉓-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반고정용		(8)	(8)	2	
	야외테이블A	㉓-2	노원구 월계동 749-7전			반고정용				1	
	야외테이블B	㉓-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반고정용				10	
관리시	소계			549.84	549.84		4동	250.63	250.63	160	
	관리사무소	10	2개소	141.40	141.40		2동	126.36	126.36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		10-2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120.36	120.36	조적	1동	120.36	120.36		
		10-5	노원구 월계동 749-7전	21.04	21.04	목구조	1동	6	6		
	방문자센터	20	노원구 월계동 749-7전	302.03	302.03	목구조	1동	75.85	75.85		
	용품점	21	노원구 월계동 749-7전	80.68	80.68	조적조	1동	48.42	48.42		
	안내판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12	
	방향안내판		전지역			목재				2	
	종합안내판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5	
		⑧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목재				2	
		⑧-1	노원구 월계동 749-2전			목재				1	
		⑧-2	노원구 월계동 692임			목재				1	
		⑧-3	노원구 월계동 675전			목재				1	
	휴지통		전지역			목재				14	
		⑨	전지역			목재				12	
		⑨-1	노원구 월계동 748-7답			목재				2	
	분리수거장	23	노원구 월계동 748-7답	25.73	25.73	목재					
	조명등		전지역							109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CCTV		전지역							11	
	휀스	㉒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철재,목재				1	
	게이트	㉓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목재				4	
	주차 차단기	㊵	노원구 월계동 749-2전			-				2	
녹지 및 기타	소계			418,183.63							증)956.0
	녹지			418,183.63							증)956.0

자. 도로조서(노원구)

– 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514	9,572				
	대로	계			514	9,572				
	대로	3	61	20	309	6,180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9-3	노원구 월계동 산65-21	
	대로	3	1	11~20	205	3,392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7-2	노원구 월계동 산64-4	

– 공원시설 계획도로(노원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계				5,798	19,289				
	소로	계			1,667	7,008				
	소로	3	10	6.5	220	1,427	연결로	대로 3-61	소로 3-11 (기점)	
	소로	3	11	6.5	230	1,493	연결로	소로 3-10 (종점)	산책로 4-69 (분기점)	
	소로	3	14	9.5	88	837	연결로	소로 3-10 (분기점)	주차장 (하-4)	
	소로	3	16	3	14	52	연결로	대로 3-1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4-5	
	소로	3	17	2.5	120	301	연결로	산책로 4-222 (기점)	휴게광장 (나-10)	
	소로	3	196	4	136	595	연결로	진입광 (가-7)	휴게광장 (나-24)	
	소로	3	197	3	125	375	연결로	진입광장 (가-7)	소로 3-196 (분기점)	
	소로	3	198	4	118	529	연결로	주차장 (하-9/노-2)	휴게광장 (나-24)	
	소로	3	199	4	68	343	연결로	휴게광장 (나-24)	소로 3-200 (기점)	
	소로	3	200	3.5	42	147	연결로	소로 3-199 (종점)	부속 6동 (16-3)	
	소로	3	201	1.5	129	193	연결로	산책로 4-109 (분기점)	소로 3-200 (기점)	
	소로	3	202	2	109	218	산책로	소로 3-200 (종점)	노원구 월계동 산5-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3	208	2	5	9	진입로	대로 3-1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7	
	소로	3	209	2	218	435	진입로	노원구 월계동 779	산책로 4-51 (분기점)	
	소로	3	210	1.2	45	54	진입로	노원구 월계동 914-1	산책로 4-221 (분기점)	
	산책로	계			4,131	12,281				
	산책로	4	39	2	123	246	산책로	휴게광장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2	
	산책로	4	40	1.5	121	181	산책로	산책로 4-106 (분기점)	휴게소 (가-28)	
	산책로	4	43	2	38	76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2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50	1.5	35	52	산책로	산책로 4-75 (종점)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51	2	511	1,022	산책로	산책로 4-214 (분기점)	산책로 4-53 (분기점)	
	산책로	4	53	2	153	30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799-4	노원구 월계동 779	
	산책로	4	54	2	225	449	산책로	산책로 4-55 (종점)	산책로 4-99 (분기점)	
	산책로	4	55	2	80	160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265-2	산책로 4-54 (기점)	
	산책로	4	57	2	61	121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82	산책로 4-55 (종점)	
	산책로	4	61	2	94	187	산책로	대로 3-61 (분기점)	배드민턴장 (타)	
	산책로	4	66	2	473	945	산책로	산책로 4-54 (분기점)	산책로 4-54 (분기점)	
	산책로	4	69	3.5~15	151	1,42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3-1	진입광장 (가-1)	
	산책로	4	70	10	207	2,065	산책로	진입광장 (가-2)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	71	3	111	332	산책로	산책로 4-70 (분기점)	산책로 4-75 (기점)	
	산책로	4	72	3.5~8	170	1,105	산책로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73 (종점)	
	산책로	4	73	4.5	280	1,122	산책로	테니스장 (자-3)	산책로 4-72 (종점)	
	산책로	4	75	1.7	117	199	산책로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50 (기점)	
	산책로	4	99	2	150	300	산책로	소로 3-10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4-5	
	산책로	4	100	2	18	36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4-5	노원구 월계동 산60-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102	2	133	26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37-1	산책로 4-51 (분기점	
	산책로	4	194	1.5	75	113	산책로	산책로 4-40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8-9	
	산책로	4	195	1.5	30	45	산책로	체력단련장 (파-16)	휴게소 (갸-21)	
	산책로	4	203	1.2	82	98	산책로	소로 3-198 (분기점)	소로 3-199 (분기점)	
	산책로	4	204	1.2	45	54	산책로	소로 3-198 (분기점)	산책로 4-203 (분기점)	
	산책로	4	205	1.5	141	211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 4-206 (분기점)	
	산책로	4	206	2.5	58	146	산책로	소로 3-17 (분기점)	휴게광장 (나-10)	
	산책로	4	211	2	13	25	산책로	소로 3-202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213	2	107	214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214 (분기점)	
	산책로	4	214	2	119	338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8-2	노원구 월계동 산8-6	
	산책로	4	215	2	27	54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	노원구 월계동 산62	
	산책로	4	216	2	30	60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4-5	진입광장 (가-2)	
	산책로	4	217	2	22	44	산책로	산책로 4-66 (분기점)	배드민턴장 (타)	
	산책로	4	218	2	28	57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73	산책로 4-66 (분기점)	
	산책로	4	219	2	44	88	산책로	산책로 4-99 (분기점)	대로 3-1 (분기점)	
	산책로	4	220	1.5	14	28	산책로	산책로 4-221 (분기점)	소로 3-210 (분기점)	
	산책로	4	221	2.5	45	113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 4-205 (분기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695호(’ 90.10.19.)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해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419호) 시행한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78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설치사업
 2) 명 칭 :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서울교통공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2)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라. 사업의 규모 : 49.5㎡(수용 : 3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2024년 10년 31일)
 2) 준공예정일 : 2027년 03월 31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 바랍니다.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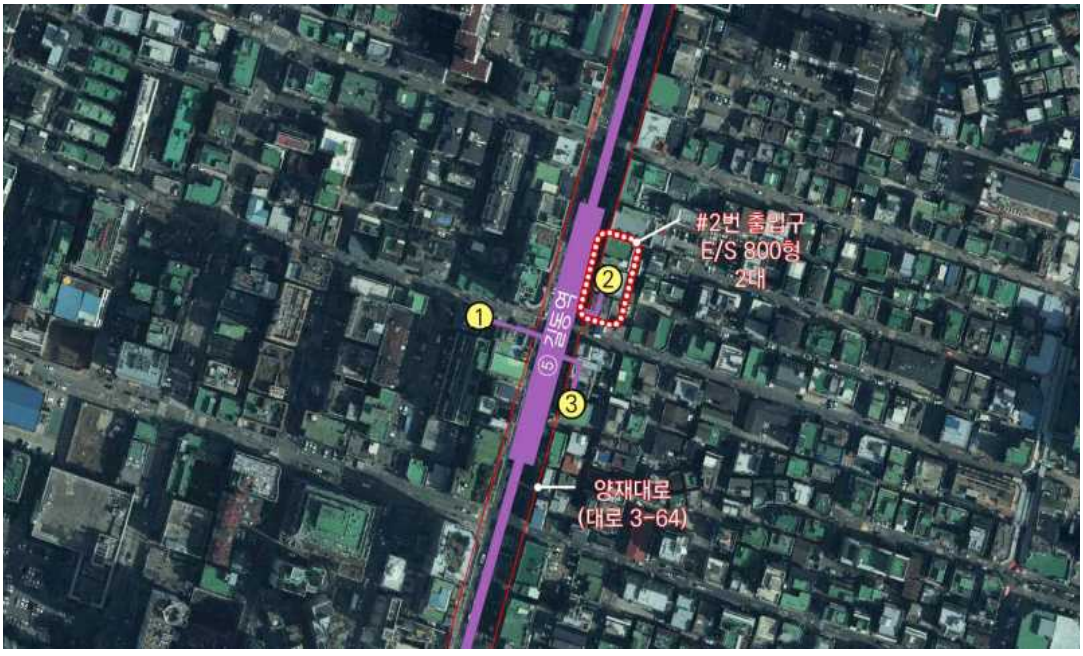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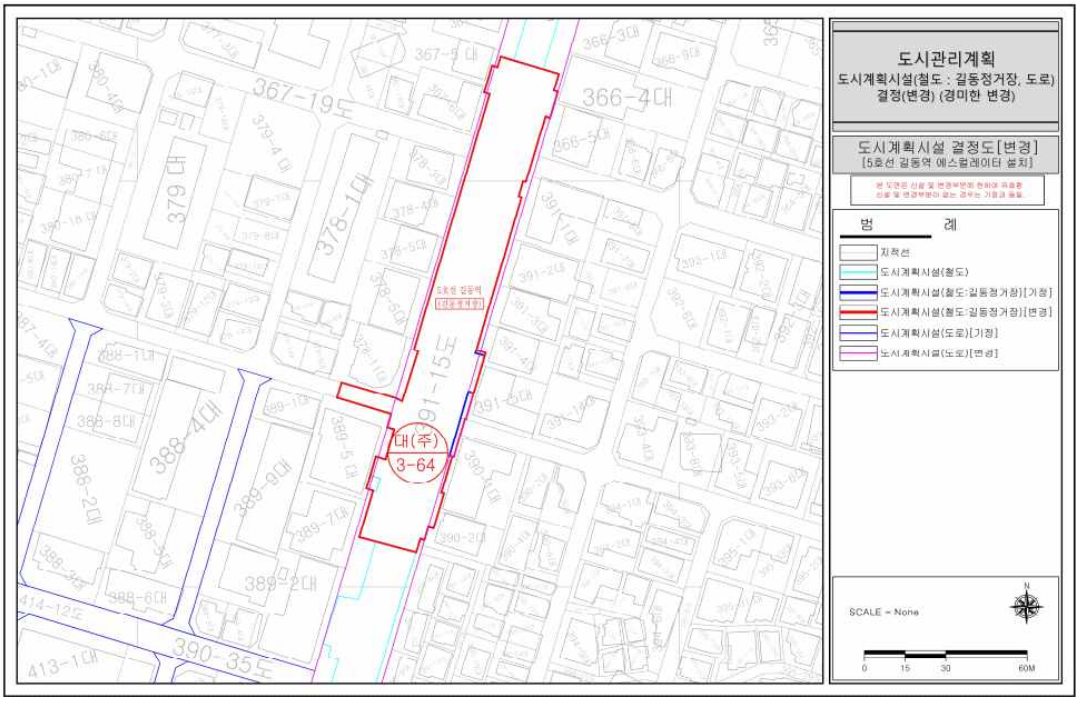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96호(2001.1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29호(2021.11.1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일대 추계예술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일대 추계예술대학교에 대하여 2021년 11월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21-629호(2021.11.18.)] 시 건축물배치계획상 2구역 내 신축 및 철거 예정 건축물인 '다목적관, 서별관, 본관'의 건축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학교	대학 (추계예술대학교)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일대	45,680.4	-	45,680.4	서고시 제2001-396호 (2001.12.05.)	

※ 기정 면적 고시근거(45,680.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29호(2021.11.18.)

2)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구 역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①	14,118.0	-	14,118.0	경계조정
		②	12,897.4	-	12,897.4	경계조정
		③	8,603.0	-	8,603.0	변경없음
유 지	외부활동구역	④	3,352.0	-	3,352.0	경계조정

구 역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⑤	4,244.0	-	4,244.0	변경없음
보 존	녹지보존구역	⑥	2,466.0	-	2,466.0	변경없음
합 계			45,680.4	-	45,680.4	

※ ⑥녹지보존구역 총 면적(2,466㎡)은 비오톱 1등급지(686㎡)가 포함된 면적임.

(2) 밀도계획

- 건폐율 계획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추계예술대	제2종일반주거 (7층이하)	44,994.4	44,994.4	60.00	60.00	29.32	29.53	40.00	40.00	

※ 밀도산정기준면적 : 45,680.4㎡(학교전체면적) - 686.0㎡(비오톱1등급지)

- 용적률 계획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추계예술대	제2종일반주거 (7층이하)	44,994.4	44,994.4	200.00	200.00	114.18	113.45	160.00	158.07	

※ 밀도산정기준면적 : 45,680.4㎡(학교전체면적) - 686.0㎡(비오톱1등급지)

- 구역별 용적률 계획

구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14,118.0	14,118.0	200.00	200.00	158.83	158.83	-	-	200.00	200.00	
②	12,897.4	12,897.4	200.00	200.00	142.00	139.46	-	-	200.00	200.00	
③	8,603.0	8,603.0	200.00	200.00	121.02	121.02	-	-	180.00	180.00	
④	3,352.0	3,352.0	200.00	200.00	-	-	-	-	10.00	10.00	
⑤	4,244.0	4,244.0	200.00	200.00	5.28	5.28	-	-	30.00	30.00	
⑥	1,780.0	1,780.0	200.00	200.00	-	-	-	-	-	-	
합계	44,994.4	44,994.4	200.00	200.00	114.18	113.45	-	-	160.00	158.07	

※ ⑥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 : 2,466.0㎡(⑥구역 전체면적) - 686.0㎡(비오톱1등급지)

– 높이 계획(변경 없음)

구역	높 이 (m)		비고
	기 정	변 경	
①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 창조관: 35.4m(8층)이하 [기존건축물]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 창조관: 35.4m(8층)이하 [기존건축물]	
②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다목적관, 서별관 학교 경계부 관리 높이기준 완화
③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④외부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이하	
⑤외부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이하	
⑥녹지	–	–	

(3) 변경 건축물 조서

구역	건물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② 일반 관리 구역	⑰	다목적관	1,003.92	1,039.70	3,218.87	3,642.38	3,218.87	2,593.58	0/4	1/5	신축계획 변경
	③	서별관	904.80	792.18	4,061.55	5,043.96	4,061.55	3,843.37	0/5	2/7	신축계획 변경
	②	본관	1,262.06	1,434.26	5,970.71	6,487.31	5,970.71	6,487.31	0/6	0/6	일부철거 취소
합 계			3,170.78	3,266.14	13,251.13	15,173.65	13,251.13	12,924.26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상세내용은 결정도면에 의함.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1) 및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330-164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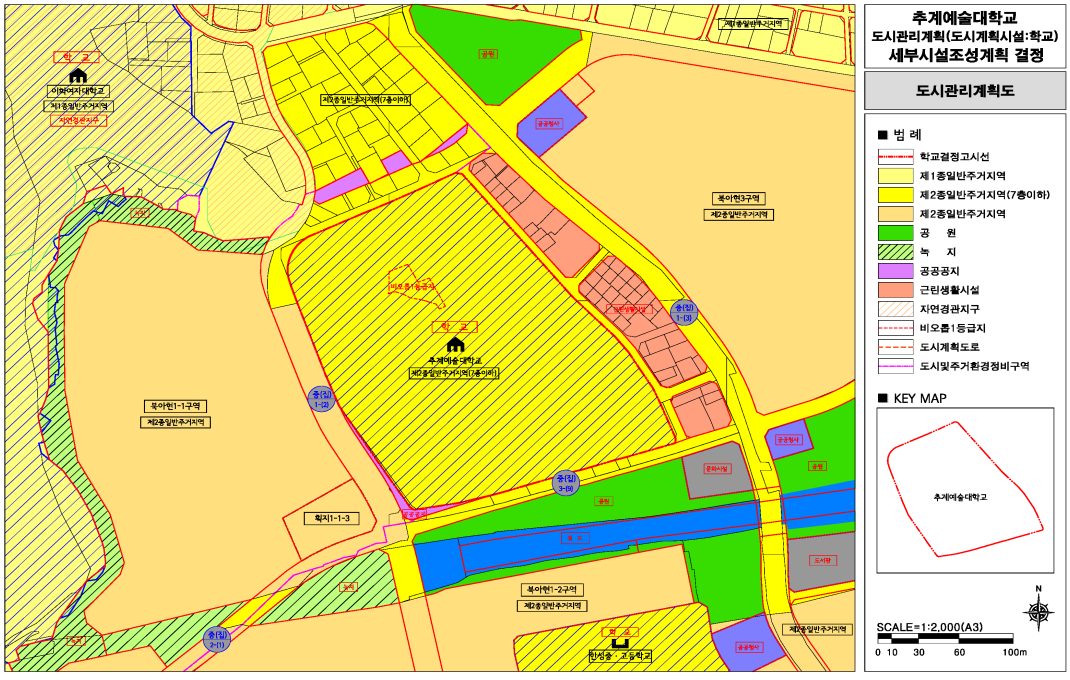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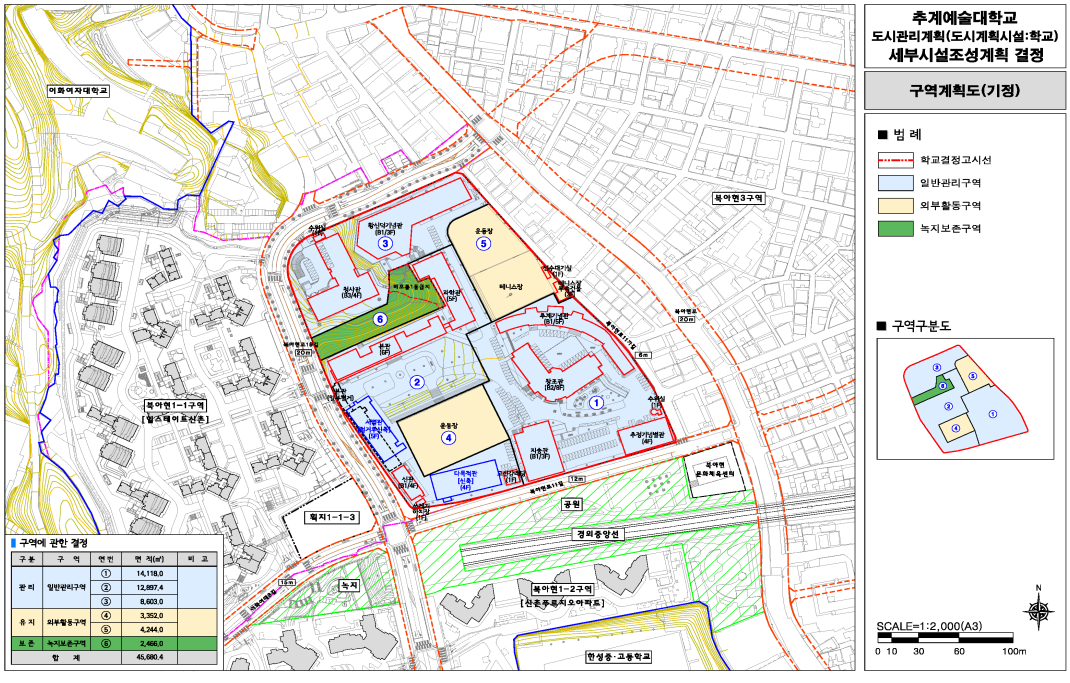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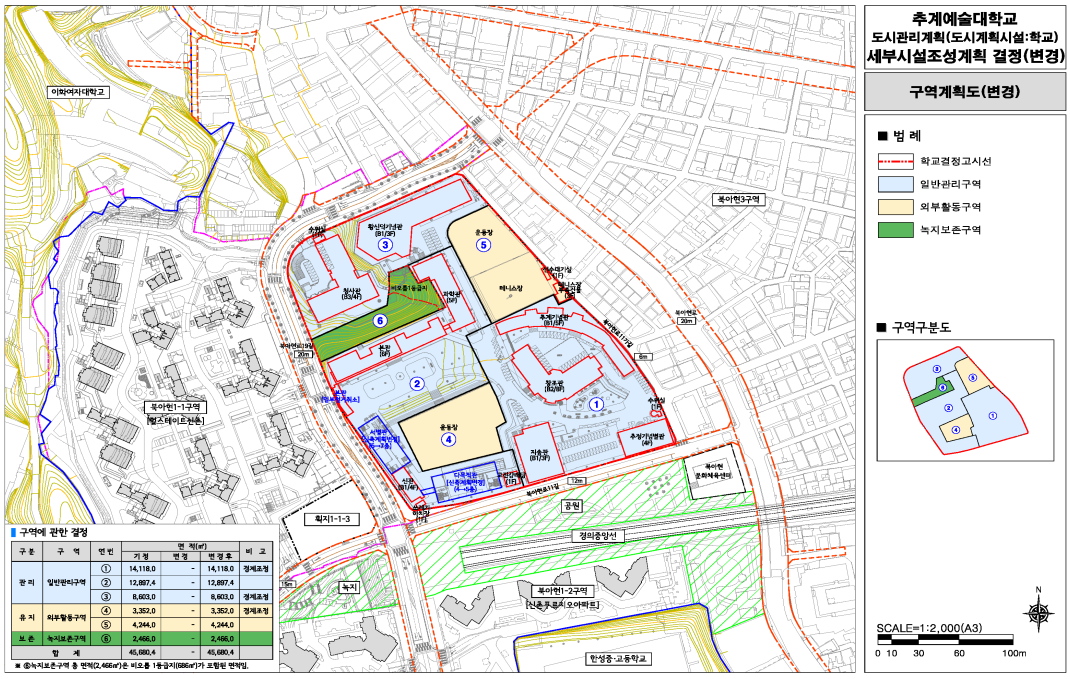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 · 용적률)(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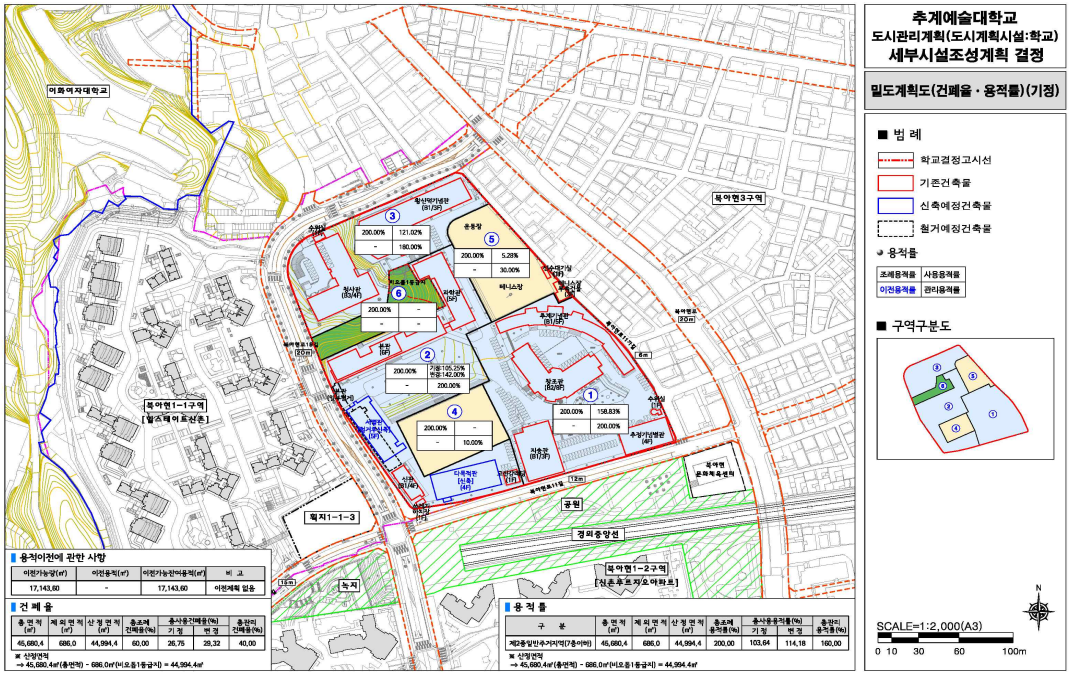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 · 용적률)(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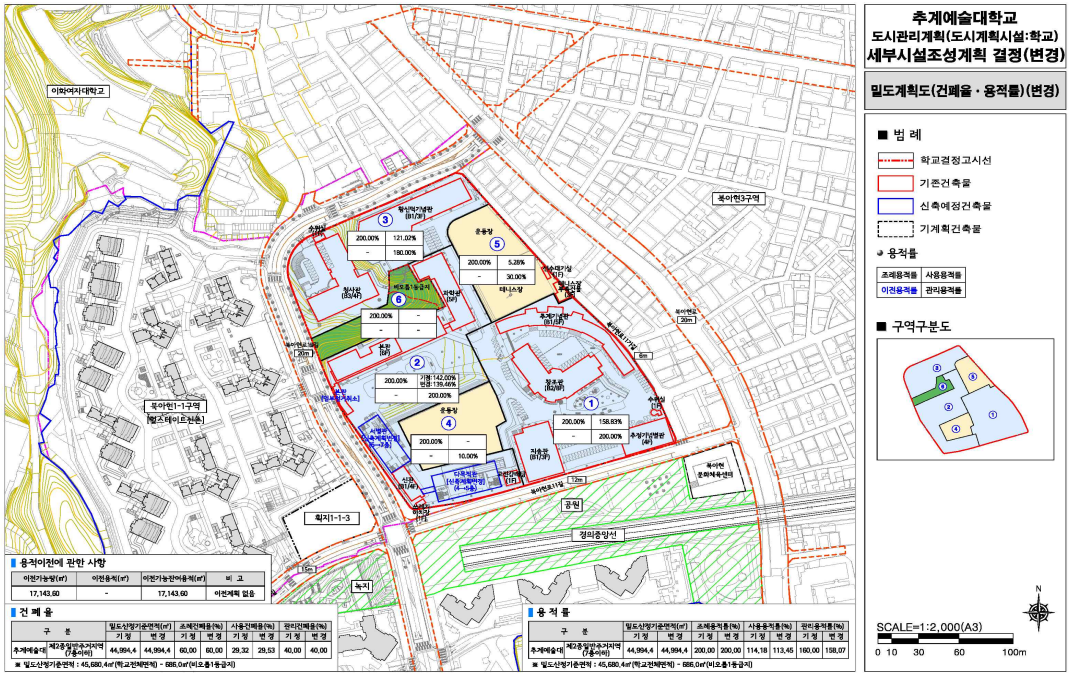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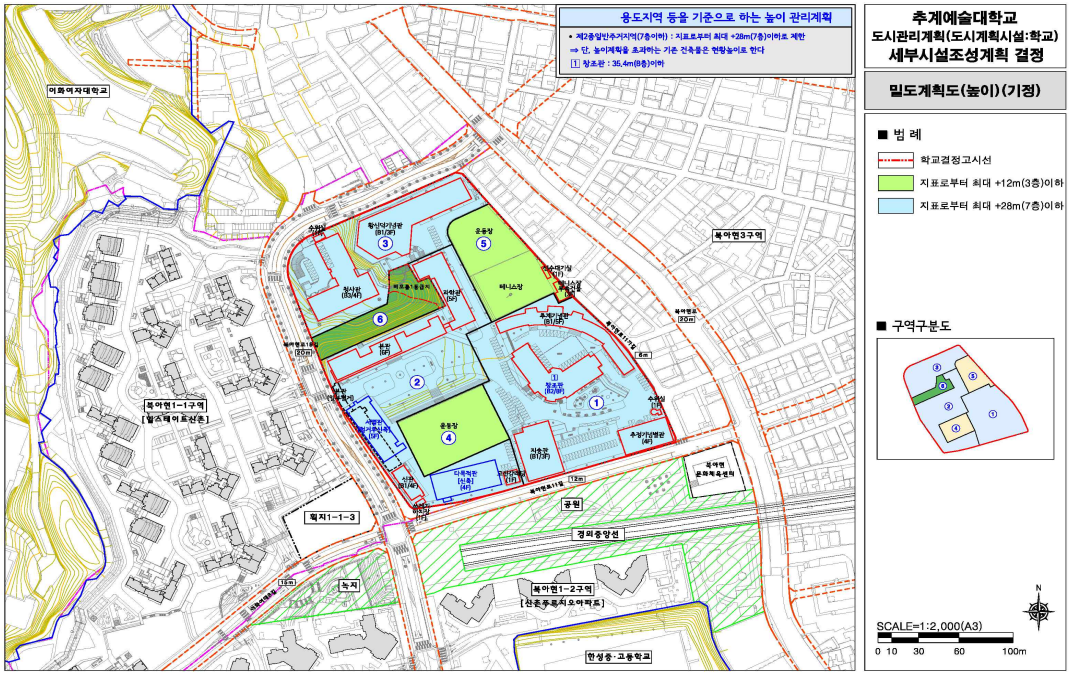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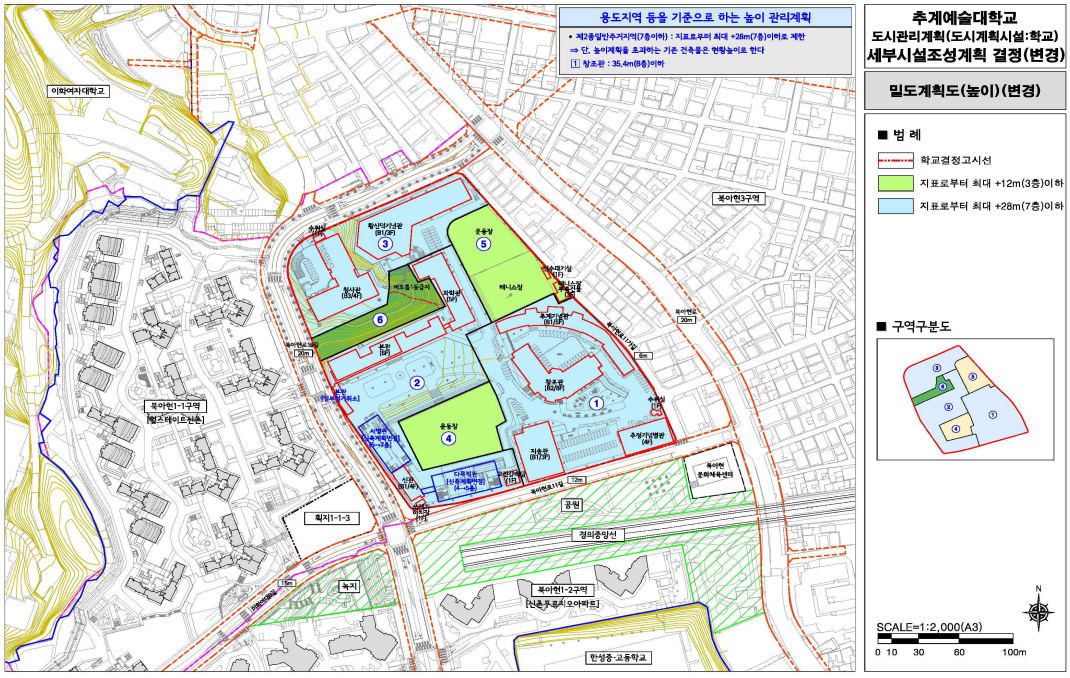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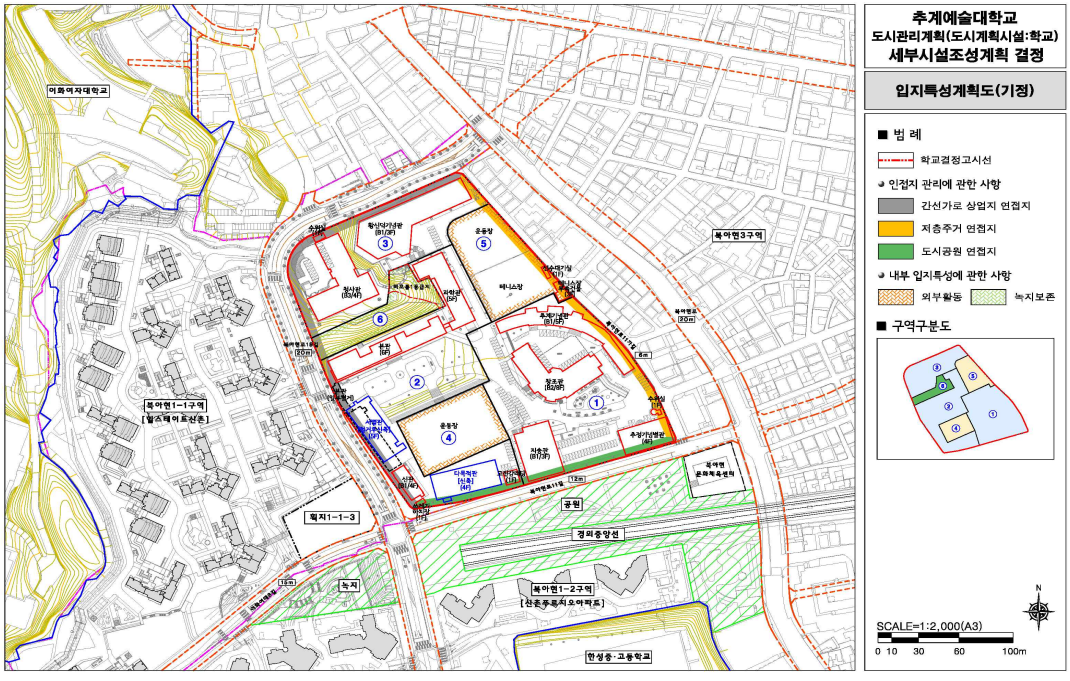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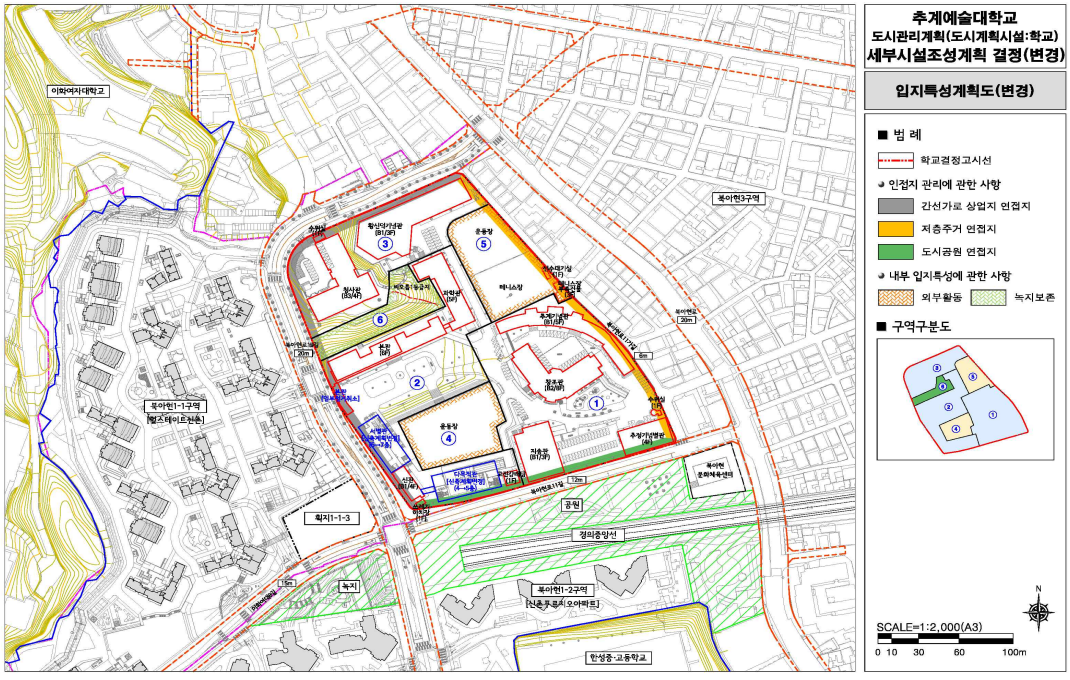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배치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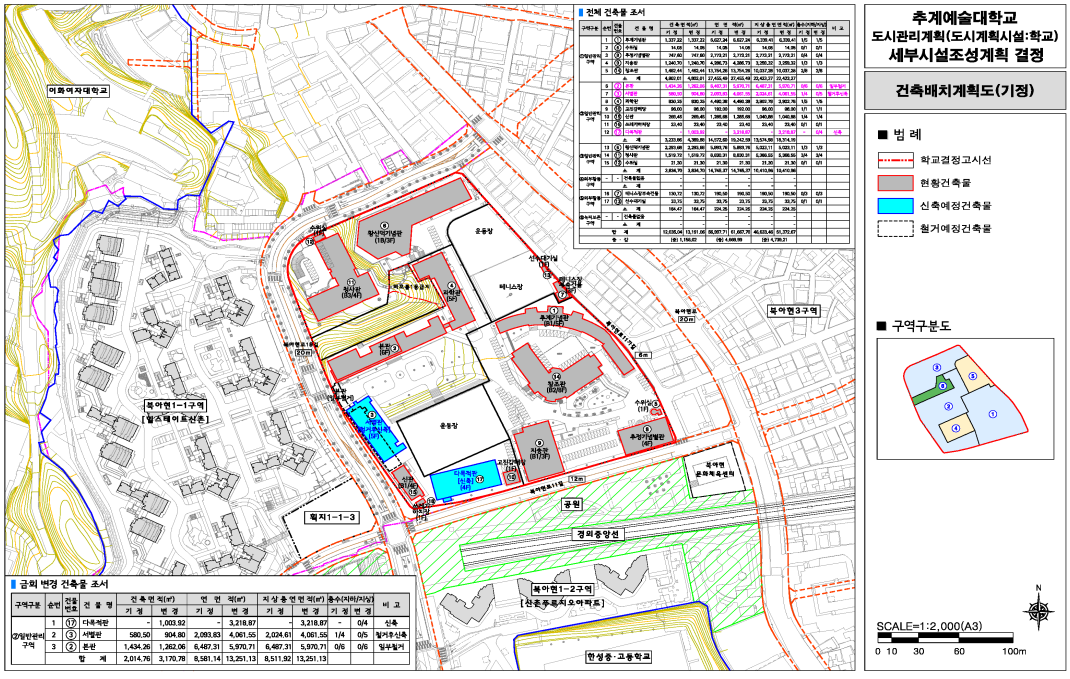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배치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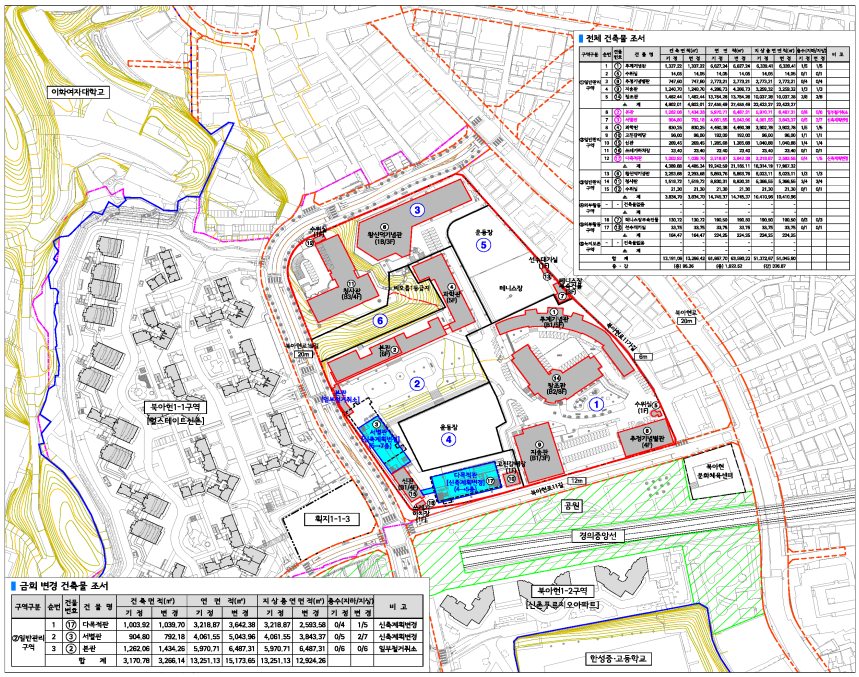

전체 건축물 조서

구분구분	순번	건물번호	건 물 명	건축면적(㎡) 기 정	건축면적(㎡) 변 경	연 면 적(㎡) 기 정	연 면 적(㎡) 변 경	지상층연면적(㎡) 기 정	지상층연면적(㎡) 변 경	층수(지하/지상) 기 정	층수(지하/지상) 변 경	비 고
건물번호구역	1	①	주체구조물	1,327.22	1,327.22	6,627.34	6,627.34	6,339.40	6,339.40	1/5	1/5	
	2	②	수위실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0/1	0/1	
	3	③	추모기념탑문	747.60	747.60	2,773.21	2,773.21	2,773.21	2,773.21	0/4	0/4	
	4	④	다용도	1,240.70	1,240.70	4,386.72	4,386.72	3,358.32	3,358.32	1/2	1/2	
	5	⑤	창호점	1,482.44	1,482.44	13,194.38	13,194.38	13,037.38	13,037.38	2/3	2/3	
	A 계			4,883.61	4,883.61	31,666.48	31,666.48	25,522.31	25,522.31			
건물번호구역	8	⑥	운동	1,656.68	1,656.68	3,313.36	3,313.36	3,313.36	3,313.36	0/2	0/2	신축계획
	7	⑦	체육관	934.25	782.25	4,001.85	3,849.85	4,001.85	3,849.85	0/2	0/2	신축계획
	8	⑧	교직원	836.25	836.25	4,466.98	4,466.98	3,953.76	3,953.76	1/5	1/5	
	9	⑨	고직원대실	86.00	86.00	102.00	102.00	86.00	86.00	1/1	1/1	
	10	⑩	식당	355.40	355.40	1,355.08	1,355.08	1,040.80	1,040.80	1/4	1/4	
	11	⑪	보육기관시설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0/1	0/1	
	12	⑫	다용도실	1,240.00	1,240.00	2,214.00	2,214.00	2,214.00	2,214.00	0/1	0/1	신축
	A 계			4,599.00	4,485.34	15,343.08	21,156.11	14,334.19	17,991.33			
건물번호구역	13	⑬	창의인재관	3,303.68	3,293.68	5,893.76	5,883.76	5,033.11	5,033.11	1/3	1/3	
	14	⑭	창의관	1,518.72	1,518.72	8,830.31	8,830.31	5,366.66	5,366.66	3/4	3/4	
	15	⑮	수위실	21.30	21.30	21.30	21.30	21.30	21.30	0/1	0/1	
	A 계			3,809.70	3,834.70	14,745.37	14,410.06	10,421.06	10,421.06			
문화시설물구역	-	-	근린생활시설	-	-	-	-	-	-	-	-	
	A 계			-	-	-	-	-	-			
문화시설물구역	16	⑯	메니스장/체육관	130.72	130.72	180.50	180.50	180.50	180.50	0/2	0/2	
	17	⑰	전시관기념	33.75	33.75	33.75	33.75	33.75	33.75	0/1	0/1	
	A 계			164.47	164.47	224.25	224.25	224.25	224.25			
문화시설구역	-	-	근린생활시설	-	-	-	-	-	-	-	-	
	A 계			-	-	-	-	-	-			
합 계				13,191.06	13,386.42	61,987.31	63,385.23	51,372.67	51,941.80			
총 - 상				(용) 86.26		(용) 1,033.12		(용) 206.87				

금회 변경 건축물 조서

구역구분	순번	건물번호	건 물 명	건축면적(㎡) 기 정	건축면적(㎡) 변 경	연 면 적(㎡) 기 정	연 면 적(㎡) 변 경	지상층연면적(㎡) 기 정	지상층연면적(㎡) 변 경	층수(지하/지상) 기 정	층수(지하/지상) 변 경	비 고
건물번호구역	1	⑰	다목적관	1,003.92	1,039.70	3,218.87	3,642.38	3,218.87	2,583.58	0/4	1/5	신축계획변경
	2	⑬	서별관	904.80	792.18	4,061.55	5,043.96	4,061.55	3,843.37	0/5	2/7	신축계획변경
	3	②	본관	1,262.06	1,434.36	5,970.71	6,487.31	5,970.71	6,487.31	0/6	0/6	일부철거위소
합 계				3,170.78	3,266.14	13,251.13	15,173.65	13,251.13	12,9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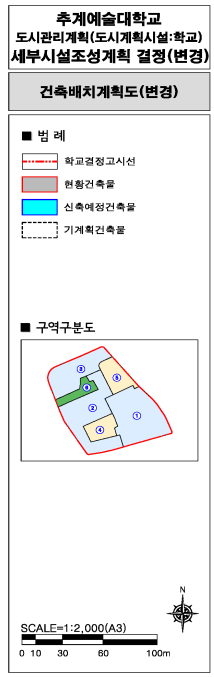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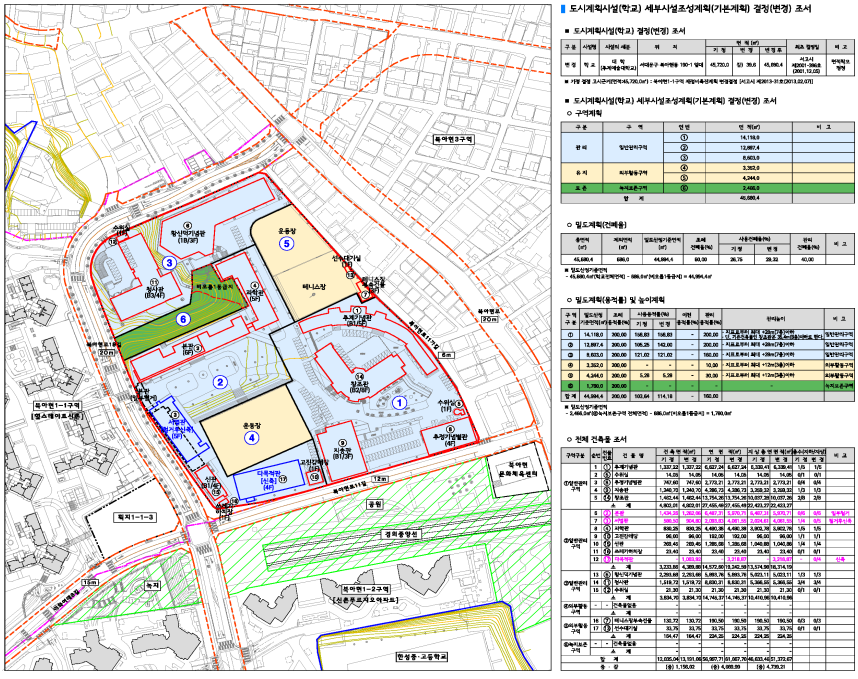
목아먼1-1구역
[웰스테이트찬홈]
목아먼1-2구역
[신촌푸르지오아파트]
목아먼2구역
목아먼3구역
목아먼 문화복생센터
공원
정의중앙선
한성중·고등학교
획지1-1-3
운동장
체육관
메니스장
추가기념관
창의인재관
수위실
목아먼로
목아먼1길
목아먼3길
목아먼4길
목아먼5길
목아먼6길
목아먼7길
목아먼8길
목아먼9길
목아먼10길
목아먼11길
목아먼12길
목아먼13길
목아먼14길
목아먼15길
목아먼16길
목아먼17길
목아먼18길
목아먼19길
목아먼20길
목아먼21길
목아먼22길
목아먼23길
목아먼24길
목아먼25길
목아먼26길
목아먼27길
목아먼28길
목아먼29길
목아먼30길
목아먼31길
목아먼32길
목아먼33길
목아먼34길
목아먼35길
목아먼36길
목아먼37길
목아먼38길
목아먼39길
목아먼40길
목아먼41길
목아먼42길
목아먼43길
목아먼44길
목아먼45길
목아먼46길
목아먼47길
목아먼48길
목아먼49길
목아먼50길
목아먼51길
목아먼52길
목아먼53길
목아먼54길
목아먼55길
목아먼56길
목아먼57길
목아먼58길
목아먼59길
목아먼60길
목아먼61길
목아먼62길
목아먼63길
목아먼64길
목아먼65길
목아먼66길
목아먼67길
목아먼68길
목아먼69길
목아먼70길
목아먼71길
목아먼72길
목아먼73길
목아먼74길
목아먼75길
목아먼76길
목아먼77길
목아먼78길
목아먼79길
목아먼80길
목아먼81길
목아먼82길
목아먼83길
목아먼84길
목아먼85길
목아먼86길
목아먼87길
목아먼88길
목아먼89길
목아먼90길
목아먼91길
목아먼92길
목아먼93길
목아먼94길
목아먼95길
목아먼96길
목아먼97길
목아먼98길
목아먼99길
목아먼100길
목아먼101길
목아먼102길
목아먼103길
목아먼104길
목아먼105길
목아먼106길
목아먼107길
목아먼108길
목아먼109길
목아먼110길
목아먼111길
목아먼112길
목아먼113길
목아먼114길
목아먼115길
목아먼116길
목아먼117길
목아먼118길
목아먼119길
목아먼120길
목아먼121길
목아먼122길
목아먼123길
목아먼124길
목아먼125길
목아먼126길
목아먼127길
목아먼128길
목아먼129길
목아먼130길
목아먼131길
목아먼132길
목아먼133길
목아먼134길
목아먼135길
목아먼136길
목아먼137길
목아먼138길
목아먼139길
목아먼140길
목아먼141길
목아먼142길
목아먼143길
목아먼144길
목아먼145길
목아먼146길
목아먼147길
목아먼148길
목아먼149길
목아먼150길
목아먼151길
목아먼152길
목아먼153길
목아먼154길
목아먼155길
목아먼156길
목아먼157길
목아먼158길
목아먼159길
목아먼160길
목아먼161길
목아먼162길
목아먼163길
목아먼164길
목아먼165길
목아먼166길
목아먼167길
목아먼168길
목아먼169길
목아먼170길
목아먼171길
목아먼172길
목아먼173길
목아먼174길
목아먼175길
목아먼176길
목아먼177길
목아먼178길
목아먼179길
목아먼180길
목아먼181길
목아먼182길
목아먼183길
목아먼184길
목아먼185길
목아먼186길
목아먼187길
목아먼188길
목아먼189길
목아먼190길
목아먼191길
목아먼192길
목아먼193길
목아먼194길
목아먼195길
목아먼196길
목아먼197길
목아먼198길
목아먼199길
목아먼200길
목아먼201길
목아먼202길
목아먼203길
목아먼204길
목아먼205길
목아먼206길
목아먼207길
목아먼208길
목아먼209길
목아먼210길
목아먼211길
목아먼212길
목아먼213길
목아먼214길
목아먼215길
목아먼216길
목아먼217길
목아먼218길
목아먼219길
목아먼220길
목아먼221길
목아먼222길
목아먼223길
목아먼224길
목아먼225길
목아먼226길
목아먼227길
목아먼228길
목아먼229길
목아먼230길
목아먼231길
목아먼232길
목아먼233길
목아먼234길
목아먼235길
목아먼236길
목아먼237길
목아먼238길
목아먼239길
목아먼240길
목아먼241길
목아먼242길
목아먼243길
목아먼244길
목아먼245길
목아먼246길
목아먼247길
목아먼248길
목아먼249길
목아먼250길
목아먼251길
목아먼252길
목아먼253길
목아먼254길
목아먼255길
목아먼256길
목아먼257길
목아먼258길
목아먼259길
목아먼260길
목아먼261길
목아먼262길
목아먼263길
목아먼264길
목아먼265길
목아먼266길
목아먼267길
목아먼268길
목아먼269길
목아먼270길
목아먼271길
목아먼272길
목아먼273길
목아먼274길
목아먼275길
목아먼276길
목아먼277길
목아먼278길
목아먼279길
목아먼280길
목아먼281길
목아먼282길
목아먼283길
목아먼284길
목아먼285길
목아먼286길
목아먼287길
목아먼288길
목아먼289길
목아먼290길
목아먼291길
목아먼292길
목아먼293길
목아먼294길
목아먼295길
목아먼296길
목아먼297길
목아먼298길
목아먼299길
목아먼300길
목아먼301길
목아먼302길
목아먼303길
목아먼304길
목아먼305길
목아먼306길
목아먼307길
목아먼308길
목아먼309길
목아먼310길
목아먼311길
목아먼312길
목아먼313길
목아먼314길
목아먼315길
목아먼316길
목아먼317길
목아먼318길
목아먼319길
목아먼320길
목아먼321길
목아먼322길
목아먼323길
목아먼324길
목아먼325길
목아먼326길
목아먼327길
목아먼328길
목아먼329길
목아먼330길
목아먼331길
목아먼332길
목아먼333길
목아먼334길
목아먼335길
목아먼336길
목아먼337길
목아먼338길
목아먼339길
목아먼340길
목아먼341길
목아먼342길
목아먼343길
목아먼344길
목아먼345길
목아먼346길
목아먼347길
목아먼348길
목아먼349길
목아먼350길
목아먼351길
목아먼352길
목아먼353길
목아먼354길
목아먼355길
목아먼356길
목아먼357길
목아먼358길
목아먼359길
목아먼360길
목아먼361길
목아먼362길
목아먼363길
목아먼364길
목아먼365길
목아먼366길
목아먼367길
목아먼368길
목아먼369길
목아먼370길
목아먼371길
목아먼372길
목아먼373길
목아먼374길
목아먼375길
목아먼376길
목아먼377길
목아먼378길
목아먼379길
목아먼380길
목아먼381길
목아먼382길
목아먼383길
목아먼384길
목아먼385길
목아먼386길
목아먼387길
목아먼388길
목아먼389길
목아먼390길
목아먼391길
목아먼392길
목아먼393길
목아먼394길
목아먼395길
목아먼396길
목아먼397길
목아먼398길
목아먼399길
목아먼400길
목아먼401길
목아먼402길
목아먼403길
목아먼404길
목아먼405길
목아먼406길
목아먼407길
목아먼408길
목아먼409길
목아먼410길
목아먼411길
목아먼412길
목아먼413길
목아먼414길
목아먼415길
목아먼416길
목아먼417길
목아먼418길
목아먼419길
목아먼420길
목아먼421길
목아먼422길
목아먼423길
목아먼424길
목아먼425길
목아먼426길
목아먼427길
목아먼428길
목아먼429길
목아먼430길
목아먼431길
목아먼432길
목아먼433길
목아먼434길
목아먼435길
목아먼436길
목아먼437길
목아먼438길
목아먼439길
목아먼440길
목아먼441길
목아먼442길
목아먼443길
목아먼444길
목아먼445길
목아먼446길
목아먼447길
목아먼448길
목아먼449길
목아먼450길
목아먼451길
목아먼452길
목아먼453길
목아먼454길
목아먼455길
목아먼456길
목아먼457길
목아먼458길
목아먼459길
목아먼460길
목아먼461길
목아먼462길
목아먼463길
목아먼464길
목아먼465길
목아먼466길
목아먼467길
목아먼468길
목아먼469길
목아먼470길
목아먼471길
목아먼472길
목아먼473길
목아먼474길
목아먼475길
목아먼476길
목아먼477길
목아먼478길
목아먼479길
목아먼480길
목아먼481길
목아먼482길
목아먼483길
목아먼484길
목아먼485길
목아먼486길
목아먼487길
목아먼488길
목아먼489길
목아먼490길
목아먼491길
목아먼492길
목아먼493길
목아먼494길
목아먼495길
목아먼496길
목아먼497길
목아먼498길
목아먼499길
목아먼500길
목아먼501길
목아먼502길
목아먼503길
목아먼504길
목아먼505길
목아먼506길
목아먼507길
목아먼508길
목아먼509길
목아먼510길
목아먼511길
목아먼512길
목아먼513길
목아먼514길
목아먼515길
목아먼516길
목아먼517길
목아먼518길
목아먼519길
목아먼520길
목아먼521길
목아먼522길
목아먼523길
목아먼524길
목아먼525길
목아먼526길
목아먼527길
목아먼528길
목아먼529길
목아먼530길
목아먼531길
목아먼532길
목아먼533길
목아먼534길
목아먼535길
목아먼536길
목아먼537길
목아먼538길
목아먼539길
목아먼540길
목아먼541길
목아먼542길
목아먼543길
목아먼544길
목아먼545길
목아먼546길
목아먼547길
목아먼548길
목아먼549길
목아먼550길
목아먼551길
목아먼552길
목아먼553길
목아먼554길
목아먼555길
목아먼556길
목아먼557길
목아먼558길
목아먼559길
목아먼560길
목아먼561길
목아먼562길
목아먼563길
목아먼564길
목아먼565길
목아먼566길
목아먼567길
목아먼568길
목아먼569길
목아먼570길
목아먼571길
목아먼572길
목아먼573길
목아먼574길
목아먼575길
목아먼576길
목아먼577길
목아먼578길
목아먼579길
목아먼580길
목아먼581길
목아먼582길
목아먼583길
목아먼584길
목아먼585길
목아먼586길
목아먼587길
목아먼588길
목아먼589길
목아먼590길
목아먼591길
목아먼592길
목아먼593길
목아먼594길
목아먼595길
목아먼596길
목아먼597길
목아먼598길
목아먼599길
목아먼600길
목아먼601길
목아먼602길
목아먼603길
목아먼604길
목아먼605길
목아먼606길
목아먼607길
목아먼608길
목아먼609길
목아먼610길
목아먼611길
목아먼612길
목아먼613길
목아먼614길
목아먼615길
목아먼616길
목아먼617길
목아먼618길
목아먼619길
목아먼620길
목아먼621길
목아먼622길
목아먼623길
목아먼624길
목아먼625길
목아먼626길
목아먼627길
목아먼628길
목아먼629길
목아먼630길
목아먼631길
목아먼632길
목아먼633길
목아먼634길
목아먼635길
목아먼636길
목아먼637길
목아먼638길
목아먼639길
목아먼640길
목아먼641길
목아먼642길
목아먼643길
목아먼644길
목아먼645길
목아먼646길
목아먼647길
목아먼648길
목아먼649길
목아먼650길
목아먼651길
목아먼652길
목아먼653길
목아먼654길
목아먼655길
목아먼656길
목아먼657길
목아먼658길
목아먼659길
목아먼660길
목아먼661길
목아먼662길
목아먼663길
목아먼664길
목아먼665길
목아먼666길
목아먼667길
목아먼668길
목아먼669길
목아먼670길
목아먼671길
목아먼672길
목아먼673길
목아먼674길
목아먼675길
목아먼676길
목아먼677길
목아먼678길
목아먼679길
목아먼680길
목아먼681길
목아먼682길
목아먼683길
목아먼684길
목아먼685길
목아먼686길
목아먼687길
목아먼688길
목아먼689길
목아먼690길
목아먼691길
목아먼692길
목아먼693길
목아먼694길
목아먼695길
목아먼696길
목아먼697길
목아먼698길
목아먼699길
목아먼700길
목아먼701길
목아먼702길
목아먼703길
목아먼704길
목아먼705길
목아먼706길
목아먼707길
목아먼708길
목아먼709길
목아먼710길
목아먼711길
목아먼712길
목아먼713길
목아먼714길
목아먼715길
목아먼716길
목아먼717길
목아먼718길
목아먼719길
목아먼720길
목아먼721길
목아먼722길
목아먼723길
목아먼724길
목아먼725길
목아먼726길
목아먼727길
목아먼728길
목아먼729길
목아먼730길
목아먼731길
목아먼732길
목아먼733길
목아먼734길
목아먼735길
목아먼736길
목아먼737길
목아먼738길
목아먼739길
목아먼740길
목아먼741길
목아먼742길
목아먼743길
목아먼744길
목아먼745길
목아먼746길
목아먼747길
목아먼748길
목아먼749길
목아먼750길
목아먼751길
목아먼752길
목아먼753길
목아먼754길
목아먼755길
목아먼756길
목아먼757길
목아먼758길
목아먼759길
목아먼760길
목아먼761길
목아먼762길
목아먼763길
목아먼764길
목아먼765길
목아먼766길
목아먼767길
목아먼768길
목아먼769길
목아먼770길
목아먼771길
목아먼772길
목아먼773길
목아먼774길
목아먼775길
목아먼776길
목아먼777길
목아먼778길
목아먼779길
목아먼780길
목아먼781길
목아먼782길
목아먼783길
목아먼784길
목아먼785길
목아먼786길
목아먼787길
목아먼788길
목아먼789길
목아먼790길
목아먼791길
목아먼792길
목아먼793길
목아먼794길
목아먼795길
목아먼796길
목아먼797길
목아먼798길
목아먼799길
목아먼800길
목아먼801길
목아먼802길
목아먼803길
목아먼804길
목아먼805길
목아먼806길
목아먼807길
목아먼808길
목아먼809길
목아먼810길
목아먼811길
목아먼812길
목아먼813길
목아먼814길
목아먼815길
목아먼816길
목아먼817길
목아먼818길
목아먼819길
목아먼820길
목아먼821길
목아먼822길
목아먼823길
목아먼824길
목아먼825길
목아먼826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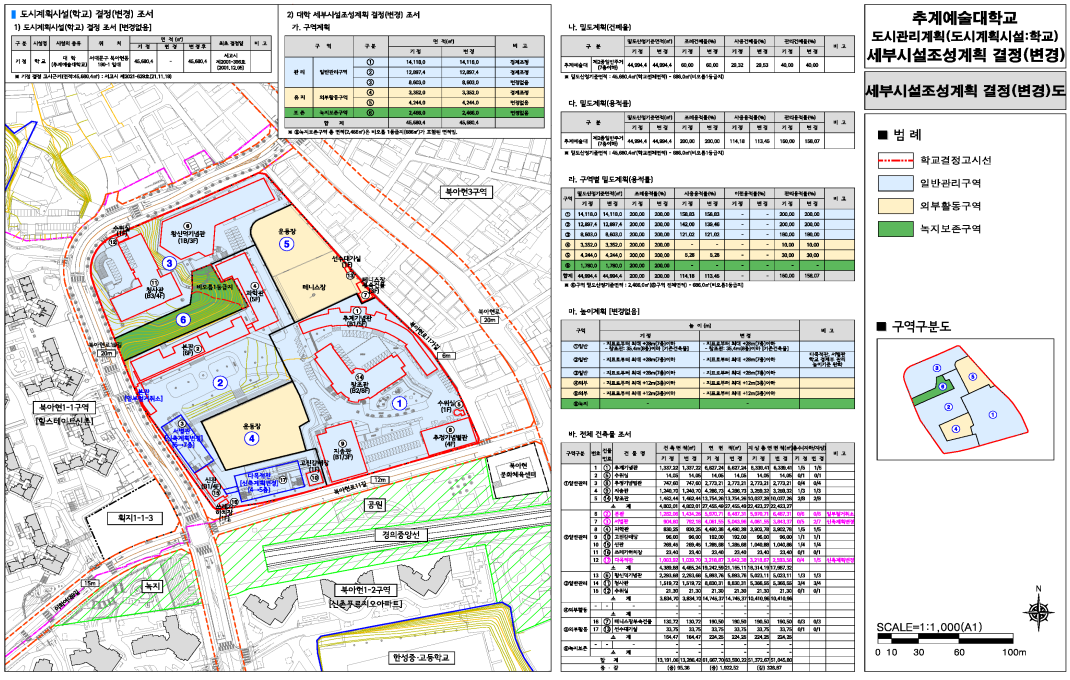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2호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 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4호(2007.3.22.)로 정비구역(가재울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대문구 고시 제2007-92호(2007.9.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5호(2014.4.3.)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 관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03호(2024.10.4.)로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 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열람 공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 :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건립)사업
3) 사업시행지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3,486.8㎡(지목: 대)
- 건축규모 : 9,109㎡(지하1층/지상5층)
-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5) 공사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 2024년 8월 ~ 2027년 2월(착공일로부터 30개월)

나. 도서 및 서류 비치 : 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02-2133-422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3호

강북구 번동3지역 (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5호(2023.12.28.)’로 고시한 ‘번동3지역(번동 411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번동3지역(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 치	관리계획의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79,517.0㎡	전체 : 450동 노후·불량 : 388동(86.2%)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 결정 조서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동3지역(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79,517.0	-	79,517.0	변경없음

2)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명칭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번동3지역(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79,517.0㎡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79,517.0	100.0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계		65,325.7	82.2	
		A1	사업추진구역A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023.7	20.2	
		A2	사업추진구역A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2,542.6	15.8	
		A3	사업추진구역A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9,163.0	11.5	
		A4	사업추진구역A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2,299.7	15.5	
		A5	사업추진구역A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350.8	9.2	
		A6	사업추진구역A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945.9	1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3,048.0	3.8	
		-	도로	2,024.9	2.5	
		C1	소공원	1,023.1	1.3	
자율정비구역		소계		11,143.3	14.0	
		B1	번동 443-81	1,900.7	2.4	
		B2	번동 443-6	2,657.4	3.3	
		도로		6,585.2	8.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A6는 향후 사업추진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 때 관리계획 변경 필요

(단위 : ㎡)

구분	합계	획지	정비기반시설		
			소계	도로	공원
합계	68,373.7	65,325.7	3,048.0	2,024.9	1,023.1
A1	17,106.0	16,023.7	1,082.3	1,082.3	-
A2	14,071.5	12,542.6	1,528.9	505.8	1,023.1
A3	9,327.6	9,163.0	164.6	164.6	-
A4	12,393.0	12,299.7	93.3	93.3	-
A5	7,389.7	7,350.8	38.9	38.9	-
A6	8,085.9	7,945.9	140.0	140.0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조성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21	4.0	국지도로	60	번1동 443-98	번1동 443-10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1996-354호	-
폐지	소로	3	22	4.0	국지도로	44	번1동 443-24	번1동 443-2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1996-354호	-
기정	소로	2	나	8.0	국지도로	162	번1동 443-28	번1동 443-10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43호	-
변경	소로	2	나	9.0	국지도로	162	번1동 443-28	번1동 443-106	일반도로	-	-
기정	-	-	-	15.0	국지도로	-	-	-	-	-	-
변경	중로	2	(1)	15.0~16.0	국지도로	280	미아동 산1-2	번동 446-14	간선도로	-	-
기정	-	-	-	7.0	국지도로	-	-	-	-	-	-
변경	소로	1	(1)	10.0	국지도로	153	번동 414-25	번동 413-1	일반도로	-	-
기정	-	-	-	8.0	국지도로	-	-	-	-	-	-
변경	소로	2	(1)	9.0	국지도로	190	번동 443-137	번동 443-13	일반도로	-	-
기정	-	-	-	6.0	국지도로	-	-	-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2	(2)	8.0	국지도로	240	번동 413-2	번동 416-80	일반 도로	-	-
기정	-	-	-	8.0	국지도로	-	-	-	-	-	-
변경	소로	2	(3)	9.0	국지도로	132	번동 411-52	번동 411-17	일반 도로	-	-
기정	-	-	-	4.0	국지도로	-	-	-	-	-	-
변경	소로	3	(1)	6.0	국지도로	65	번동 416-90	번동 416-8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	4.0	국지도로	75	번동 415-36	번동 417-71	일반 도로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공원

•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번동 414-1	-	증)1,023.1	1,023.1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원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공원 계획	· 공원 신규 설치 - 1,023.1㎡	녹지축 연계 및 부족한 공원의 원활한 기능확충을 위해 공원 신설

3) 공동이용시설

구분		설치기준	비고
1	사업추진구역A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구역내
2	사업추진구역A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3	사업추진구역A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구분		설치기준	비고
4	사업추진구역A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5	사업추진구역A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6	사업추진구역A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계획(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허용구간	• 대상지 내 한천로129길, 오패산로67길, 한천로123길을 통해 차량 진출입구 설치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인 오패산로, 덕릉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기타사항	• 한천로123가길(폐도)부분 공공보행통로로 조성 - A1구역 ~A2구역 구간 통과 보행로 6m • 오패산로67길,한천로123길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계			65,325.7 (79,517.0)	714	439	-	-	-	-
A1	사업추진구역A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16-48일대	16,023.7	177	125	-	-	-	-
A2	사업추진구역A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13-44	12,542.6	152	84	-	-	-	-
A3	사업추진구역A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44-80일대	9,163.0	100	64	-	-	-	-
A4	사업추진구역A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11-21	12,299.7	104	73	-	-	-	-
A5	사업추진구역A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43-46일대	7,350.8	95	45	-	-	-	-
A6	사업추진구역A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43-4	7,945.9	86	48	-	-	-	-

※ ( )는 모아타운 전체 면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면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계		-	68,373.7	-	-
A1	사업추진구역A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16-48일대	17,106.0	• 대지의 조경(4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44조), 지하층의 설치(53조), 건폐율(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 등	• 대지안의 조경(42조), 건폐율(55조), 용적률(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A2	사업추진구역A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13-44	14,071.5		
A3	사업추진구역A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44-80일대	9,327.6		
A4	사업추진구역A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11-21	12,393.0		
A5	사업추진구역A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43-46일대	7,389.7		
A6	사업추진구역A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43-4일대	8,058.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 구역	A1, A2 A3, A4 A5	건폐율	50%이하	공동주택용지 (제3종일반)
		용적률	기준 250%이하 / 상한 300%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A6	건폐율	60%이하	공동주택용지 (준주거)
		용적률	기준 400%이하 / 상한 400%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자율 정비구역	B1	건폐율	50%이하	공동주택용지 (제3종일반)
		용적률	250%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구분		내용		비고
	B2	건폐율	60%이하	공동주택용지 (준주거)
		용적률	350%이하	
		높이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층수(높이) 적용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사업추진구역A1 사업추진구역A2 사업추진구역A3 사업추진구역A4 사업추진구역A5 사업추진구역A6	유 형	•공동주택 용지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 : 3m • 사업추진구역A4 우측 : 7m • 가로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저층부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동이용시설 배치구간	• 권장시설 - 주민체육시설,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등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관리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을 고려하여, 모아주택 사업시행 구역 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조성	-
통경축 배치구간	• 건축물 배치 계획 시 통경축 확보 • 기존 오패산로67길, 한천로123길의 가로축을 고려하고, 경관 및 조망을 위한 배치 유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2,242	427	-	-
A1	사업추진구역A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16-48일대	532	136	-	-
A2	사업추진구역A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13-44	415	78	-	-
A3	사업추진구역A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44-80일대	309	83	-	-
A4	사업추진구역A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11-21	410	82	-	-
A5	사업추진구역A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43-46일대	248	48	-	-
A6	사업추진구역A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번동 443-4일대	328	-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차.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9,517.0	-	79,517.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4,939.8	감) 43,916.7	1,023.1	1.3	-
제3종일반주거지역	23,852.3	증) 43,916.7	67,769.0	85.2	-
준주거지역	10,724.9	-	10,724.9	13.5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 표시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건축구역	-	증) 74,958.9	74,958.9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7) 및 강북구 주거정비과(☎ 02-901-257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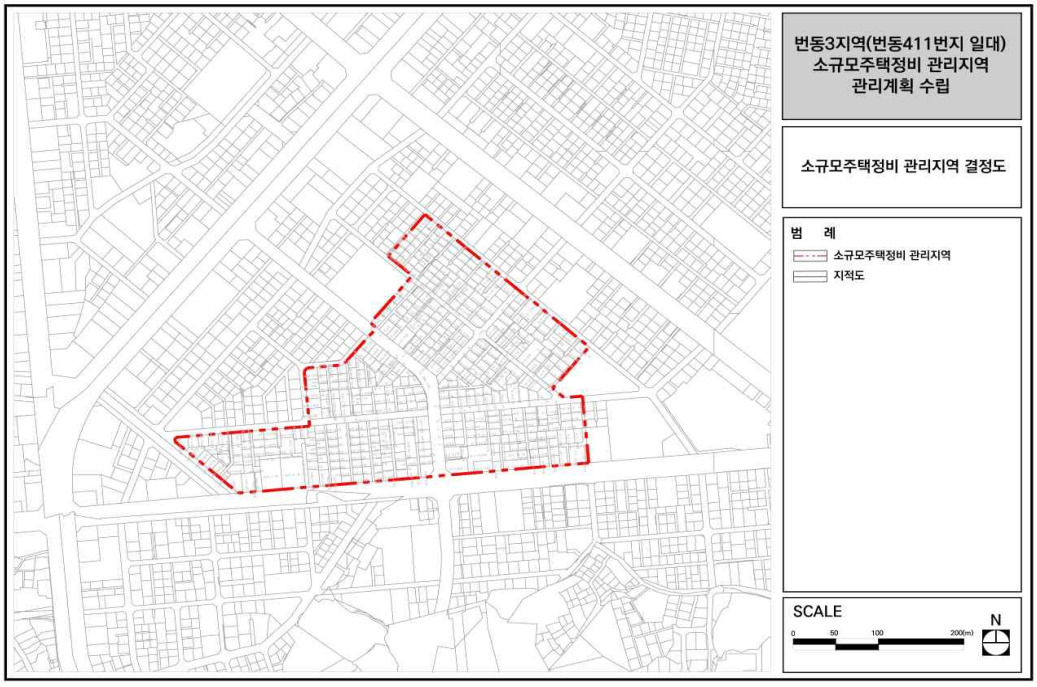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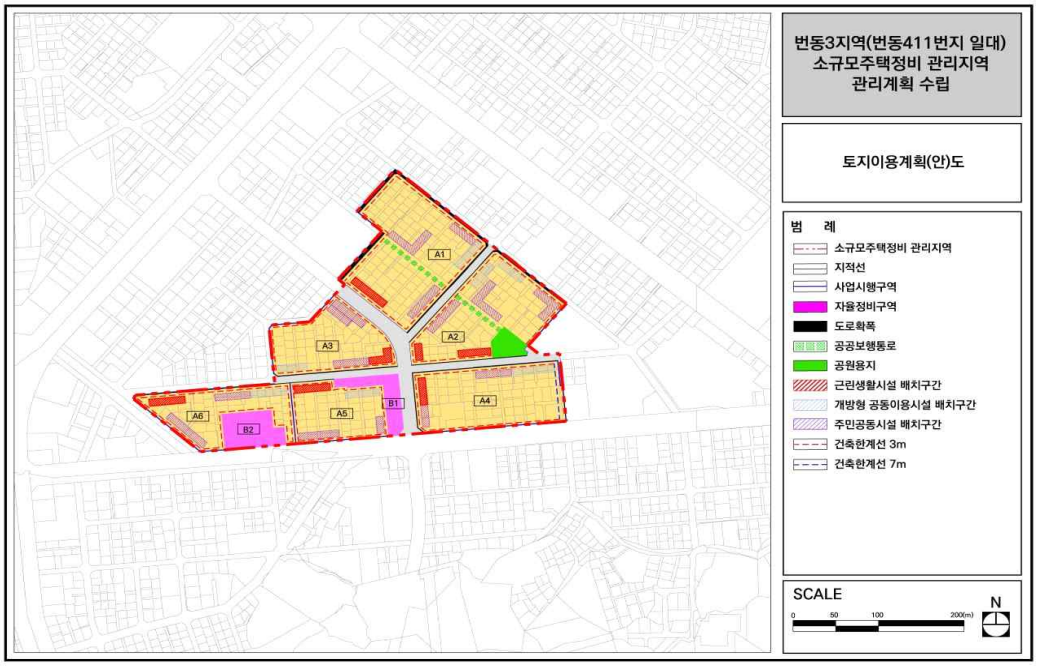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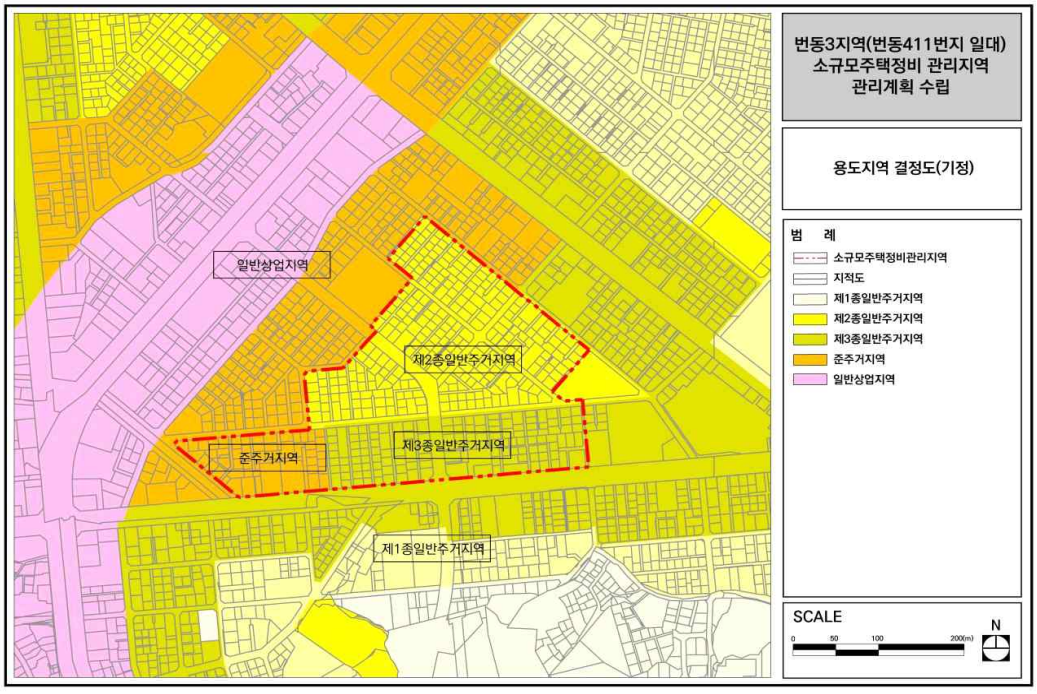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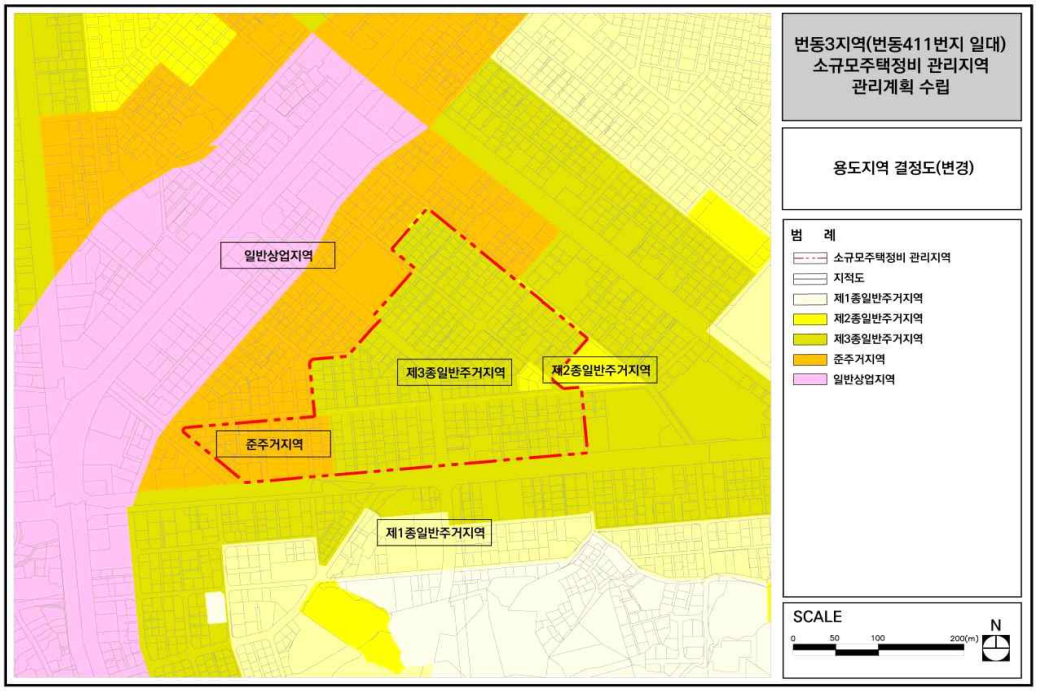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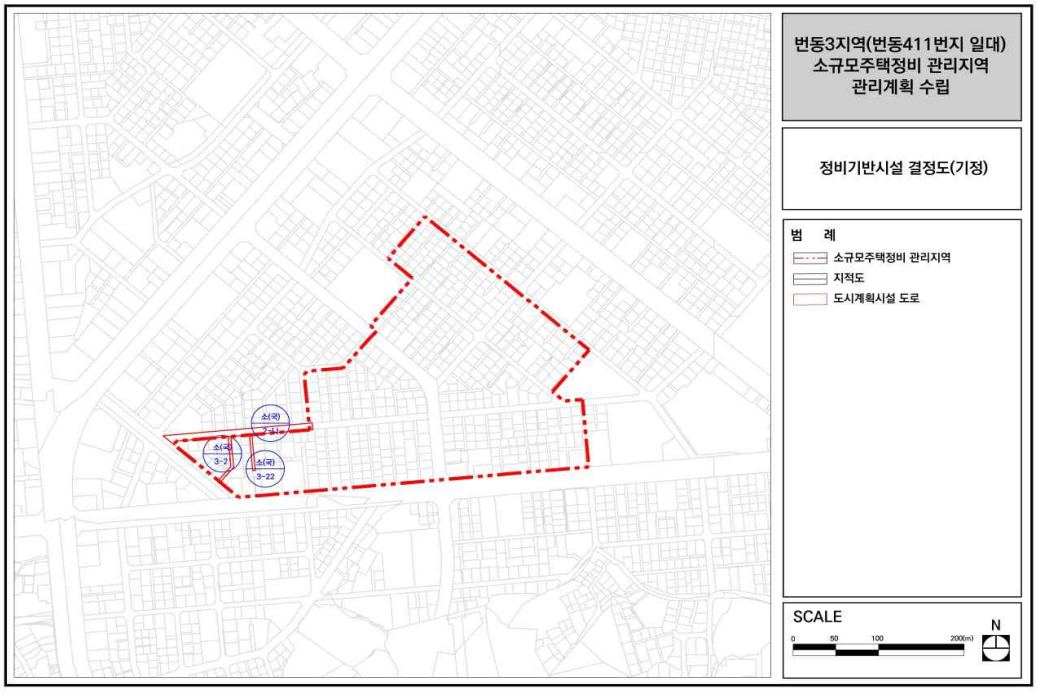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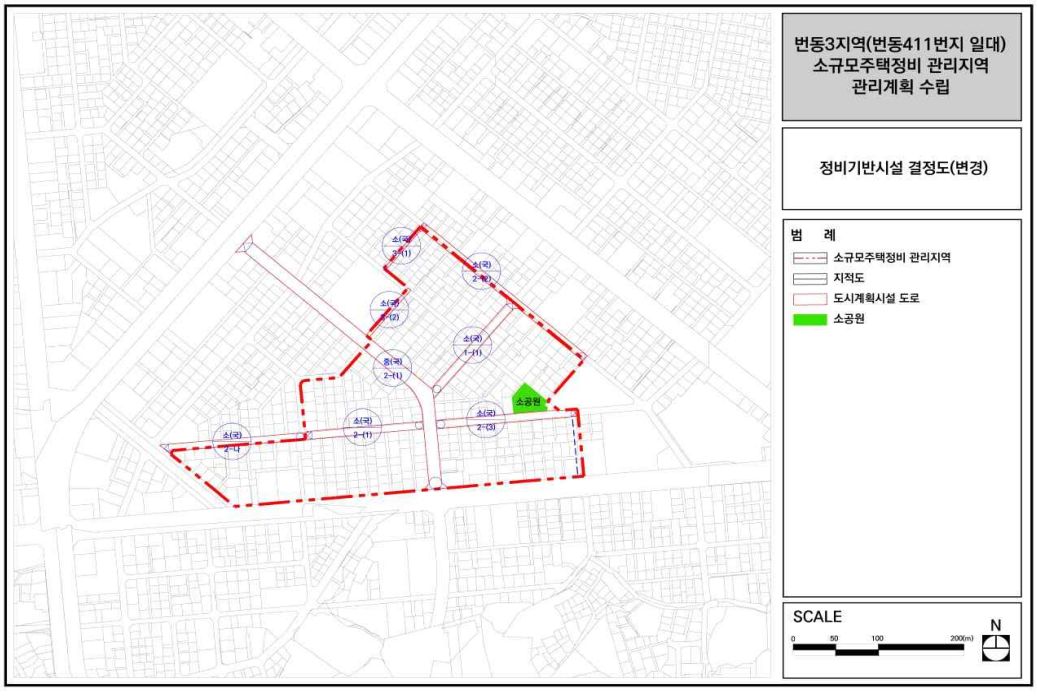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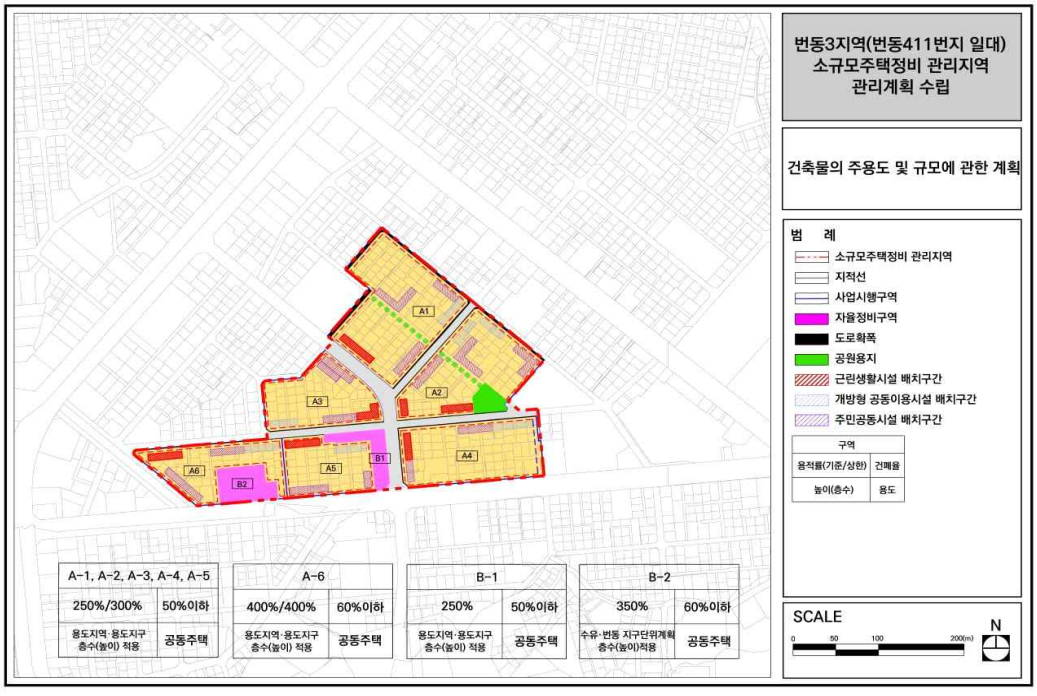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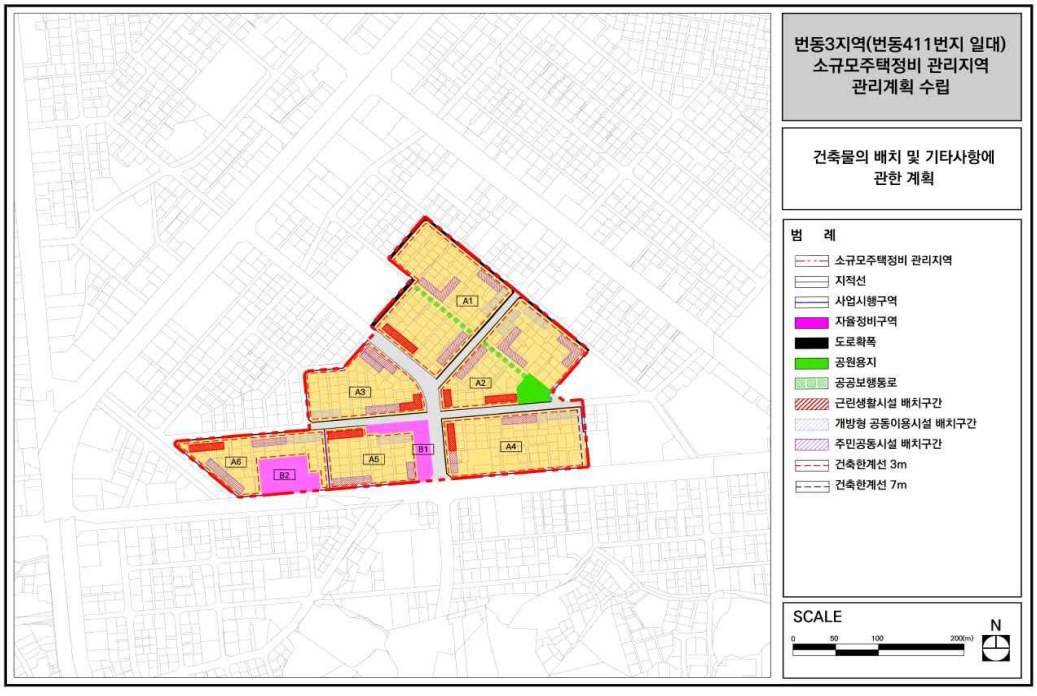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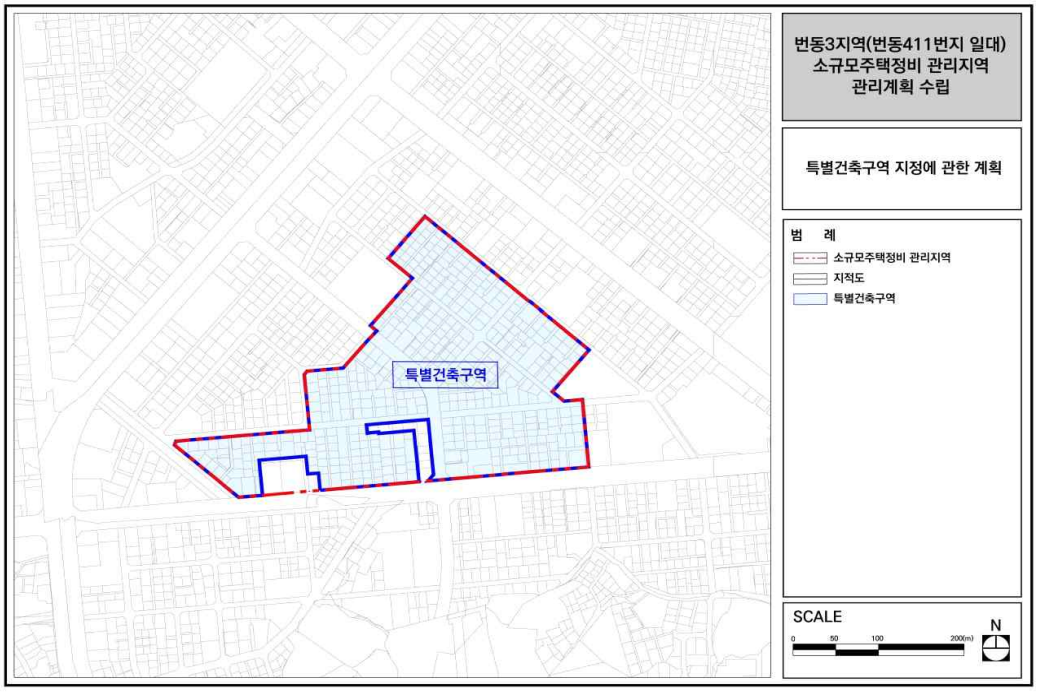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4호

중랑캠핑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26호(2007.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51호(2024.5.23.)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중랑캠핑숲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중랑캠핑숲내 화장실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6번지 일대
3. 면 적 : 147,666㎡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02-2289-4061)

중랑캠핑숲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랑구 망우동 56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 (기)	
				동 (수)	바닥면적 (㎡)	연면적 (㎡)				동 (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47,666.00	37,182.69	8	1,366.30	2,267.62	148	147,666.00	37,302.69	9	1,397.58	2,298.90	148	시설면적 증)120.00㎡ 바닥면적 증)31.28㎡ 연면적 증)31.28㎡
기반시설	소계	11,773.74	11,773.74	-	-	-		11,773.74	11,773.74	-	-	-		
	도로	9,523.20	9,523.20	-	-	-		9,523.20	9,523.20	-	-	-		
	광장	2,250.54	2,250.54	-	-	-		2,250.54	2,250.54	-	-	-		
조경시설		9,290.27	9,290.27	-	-	-	15	9,290.27	9,290.27	-	-	-	15	
휴양시설		5,303.58	5,303.58	-	-	-	80	5,303.58	5,303.58	-	-	-	80	
유희시설		1,468.20	1,468.20	-	-	-	21	1,468.20	1,468.20	-	-	-	21	
운동시설		434.00	434.00	-	-	-	6	434.00	434.00	-	-	-	6	
교양시설		4,800.93	4,800.93	4	914.40	1,653.27	10	4,800.93	4,800.93	4	914.40	1,653.27	10	
편익시설		3,884.55	3,884.55	2	332.52	390.61	14	4,004.55	4,004.55	3	363.80	421.89	14	증) 120.00㎡
관리시설		227.42	227.42	2	119.38	223.74	2	227.42	227.42	2	119.38	223.74	2	
녹지		110,483.31		-	-	-		110,363.31		-	-	-		감) 120.00㎡
시설율 (법정 40%이하)		37,182.69 ÷ 147,666.00 × 100 = 25.18%						37,302.69 ÷ 147,666.00 × 100 = 25.26%						
건폐율 (법정 10%이하)		1,366.30÷ 147,666.00 × 100 = 0.93%						1,397.58÷ 147,666.00 × 100 = 0.95%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147,666.00	37,182.69		8	1,366.30	2,267.62	148			147,666.00	37,302.69		9	1,397.58	2,298.90	148	
기반시설	소계			11,773.74	11,773.74	-	-	-	-	-			11,773.74	11,773.74	-	-	-	-	-	
	도로	가	전지역	9,523.20	9,523.20	-	-	-	-	-	가	전지역	9,523.20	9,523.20	-	-	-	-	-	
	광장	소계		2,250.54	2,250.54	-	-	-	-	-	소계		2,250.54	2,250.54	-	-	-	-	-	
	광장	나	241-20답 외9필지	2,250.54	2,250.54	-	-	-	-	-	나	56	2,250.54	2,250.54	-	-	-	-	-	
	진입광장1	나-1	241-20답	94.29	94.29	-	-	-	-	-	나-1	56	94.29	94.29	-	-	-	-	-	
	진입광장2	나-2	55-1전, 56전	288.97	288.97	-	-	-	-	-	나-2	56	288.97	288.97	-	-	-	-	-	
	진입광장3	나-3	54-3대, 56전	438.07	438.07	-	-	-	-	-	나-3	56	438.07	438.07	-	-	-	-	-	
	진입광장4	나-4	산30-29임	735.20	735.20	-	-	-	-	-	나-4	56	735.20	735.20	-	-	-	-	-	
	소광장1	나-5	산36-5, 37임	120.11	120.11	-	-	-	-	-	나-5	56	120.11	120.11	-	-	-	-	-	
	소광장2	나-6	산37-1임	58.95	58.95	-	-	-	-	-	나-6	56	58.95	58.95	-	-	-	-	-	
	소광장3	나-7	80전 외 2필지	263.24	263.24	-	-	-	-	-	나-7	56	263.24	263.24	-	-	-	-	-	
	소광장4	나-8	산30-22임외1필지	160.98	160.98	-	-	-	-	-	나-8	56 외 1필지	160.98	160.98	-	-	-	-	-	
	소광장5	나-9	산30-29임	90.73	90.73	-	-	-	-	-	나-9	56	90.73	90.73	-	-	-	-	-	
조경시설	소계			9,290.27	9,290.27	-	-	-	-	15			9,290.27	9,290.27	-	-	-	-	15	
	그늘시렁1	다	산30-7임	16.00	16.00	-	-	-	-	1	다	56	16.00	16.00	-	-	-	-	1	
	그늘시렁2	다-1	산30-7임	16.00	16.00	-	-	-	-	1	다-1	56	16.00	16.00	-	-	-	-	1	
	그늘시렁3	다-2	산30-7임	16.00	16.00	-	-	-	-	1	다-2	56	16.00	16.00	-	-	-	-	1	
	수생습지원	라	75-7전외 4필지	1,199.77	1,199.77	-	-	-	-	1	라	56	1,199.77	1,199.77	-	-	-	-	1	
	건천	라-1	산34-9임외7필지	581.64	581.64	-	-	-	-	3	라-1	56	581.64	581.64	-	-	-	-	3	
	레인가든	라-2	55-1전외2필지	220.38	220.38	-	-	-	-	-	라-2	56	220.38	220.38	-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테라스정원	라-3	77전외4필지	632.90	632.90	-	-	-	-	-	라-3	56 외 1필지	632.90	632.90	-	-	-	-	-	
	계류	라-4	78-1전외13필지	711.50	711.50	-	-	-	-	-	라-4	56	711.50	711.50	-	-	-	-	-	
	정원	라-5	산34-9임외3필지	882.55	882.55	-	-	-	-	-	라-5	56	882.55	882.55	-	-	-	-	-	
	생태연못	라-6	71전외6필지	875.10	875.10	-	-	-	-	-	라-6	56 외 1필지	875.10	875.10	-	-	-	-	-	
	잔디마당1	마	산33임외7필지	3,459.79	3,459.79	-	-	-	-	5	마	56	3,459.79	3,459.79	-	-	-	-	5	
	원두막	마-1	산30-45임	36.00	36.00	-	-	-	-	1	마-1	56	36.00	36.00	-	-	-	-	1	
	잔디마당2	마-2	82전외1필지	600.84	600.84	-	-	-	-	-	마-2	56	600.84	600.84	-	-	-	-	-	
	파고라1	①	산33	25.80	25.80	-	-	-	-	1	①	56	25.80	25.80	-	-	-	-	1	
	파고라2	②	산33	16.00	16.00	-	-	-	-	1	②	56	16.00	16.00	-	-	-	-	1	
휴양시설	소계			5,303.58	5,303.58	-	-	-	-	80			5,303.58	5,303.58	-	-	-	-	80	
	야영장1	바	산38-8유외15필지	4,289.27	4,289.27	-	-	-	-	80	바	56	4,289.27	4,289.27	-	-	-	-	80	
	야영장2	바-1	산39-23임외5필지	811.71	811.71	-	-	-	-	-	바-1	56	811.71	811.71	-	-	-	-	-	
	쉼터1	카-1	산33	168.30	168.30	-	-	-	-	-	카-1	56	168.30	168.30	-	-	-	-	-	
	쉼터2	카-2	산33	34.30	34.30	-	-	-	-	-	카-2	56	34.30	34.30	-	-	-	-	-	
유희시설	소계			1,468.20	1,468.20	-	-	-	-	21			1,468.20	1,468.20	-	-	-	-	21	
	숲속놀이터	하	77전외1필지	238.20	238.20	-	-	-	-	2	하	56	238.20	238.20	-	-	-	-	2	
	체험의숲	하-1	산30-7임외1필지	1,230.00	1,230.00	-	-	-	-	19	하-1	56	1,230.00	1,230.00	-	-	-	-	19	
운동시설	소계			434.00	434.00					6			434.00	434.00					6	
	체력단련장	사	39-13임외5필지	434.00	434.00					6	사	56	434.00	434.00					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교양시설	소계			4,800.93	4,800.93		4	914.40	1,653.27	10			4,800.93	4,800.93		4	914.40	1,653.27	10	
	관찰데크	아	산30-45임외3필지	325.20	325.20	-	-	-	-	-	아	56	325.20	325.20	-	-	-	-	-	
	생태학습원1	아-1	75-8대외1필지	207.14	207.14	-	-	-	-	-	아-1	56	207.14	207.14	-	-	-	-	-	
	생태학습원2	아-2	산30-45임외1필지	268.42	268.42	-	-	-	-	-	아-2	56	268.42	268.42	-	-	-	-	-	
	생태학습원3	아-3	산30-7임외1필지	778.06	778.06	-	-	-	-	2	아-3	56	778.06	778.06	콘크리트	지상1	110.94	110.94	2	조류치료소
	생태학습원4	아-4	산30-7임외2필지	438.70	438.70	-	-	-	-	-	아-4	56	438.70	438.70	-	-	-	-	-	
	생태학습원5	아-5	산34-6임외3필지	102.76	102.76	-	-	-	-	-	아-5	56	102.76	102.76	-	-	-	-	-	
	테라스갤러리	아-6	산33	441.57	441.57	콘크리트	지상1	155.20	155.20	7	아-6	56	441.57	441.57	콘크리트	지상1	155.20	155.20	7	
	숲속도서관	아-7	54-3대외2필지	710.61	710.61		지상2	485.39	970.78		아-7	56	710.61	710.61		지상2	485.39	970.78		
	청소년커뮤니티센터	아-8	240-1대	214.44	214.44	콘크리트	지상3	162.87	416.35	-	아-8	56	214.44	214.44	콘크리트	지상3	162.87	416.35	-	
	야외극장	아-9	산33임외3필지	1,314.03	1,314.03					1	아-9	56	1,314.03	1,314.03					1	
편익시설	소계			3,884.55	3,884.55	-	2	332.52	390.61	14			4,004.55	4,004.55	-	3	363.80	421.89	14	
	비지터센터	자	77전외2필지	787.88	787.88	콘크리트	지상2	309.51	367.60	-	자	56 외 1필지	787.88	787.88	콘크리트	지상2	309.51	367.60	-	
	약수터	차	산30-7임	39.20	39.20	-	-	-	-	2	차	56	39.20	39.20	-	-	-	-	2	
	취사장	차-1	산39-11임외2필지	86.77	86.77	-	-	-	-	-	차-1	56	86.77	86.77	콘크리트	지상1	23.01	23.01	-	
	바베큐가든	차-2	산39-45임외5필지	271.59	271.59	-	-	-	-	12	차-2	56	271.59	271.59	-	-	-	-	12	
	주차장1	파-1	54-16전외2	242.48	242.48	-	-	-	-	-	파-1	56	242.48	242.48	-	-	-	-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필지																	
	주차장2	파-2	56전외4필지	1,493.65	1,493.65	-	-	-	-	-	파-2	56	1,493.65	1,493.65	-	-	-	-	-	
	주차장3	파-3	81전외2필지	501.06	501.06	-	-	-	-	-	파-3	56 외 1필지	501.06	501.06	-	-	-	-	-	
	주차장4	파-4	80전	46.90	46.90	-	-	-	-	-	파-4	56	46.90	46.90	-	-	-	-	-	
	주차장5	파-5	78-1전외필지	52.69	52.69	-	-	-	-	-	파-5	56	52.69	52.69	-	-	-	-	-	
	주차장6	파-6	산30-45임외2필지	362.33	362.33	-	-	-	-	-	파-6	56	362.33	362.33	-	-	-	-	-	
	캠핑장화장실										거	56	120.00	120.00	컨테이너조(이동식)	지상1	31.28	31.28	-	증) 120.00㎡
관리시설	소계			227.42	227.42		2	119.38	223.74	2			227.42	227.42		2	119.38	223.74	2	
	관리사무소	타	68-3대	117.79	117.79	콘크리트	지상2	98.70	203.06		타	56	117.79	117.79	콘크리트	지상2	98.70	203.06		
	야외배전반	타-1	68-8전	60.63	60.63	-	-	-	-	1	타-1	56	60.63	60.63	콘크리트	지상1	20.68	20.68	2	생태학습창고
	태양광에너지설비		숲속도서관 옥상층	-	-	-	-	(47.74)	(47.74)			숲속도서관 옥상층	-	-	-	-	(47.74)	(47.74)		
	쓰레기분리수거장	하		49.00	49.00						하		49.00	49.00						
녹지 및 기타			전지역	110,483.31								110,363.31								감) 120.00㎡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739.00	9,523.20				
변경					3,739.00	9,523.20				
당초	소 계				3,739.00	9,523.20				
변경					3,739.00	9,523.20				
당초	소로	3	1	1.8	51.00	90.90	산책로	동측 대지경계선	소로3-2	
당초		3	2	3.0	312.00	937.40	산책로	소로3-41	소로3-44	
당초		3	3	3.0	167.00	501.80	산책로	소로3-2	소광장5	
당초		3	4	3.5	205.00	613.90	산책로	소광장4	소로3-2	
당초		3	5	2.5	5.00	12.70	산책로	소로3-3	그늘시렁2	
당초		3	6	2.0	5.00	10.50	산책로	소로3-4	그늘시렁1	
당초		3	7	1.2	17.00	20.40	산책로	소로3-21	소로3-10	
당초		3	8	1.5	231.00	344.50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선	소광장5	
당초		3	9	2.5	90.00	225.60	산책로	소로3-2	분수연못	
당초		3	10	2.5	292.00	730.00	산책로	소로3-8	소로3-2	
당초		3	11	2.0	125.00	249.30	산책로	분수연못	진입관장2	
당초		3	12	1.8	50.00	90.60	산책로	소광장1	분수연못	
당초		3	13	1.8	27.00	47.90	산책로	소광장1	소로3-2	
당초		3	14	1.8	84.00	151.70	산책로	서측 대지경계선	소광장1	
당초		3	15	2.0	27.00	54.00	산책로	소로3-14	소광장2	
당초		3	16	1.8	75.00	134.90	산책로	소로3-21	소로3-21	
당초		3	17	1.8	14.00	24.70	산책로	비지터센터	소로3-16	
당초		3	18	1.8	16.00	29.00	산책로	소로3-22	소로3-21	
당초		3	19	1.8	18.00	33.00	산책로	소로3-22	소로3-21	
당초		3	20	1.8	13.00	23.30	산책로	소로3-22	소로3-21	
당초		3	21	4.0	193.00	772.30	산책로	주차장5	소로3-7	
당초		3	22	1.8	115.00	207.00	산책로	소로3-10	취사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23	4.0	24.00	95.40	산책로	소로3-33	소로3-21	
당초		3	24	4.0	57.00	229.70	산책로	소로3-33	소로3-21	
당초		3	25	4.0	61.00	244.70	산책로	소로3-33	소로3-21	
당초		3	26	1.9	29.00	63.00	산책로	남서측 대지경계선	소로3-28	
당초		3	27	2.0	151.00	282.30	산책로	소광장3	소로3-29	
당초		3	30	1.5	90.00	148.40	산책로	소로3-29	소로3-28	
당초		3	31	1.8	15.00	27.00	산책로	소로3-29	소로3-28	
당초		3	33	3.5	117.00	409.50	산책로	소로3-34	소로3-21	
당초		3	34	5.0	23.00	115.00	산책로	비지터센터	소로3-33	
당초		3	35	3.0	119.00	357.00	산책로	주차장1	소로3-38	
당초		3	36	2.0	54.00	108.00	산책로	소로3-35	소로3-37	
당초		3	37	2.0	32.00	64.00	산책로	소로3-43	소로3-35	
당초	소로	3	38	1.8	47.00	84.60	산책로	소로3-35	소로3-43	
당초		3	39	1.8	49.00	88.20	산책로	소로3-35	소로3-38	
당초		3	40	1.5	75.00	112.50	산책로	소로3-3	소로3-3	
당초		3	41	4.0	64.00	256.00	산책로	동측 대지경계선	약수터	
당초		3	42	2.5	63.00	157.50	산책로	동측 대지경계선	소로3-41	
당초		3	43	1.5	265.00	397.50	산책로	소광장4	생태연못	
당초		3	44	6.0	32.00	192.00	산책로	소광장3	소로3-34	
당초		3	45	2.0	70.00	420.00	산책로	소광장3	소로3-21	
당초		3	46	2.0	45.00	112.60	산책로	소광장1	쉼터1	
당초		3	47	2.0	80.00	169.60	산책로	소로3-46	소로3-43	
당초		3	48	2.0	45.00	83.30	산책로	소로3-2	소로3-14	

조성계획총괄도(변경전)

중랑캠핑숲

SCALE=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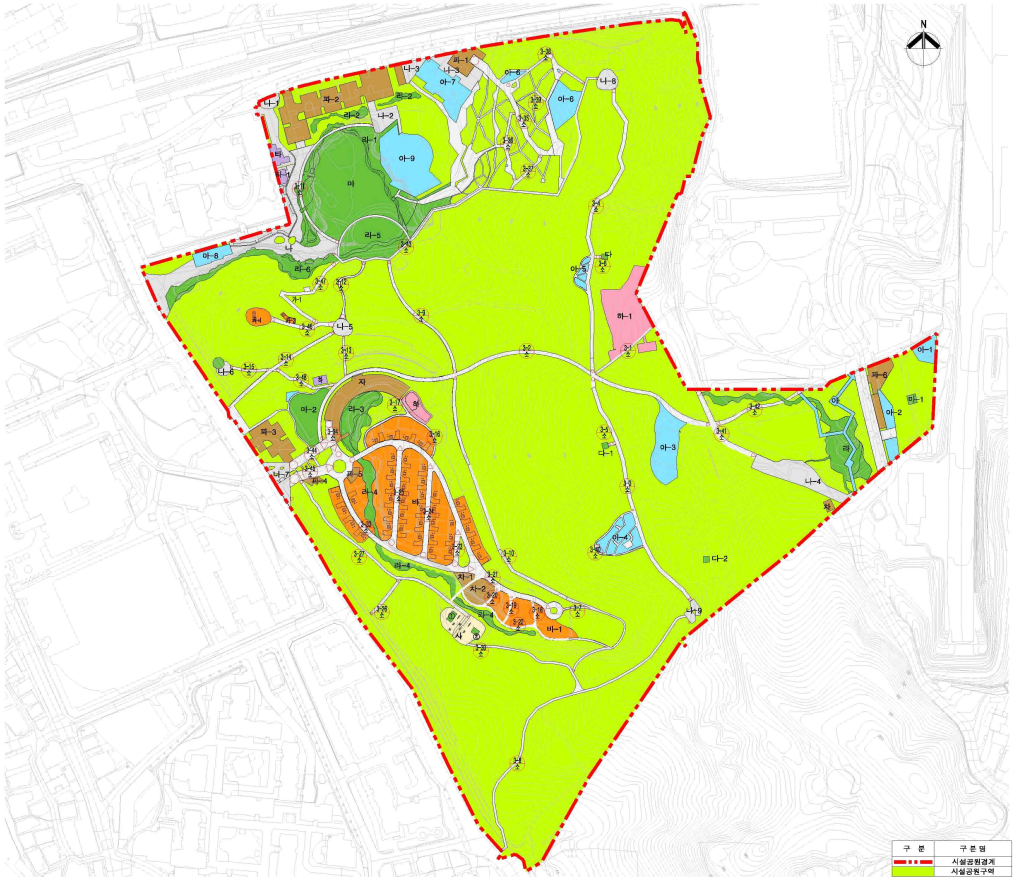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147,666.00	37,182.69	148	
기반시설	소 계		11,773.74	11,773.74		
	도 로	㉮	9,523.20	9,523.20		
	광장	나	2,250.54	2,250.54		
	전입광장1	나-1	94.29	94.29		
	전입광장2	나-2	288.97	288.97		
	전입광장3	나-3	438.07	438.07		
	전입광장4	나-4	735.20	753.20		
	소광장1	나-5	120.11	120.11		
	소광장2	나-6	58.95	58.95		
	소광장3	나-7	263.24	263.24		
	소광장4	나-8	160.98	160.98		
	소광장5	나-9	90.73	90.73		
조경시설	소 계		9,290.27	9,290.27	15	
	그늘시설1	다	16.00	16.00	1	
	그늘시설2	다-1	16.00	16.00	1	
	그늘시설3	다-2	16.00	16.00	1	
	수생습지원	라	1,199.77	1,199.77	1	
	간화	라-1	581.64	581.64	3	
	레인가든	라-2	220.38	220.38		
	데크쉼원	라-3	632.90	632.90		
	계류	라-4	711.50	711.50		
	정원	라-5	882.55	882.55		
	생태연못	라-6	875.10	875.10		
	잔디마당1	마	3,459.79	3,459.79	5	
	원두막	마-1	36.00	36.00	1	
	잔디마당2	마-2	600.84	600.84		
	파고라1	①	25.80	25.80	1	
	파고라2	②	16.00	16.00	1	
휴양시설	소 계		5,303.58	5,303.58	80	
	야영장1	바	4,289.27	4,289.27	80	
	야영장2	바-1	811.71	811.71		
	샘터1	카-1	168.30	168.30		
	샘터2	카-2	34.30	34.30		
유희시설	소 계		1,468.20	1,468.20	21	
	숲속놀이터	하	238.20	238.20	2	
	체험희숲	하-1	1,230.00	1,230.00	19	
운동시설	소 계		434.00	434.00	6	
	체력단련장	사	434.00	434.00	6	
교양시설	소 계		4,800.93	4,800.93	10	
	관찰데크	아	325.20	325.20		
	생태학습원1	아-1	207.14	207.14		
	생태학습원2	아-2	269.42	269.42		
	생태학습원3	아-3	778.06	778.06	2	
	초류쉐프조(건축물)	①				
	생태학습원4	아-4	438.70	438.70		
	생태학습원5	아-5	102.76	102.76		
	테라스갤러리	아-6	441.57	441.57	7	
	숲속도서관	아-7	710.61	710.61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아-8	214.44	214.44		
	야외극장	아-9	1,314.03	1,314.03	1	
편익시설	소 계		3,884.55	3,884.55	14	
	비지터센터	자	787.88	787.88		
	약수터	차	39.20	39.20	2	
	휴사장	차-1	86.77	86.77		
	휴사장(건축물)	②				
	바베큐가든	차-2	271.59	271.59	12	
	주차장1	파-1	242.48	242.48		
	주차장2	파-2	1,493.65	1,493.65		
	주차장3	파-3	501.06	501.06		
	주차장4	파-4	46.90	46.90		
	주차장5	파-5	52.69	52.69		
	주차장6	파-6	362.33	362.33		
관리시설	소 계		227.42	227.42	2	
	관리사무소	타	117.79	117.79		
	야외변전반	타-1	60.63	60.63	1	
	생태학습장고	③			1	
	태양광에너지설비					
	쓰레기분리수거장	하	49.00	49.00		
녹지및기타	소 계		110,483.31			
	녹 지		110,483.31			

조성계획총괄도(변경후)

중랑캠핑숲

SCALE=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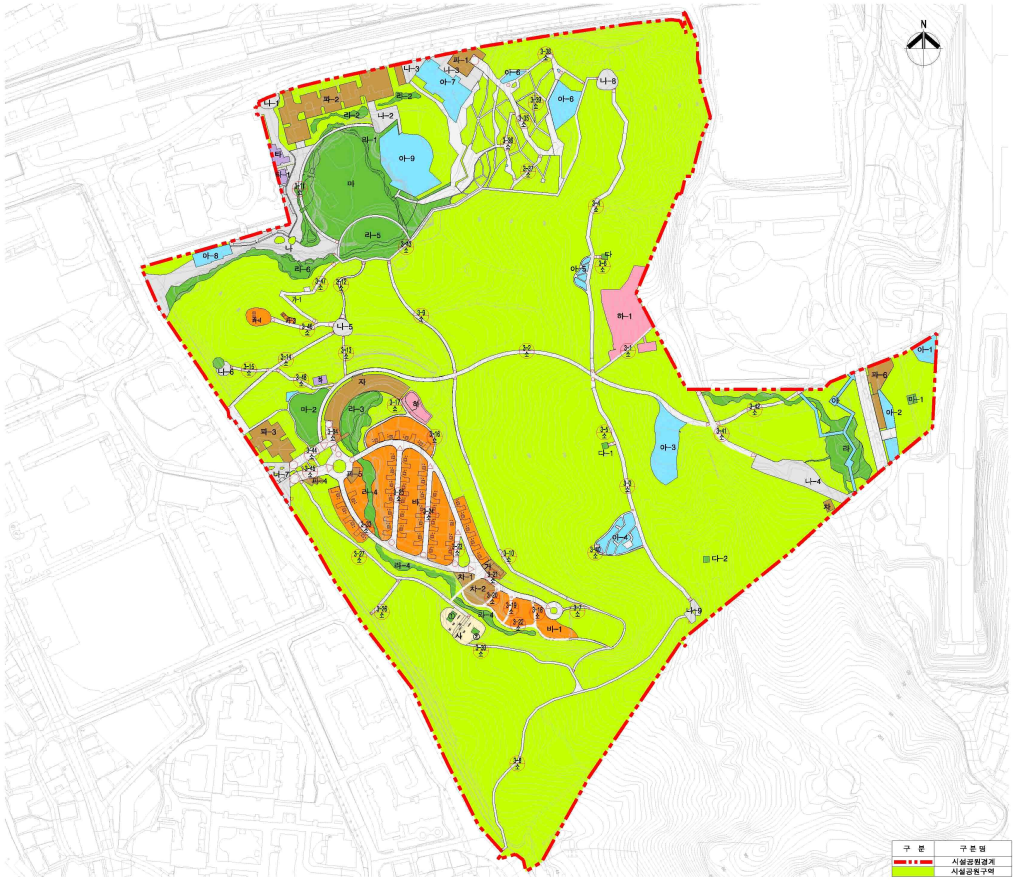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147,666.00	37,302.69	148	
기반시설	소 계		11,773.74	11,773.74		
	도 로	(공)	9,523.20	9,523.20		
	광장	나	2,250.54	2,250.54		
	전입광장1	나-1	94.29	94.29		
	전입광장2	나-2	288.97	288.97		
	전입광장3	나-3	438.07	438.07		
	전입광장4	나-4	735.20	753.20		
	소광장1	나-5	120.11	120.11		
	소광장2	나-6	58.95	58.95		
	소광장3	나-7	263.24	263.24		
	소광장4	나-8	160.98	160.98		
	소광장5	나-9	90.73	90.73		
조경시설	소 계		9,290.27	9,290.27	15	
	그늘시설1	다	16.00	16.00	1	
	그늘시설2	다-1	16.00	16.00	1	
	그늘시설3	다-2	16.00	16.00	1	
	수생습지원	라	1,199.77	1,199.77	1	
	건천	라-1	581.64	581.64	3	
	데크가든	라-2	220.38	220.38		
	테마스정원	라-3	632.90	632.90		
	계류	라-4	711.50	711.50		
	정원	라-5	882.55	882.55		
	생태연못	라-6	875.10	875.10		
	잔디마당1	마	3,459.79	3,459.79	5	
	원두막	마-1	36.00	36.00	1	
	잔디마당2	마-2	600.84	600.84		
	파고라1	①	25.80	25.80	1	
	파고라2	②	16.00	16.00	1	
휴양시설	소 계		5,303.58	5,303.58	80	
	야영장1	바	4,289.27	4,289.27	80	
	야영장2	바-1	811.71	811.71		
	샘터1	카-1	168.30	168.30		
	샘터2	카-2	34.30	34.30		
유희시설	소 계		1,468.20	1,468.20	21	
	숲속놀이터	하	238.20	238.20	2	
	체험의숲	하-1	1,230.00	1,230.00	19	
운동시설	소 계		434.00	434.00	6	
	체력단련장	사	434.00	434.00	6	
교양시설	소 계		4,800.93	4,800.93	10	
	관찰데크	아	325.20	325.20		
	생태학습원1	아-1	207.14	207.14		
	생태학습원2	아-2	268.42	268.42		
	생태학습원3	아-3	778.06	778.06	2	
	생태학습원4	아-4	438.70	438.70		
	생태학습원5	아-5	102.76	102.76		
	테라스갤러리	아-6	441.57	441.57	7	
	숲속도서관	아-7	710.61	710.61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아-8	214.44	214.44		
	야외극장	아-9	1,314.03	1,314.03	1	
편익시설	소 계		4,004.55	4,004.55	14	
	비지터센터	자	787.88	787.88		
	약수터	차	39.20	39.20	2	
	화시장	차-1	86.77	86.77		
	버스정거존	차-2	271.59	271.59	12	
	주차장1	파-1	242.48	242.48		
	주차장2	파-2	1,493.65	1,493.65		
	주차장3	파-3	501.06	501.06		
	주차장4	파-4	46.90	46.90		
	주차장5	파-5	52.69	52.69		
	주차장6	파-6	362.33	362.33		
	캠핑숲화장실	거	120.00	120.00		
관리시설	소 계		227.42	227.42	2	
	관리사무소	다	117.79	117.79		
	마의태전시판	다-1	60.63	60.63	2	
	태양광에너지설비					
	쓰레기분리수거장	하	49.00	49.00		
녹지및기타	소 계		110,363.31			
	녹 지		110,363.3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5호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목적

○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적 복합화를 통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주동디자인(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고품격 공동(임대)주택 단지를 창출하고, 공동주택, 생활SOC, 지역커뮤니티시설을 도입,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1	신내4 공공주택지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 일원	신내4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용지	27,011.00㎡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지 구 명	블록명	공동주택 사업유형	대지면적 (㎡)	최고층수
신내4 공공주택지구	-	통합공공 임대주택	27,011.00	25층

※ 블록내 세대수, 면적 등 세부개요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건축개요로 갈음함.

4. 특별축구역내 특례적용

구분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용취지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용 배제	사업단지(공동주택)와 기반시설용지(근린공원)를 연결하는 가칭.입체보행로 설치를 위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3m)' 기준에 관한 특례적용을 하고자 함

구분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용취지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배제	공동주택 주동을 주변 도시연결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인접단지(신내3지구)의 조망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례적용을 하고자 함

5.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블록명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신내4 공공주택지구	-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나. 용지별 시행지침 제4조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완화 가능

6.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공사감리

–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업무 시행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접 감독을 통하여 공사감리 추진

○ 공사시공 등의 발주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입찰

7.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 – 2133-7070), 서울주택주택공사 입체도시설계부(전화 : 02-3410-7695)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

[붙임1] 신내4 공공주택지구 특별건축구역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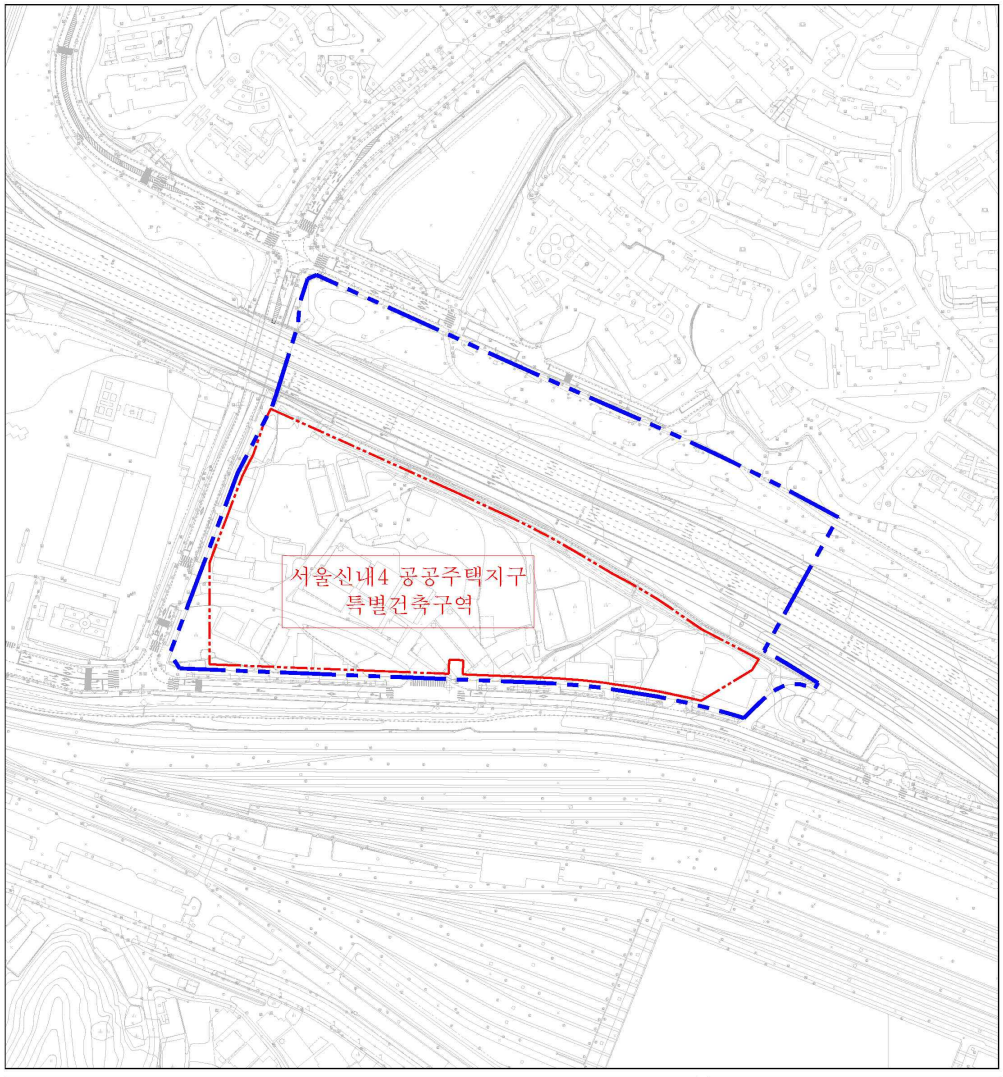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7호

강서구 염창동 27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3호(2022.7.7.)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3호(2023.1.19.)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정정)·지구계획 승인(정정)된 강서구 염창동 27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강서구 염창동 27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75번지 일원
   ○ 면 적 : 1,319.1㎡
2. 촉진지구 지정일 :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변경없음
4. 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 : 변경없음
   ○ 시행자 성명 : 윤호표 외 8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 74, 102동 1103호(마곡동, 마곡힐스테이트)
   ○ 주민등록번호 : 740222-0000000(윤호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토지세목조서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염창동	275	대	363.2	363.2	준주거지역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212.1088				-
							김화정		74.8192				
							윤석현		38.136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8.136				
2	염창동	275 1	대	77.7	77.7	준주거지역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45.3768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김화정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16.0062				
								윤석현		8.1585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8.1585				
3	염창동	275	3	대	388.5	388.5	준주거지역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8.85				
								윤정원		125.823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29.576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48.5625				
								이옥자		48.5625				
								윤현선		48.562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3, 102동 1601호	48.5625				
4	염창동	275	4	대	204.0	204.0	준주거지역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0.40				
								윤정원		51.00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30.60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25.50				
								이옥자		25.50				
								윤현선		25.50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3, 102동 1601호	25.50				
5	염창동	275	16	대	222.5	222.5	준주거지역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129.94				
								김화정		45.835				
								윤석현		23.3625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3.3625				
6	염창동	275	17	대	39.5	39.5	준주거지역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95				
								윤정원		9.87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5.92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4.9375				
								이옥자		4.9375				
								윤현선		4.937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3, 102동 1601호	4.9375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7	염창동	275	18	대	23.7	23.7	준주거지역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37				
								윤정원		5.92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3.55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2.9625				
								이옥자		2.9625				
								윤현선		2.962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3, 102동 1601호	2.9625				
합계					1,319.1	1,319.1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염창동	275		대	363.2	363.2	준주거 지역	위탁자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212.1088				
									김화정		74.8192				
									윤석현		38.136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8.136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363.2				
2	염창동	275	1	대	77.7	77.7	준주거 지역	위탁자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45.3768				
									김화정		16.0062				
									윤석현		8.1585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8.158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77.7				
3	염창동	275	3	대	388.5	388.5	준주거 지역	위탁자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102동 902호	38.85				
									윤정원		125.823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29.576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48.5625				
									이옥자		48.5625				
									윤현선		48.562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3, 102동 1601호	48.562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388.5				
4	염창동	275	4	대	204.0	204.0	준주거	위탁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0.40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지역	자	윤정원	347, 102동 902호	51.00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30.60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25.50				
								이옥자		25.50				
								윤현선		25.50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3, 102동 1601호	25.50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204.0				
5	염창동	275 16	대	222.5	222.5	준주거 지역	위탁자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129.94				
								김화정		45.835				
								윤석현		23.3625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3.362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222.5				
6	염창동	275 17	대	39.5	39.5	준주거 지역	위탁자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95				
								윤정원		9.87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5.92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4.9375				
								이옥자		4.9375				
								윤현선		4.937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3, 102동 1601호	4.937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39.5				
7	염창동	275 18	대	23.7	23.7	준주거지역	위탁자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37				
								윤정원		5.92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3.55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2.9625				
								이옥자		2.9625				
								윤현선		2.962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3, 102동 1601호	2.962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23.7				
합계				1,319.1	1,319.1									

■ 변경사유 :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경(신탁계약 체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8) 및 강서구청 건축과(☎02-2600-63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2. 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22년 ~ 2024년,
(변경) 2022년 ~ 2025년
○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가. 수용인구 : 변경없음
나. 주택건설계획 : 변경없음
<기정>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	25A type	16	10.26	16	9.02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 공급
	25B type	3	1.92	3	1.69	
	25C type	3	1.92	3	1.69	
	25D type	3	1.92	3	1.69	
	25E type	3	1.92	3	1.69	
	31 type	3	1.92	3	1.69	
	57 type	2	1.28	5.3	2.99	
	소 계	33	21.15	36.3	20.46	
SH선매입	25A type	5	3.21	5	2.82	
	25B type	2	1.28	2	1.13	
	25C type	2	1.28	2	1.13	
	25D type	2	1.28	2	1.13	
	25E type	2	1.28	2	1.13	
	31 type	2	1.28	2	1.13	
	57 type	2	1.28	5.3	2.99	
	소 계	17	10.90	20.3	11.4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5A type	57	36.54	57	32.12	
	25B type	8	5.13	8	4.51	
	25C type	8	5.13	8	4.51	
	25D type	8	5.13	8	4.51	
	25E type	8	5.13	8	4.51	
	31 type	8	5.13	8	4.51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57 type	9	5.77	23.85	13.44	
	소 계	106	67.95	120.85	68.10	
합 계		156	100.00	177.45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변경>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	25A type	16	10.26	16	9.02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 공급
	25B type	3	1.92	3	1.69	
	25C type	3	1.92	3	1.69	
	25D type	3	1.92	3	1.69	
	25E type	3	1.92	3	1.69	
	31 type	3	1.92	3	1.69	
	57 type	2	1.28	5.3	2.99	
	소 계	33	21.15	36.3	20.46	
SH선매입	25A type	5	3.21	5	2.82	
	25B type	6	3.85	6	3.38	
	25C type	2	1.28	2	1.13	
	25D type	2	1.28	2	1.13	
	25E type	2	1.28	2	1.13	
	31 type	2	1.28	2	1.13	
	57 type	-	-	-	-	
	소 계	19	12.18	19	10.7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5A type	57	36.54	57	32.12	
	25B type	4	2.56	4	2.25	
	25C type	8	5.13	8	4.51	
	25D type	8	5.13	8	4.51	
	25E type	8	5.13	8	4.51	
	31 type	8	5.13	8	4.51	
	57 type	11	7.05	29.15	16.42	
	소 계	104	66.67	122.15	68.83	
합 계		156	100.00	177.45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 변경사유 : SH선매입 세대수 변경에 따른 세부 내용 변경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변경)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 (변경)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 결정조서 (변경)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기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적용기준</th><th colspan="2">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2" rowspan="3">공공기여율</td><td>•부지면적 기준 10% 이상
→ 1,319.1㎡ × 10% = 131.91㎡
(기본용적률 400% 산정기준)</td><td>•기본공공기여 : 133.75㎡(10.14%)</td><td rowspan="3">총 156세대 중 50세대 공공기여 (세대수기준 32.0%)</td><td rowspan="4">기본 용적률 400%, /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td></tr>
<tr><td>•완화용적률(168.06%)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 99.40 × 50% = 49.70</td><td>•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661.14㎡(50.12%)</td></tr>
<tr><td>•SH 선매입</td><td>•17세대 : 연면적 785.83㎡(11.32%)</td></tr>
<tr><td colspan="2">비주거비율</td><td>•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td><td colspan="2">•주거 : 비주거(87.72% : 12.28%)</td></tr>
<tr><td rowspan="2">주택 건설 기준</td><td>주택 규모</td><td>•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0㎡ ~ 60㎡ 내외
- 1인(셰어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td><td colspan="2">•공공임대주택 : 33세대
25A type(16세대), 25B type(3세대), 25C type(3세대), 25D type(3세대) 25E type(3세대), 31 type(3세대), 57 type(2세</td></tr>
</table>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	대) •SH 선매입 : 17세대 25A type(5세대), 25B type(2세대), 25C type(2세대), 25D type(2세대), 25E type(2세대), 31 type(2세대), 57 type(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6세대 25A type(57세대),25B type(8세대), 25C type(8세대), 25D type(8세대), 25E type(8세대), 31 type(8세대), 57 type(9세대)	
건축물 형태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청년주택 운영기준」 3-3-9 -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150㎡ 이상	•152.72㎡ (지상2층) - 북카페, 코인세탁실, 주민영상교육시설, 주민회의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변경>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 기준 10% 이상 → 1,319.1㎡ X 10% = 131.91㎡ (기본용적률 400% 산정기준)	•기본공공기여 : 133.75㎡(10.14%) (14세대)	총 156세대 중 33세대 공공기여	기본 용적률 400%, /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완화용적률(168.06%)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 99.40 X 50% = 49.70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9세대) - 661.14㎡(50.12%)		
비주거비율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87.72% : 12.28%)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0㎡ ~ 60㎡ 내외 - 1인(셰어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	•공공임대주택 : 33세대 25A type(16세대), 25B type(3세대), 25C type(3세대), 25D type(3세대) 25E type(3세대), 31 type(3세대), 57 type(2세대) •SH 선매입 : 19세대 25A type(5세대), 25B type(6세대), 25C type(2세대), 25D type(2세대), 25E type(2세대), 31 type(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4세대 25A type(57세대),25B type(4세대), 25C type(8세대), 25D type(8세대), 25E type(8세대), 31 type(8세대), 57 type(11세대)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청년주택 운영기준」 3-3-9 -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150㎡ 이상	•152.72㎡ (지상2층) - 북카페, 코인세탁실, 주민영상교육시설, 주민회의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변경사유 : SH선매입 세대 확대, 공공기여율 중 SH선매입 내용 정정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높이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방재계획 : 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 (변경)

가. 토지세목조서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염창동	275		대	363.2	363.2	준주거지역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212.1088				-
								김화정		74.8192				
								윤석현		38.136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8.136				
2	염창동	275	1	대	77.7	77.7	준주거지역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45.3768				
								김화정		16.0062				
								윤석현		8.1585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8.1585				
3	염창동	275	3	대	388.5	388.5	준주거지역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8.85				
								윤정원		125.823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29.576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48.5625				
								이옥자		48.5625				
								윤현선		48.562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3, 102동 1601호	48.5625				
4	염창동	275	4	대	204.0	204.0	준주거지역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0.40				
								윤정원		51.00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30.60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25.50				
								이옥자		25.50				
								윤현선		25.50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3, 102동 1601호	25.50				
5	염창동	275	16	대	222.5	222.5	준주거지역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129.94				
								김화정		45.835				
								윤석현		23.3625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3.3625				
6	염창동	275	17	대	39.5	39.5	준주거지역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95				
								윤정원		9.875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5.92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4.9375				
								이옥자		4.9375				
								윤현선		4.937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3, 102동 1601호	4.9375				
7	염창동	275	18	대	23.7	23.7	준주거지역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37				
								윤정원		5.92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3.55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2.9625				
								이옥자		2.9625				
								윤현선		2.962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3, 102동 1601호	2.9625				
합계					1,319.1	1,319.1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염창동	275		대	363.2	363.2	준주거 지역	위탁자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212.1088				
									김화정		74.8192				
									윤석현		38.136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8.136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363.2				
2	염창동	275	1	대	77.7	77.7	준주거 지역	위탁자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45.3768				
									김화정		16.0062				
									윤석현		8.1585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8.158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77.7				
3	염창동	275	3	대	388.5	388.5	준주거 지역	위탁자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102동 902호	38.85				
									윤정원		125.823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29.5765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48.5625				
									이옥자		48.5625				
									윤현선		48.562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3, 102동 1601호	48.562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388.5				
4	염창동	275	4	대	204.0	204.0	준주거지역	위탁자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0.40				
									윤정원		51.00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30.60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25.50				
									이옥자		25.50				
									윤현선		25.50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3, 102동 1601호	25.50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204.0				
5	염창동	275	16	대	222.5	222.5	준주거지역	위탁자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129.94				
									김화정		45.835				
									윤석현		23.3625				
									윤정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3.362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222.5				
6	염창동	275	17	대	39.5	39.5	준주거지역	위탁자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3.95				
									윤정원		9.87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5.92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4.9375				
									이옥자		4.9375				
									윤현선		4.9375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3, 102동 1601호	4.937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39.5				
7	염창동	275	18	대	23.7	23.7	준주거지역	위탁자	이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902호	2.37				
									윤정원		5.925				
									윤호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74, 102동 1103호	3.555				
									윤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0동 502호	2.9625				
									이옥자		2.9625				
									윤현선		2.9625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윤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3, 102동 1601호	2.9625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	23.7				
합계					1,319.1	1,319.1									

■ 변경사유 :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경(신탁계약 체결)

나. 물건조서 : 변경없음
다. 토지취득방법 : 변경없음
라.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8호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2009.5.21.)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5.1.)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 고
기정	15	홍은동	277-45	3.5	190%	60% 이하	평균 16층 이하	2	단독	-
변경	변경없음						25층 이하주)	변경없음		

주) 층수와 관련된 기준(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34,817.0	-	34,817.0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59㎡	620,169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5.67%)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부담 / -:환급)
전용 84㎡	827,630		
전용 104㎡	914,092		
전용 136㎡	1,141,024		

※ 상기 분담금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서대문구청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으로 현재는 예시로 산정
② 추정 비례율산정 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총액 X 100%
추정 비례율 약 105.67% : (약 6,362억 - 약 4,419억) / 1,838억 X 100%
③ 개별 종전자산 추정금액 X 추정비례율 = 권리가액
④ 건축설계상의 분양면적 및 세대별 추정 평당가격(인근 시세대비 약 75% ~ 80%)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4,817.0	-	34,817.0	100.0	-
소 계		7,137.0	감) 36.2	7,100.8	20.4	존치시설 포함
정비기반시설	소 계	5,885.0	증) 1,215.8	7,100.8	20.4	-
	도 로	4,060.0	증) 1,608.8	5,668.8	16.3	-
	어린이공원	1,628.0	감) 1,628.0	-	-	-
	소공원	113.0	감) 113.0	-	-	-
	공공공지	84.0	증) 1,348.0	1,432.0	4.1	-
기반시설	공공청사	1,252.0	감) 1,252.0	-	-	존치시설
획지	소 계	27,680.0	증) 36.2	27,716.2	79.6	-
	획지 1	27,144.0	감) 47.8	27,096.2	77.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2	536.0	-	536.0	1.5	근린생활시설
	획지 3	-	증) 84.0	84.0	0.2	공 지

※ 변경사유 : 합리적인 공공시설 계획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5.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817		34,817	10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38	-	338	0.97	-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79	-	34,479	99.03	-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7	25~28	간선도로	2,620	연희동	홍은동	일반도로	-	총고시 제722호 (1936.12.26.)	-
기정	대로	3	97	25~28	간선도로	4,265	성산동 (대2-20)	홍은동 (대3-17)	일반도로	-	서고시 제318호 (1999.9.30.)	-
변경	대로	3	97	25~28	간선도로	4,265	성산동 (대2-20)	홍은동 (대3-17)	일반도로	-	-	일부구간 3m확폭
기정	중로	3		12~15	국지도로	249	홍은3동 278-4	홍은3동 산26-133	일반도로	-	서고시 제369호 (1990.11.9.)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78	홍은3동 281-1	홍은3동 268-20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3	1	12~19	국지도로	78	홍은3동 281-1	홍은3동 268-20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1	1	12	국지도로	18	홍은동 산11-210	홍은동 임277-197	일반도로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05	홍은3동 268-18	홍은3동 265-350	일반도로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변경	소로	2	1	8~14	국지도로	360	홍은동 268-18	홍은동 277-198	일반도로	-	-	-

※ 홍은3동 → 홍은2동으로 명칭변경(2008.05.06.)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97	대로3-97	· 일부구간 3m 확폭 - 홍은동 273-6, 274-4 일원	· 주·출입구 위치 변경 및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중로3-1	중로3-1	· 폭원 변경 - B=12m → 12~19m 증)7m	· 주변지역 고저차로 인한 기존 현황도로 유지 및 원활한 교통계획을 위한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	-	· 노선 폐지	· (가칭)홍은4구역의 사업 무산에 따라 연계하여 계획하였던 노선 폐지
소로2-1	소로2-1	· 연장 변경 - L=305m → 360m 증)55m · 폭원 변경 - B=8m → 8~14m 증)6m · 종점 변경 - 홍은동 265-350 → 홍은동 277-198	· 구릉지 지형여건을 고려한 도로설계 반영 및 원활한 교통계획을 위한 도로 변경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홍은동 271-29 일대	1,628.0	감) 1,628.0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폐지	-	공원	소공원	홍은동 277-157 일대	113.0	감) 113.0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기정) 1,628.0㎡ - 변경) 0㎡ (감 1,628.0㎡)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구역면적 3만㎡이상 공원 의무설치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공원 폐지
-	공원	• 소공원 폐지 - 기정) 113.0㎡ - 변경) 0㎡ (감 113.0㎡)	• (가칭)홍은4구역의 사업 무산에 따라 연계하여 계획하였던 공원 폐지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홍은동 277-82	84.0	감) 84.0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신설	-	공공공지	홍은동 273-6 일대	-	증) 1,432.0	1,432.0	-	(서울시)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기정) 84.0㎡ - 변경) 0㎡ (감 84.0㎡)	• 설치 목적 및 공공성 등이 부족한 자투리땅에 계획된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획지 내 공지로 계획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1,432.0㎡	• 향후 도시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가용지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로 계획

라.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청사	-	홍은동 273-6 일대	1,252.0	감) 1,252.0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폐지 - 기정) 1,252.0㎡ - 변경) 0㎡ (감 1,252.0㎡)	•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라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공공공지로 계획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민공동시설	합 계	획지1	2,860.00	증) 988.29	3,848.29	-
	경로당		140.00	증) 210.00	350.00	-
	작은도서관		60.00	증) 100.00	160.00	-
	어린이집		180.00	증) 170.00	350.00	-
	어린이놀이터		820.00	증) 80.00	900.00	-
	주민운동시설		1,110.00	감) 260.00	850.00	-
	주민공동시설		550.00	증) 622.29	1,172.29	-
	다함께돌봄센터		-	증) 66.00	66.00	-
관리사무소			60.00	증) 190.00	250.00	-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비실		-	증) 25.92	25.92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4,817.0	획지1	27,144.0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117	1 (등기소)	-	116	-	-
			획지2	536.0							
변경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4,817.0	획지1	27,096.2		116	-	-	116	-	-
			획지2	536.0							
			획지3	84.0							

※ 변경사유 : 동수 오기에 따른 정정(117동 → 116동)

9.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4,817.0	획지1	27,144.0	홍은동 277-45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5.0% 이하	251.73% 이하 (임대포함)	60m이하/ 20층 이하 (평균 16층 이하)	-
			획지2	536.0	홍은동 277-207 일대	아동관련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
			공공청사	1,252.0	홍은동 273-6 일대	등기소	관련법규에 따름				존치
변경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4,817.0	획지1	27,096.2	홍은동 277-45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5.0% 이하	245.50% 이하	75m 이하/ 25층 이하	
			획지2	536.0	홍은동 277-207 일대	근린생활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3	84.0	홍은동 277-82 일대	공지	관계법령에 따름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계획</th><th>법적상한</th></tr>
<tr><td rowspan="2">기정</td><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1">◦ 건립규모 및 비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주택건립 규모</th><th rowspan="2">비율(%)</th><th rowspan="2">비고</th></tr>
<tr><th>세대수</th><th>(임대)</th></tr>
<tr><td>계</td><td>540</td><td>(88)</td><td>100.0</td><td>임대주택 88세대 포함</td></tr>
<tr><td>60㎡ 이하</td><td>110</td><td>(55)</td><td>20.4</td><td>-</td></tr>
<tr><td>60~85㎡ 이하</td><td>238</td><td>(33)</td><td>44.1</td><td>-</td></tr>
<tr><td>85㎡ 초과</td><td>192</td><td>-</td><td>35.5</td><td>-</td></tr>
</table>
◦ 건립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연면적) : 50.8%
◦ 건립예정세대수 : 540세대(임대주택 : 88세대)</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 대로3-97호선(모래내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 대로3-97호선을 제외한 인접도로변 : 인접도로변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지정</td></tr>
<tr><td rowspan="4">변경</td><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1">◦ 건립규모 및 비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주택건립 규모</th><th rowspan="2">비율(%)</th><th rowspan="2">비고</th></tr>
<tr><th>조합 및 분양</th><th>공공주택
(법적상한)</th><th>합계</th></tr>
<tr><td>계</td><td>569</td><td>33</td><td>602</td><td>100.0</td><td>-</td></tr>
<tr><td>60㎡ 이하</td><td>115</td><td>26</td><td>141</td><td>23.4</td><td>-</td></tr>
<tr><td>60~85㎡ 이하</td><td>337</td><td>7</td><td>344</td><td>57.2</td><td>-</td></tr>
<tr><td>85㎡ 초과</td><td>117</td><td>-</td><td>117</td><td>19.4</td><td>-</td></tr>
</table>
- 85㎡ 이하(국민주택규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건립예정세대수 : 602세대(임대주택 : 33세대)</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11">◦ 허용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3% 적용)
-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1.5%) 주1)
- 공공보행통로 조성 (※ 지역권 설정) (1.5%)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 245.50% 이하
◦ 높이 및 층수 완화
- 60m이하(최고 20층이하/평균 16층이하) → 75m이하(최고 25층이하/평균층수 삭제)</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 대로3-97호선(모래내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 대로3-97호선을 제외한 인접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 공공보행통로 (1개소, 폭원 3m) [※ 정비계획 결정도 참고]
- 남측 모래내로(25m)에서 북측 개설도로(소로 2-1호선) 연계 (1개소)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서대문구, 서대문구-조합 간 합의서 체결 예정)</td></tr>
</table>

주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사업과-4568, 2019.4.25) 반영.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5%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 용적률 계획(변경)

<기정>

구분	산정 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공공청사 (존치)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4,817㎡	27,680㎡	5,885㎡	1,252㎡	411㎡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5,885㎡ - 411㎡ = 5,474㎡ (구역대비 15.7%)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계획(기준)용적률 190%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1.3α) = 190% × (1+1.3×0.1977) = 238.85% ≥ 225.0% 이하 적용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5,474㎡ / 27,680㎡ = 0.1977 ◦ 건축계획 용적률 = 222.3%(임대주택 포함 251.73%)					

<변경>

구분	산정 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34,817.0㎡	27,716.2㎡	7,100.8㎡	306.0㎡	463.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정비기반시설(도로 내 법면 및 존치도로) = 7,100.8㎡ - 306.0㎡ - 463.0㎡ - 592.1㎡ - 216.1㎡ = 5,523.6㎡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등 면적 : 도로(5,668.8㎡), 공공공지(1,432.0㎡) ※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정비기반시설 : 도로 내 법면(592.1㎡), 존치도로(216.1㎡)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3%) = 190% + 3% = 193% ◦ 인센티브 = 3%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1.5%)주1), 공공보행통로 개설(※ 지역권 설정) (1.5%)주2)]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토지) = 193% × (1 + 1.3×0.1993)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523.6㎡ ÷ 27,716.2㎡ = 0.1993	

구분	산정 내용	
	= 243.0% ≥ 225.0% 이하 적용	
법적 상한용적률	◦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245.50% 이하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주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사업과-4568, 2019.4.25) 반영.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5%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주2) 공공보행통로는 지역권(통행 등 일정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설정

■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내용		비고
용적률 증가분	기 존 용적률	• 29,382.95㎡ ÷ 27,680㎡ = 106.15%	• 획지1 + 획지2 = 27,680㎡ - 획지1 : 27,144㎡ - 획지2 : 536㎡
	계 획 용적률	• 61,145.65㎡ ÷ 27,680㎡ = 220.9%	• 획지1 = 60,341.65㎡ ÷ 27,144㎡ = 222.3% • 획지2 = 804㎡ ÷ 536㎡ =150.0%(달성가능 최대용적률)
	증가된 용적률	• 220.9% - 106.15%=114.75%	-
증가 용적률 25%	• 114.75% X 25% = 28.69% 이상		-
연면적 환산	• 27,680㎡ X 28.69% = 7,940.83㎡ 이상		-
소형주택 확보계획	• 지상층 연면적 : 7,988.53㎡ • 세대수 : 88세대 -전용59.98㎡ : 55세대(62.5%) -전용84.97㎡ : 33세대(37.5%)		-

<변경>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내용</th></tr>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td><td colspan="5">• 245.5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 225.00% 이하</td></tr>
<tr><td rowspan="6">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20.50% (= 245.50% - 225.00%)</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10.25% (= 20.50% × 0.5)</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2,840.91㎡ 이상 (획지면적 x 10.25% = 27,716.2㎡ x 10.25% = 2,840.91㎡)</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td><td colspan="2">세대규모</td><td rowspan="2">세대수(세대)</td><td rowspan="2">연면적</td><td rowspan="2">비고</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colspan="2">합계</td><td>33</td><td>2,869.14㎡</td><td>〉 2,840.91㎡ (의무)</td></tr>
<tr><td>59.98㎡</td><td>79.88㎡</td><td>26</td><td>2,076.88㎡</td><td rowspan="2">획지1</td></tr>
<tr><td>84.98㎡</td><td>113.18㎡</td><td>7</td><td>792.26㎡</td></tr>
</table>

※ 공공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자연토양유지 및 어린이공원 등 녹지 ·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주택공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 인근 사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중 지속적으로 관리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 조경 등을 통해 녹지 확보 계획 반영	-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현존식생 시가화지역,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	-
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호	x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7.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대상지내는 70%이상~90%미만 불투수포장 지역임	• 인도 및 보행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성 포장재 사용	-
8.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이상	○	• 대상지내는 70%이상~90%미만 불투수포장 지역 • 공동주택 38.52%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생태면적률 38.52%로 계획	-
9.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수질 상태 확인 •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파악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 계획 수립	-
10.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 설치	•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 신축 건물로 바람길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대상지는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저층 시가화 지역임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열섬효과 최소화	-
12.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상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x	• 해당사항 없음	-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적정처리	-
16.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소음영향 예상	• 저소음 장비 사용하여 소음 진동 최소화(가설방진망, 이동식 방음벽 설치)	-
18. 경관	Skyline 보전	○	• 주변 시설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도시 경관 형성 필요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통한 친환경적인 경관계획 수립	-
1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는 시가지지역으로 도로와 접함	•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입주민 등의 휴식공간 마련	-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x	• 일조유발시설 없음	• 일조장해 영향 최소화하는 배치 계획수립	-
21. 보행 친환공간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 대상지는 시가지 지역으로 모래네로, 연희로와 접함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 폭 2m이상의 보행자 보도 설치	-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x	• 해당사항 없음	-	-
23.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감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홍은동 제5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32세대	540세대	증) 308세대	-
변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260세대	602세대	증) 342세대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대상지 서측 200m 이내에 홍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북측 500m거리에는 정원여자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추후,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 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기회 차단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홍은5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	증) 34,817.0	34,817.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817	-	34,817	10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38	-	338	0.97	-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79	-	34,479	99.03	-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7	25~28	간선도로	2,620	연희동	홍은동	일반도로	-	총고시 제722호 (1936.12.26.)	-
기정	대로	3	97	25~28	간선도로	4,265	성산동 (대2-20)	홍은동 (대3-17)	일반도로	-	서고시 제318호 (1999.9.30.)	-
변경	대로	3	97	25~28	간선도로	4,265	성산동 (대2-20)	홍은동 (대3-17)	일반도로	-	-	일부구간 3m확폭
기정	중로	3		12~15	국지도로	249	홍은3동 278-4	홍은3동 산26-133	일반도로	-	서고시 제369호 (1990.11.9.)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78	홍은3동 281-1	홍은3동 268-20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3	1	12~19	국지도로	78	홍은3동 281-1	홍은3동 268-20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1	1	12	국지도로	18	홍은동 산11-210	홍은동 임277-197	일반도로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05	홍은3동 268-18	홍은3동 265-350	일반도로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변경	소로	2	1	8~14	국지도로	360	홍은동 268-18	홍은동 277-198	일반도로	-	-	-

※ 홍은3동 → 홍은2동으로 명칭변경(2008.05.06.)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97	대로3-97	· 일부구간 3m 확폭 - 홍은동 273-6, 274-4 일원	· 주·출입구 위치 변경 및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중로3-1	중로3-1	· 폭원 변경 - B=12m → 12~19m 증)7m	· 주변지역 고저차로 인한 기존 현황도로 유지 및 원활한 교통계획을 위한 변경
소로1-1	-	· 노선 폐지	· (가칭)홍은4구역의 사업 무산에 따라 연계하여 계획하였던 노선 폐지
소로2-1	소로2-1	· 연장 변경 - L=305m → 360m 증)55m · 폭원 변경 - B=8m → 8~14m 증)6m · 종점 변경 - 홍은동 265-350 → 홍은동 277-198	· 구릉지 지형여건을 고려한 도로설계 반영 및 원활한 교통계획을 위한 도로 변경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홍은동 271-29 일대	1,628.0	감) 1,628.0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폐지	-	공원	소공원	홍은동 277-157 일대	113.0	감) 113.0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기정) 1,628.0㎡ - 변경) 0㎡ (감 1,628.0㎡)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구역면적 3만㎡이상 공원 의무설치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공원 폐지
-	공원	• 소공원 폐지 - 기정) 113.0㎡ - 변경) 0㎡ (감 113.0㎡)	• (가칭)홍은4구역의 사업 무산에 따라 연계하여 계획하였던 공원 폐지

3)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홍은동 277-82	84.0	감) 84.0	-	서고시 제202호 (2009.5.21.)	-
신설	-	공공공지	홍은동 273-6 일대	-	증) 1,432.0	1,432.0	-	(서울시)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기정) 84.0㎡ - 변경) 0㎡ (감 84.0㎡)	• 설치 목적 및 공공성 등이 부족한 자투리땅에 계획된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획지 내 공지로 계획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1,432.0㎡	• 향후 도시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가용지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로 계획

4)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청사	-	홍은동 273-6 일대	1,252.0	감) 1,252.0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폐지 - 기정) 1,252.0㎡ - 변경) 0㎡ (감 1,252.0㎡)	•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라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공공공지로 계획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소계	27,680.0	증) 36.2	27,716.2	100.0	-
	획지1	27,144.0	감) 47.8	27,096.2	98.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536.0	-	536.0	1.0	근린생활시설
	획지3	-	증) 84.0	84.0	0.6	공지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구분		획지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A)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신설	허용용도(B)	획지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신설	허용용도(C)	획지3	• 대지 내 공지	-

※ 허용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8장에 적합한 범위에서 허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거주환경, 거주유형, 개발사업 방식 등을 고려하여 불허용도의 형태로 수정 · 보완하여 활용 가능

※ 허용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6호에 의한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은 포함, 부설주차장, 기계실, 계단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의 50% 이상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변경)

구분	획지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따름	아동관련시설
변경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따름	근린생활시설
	획지3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따름	공지

나)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획지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기정	획지1	190% 이하	-	225.00% 이하	251.73% 이하	정비계획	기준용적률 ; 190.00% 상한용적률 ; 225.00% 법적상한용적률 : 251.73% 이하

구분	획지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획지2	관련법령에 따름				-	
변경	획지1	190% 이하	193% 이하	225.00% 이하	245.50%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 193.00% 상한용적률 : 225.00% 법적상한용적률 : 245.50% 이하
	획지2	관련법령에 따름				-	
	획지3	관련법령에 따름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획지	인센티브			비고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주1]	공공보행통로 조성 (※ 지역권 설정)	합계	
신설	획지1	1.5%	1.5%	3%	3% 적용

주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사업과-4568, 2019.4.25) 반영.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5%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 상한(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구분	획지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합계	
		토지	건축물			
기정	획지1	35.00%	-	26.73%	61.73%	법적상한용적률 : 251.73% 이하 (기준용적률 190% + 완화량 61.73%)
		35.00%				
변경	획지1	32.00%	-	20.50%	52.50%	법적상한용적률 : 245.50% 이하 (허용용적률 193% + 완화량 52.50%)
		32.00%				

다) 높이 계획(변경)

구분	획지	지역	높이(층수)기준	비고
기정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m 이하 / 20층 이하 (평균 16층 이하)	
	획지2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따름	
변경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5m 이하 / 25층 이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준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획지2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따름	-

구분	획지	지역	높이(층수)기준	비고
	획지3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따름	-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획지1	• 대로3-97호선(모래내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 대로3-97호선을 제외한 인접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	결정도면 참조
변경	획지1	• 대로3-97호선(모래내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 대로3-97호선을 제외한 인접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결정도면 참조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 ·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경관구조계획	공동주택	• 내부 녹지, 커뮤니티 거점, 통경축 등의 설정을 통해 외부와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경관 구조 계획 • 단지 인근의 주거, 상업, 녹지 지역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계획	-
녹지계획	공동주택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적용 등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 생태기능을 복원, 보존하는 녹지 계획	-
옹벽계획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모래내로 연접부 및 단차 형성 구간 부대시설 배치로 구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옹벽을 최소화하고 석재마감을 통해 단조로움을 완화하는 계획 • 완만한 경사지의 자연경사처리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경관 형성	-
진입부	공동주택	• 단지 외부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진입거점 계획 • 시각 결절부, 교통 안정성 등을 고려한 진입부 형성 계획	-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 주동의 단조로움을 완화하는 패턴 디자인과 볼륨감 있는 매스 계획 • 정면부 규칙적인 입면분할을 통해 현대적이면서도 친근한 도시 이미지 형성	-
재료 및 색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주조색 및 보조색을 YR~Y계열의 색채로 톤온톤 배색하여 인근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계획 • 저층부는 자연친화 소재(석재)를 적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 연출 계획	-

2)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개방감	공동주택	• 백련산과 홍제천 방향(녹지축)으로 통경축을 고려한 배치계획과 구릉지에 순응하는 부대복리 및 근린생활시설 계획으로 개방감 확보	-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 백련산근린공원 7부능선(147m) 높이 이하의 층수 계획을 통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	-

◆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경관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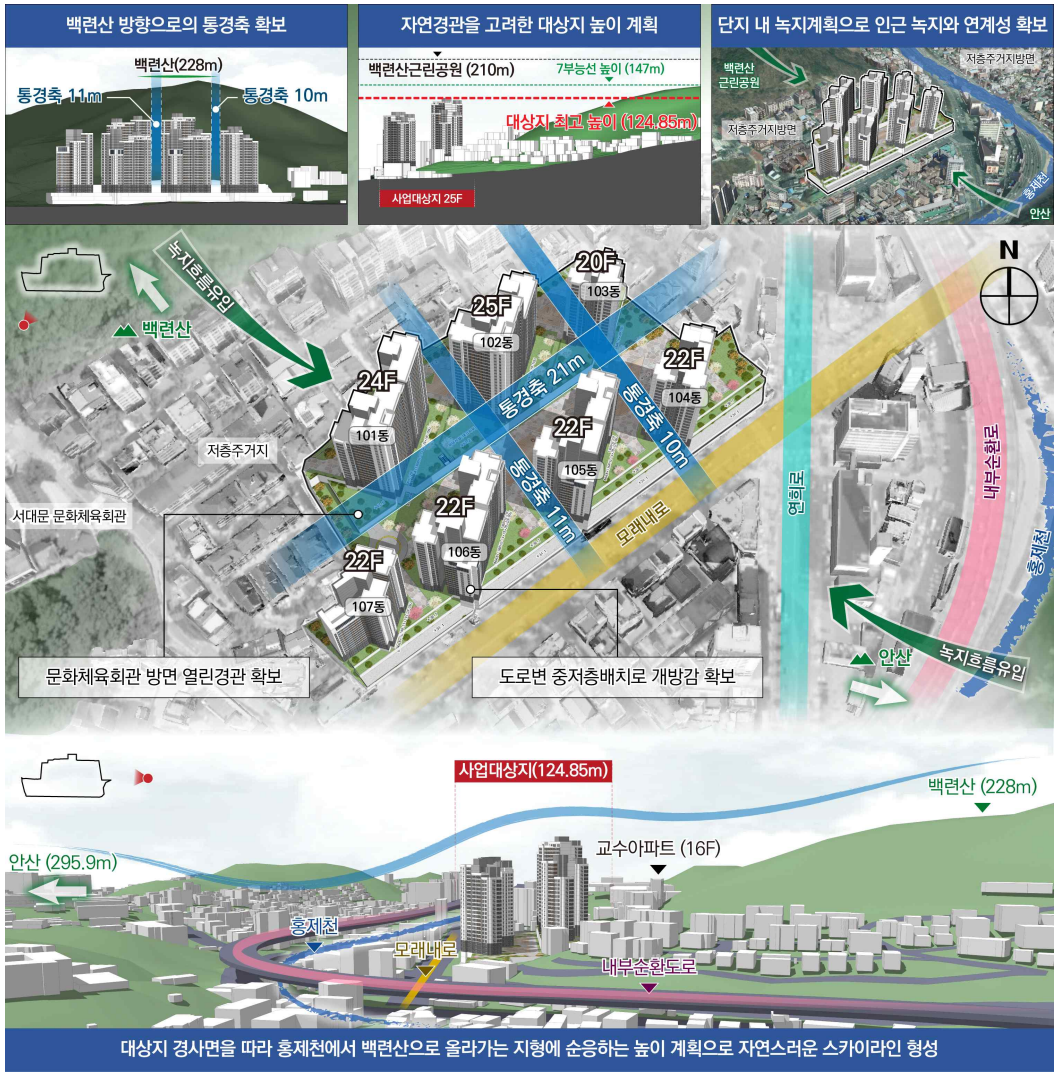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획지1	• 도면에 표기	• 공공보행통로 (1개소, 폭원 3m)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 남측 모래내로(25m)에서 북측 개설도로(소로 2-1호선) 연계 (1개소)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서대문구, 서대문구-조합 간 합의서 체결 예정)	결정도면 참조
전면공지	대로3-97호선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건축계획에 따라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대로3-97호선변 제외 인접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건축계획에 따라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 조경 등을 통해 녹지 확보 계획 반영	-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현존식생 시가화지역,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	-
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호	x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7.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대상지내는 70%이상~90%미만 불투수포장 지역임	• 인도 및 보행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성 포장재 사용	-
8.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이상	○	• 대상지내는 70%이상~90%미만 불투수포장 지역 • 공동주택 38.52%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생태면적률 38.52%로 계획	-
9.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수질 상태 확인 •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파악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 계획 수립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0.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 설치	•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 신축 건물로 바람길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대상지는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저층 시가화 지역임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열섬효과 최소화	-
12.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상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x	• 해당사항 없음	-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적정처리	-
16.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소음영향 예상	• 저소음 장비 사용하여 소음 진동 최소화(가설방진망, 이동식 방음벽 설치)	-
18. 경관	Skyline 보전	○	• 주변 시설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도시 경관 형성 필요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통한 친환경적인 경관계획 수립	-
1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는 시가지지역으로 도로와 접함	•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입주민 등의 휴식공간 마련	-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x	• 일조유발시설 없음	• 일조장해 영향 최소화하는 배치 계획수립	-
21. 보행 친환공간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 대상지는 시가지 지역으로 모래네로, 연희로와 접함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 폭 2m이상의 보행자 보도 설치	-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x	• 해당사항 없음	-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23.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

4)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주택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계	공공기여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 비율	공공주택 중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합 계	602	100.0	33	-	33	5.5	100.0	100.0
40㎡ 이하	-	-	-	-	-	-	-	-
40㎡ 초과 ~ 50㎡ 이하	-	-	-	-	-	-	-	-
50㎡ 초과 ~ 60㎡ 이하	141	23.4	26	-	26	4.3	78.8	78.8
60㎡ 초과 ~ 85㎡ 이하	344	57.2	7	-	7	1.2	21.2	21.2
85㎡ 초과	117	19.4	-	-	-	-	-	-

□ 2024년 제6차(‘24.5.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연번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1	〈조건사항〉 • 법적상한용적률(250%)은 대상지가 백련산 및 안산 인접하여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인 바, 적정 밀도계획이 가능하도록 하향 조정할 것.	• 법적상한용적률은 대상지 주변여건을 고려해 하향 조정하여 적정 밀도계획이 되도록 반영하였음. - 법적상한용적률 : 250%→ 245.5%(감 4.5%)	반영
2	• 공공공지 계획은 실효성 및 적정 밀도계획과 연계하여 조정 검토.	• 공공공지 계획은 서울시의 향후 도시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가용지 확보를 위해 계획을 유지하고, 밀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공지 면적이 감소되도록 조정하여 반영하였음. - 공공공지 : 1,465㎡→ 1,432㎡(감 33㎡)	반영
3	• 최고높이는 백련산 근린공원의 해발고도의 7부 능선 이하 등 적정 범위로 조정 검토할 것.	• 북측 저층주거지의 일조 부영향 최소화 의견 반영으로 최고 높이를 하향 조정하여 반영하였음. - 최고 높이 : 128m→ 124.85m(감 3.15m)	반영
4	• 대지조성계획은 모래내로 연접부를 하향 조정하고, 공공보행통로의 단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모래내로 연접부(근린생활시설) 단차를 하향 조정하고, 공공보행통로의 단차를 줄이기 위해 북측 연접부 단차를 하향 조정하여 반영하였음. - 모래내로 연접부 단차 : 12.65m→ 4.15m(감 8.5m) - 북측 연접부 단차 : 55.0m→ 51.2m(감 3.8m)	반영
5	•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간선도로인 모래내로의 교통부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서측 도로변으로 조정 검토할 것.	• 사업지 진출입 교통량을 분산시켜 모래내로의 교통부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서측에 계획한 비상차량 진출입구의 진입로 폭원을 1m 확폭하고 부출입구로 계획하여 반영하였음.	반영
6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 적정성을 검토할 것.] • 대상지는 백련산 및 안산 인접, 간선도로(내부순환로, 모래내로, 연희로 등)에 연접한 바, 적정 경관 측면에서 건축배치계획을 조정할 것.	• 적정 경관측면에서 대상지 인접 요소들을 고려하여 밀도와 층수를 하향 조정하고, 건축배치계획(주동,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레벨 등)을 조정하였음.	반영
7	• 대상지 북측 저층주거지 연접 주동은 일조 부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층수를 하향 조정할 것.	• 북측 연접 주동의 층수 및 높이 하향 조정으로 일조만족률이 기고시 기준보다 높게 조정하여 일조 부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반영하였음. - 층수 : 1~4층 감소, 높이 : 3.15m 감소	반영
8	• 통경축계획은 신설계획한 공공보행통로 및 대상지 남동측 횡단보도와 연계되는 구간에 적정 폭원으로 계획할 것.	• 공공보행통로 내 대상지 인근의 주변 요소와 연계되는 일부 구간은 심의안의 통경축보다 폭원을 추가 확보하였음. - 통경축 폭원 : 1m 추가확보	반영
9	〈권고사항〉 • 대상지 일대 장소성을 고려하여 골목길 등 지역 자산에 대한 기록화 등 검토 필요.	• 향후 착공 전 대상지의 골목길 등 지역 자산에 대하여 사진으로 기록하겠음	추후 반영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 결정도(기정/변경)
5.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02-2133-7213) 및 서대문구 주거정비과(☎02-330-899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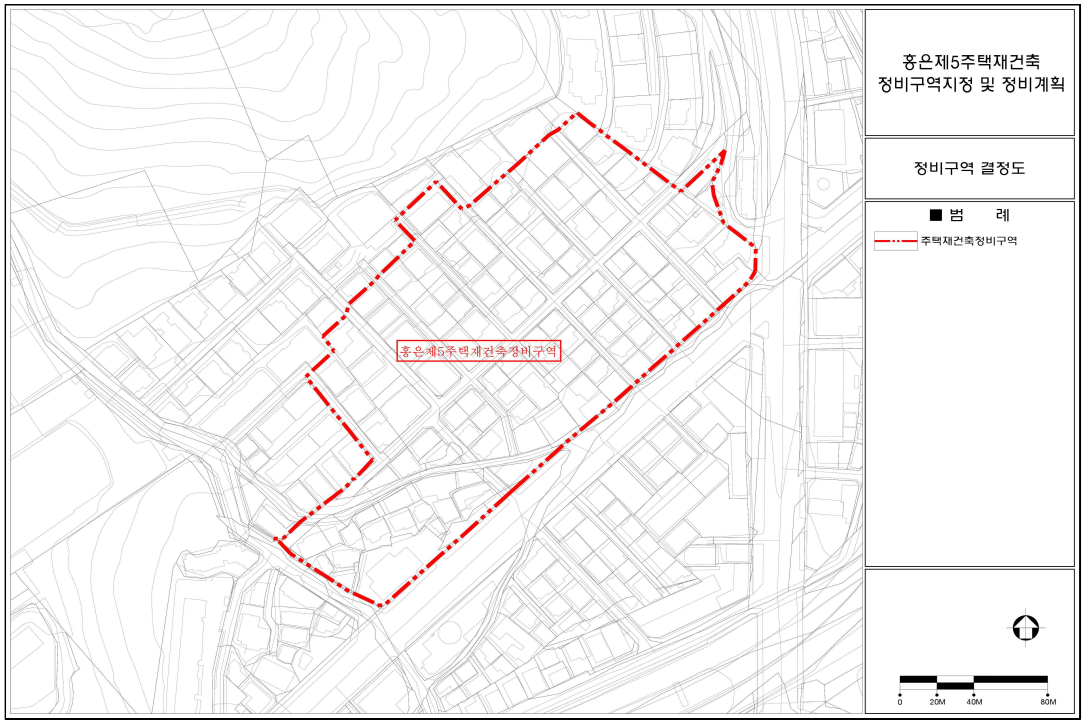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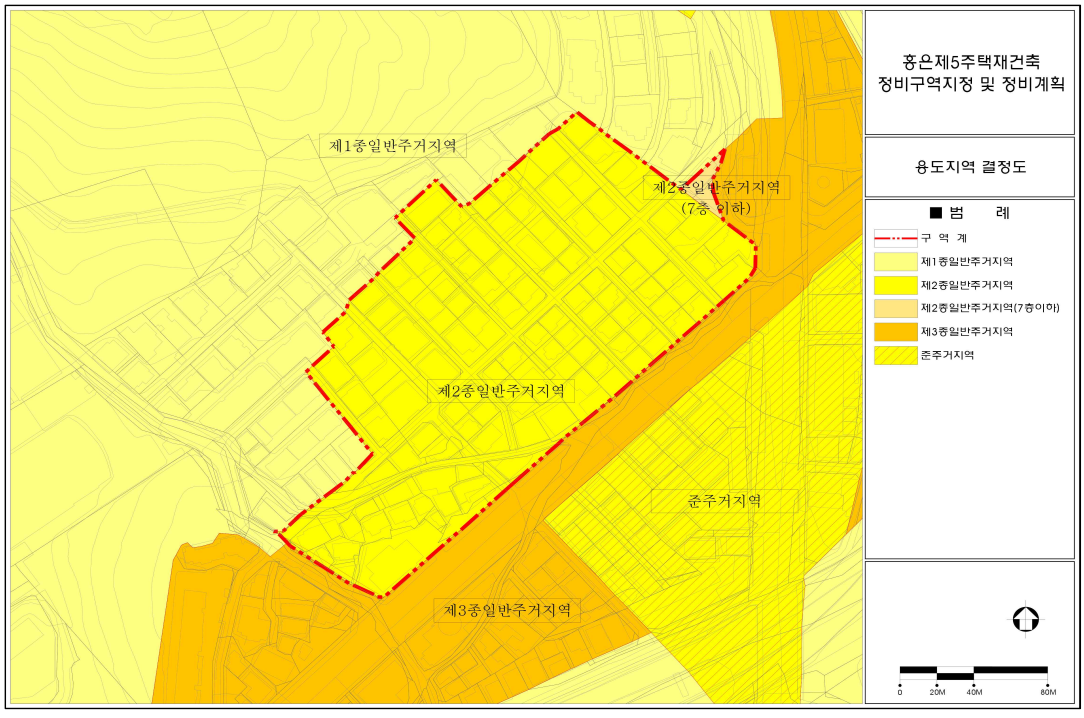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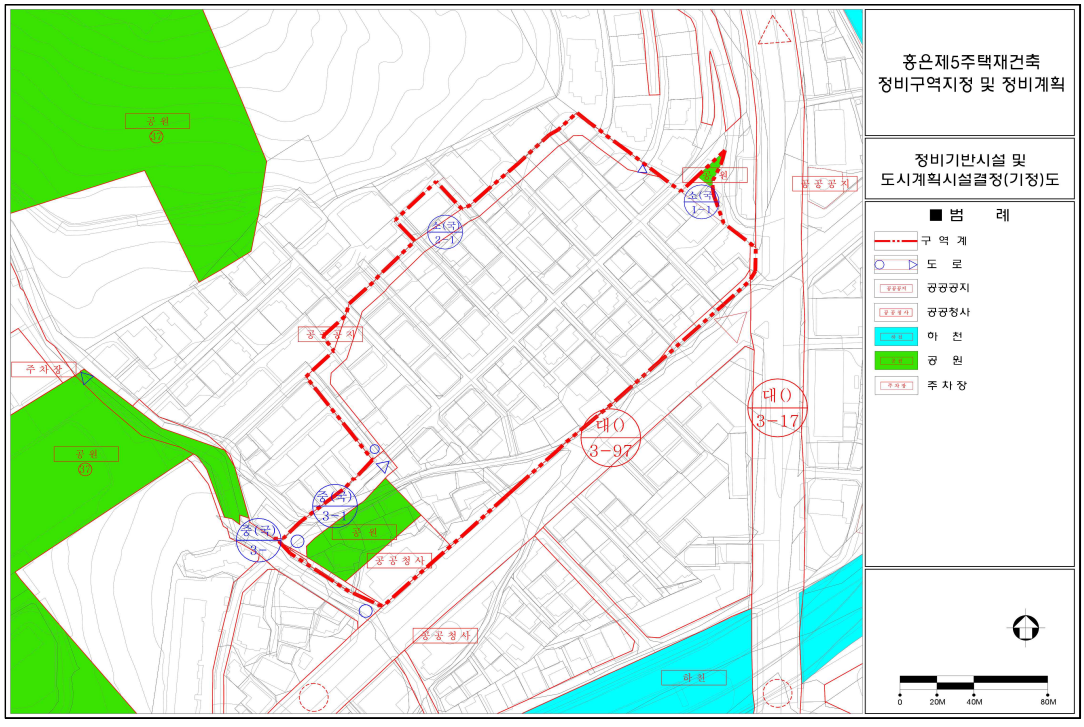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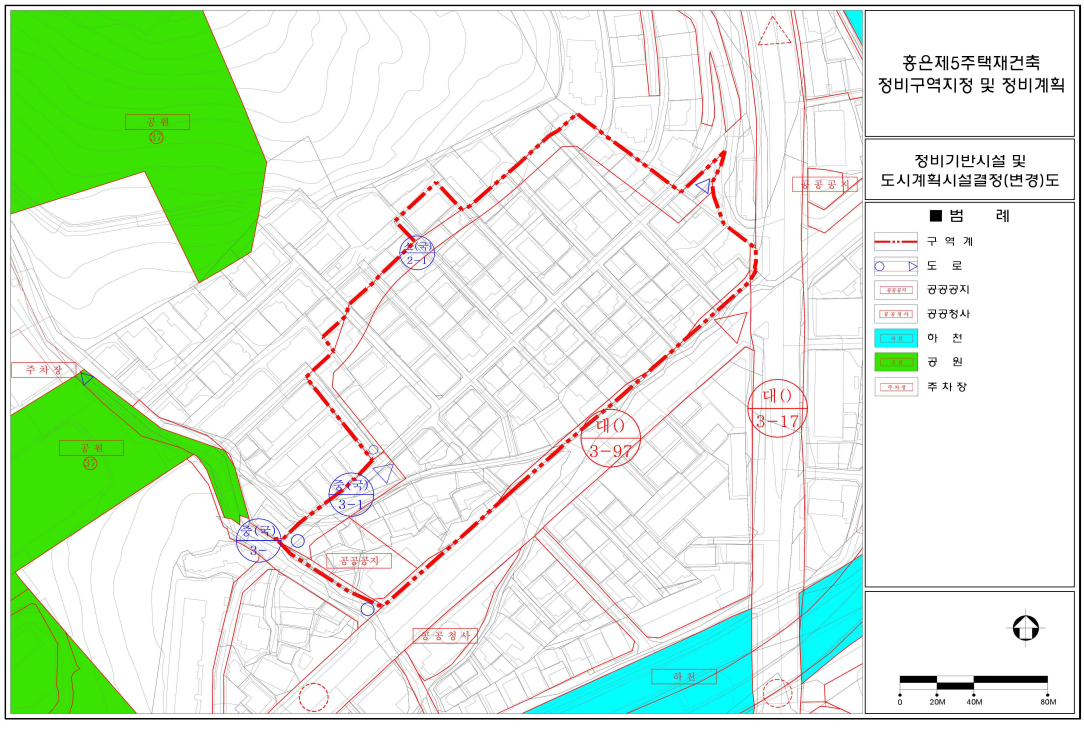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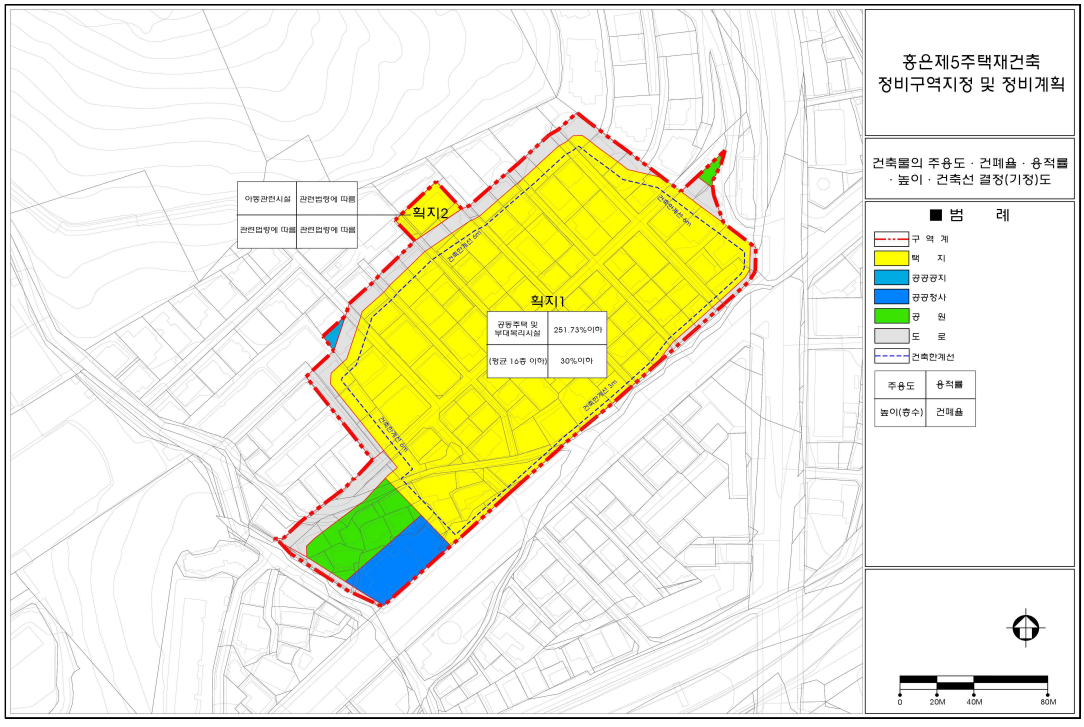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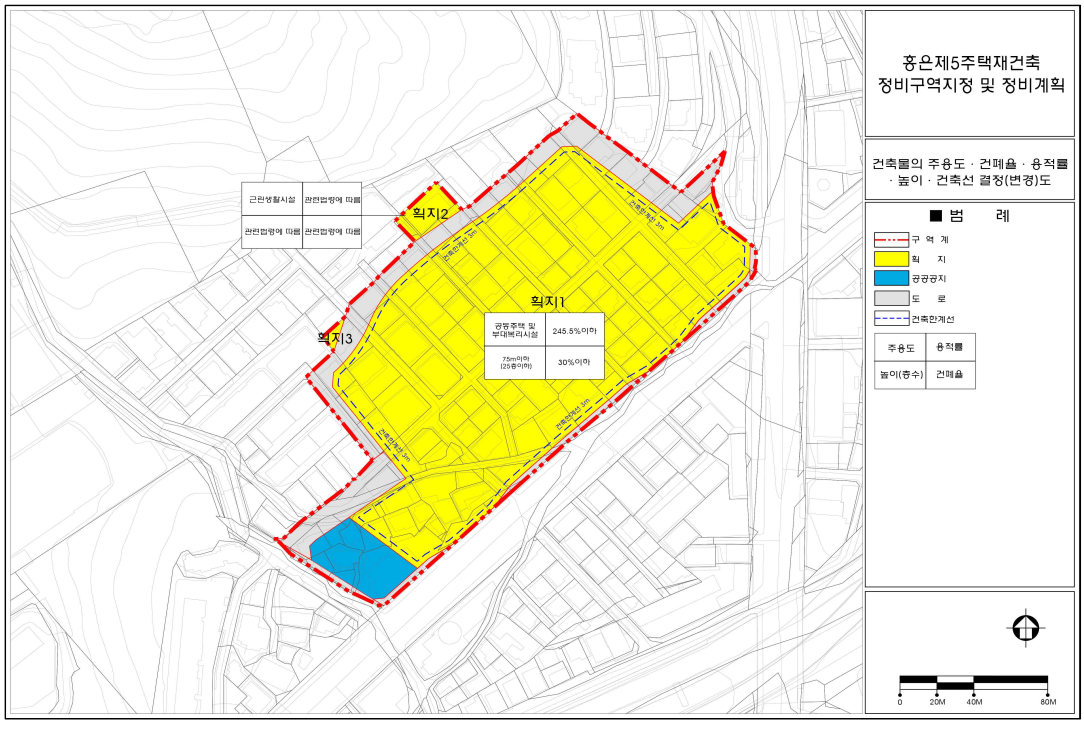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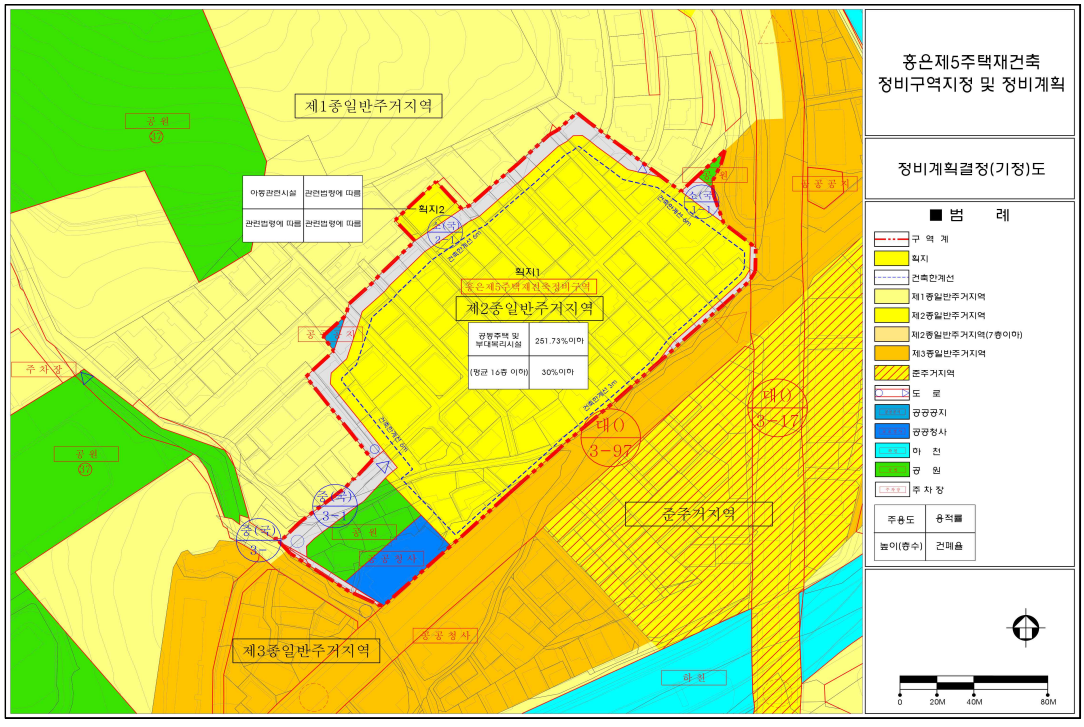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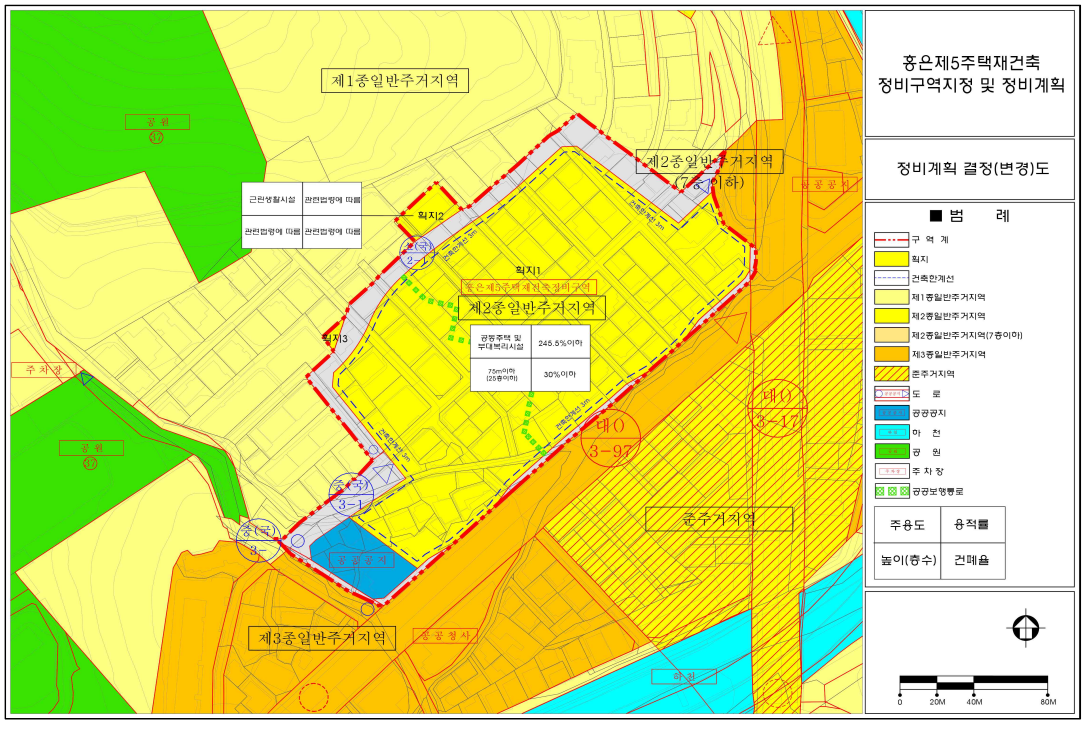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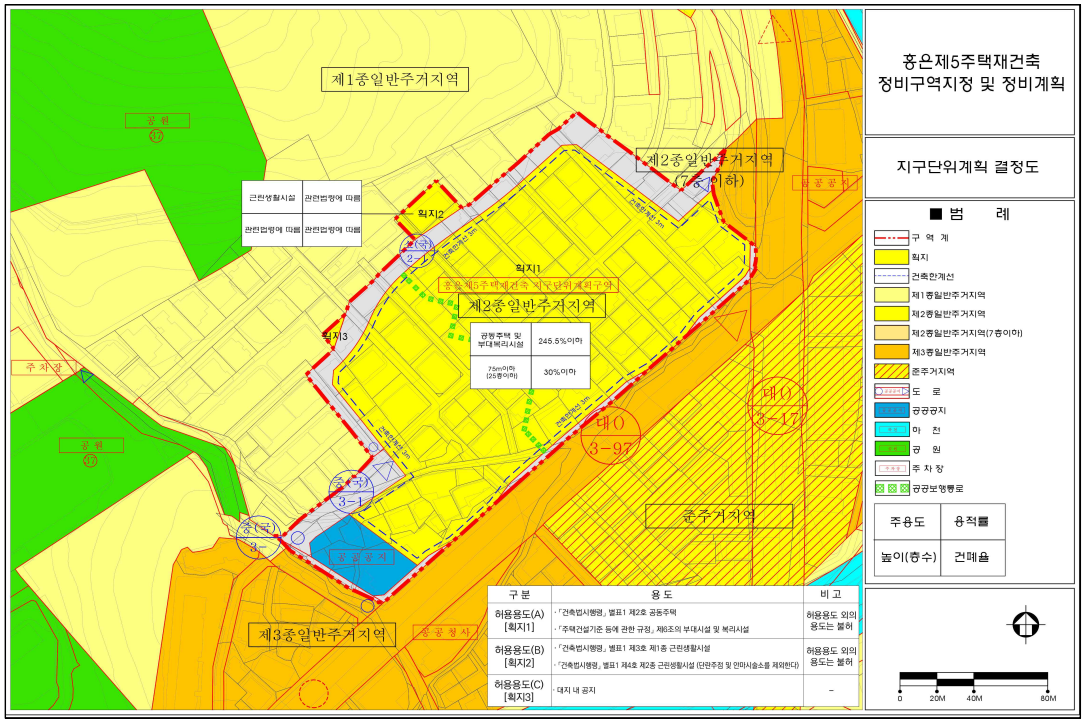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획지1
획지2
획지3
홍은제5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
주차장
대지
3-97
3-17
3-1
2-1
3-2
홍은제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범 례
구 역 계
획지
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도 로
공공공지
아 전
공 원
주 차 장
공공보행통로
주용도
용적률
높이(층수)
건폐율
구 분
용 도
비 고
허용용도(A) [획지1]
허용용도(B) [획지2]
허용용도(C) [획지3]
0
20M
40M
8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9호

청파 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이하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7.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	증)82,558.4	82,558.4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82,558.4	100.0	-
획지	소 계	64,557.0	78.2	-
	획지1	56,297.0	68.2	-
	획지2	6,509.0	7.9	-
	획지3	1,751.0	2.1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8,001.4	21.8	-
	도 로	8,535.4	10.3	-
	공 원	9,466.0	11.5	-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2.558.4	-	82,558.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9,129.5	감) 42,992.7	6,136.8	7.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2,671.7	감) 21,011.6	11,660.1	14.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64,557.0	64,557.0	78.2	
	제3종일반주거지역	757.2	감) 552.7	204.5	0.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청파동1가 3-5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992.7	청파동 일대 변화 및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청파동1가 201-1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	21,011.6	
	청파동1가 150-2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52.7	주택용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소계			1,780,120,333
	분양주택	조합원	1,366	1,454,267,681
		일반	132	125,342,956
	임대주택	재개발임대	237	96,610,284
		국민주택규모임대	170	20,139,294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조합원	41,529,000
			일반	43,260,000
	매출부가세			-1,028,882

구분	항목	금액(천원)
지출	소계	860,417,249
	공사비	618,497,478
	제사업경비	241,919,771
종전자산 추정액		909,030,000
추정비례율	101.17% = [(총수입(1,780,120,333천원) - 총지출(860,417,249천원) ÷ 종전자산(909,030,000천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천원/3.3㎡)	6,640	7,009	7,378	7,747	8,116
분양가	10%	47,310	125.79%	122.34%	118.90%	115.45%	112.00%
	5%	45,159	116.93%	113.48%	110.03%	106.58%	103.13%
	0%(기준)	43,009	108.07%	104.62%	101.17%	97.72%	94.27%
	-5%	40,858	99.20%	95.75%	92.31%	88.85%	85.40%
	-10%	38,708	90.34%	86.89%	83.44%	79.99%	76.54%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3	25	간선도로	2,300	만리동광장	문배동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청파로
변경	대로	3	13	25~28	간선도로	2,300 (38)	만리동광장	문배동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80	12~14.5	국지도로	600	서계동 264-17	청파동 1-81	일반도로	-	건고제78호 (1972.03.06.)	효창 원로
변경	중로	3	80	12~14.5	국지도로	600 (30)	서계동 264-17	청파동 1-8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609	청파동1가 148-2	마포구 공덕동 7-247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2)	12	국지도로	44	청파동1가 97-49	청파동1가 89-22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	8	국지도로	-	-	-	-	-	-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90	청파동1가 147-1	청파동1가 97-8	일반도로	-	건고제560호 (1963.9.19.)	청파로47나길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53	청파동1가 62-11	청파동1가 87-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10	청파동1가 58-20	청파동1가 59-2	일반도로	-	용산구고시 제46호 (1996.9.30.)	청파로71길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65	청파동1가 58-63	청파동1가 59-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5	4~6	국지도로	141	서계동 260-5	서계동 251-54	일반도로	-	-	효창원로104길
변경	소로	3	15	4~6	국지도로	238 (142)	서계동 260-5	청파동1가 1-75	일반도로	-	-	

※( )는 구역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3	대로3-13	• 일부구간 확폭 - 폭원 25m→28m / 연장38m	• 청파로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구역내 완화차로 3m 확폭
중로3-80	중로3-80	• 일부구간 확폭 - 폭원 12m→14m / 연장30m	• 효창원로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구역내 완화차로 3m 확폭
-	중로3-(1)	• 신설 - 폭원12m / 연장 609m	• 동서간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결도로 신설
-	중로3-(2)	• 신설 - 폭원12m / 연장 44m	• 남북간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결도로 신설
소로3-	-	• 폐지	•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로 폐지
소로3-2	소로2-(1)	• 확폭 및 선형 변경 - 폭원 6→8m/연장290→153m	• 원활한 통행을 위해 남북간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소로3-4	소로3-4	• 연장 축소 - 연장 110→65m	• 원활한 통행을 위해 남북간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소로3-15	소로3-15	• 일부구간 확폭 및 연장 확대 - 폭원 4m→6m/연장141→238m	• 도로 폭원의 연속성 확보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청파동1가 58-10	397.7	감)397.7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폐지면적 : 397.7㎡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주차장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근린공원	청파동1가 89-77	-	증) 9,466	9,466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결정내용	결정사유
A	공원	근린공원	면적 : 9,466㎡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지 인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		계획면적 (㎡)	비 고
				기준	면적(㎡)		
신설	주민공동시설	계	-	· 총 설치면적	6,578.1	13,908.83	
		경로당	획지1,2	· 1,500세대 이상	500	623.67	지상
		어린이놀이터	획지1,2	-		4,294.4	옥외
		어린이집	획지1,2	· 1,500세대 이상	725	900.54	지상
		주민운동시설	획지1,2	-		1,200.00	옥외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		계획면적(㎡)	비 고
			기준	면적(㎡)		
	작은도서관	획지1,2	· 1,500세대 이상	298	340.22	지하
	다함께돌봄센터	획지1,2	-		250.00	지상
	주민공동시설	획지1,2,3	-		6,300.00	지하
	관리사무소	획지1,3	· 10㎡+(총세대수-50세대)×0.05㎡	102.75	325.00	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청파2 주택정비형재개발 사업	82,558.4	획지1	56,297.0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453	-	-	453	-	-
			획지2	6,509.0							
			획지3	1,751.0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법적상한	
신설	청파2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82,558.4	획지1	56,297.0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60% 이하	212.07 이하	250.00이하	해발150m 이하 (25층이하)
			획지2	6,509.0						
			획지3	1,751.0						해발120m 이하 (1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총 세대수: 1,905세대(분양 1,498세대, 임대 407세대)
- 건립규모

건립규모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소계	분양	임대		
합계			1,905	1,498	407	100.0	-
85㎡ 이하	60㎡ 이하	39	382	285	97	20.1	72.8%
		49	694	484	210	36.4	
		59	311	217	94	16.3	
	60㎡초과 ~85㎡이하	74	201	198	3	10.5	22.2%
		84	222	219	3	11.7	
85㎡ 초과		124	95	95	-	5.0	5.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5.0%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법적상한	
	• 임대주택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획지 경계로부터 3m를 원칙으로 하되, 효창원로변 8m, 청파로변은 동측으로 10m, 남측으로 8~30m 적용 - 공동주택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3m)는 보행공간으로 우선 조성하되, 보행공간 외 부분은 휴게공간 조성 • 벽면한계선 지정 - 획지 내 건축한계선에서 2m 이상 (보행공간 조성 부분에 한해 적용) ※도면 참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2개소 (폭원 6m이상) • 획지3 북측변 보차혼용통로 조성(폭원 4m) • 동서간 통경축 확보(최소 10m 이상) • 중저층배치구간: 15층 이하									
심의완화사항	• 용도지역 상향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6.66% •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 건축계획용적률 249.88%(법적상한 용적률 250.00%) - 상한용적률(212.07%) = 37.93%의 50%인 18.965% 이상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82,558㎡	64,557㎡	18,001㎡	-	2,011㎡	7,256㎡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8,734㎡ = 신설기반시설 - 신설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8,001㎡ - 2,011㎡ - 7,256㎡ = 8,734㎡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기부채납 면적: 18,001㎡ - 도로 8,535㎡ - 공원 9,466㎡					
계획용적률	기준용적률	•163.36% (가중평균 적용)				

구 분	산 정 내 용		
	허용용적률	•180.02% (가중평균 적용) - 허용용적률인센티브 16.66% 적용	
정비계획 (상한)용적률	• 212.07% = 허용용적률×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180.02%×(1+1.3×1.0122×0.1353+0.7×0.0000)		▸ 가중치 : 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182.2% ÷ 180.0% = 1.0122 ▸ α토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8,734㎡ ÷ 64,557㎡ = 0.1353
법적상한 용적률	• 250.0%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주택)으로 건설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 심의에서 최종 확정

※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에 따른 순부담면적 등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 이행시 변경될 수 있음

1) 계획용적률(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① 기준용적률	항목		인센티브	적용여부	②허용용적률 (①+②)
163.36%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 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 설정)	10% 이내	5%	180.02%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조성	5%	5%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5%	-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5%	5%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5%	5%	
	기반시설 등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5% 이내	-	
	지역특화 인센티브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10% 이내	-	
인센티브 적용 계			20% (16.66% 적용)		최대 16.66% 이내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 : 1,576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237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1,576세대)의 15%이상 : 1,576세대 × 15% = 236.4세대 ∴ 237세대 계획 〉 236.4세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30% 이상 40㎡이하 규모의 주택 건설 - 237세대 × 30% = 71세대 ∴ 71세대 계획 = 71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237	12.4	100.0
전용 39.95㎡	71	3.7	30.0
전용 49.95㎡	134	7.0	57.0
전용 59.95㎡	30	1.6	13.0
전용 74.95㎡	1	0.1	0.0
전용 84.95㎡	1	0.1	0.0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 250.0%</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5">• 212.07%</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증가분</td><td colspan="5">• 250.0% - 212.07% = 37.93%</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50%</td><td colspan="5">• 37.93% × 0.5 = 18.97%
• 64,557 × 0.18965 = 12,243.24㎡</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12,243.24㎡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8">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39.95㎡</td><td>54.73㎡</td><td>26</td><td>1,423㎡</td><td rowspan="5">획지</td></tr>
<tr><td>49.95㎡</td><td>68.42㎡</td><td>76</td><td>5,200㎡</td></tr>
<tr><td>59.95㎡</td><td>82.12㎡</td><td>64</td><td>5,256㎡</td></tr>
<tr><td>74.95㎡</td><td>102.67㎡</td><td>2</td><td>205㎡</td></tr>
<tr><td>84.95㎡</td><td>116.37㎡</td><td>2</td><td>233㎡</td></tr>
<tr><td colspan="2">합계</td><td>170</td><td>12,317㎡</td><td>≥12,243.24</td></tr>
</table>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자연환경: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반영 - 주변지역 및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면적 증가, 구역내 공원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활환경: 환경을 고려한 수종 식재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포장면적 축소 • 공사 시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저소음, 저진동의 공사장비를 투입하여 주변지역에 영향 최소화	
재난방지	•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기능을 저해하는 과도한 절성토를 규제함 •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함 • 공원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함(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함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단지내 동선체계를 구축함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비오톱	-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 비오톱 분석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호가치가 낮은 비오톱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도모	-
	생태 네트워크	녹지 연결성 확보	○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 사업대상지 내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계획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해당 사항 없음	-	-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보전	X	•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생활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측정망 기준 만족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없음 •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 계획 수립	-
	지형 · 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경사 10° ~15° 미만 30.1% • 표고 50m~60m 미만 26.1% 60~70m 미만 17.6%	• 공사시 과도한 정지계획 지양 • 토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
생활환경	수질, 물순환, 수리 · 수문	수질오염 최소화, 생태면적률 30%	○	• 수질현황 BOD Ia~II등급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 생태면적률 30% 이상 계획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로 토사 및 우수유출 최소화	-
	바람	바람길 확보	○	• 기상현황 분석	•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열	열환경 최소화	○	• 계획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배치계획 수립	-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계획 수립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반영사항	비고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용산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소음·진동	소음·진동영향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경관	조망권 확보	○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사업대상지 내에 도서관 및 공원을 계획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대상지 북서측~북측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예상	•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준수를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
	보행 친화공간	공공보행통로 계획수립	○	• 사업대상지 내 보행로 없음	• 행 및 차량 통행로 개선	-
사회경제환경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인구 현황 조사	-	-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주거 현황 조사	-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현 황	증·감	계 획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	-	1,408세대	증) 497세대	1,905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계획내용	비고
청파초교, 배문중고교 (정비구역 경계 200m 이내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인가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예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불허 • 공사 시 가설방음시설 설치,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저감 등 공사 시 안전 대책마련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기법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기본방향에 따름 -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함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	216,230	감)17,056	199,174	
신설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	증)82,558.4	82,558.4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서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면적: 216,230㎡→199,174㎡ (감 17,056㎡)	•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구역내 서계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제척하고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하고자 함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82,558.4㎡	•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7조에 의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2.558.4	-	82,558.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9,129.5	감)42,992.7	6,136.8	7.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2,671.7	감)21,011.6	11,660.1	14.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64,557.0	64,557.0	78.2	
	제3종일반주거지역	757.2	감)552.7	204.5	0.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청파동1가 3-5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992.7	청파동 일대 변화 및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청파동1가 201-1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	21,011.6	
	청파동1가 150-2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52.7	주택용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3	25	간선도로	2,300	만리동광장	문배동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청파로
변경	대로	3	13	25~28	간선도로	2,300 (38)	만리동광장	문배동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80	12~14.5	국지도로	600	서계동 264-17	청파동 1-81	일반도로	-	건고제78호 (1972.03.06.)	효창 원로
변경	중로	3	80	12~14.5	국지도로	600 (30)	서계동 264-17	청파동 1-8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609	청파동1가 148-2	마포구 공덕동 7-247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2)	12	국지 도로	44	청파동1가 97-49	청파동1가 89-22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	8	국지도로	-	-	-	-	-	-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90	청파동1가 147-1	청파동1가 97-8	일반도로	-	건고제560호 (1963.9.19.)	청파로 47나길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53	청파동1가 62-11	청파동1가 87-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10	청파동1가 58-20	청파동1가 59-2	일반도로	-	용산구고시 제46호 (1996.9.30.)	청파로 71길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65	청파동1가 58-63	청파동1가 59-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5	4~6	국지 도로	141	서계동 260-5	서계동 251-54	일반도로	-	-	효창원로 104길
변경	소로	3	15	4~6	국지 도로	238 (142)	서계동 260-5	청파동1가 1-75	일반도로	-	-	

※( )는 구역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3	대로3-13	• 일부구간 확폭 - 폭원 25m→28m / 연장38m	• 청파로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구역내 완화차로 3m 확폭
중로3-80	중로3-80	• 일부구간 확폭 - 폭원 12m→14m / 연장30m	• 효창원로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구역내 완화차로 3m 확폭
-	중로3-(1)	• 신설 - 폭원12m / 연장 609m	• 동서간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결도로 신설
-	중로3-(2)	• 신설 - 폭원12m / 연장 44m	• 남북간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결도로 신설
소로3-	-	• 폐지	•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로 폐지
소로3-2	소로2-(1)	• 확폭 및 선형 변경 - 폭원 6→8m/연장290→153m	• 원활한 통행을 위해 남북간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소로3-4	소로3-4	• 연장 축소 - 연장 110→65m	• 원활한 통행을 위해 남북간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소로3-15	소로3-15	• 일부구간 확폭 및 연장 확대 - 폭원 4m→6m/연장141→238m	• 도로 폭원의 연속성 확보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청파동1가 58-10	397.7	감)397.7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폐지면적 : 397.7㎡	•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주차장 폐지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근린공원	청파동1가 89-77	-	증) 9,466	9,466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결정내용	결정사유
A	공원	근린공원	• 면적 : 9,466㎡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지 인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획지1	56,297	1	청파동1가 89-7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6,509	2	청파동1가 132-14번지 일대	
획지3	1,751	3	청파동1가 74-1번지 일대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 용도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 및 동법 제35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
		획지2		
		획지3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60%이하	-
	획지2		-
	획지3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			
				상한	법적상한		
신설	획지1	163.36% 이하	180.02% 이하	212.07% 이하	250.0% 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180.02%
	획지2						상한용적률 212.07%
	획지3						법적상한용적률 250.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고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돌봄시설	방재안전	
신설	5%	5%	5%	5%	최대 20% 이내 (기준 16.66%)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주택건설	
신설	32.05%	37.93%	69.98%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신설	획지1	2종일반주거지역	25층 이하 / 해발고도 150m이하	-
	획지2			
	획지3	2종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 해발고도 120m 이하	-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획지1	공공보행통로	•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2개소 - 청파초 ~ 배문중·고 연결 (폭원 6m) - 서울로 7017 ~ 신설 문화공원 연결 (폭원 6m) (효창원로86라길 ~ 청파로71가길 연결)	지역권 설정
		건축한계선 등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로부터 3m • 효창원로변 - 획지경계로부터 8m [벽면한계선] • 획지 내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보행공간 조성부분에 한해 적용, 배문중·고변, 청파로 남측변 제외)	
		통경축	• 동서간 폭원 10m의 통경축 확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2	건축한계선 등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로부터 3m • 청파로변 - 동측: 획지경계로부터 10m - 남측: 획지경계로부터 8~30m [벽면한계선] • 획지 내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보행공간 조성부분에 한해 적용, 배문중·고변, 청파로 남측변 제외)	
		통경축	• 동서간 폭원 10m의 통경축 확보	
	획지3	보차혼용통로	• 동서간 보차혼용통로 1개소 - 폭원 4m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로부터 3m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방향성	획지1, 2, 3	•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각 영역의 성격에 맞는 공간 조성 - 남측 공원 변 : 공원으로 열린 주동을 배치 - 단지 중앙 : 랜드마크 타워형 주동 배치하고, 통경축 주변 개방감 고려 - 공공보행통로변 : 안전한 등학교를 위한 자연감시가 가능한 주동배치고려	
대지 조성계획		• 지형에 순응하여 원지형 및 주변 레벨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데크계획 수립 • 데크의 단차를 활용하여 테라스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 배치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 구릉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 스카이라인 계획 - 대상지 경계에서 중앙으로 텐트형(△)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과 연계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통경축 계획 - 효창원로~청파로로 연결되는 통경축 구간 설정	
중저층 배치구간	획지1, 2	• 청파로 및 효창원로변 중저층배치구간 설정 (폭원 50m) - 15층 이하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1) 환경관리계획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비오톱	-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 비오톱 분석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호가치가 낮은 비오톱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도모	-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 사업대상지 내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 계획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해당 사항 없음	-	-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보전	X	•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생활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측정망 기준 만족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없음 •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 발생 우려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 계획 수립	-
	지형 · 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경사 10° ~15° 미만 30.1% • 표고 50m~60m 미만 26.1% 60~70m 미만 17.6%	• 공사시 과도한 정지계획 지양 • 토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
	수질, 물순환, 수리 · 수문	수질오염 최소화, 생태면적률 30%	○	• 수질현황 BOD Ia~II등급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 생태면적률 30% 이상 계획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로 토사 및 우수 유출 최소화	-
	바람	바람길 확보	○	• 기상현황 분석	•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열	열환경 최소화	○	• 계획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배치계획 수립	-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계획 수립	-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반영사항	비고
생활환경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용산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경관	조망권 확보	○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사업대상지 내에 도서관 및 공원을 계획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대상지 북서측~북측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예상	•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준수를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
	보행 친화공간	공공보행통로 계획수립	○	• 사업대상지 내 보행로 없음	• 보행 및 차량 통행로 개선	-
사회경제환경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인구 현황 조사	-	-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주거 현황 조사	-	-

2)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 해야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 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 비율	공공임대 중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합계	1,905	100.0	407	237	170	21.4	100.0	41.8
전용39	382	20.1	97	71	26	5.1	23.9	6.4
전용49	694	36.4	210	134	76	11	51.6	18.7
전용59	311	16.3	94	30	64	4.9	23.1	15.7
전용74	201	10.5	3	1	2	0.2	0.7	0.5
전용84	222	11.7	3	1	2	0.2	0.7	0.5
전용124	95	5.0	-	-	-	-	-	-

Ⅲ. 2024년 제6차(‘24.07.03)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조건사항〉 · 공공보행통로는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상시개발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전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것	· 공공보행통로는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상시개발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전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반영토록 하겠음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서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 각 획지별 건축계획 용적률은 정비계획상 용적률(250%) 이내를 유지토록 할 것 - 획지2 건축배치계획은 청파로변 개방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서방향 통경축 (폭원 10M) 연접부의 건축계획이 과도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	· 향후 건축심의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 각 획지별 건축계획 용적률은 정비계획상 용적률(250%) 이내 유지 - 획지 2 건축배치계획은 청파로변 개방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서방향 통경축 (폭원10m) 연접부의 건축계획이 과도하지 않도록 계획	-
		〈권고사항〉 · 북측에 연접한 청파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대상지의 통경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관부서에서 조치할 것	-	-

※ 향후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이행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준수할 것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정비계획 결정도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7), 용산구 재정비사업과(☎02-2199-746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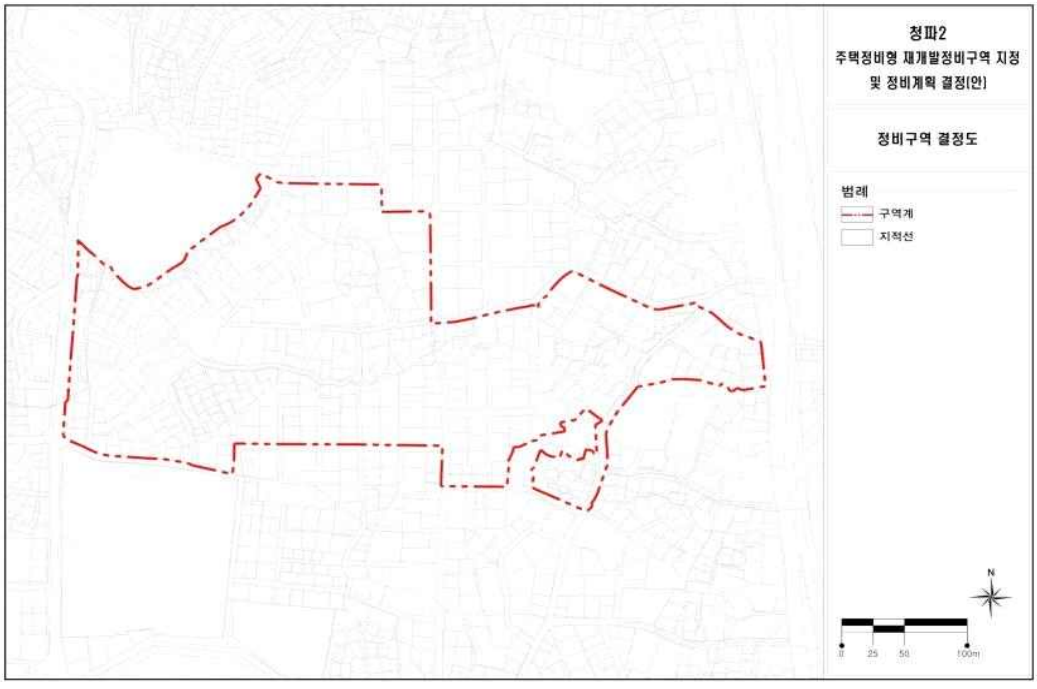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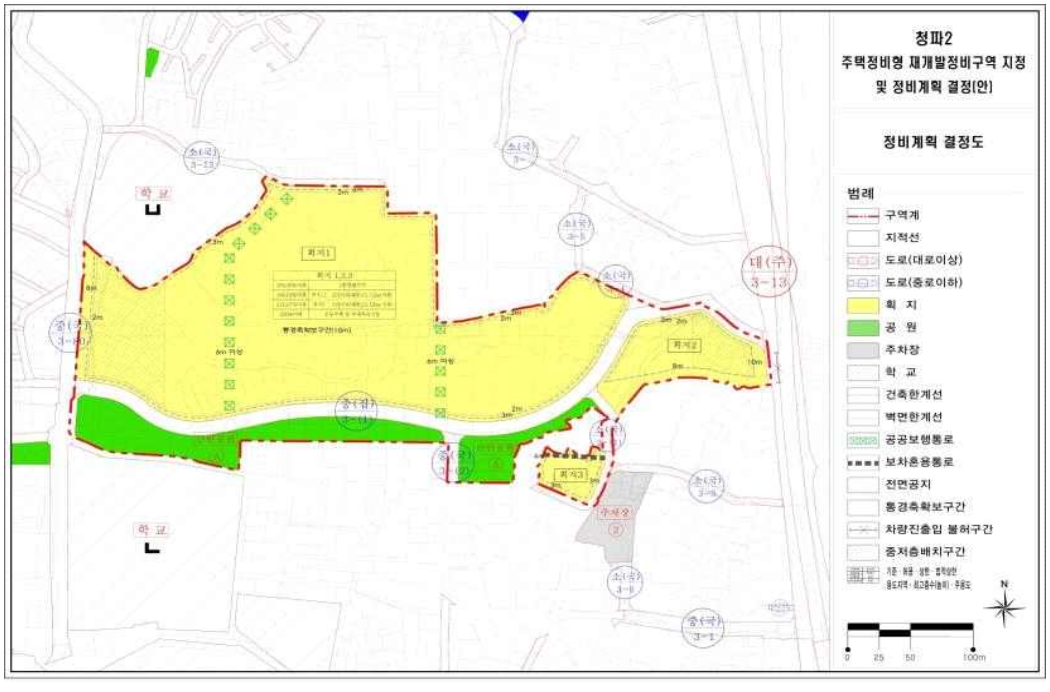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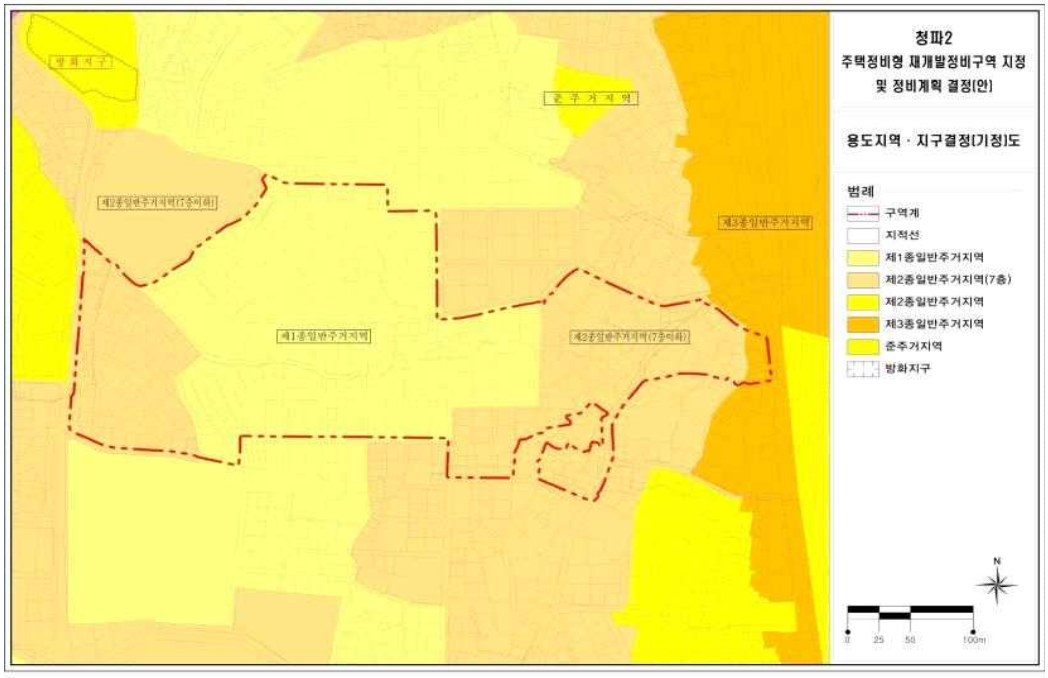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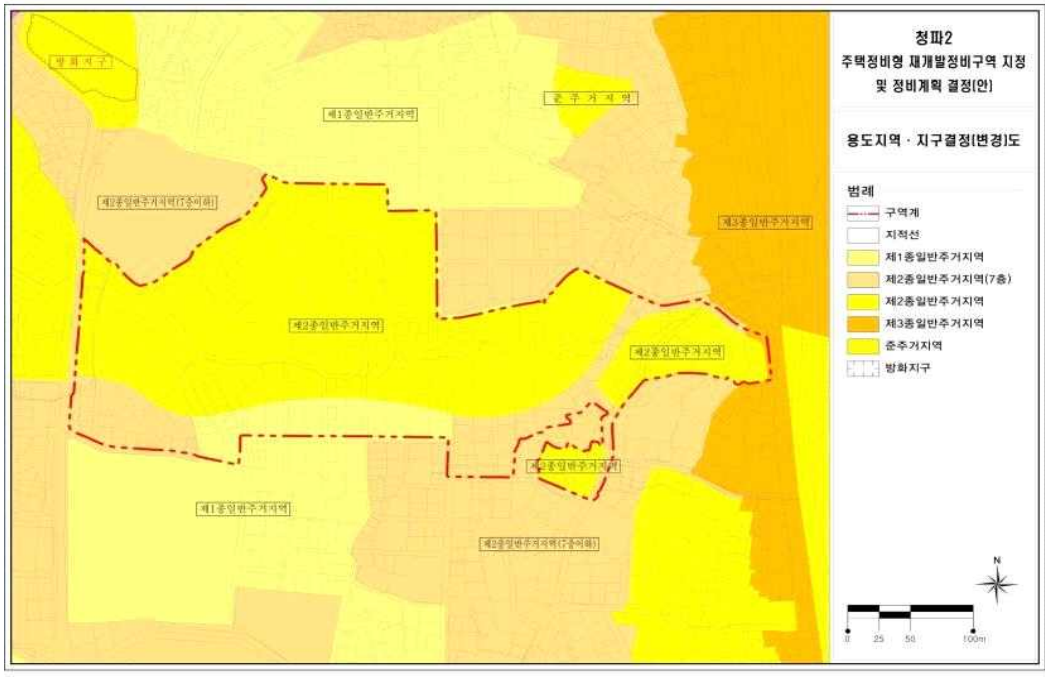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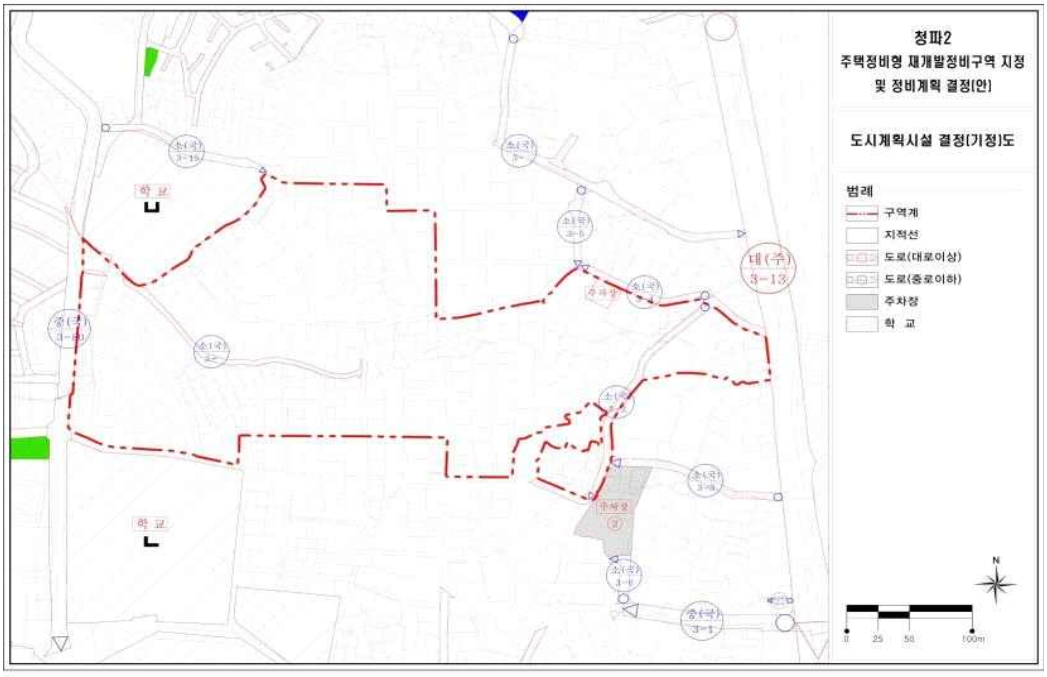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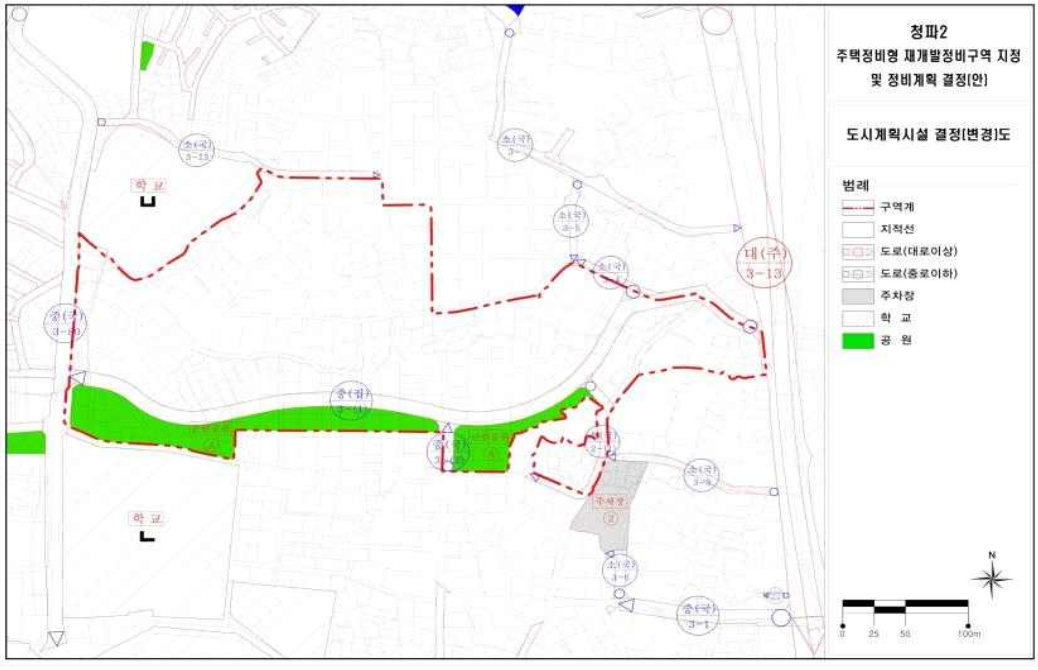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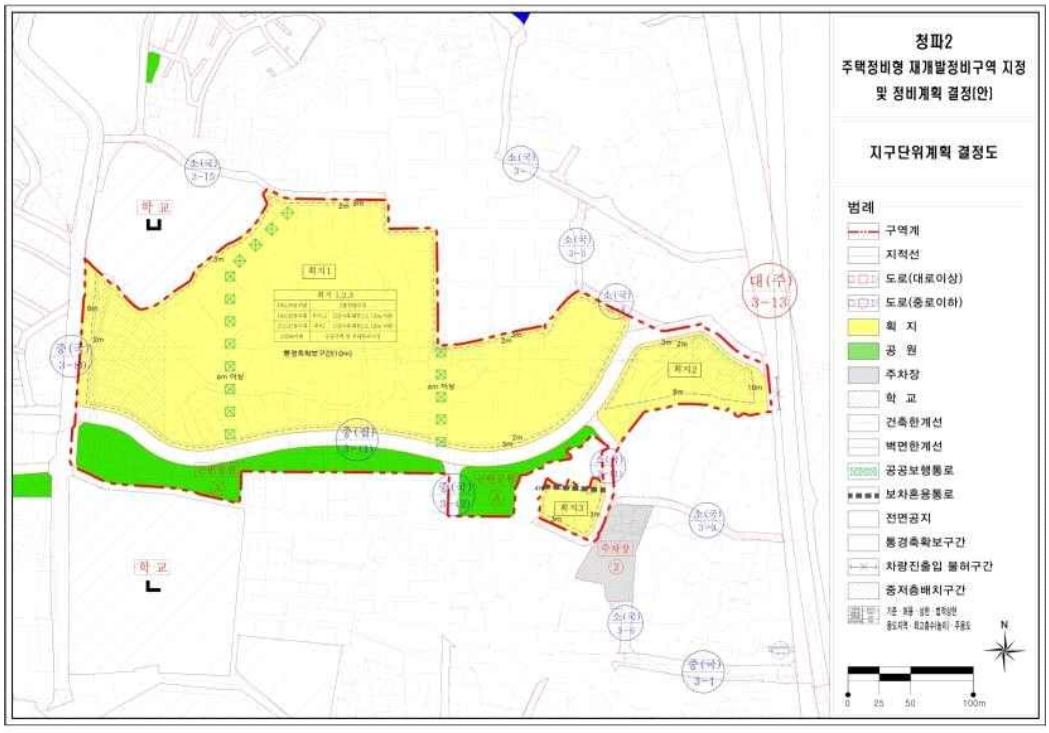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범례
구역계
지적선
도로(대로이상)
도로(중로이하)
획 지
공 원
주차장
학 교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전면공지
통경축확보구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중저층배치구간
N
0 25 50 10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0호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4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07.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강동구 길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	증) 1,927.7	1,927.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1,927.7㎡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27.7	-	1,927.7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27.7	감) 1,927.7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927.7	1,927.7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1,927.7	750% 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함

2.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가. 공공기여계획 결정 조서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 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일반 상업지역	250%	750%	부지면적의 33.33% 이상	합 계	100.0%	714.54㎡	390.78㎡	323.76㎡	-
				공공임대주택	24.8%	177.02㎡	177.02㎡	-	
				지역필요시설	75.2%	537.52㎡	213.76㎡	323.76㎡	

■ 공공기여계획 세부내역

구 분	총 공공기여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비 율	연면적			비 고 (귀속주체)
					지상	지하	전체	
공공임대주택	177.02㎡	177.02㎡	-	24.8%	1,294.89㎡	778.13㎡	2,073.02㎡	26세대 (서울특별시)
지역필요시설	537.52㎡	213.76㎡	323.76㎡	75.2%	1,719.58㎡	776.44㎡	2,496.02㎡	지상3, 4층 (강동구청)
계	714.54㎡	390.78㎡	323.76㎡	100.0%	3,014.47㎡	1,554.57㎡	4,569.04㎡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주2) 공공임대주택은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2023.2.1.)를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로 매입되며, 그 외 공공기여시설은 토지, 건축물 모두 기부채납함(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주3) 부지가액은 탁상감정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
주4) 지역필요시설 건축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2022' 의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적용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획지		비고
		획지	면적(㎡)	
신설	1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1,927.7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획지계획 수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

1) 불허용도

구분	도면 표시번호	불허용도		비고
신설	불허용도 (A)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전용에 한함)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에 한함)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9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층 (가로활성화 저해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제조업소, 수리점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2) 지정용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정용도		비고
신설	지정용도 (a)	3층~4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놀이형시설, 업무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주1) 3층~4층 지정용도는 지상3층~4층 바닥면적의 50%이상 확보(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분면적 제외)
주2) 1층 지정용도는 지상1층 바닥면적의 50%이상 확보(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분면적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1) 건폐율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준용

2)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용 적 률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기 준(허용)	상 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50% 이하	75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2-1. 준용

■ 용적률 적용기준1)(의무사항)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 기여율	• 부지면적의 33.33% 이상	• 부지면적의 37.07% • 세부내용 - 공공임대주택 24.8% - 지역필요시설 75.2%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75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6.97% : 23.03%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8.50% : 21.50%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2. 나목, 다목의 2) 항목 적용 주3) = 주거용적률 577%이하	• 계획 576.99%			
주택건설 기준	주택 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85㎡이하	• 공공임대주택 - 29㎡, 37㎡, 44㎡, 46㎡, 49㎡ 계획			
		• 민간주택 : 기준 없음	• 민간주택 - 29㎡, 37㎡, 44㎡, 46㎡, 49㎡ 계획			
		• 공공주택과 민간분양주택 상호간에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사용상의 분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합을 고려한 건축 계획	•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고려한 민간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차별없는 공급 계획			
건축물 형태	건축계획 기준	• 각 사항 의무적 시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보전(해당되는 대상지에 한함)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적용		
			• 친환경 건축물	적용		
			• 역사문화 보전	해당없음		
주민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주민공동시설 165.27㎡ 계획 - 피트니트센터, 카페테리아 라운지, 공유주방 등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2) 향후, 건축설계 결과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주3) 별표3의 2. 나목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다목. 2)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4.7.24.)

다. 건축물 높이 계획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일반상업지역	84m 이하	-

라.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양대대로변(32m)	3m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천중로변(27m)	3m	
		천중로44길변(6m)	2m	
	벽면지정선	양재대로변(32m)	5m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간선변에 한하여 연접대지에 기존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4m로 하되, 기존건물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신축건물이 연접대지의 기존건물과 같은 층수일 경우에는 난간벽(파라펫)의 높이도 기존건물과 조화 도모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설치 금지 • 폭 25m 이상의 도로 및 폭 15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도모	
	건축설비의 노출	•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시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 양재대로변(32m), 천중로변(27m), 천중로44길변(6m)의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차량출입 불허구간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양재대로(32m)변 • 천중로(27m)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2133-4655) 및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3425-880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및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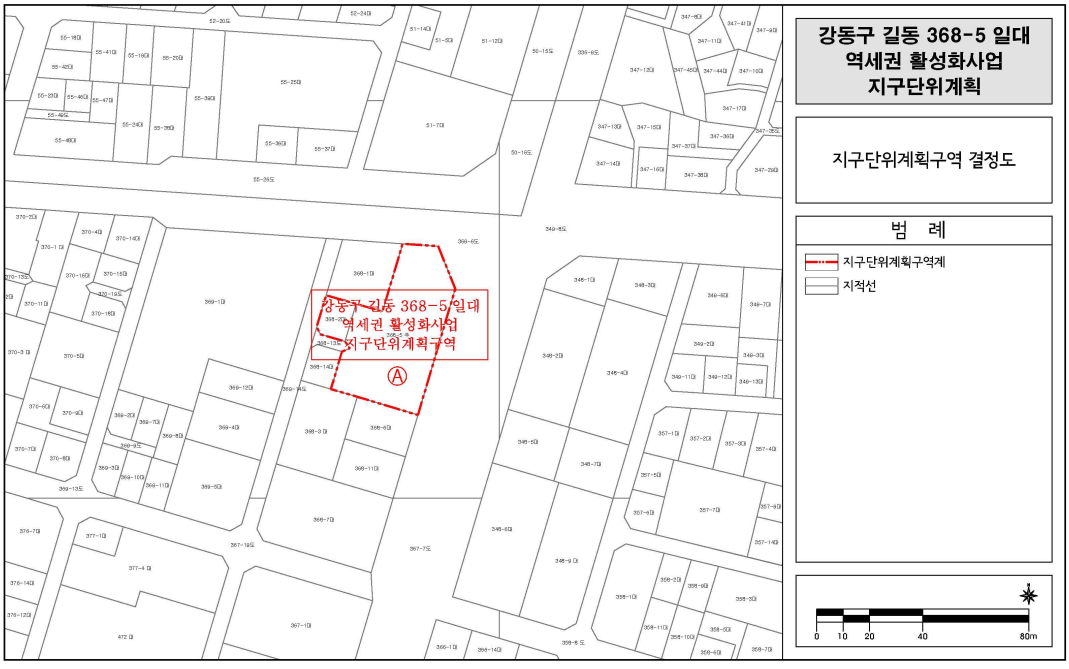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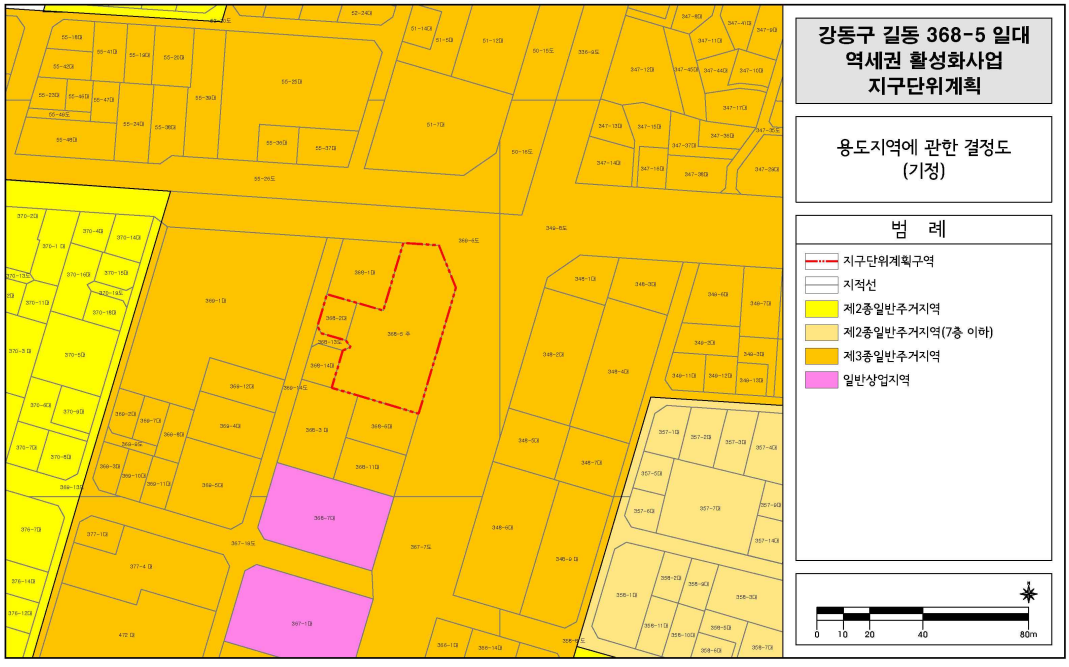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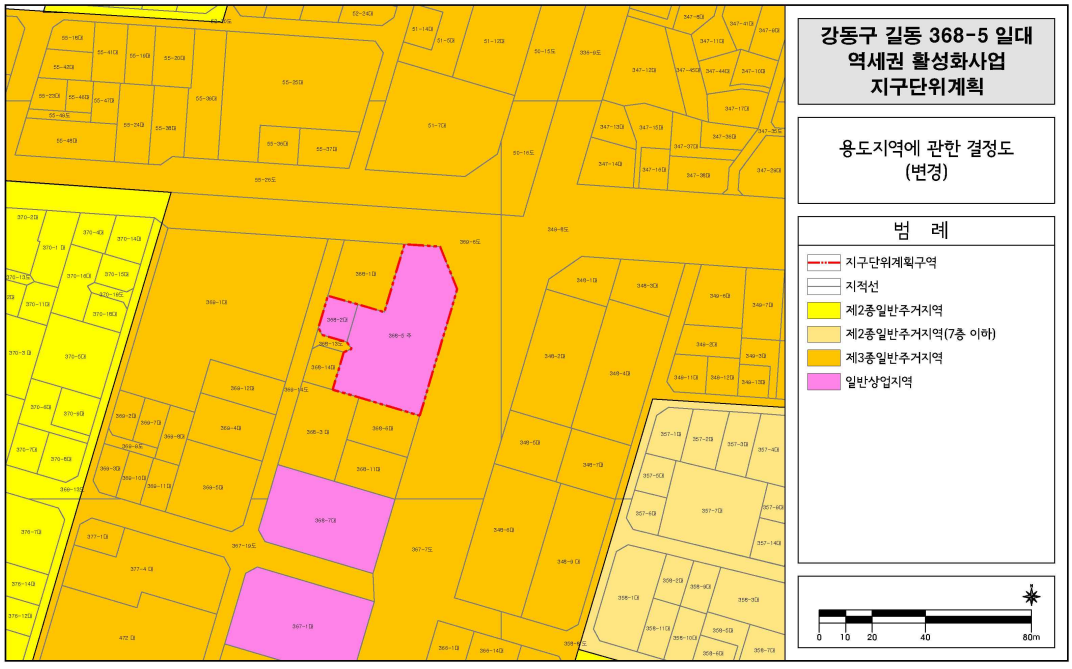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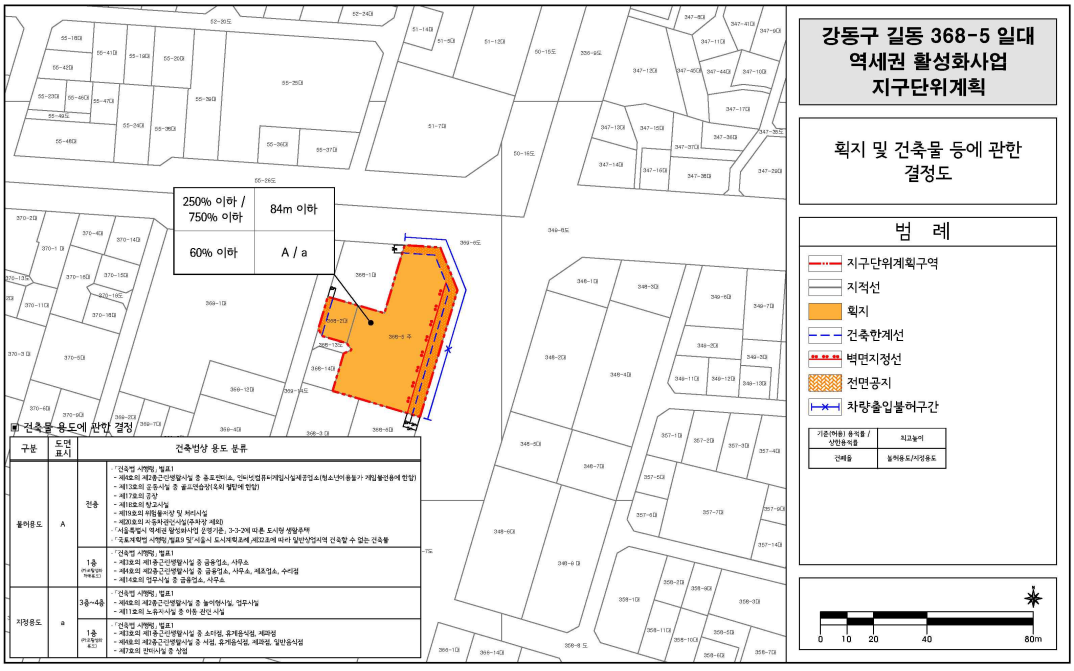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구분	도면표시	건축법상 용도 분류
불허용도	A	전층
		1층
지정용도	a	3층~4층
		1층

■ 지구단위계획 종합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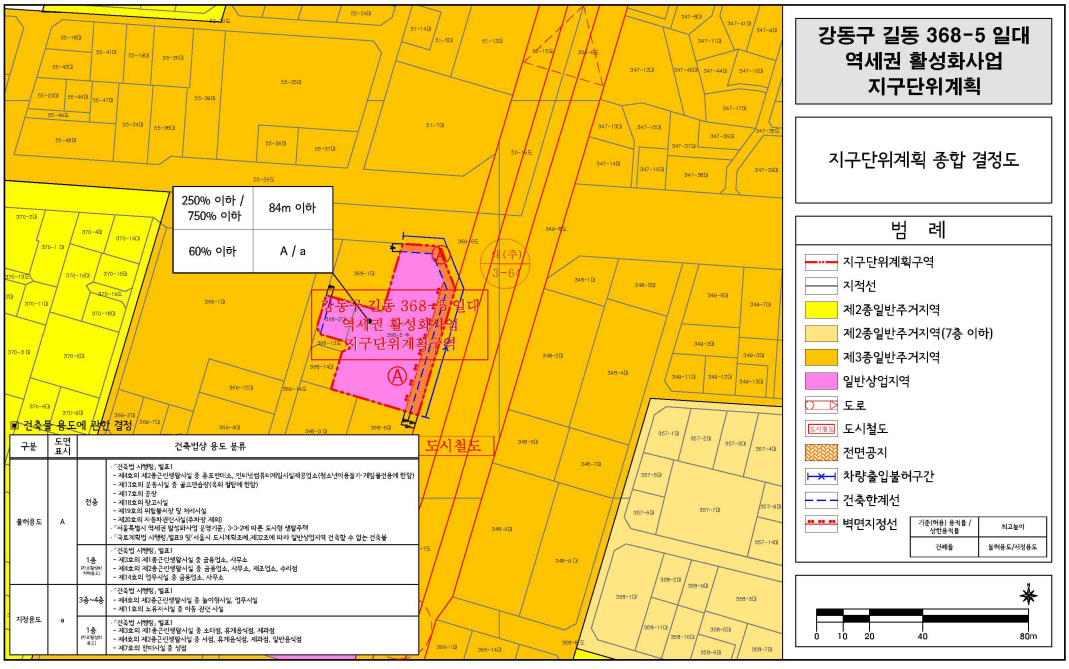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1호

도시철도 역명 개정 확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역명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철도 역명 개정

구 분	대상역	위 치	개정 고시 역명
개정	당고개	노원구 상계로 305	불 암 산
	삼각지	용산구 한강대로 180	삼 각 지 (전쟁기념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2호

도시관리계획[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1996.08.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78호(2001.06.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2호(2020.12.3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C-①)'의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호(2020.01.30.)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1호(2022. 11. 24.)로 결정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07. 17.)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강동역 역세권활성화 정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정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정비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강동구 성내동 19-1 일원	21,461.0	-	21,461.0	역세권 활성화사업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1,461.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357.2	15.6	
	도 로	3,357.2	15.6	
택지(획지)	소 계	18,103.8	84.4	
	택지(획지)	18,103.8	84.4	

3. 용도지역 · 지구 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1,461.0	-	21,461.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065.2	-	3,065.2	14.3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92.0	-	292.0	1.3	
	일반상업지역	18,103.8	-	18,103.8	84.4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이하여백-

4.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정비사업비(추산액)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소요비용 계			1,848,821,139	
토지비(종전 토지 등의 금액)			454,414,430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종전자산(추산액)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 무상양도 국공유지 제외]
도시설계 등			6,200,000	1식
설계감리비			21,933,900	73,113평(개략)×30만원/평 (설계, 감리 포함 추산액)
소요비용 추산액	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694,573,500	73,113평(개략)×950만원/평(개략적인 추산액)
		인입공사비	4,386,780	73,113평(개략)×6만원/평(개략적인 추산액)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및 기부채납시설 등	58,521,526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기부채납 시설 공사비 / 1식
		전선지중화 공사비 등	5,200,000	1식
		철거비	7,000,000	1식
		미술품장식비	1,700,000	1식
	보상비	세입자 이주비 (이주,영업보상 등)	5,250,000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관리비	사업시행 관리비	8,000,000	사업시행자의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
	분양경비	분양광고, M/H 건립 및 운영, 분양대행수수료 등	78,000,000	M/H건립, 분양보증수수료, 분양보증수수료, 분양수수료, 광고·홍보비 외
		입주관리비	617,500	1식
	분담금 등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587,500	1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240,830	1식
		개발부담금	9,500,000	1식
		학교용지부담금	13,017,384	1식
		과밀부담금	13,205,874	1식
	부대경비	감평비용	4,200,000	1식

구 분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각종 용역비 (측량, 법무 외)	7,900,000	측량, 법무 외 기타 용역비
	기타	보존등기비	19,631,915	1식
		신탁수수료	2,500,000	1식
	금융비용		397,240,000	1식
	예비비		27,000,000	1식

※ 상기 정비사업비는 추산액으로 사업추진일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정비사업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사업비 (종후 평가금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582,942,360	①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1,265,878,779	
대지조성비		58,521,526	②
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		454,414,430	③
총 대지평가차액		70,006,404	① - ② - ③

※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총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 총 사업비)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의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평가)' 이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각 시설별로 분배한 금액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정액)으로 책정함

※ 개별대지평가차액(산정안)=총 대지평가차액×개별 종전토지 및 건물 평가액비율=70,006,404천원×0.066% ≒약 46,218천원(※개별 종전 토지 및 건물 평가액 비율=개별 종전토지 및 건물 평가액÷총 종전토지 및 건물 평가액=700,000천원÷454,414,430천원≒약0.066%

다.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종전자산 추산액 (예시)	예상 기준가액 (권리가액) (종전자산추산액 + 개별대지평가차액)	분양가		예상분담금 (예상분양가 - 예상기준가액)
			규모	예상분양가	
주택	300,000	346,218	39 (17.93형)	831,593	485,375 (부담)
			59 (26.99형)	1,251,796	905,578 (부담)
			84 (38.13형)	1,768,469	1,422,251 (부담)
			99 (44.70형)	2,073,186	1,726,968 (부담)
	500,000	577,029	39 (17.93형)	831,593	254,564 (부담)
			59 (26.99형)	1,251,796	674,767 (부담)
			84 (38.13형)	1,768,469	1,191,440 (부담)
			99 (44.70형)	2,073,186	1,496,157 (부담)

구 분	종전자산 추산액 (예시)	예상 기준가액 (권리가액) (종전자산추산액 + 개별대지평가차액)	분양가		예상분담금 (예상분양가 - 예상기준가액)
			규모	예상분양가	
	1,000,000	1,154,058	39 (17.93형)	831,593	-322,465 (환급)
			59 (26.99형)	1,251,796	97,738 (부담)
			84 (38.13형)	1,768,469	614,411 (부담)
			99 (44.70형)	2,073,186	919,128 (부담)
오피스텔	300,000	346,218	100(30.39형)	1,530,623	1,184,405 (부담)
	500,000	577,029			953,594 (부담)
	1,000,000	1,154,058			376,565 (부담)
판매 및 근린생활 시설 (전용33㎡ 기준)	300,000	346,218	지상 43층	619,260	273,042 (부담)
			지상 3층	584,410	238,192 (부담)
			지상 2층	667,210	320,992 (부담)
			지상 1층	1,236,840	890,622 (부담)
			지하 1층	1,031,180	684,962 (부담)
			지하 2층	613,820	267,602 (부담)
	500,000	577,029	지상 43층	619,260	42,231 (부담)
			지상 3층	584,410	7,381 (부담)
			지상 2층	667,210	90,181 (부담)
			지상 1층	1,236,840	659,811 (부담)
			지하 1층	1,031,180	454,151 (부담)
			지하 2층	613,820	36,791 (부담)
	1,000,000	1,154,058	지상 43층	619,260	-534,798 (환급)
			지상 3층	584,410	-569,648 (환급)
			지상 2층	667,210	-486,848 (환급)
			지상 1층	1,236,840	82,782 (부담)
			지하 1층	1,031,180	-122,878 (환급)
			지하 2층	613,820	-540,238 (환급)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에는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급(사업시행자 지급)하게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부담(사업시행자 징수)하는 것임

5.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교통시설(정비기반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	주 간선	7,200 (1,619)	천호 대교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	1971.04.07. (건설부고시 제198호)	천호대로
기정	소로	1	1	9 ~12	집산 도로	447 (211)	성내동 194	성내동 19-9	일반 도로	-	1969.01.18. (서울시고시 제3호)	-
기정	중로	3	3	12 ~15	집산 도로	100 (100)	성내동 19-9	광로 2-5 (성내동 19-1)	일반 도로	-	1992.10.24. (서울시고시 제1992-335호)	-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9	7~8	국지 도로	85 (85)	성내동 202-18	성내동 162-4	일반 도로	-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

※ 광로 2-5(천호대로)의 ( )는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이며, 그 이외 ( )는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연장임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나. 공공 · 문화체육시설(도시계획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문화 시설	성내동 19-1 일원	지상2층 1,355.0 지상1층 545.0 지하1층 1,640.0 지하3층 819.1	-	2,560.1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2,560.1㎡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 · 층고 · 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문화 시설	성내동 19-1 일원	층수	지상2층~지하1층, 지하3층	지상2층, 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	2,560.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지상2층, 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 수평투영면적(㎡): 2,560.1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4,447.8	• 건축계획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의 재배치 • 도시계획시설 입체 · 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2022.8.)에 따른 입체적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양식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 · 공용 · 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2)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체육시설	성내동 19-1 일원	지하2층 6,255.0 지하3층 1,449.3	-	5,574.3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5,574.3㎡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체육시설	성내동 19-1 일원	층수	지하2층~지하3층	지하2층~지하5층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5,574.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체육시설	• 체육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지하2층~지하5층 - 수평투영면적(㎡): 5,574.3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7,729.6	• 건축계획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의 재배치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2022.8.)에 따른 입체적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양식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체육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3)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성내동 19-1 일원	지하1층 305.0 지하3층 70.9	-	352.5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352.5㎡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성내동 19-1 일원	층수	지하1층, 지하3층	지상2층, 지하3층, 지하5층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352.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지상2층, 지하3층, 지하5층 - 수평투영면적(㎡): 352.5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387.1	• 건축계획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의 재배치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2022.8.)에 따른 입체적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양식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기 준(㎡)	비고
기정	주민공동시설		획지 ①	1,400.0	
	주민운동시설		획지 ①	1,160.0	
변경	주민공동시설 (실내)	실내운동시설	성내동 19-1일원	590.0	
		맘스카페 (공동육아나눔터)		140.0	
		공유주방		60.0	
		스터디카페		150.0	
		작은도서관		170.0	의무시설
		어린이집		360.0	의무시설
		다목적실		150.0	
		경로당		330.0	의무시설
		관리사무소(방재실 포함)		210.0	
	주민공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1,010.0	의무시설
	합계			3,170.0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전용면적 66㎡ 이상)는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민이 함께 이용·운영·관리하도록 '공동 이용 협의' 내용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1,461.0	-	18,103.8	성내동 19-1 일원	81	-	-	81	-	-

8. 공공기여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대지지분, 건축물 포함)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1,461㎡	18,103.8㎡	7,426.5㎡	1,304.9㎡	530.1㎡
기준/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356.6% ○ 상한용적률 = 80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7,426.5㎡ - 1,304.9㎡ - 530.1㎡ = 5,591.5㎡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도로 무상귀속 면적: 3,357.2㎡ ‣ 공공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면적 - 체육시설: 1,292.3㎡(대지지분 577.8㎡+환산부지면적 714.5㎡) - 문화시설: 766.5㎡(대지지분 326.9㎡+환산부지면적 439.6㎡) - 사회복지시설: 62.7㎡(대지지분 28.2㎡+환산부지면적 34.5㎡)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1,947.8㎡(건물: 표준건축비 매입)				
공공기여율 (순부담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름 • 공공기여율(순부담률) 산정(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 ‣ [(12,590.8㎡/18,103.8㎡) × (800%-250%) × 1/2 + (5,513.0㎡/18,103.8㎡) × (800%-600%) × 1/2] / 800% = 27.71% 이상 ≤ 계획 28.49%				

■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등)	공공기여시설 (대지지분, 건축물 포함)	신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1,461㎡	18,103.8㎡	7,788.8㎡	3,357.2㎡	1,304.9㎡	530.1㎡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산 정 내 용</th></tr>
<tr><td>기준/상한용적률</td><td colspan="2">○ 기준(허용)용적률 = 356.6%
○ 상한용적률 = 800%</td></tr>
<tr><td rowspan="4">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2">•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① + ② + ③ = 1,522.2㎡ + 2,477.2㎡ + 1,954.4㎡ = 5,953.8㎡</td></tr>
<tr><td>①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 면적)</td><td>• 도로(정비기반시설)
‣ 도로 무상귀속 면적: 3,357.2㎡(무상양여 면적: 1,304.9㎡+530.1㎡=1,835.0㎡)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357.2㎡ - 1,304.9㎡ - 530.1㎡ = 1,522.2㎡(순부담면적)</td></tr>
<tr><td>②
기타시설
(공공기여시설)</td><td>• 기타시설(공공기여시설)
‣ 공공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면적
- 체육시설: 1,495.7㎡(대지지분 583.1㎡+환산부지면적 912.6㎡)
- 문화시설: 908.9㎡(대지지분 335.5㎡+환산부지면적 573.4㎡)
- 사회복지시설: 72.6㎡(대지지분 29.2㎡+환산부지면적 43.4㎡)</td></tr>
<tr><td>③
공공임대주택</td><td>•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1,954.4㎡(건물: 표준건축비 매입)</td></tr>
<tr><td>공공기여율
(순부담률)</td><td colspan="2">•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름
• 공공기여율(순부담률) 산정(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
‣ [{(12,590.8㎡/18,103.8㎡) × (800%-250%) × 1/2} + {(5,513.0㎡/18,103.8㎡) × (800%-600%) × 1/2}] / 800% = 27.71% 이상 ≤ 계획 30.34%</td></tr>
<tr><td>기부채납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td><td colspan="2">■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내용
<table>
<tr><th>구분</th><th>세부명칭</th><th>위치</th><th>층(전용층)</th><th>면적</th><th>비고(관리청)</th></tr>
<tr><td rowspan="3">문화시설</td><td>글로벌체험센터</td><td rowspan="5">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td><td>지상2층</td><td>전용면적: 1,000.0㎡
연면적: 1,721.2㎡</td><td rowspan="5">건축물
(강동구)</td></tr>
<tr><td>생활문화센터</td><td>지상2층</td><td>전용면적: 700.0㎡
연면적: 1,200.4㎡</td></tr>
<tr><td>만화라키비움</td><td>지하1층</td><td>전용면적: 900.0㎡
연면적: 1,526.2㎡</td></tr>
<tr><td>체육시설</td><td>수영장, 빙상장</td><td>지하2층</td><td>전용면적: 4,480.0㎡
연면적: 7,729.6㎡</td></tr>
<tr><td>사회복지시설</td><td>키움센터</td><td>지상2층</td><td>전용면적: 225.0㎡
연면적: 387.1㎡</td></tr>
</table>
1)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청은 강동구로 하며, 강동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2)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3) 향후 강동구 운영부서의 운영계획에 따라 기부채납 공공시설 세부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td></tr>
</table>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공공기여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9.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신설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1,461.0	-	18,103.8	성내동 19-1 일원	주거, 업무, 근린생활, 판매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800 이하	15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2020-401호, 2020. 9. 24.)에 따라 의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
- 건립규모 및 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 고
분양	40㎡ 이하	63	143	5.6	
	40㎡ 초과~85㎡ 이하	80		7.2	
공공임대주택	40㎡ 이하	15	151	1.3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40㎡ 초과~85㎡ 이하	136		12.2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오피스텔	60㎡ 초과~85㎡ 이하	824		73.7	준주택
합 계		1,118		100.0	

완화사항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도로 제외)
  ※ 천호·길동 지역중심인 대상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도로 제외)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완화
  - 기준(허용)용적률 356.6% 이하 → 상한용적률 800.0% 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 (12,590.8㎡/18,103.8㎡) × 250% + (5,513.0㎡/18,103.8㎡) × 600% = 356.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 한계선	• 기정: 천호대로 5m(변경 없음)
	• 신설: 천호대로 162길(중로 3-3) 4~7m, 천호대로 168가길(소로 1-1) 3m, 소로 3-29 3m
전면 공지	• 기정: 천호대로 5m(보도형 열린공간)(변경 없음)
	• 신설: 천호대로 162길(중로 3-3) 4~7m(보도), 천호대로 168가길(소로 1-1) 3m(보도), 소로 3-29 3m(보도)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대상지 진출입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
- 공개공지 설치: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형(폭원 8m 이상) 및 필로티구조(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로 지정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최상층 개방공간(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하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하철5호선 강동역~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과 대상지를 연결할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구역 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지하공공보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강동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1,461.0	-	18,103.8	성내동 19-1 일원	주거, 업무, 근린생활, 판매시설 체육 및 문화시설	60 이하	800 이하	15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2020-401호, 2020. 9. 24.)에 따라 의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
• 건립규모 및 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실)		비율(%)	비 고
분양	40㎡ 이하	27	607	2.5	
	40㎡ 초과 ~ 85㎡ 이하	580		53.5	
공공임대주택	40㎡ 이하	41	211	3.8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40㎡ 초과 ~ 85㎡ 이하	170		15.7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오피스텔	40㎡ 초과 ~ 85㎡ 이하	190	266	17.5	준주택
	85㎡ 초과	76		7.0	
합 계		1,084		100.0	

완화사항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완화
- 기준(허용)용적률 356.6% 이하 → 상한용적률 800.0% 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 (12,590.8㎡/18,103.8㎡) × 250% + (5,513.0㎡/18,103.8㎡) × 600% = 356.6%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기정: 천호대로 5m, 천호대로 162길(중로3-3) 4~7m, 천호대로 168가길(소로1-1) 3m, 소로3-29 3m
전면공지	• 기정: 천호대로 5m(보도형 열린공간), 천호대로 162길(중로3-3) 4~7m(보도), 천호대로 168가길(소로1-1) 3m(보도), 소로3-29 3m(보도)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대상지 진출입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
• 공개공지 설치: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형(폭원 8m 이상) 및 필로티구조(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로 지정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최상층 개방공간(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하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 지하연결통로①: 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과 사업대상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 신설 • 지하연결통로②: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②와 사업대상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 신설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지하연결통로①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주체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지하연결통로②는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② 사업구역계를 기준으로 각 획지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계 내 설치(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주체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지하연결통로① 및 지하연결통로②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도록 조성

10. 임대주택 건설 등 계획(변경)

–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감정평가 금액(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여 부속토지 매입(서울시)

<table>
<tr><td colspan="2">계 획 기 준</td><td colspan="5">• 정비사업(재개발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국토부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4조 제6항 및 제7항 및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2020-401호, 2020. 9. 24.)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확보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5%로 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td></tr>
<tr><td rowspan="7">기 정</td><td>산 출 근 거</td><td colspan="5">•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총 151세대(연면적 27,377.7㎡)
▸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15세대(연면적 1,405.9㎡)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136세대(연면적 25,971.8㎡)
– 전체 공공기여량(5,591.5㎡)의 34.8%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1,947.8㎡ 공급</td></tr>
<tr><td>건립규모
(전용면적)</td><td colspan="3">임대주택 건설 계획(안)</td><td rowspan="2">비율</td></tr>
<tr><td></td><td>합 계
(세대수)</td><td>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세대수)</td><td>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세대수)</td></tr>
<tr><td>합 계</td><td>151</td><td>15</td><td>136</td><td>100.0%</td></tr>
<tr><td>40㎡ 이하</td><td>15</td><td>15</td><td>–</td><td>9.9%</td></tr>
<tr><td>74㎡ 이하</td><td>39</td><td>–</td><td>39</td><td>25.8%</td></tr>
<tr><td>85㎡ 이하</td><td>97</td><td>–</td><td>97</td><td>64.3%</td></tr>
<tr><td>변 경</td><td>산 출 근 거</td><td colspan="5">•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총 211세대(연면적 29,707.7㎡)
▸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41세대(연면적 3,799.6㎡)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170세대(연면적 25,908.1㎡)</td></tr>
</table>

		- 전체 공공기여량(5,953.8㎡)의 32.8%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1,954.4㎡ 공급			
	건립규모 (전용면적)	임대주택 건설 계획(안)			비율
		합 계 (세대수)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새대수)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세대수)	
	합 계	211	41	170	100.0%
	40㎡ 이하	41	41	-	19.4%
	59㎡ 이하	118	-	118	55.9%
	74㎡ 이하	33	-	33	15.7%
	84㎡ 이하	19	-	19	9.0%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추첨순서는 임대주택 완료 후 분양주택 시행)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 행 방 법	시 행 예정시기	사 업 시 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시행 가능)	1,118 세대 (준주택 포함)	해당없음
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 가능)	1,084 세대 (준주택 포함)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 제2항 따라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시행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 관련 구체적 역할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예정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도록 함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계획: 해당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기정	건축물 81동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산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	-

14. 생태면적률: 환경성 검토서에 따름

1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건설공사 시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폐기물의 수거는 강동구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름	-
재난방지	• 사업시행 시 건축물 내 피난시설(피난계단, 방화구획 등)의 확보 및 화재 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건축물 신축 유도 • 사업시행 시 관할소방서 등과 협의를 통해 필요 시 소화전 설치 • 소방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시 필로티 유효높이 5m이상 확보 • 우수조 등 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통한 물순환 고려	-

나.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사항 없음

다. 환경성 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준용)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생태환경	가.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나. 생태 네트워크	녹지 · 수생태 연결성확보	○	•대상지 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생활환경	가.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임	•용도지역 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은 택지(획지) 및 정비기반시설(도로)로 계획	-
	나. 지형 · 지질	지형 · 지질 변동최소화	○	•사업대상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며, 대부분 평탄한 지형임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다. 물순환, 수리·수문	건축유형별 용도지역별 기준 적용	○	•생태면적률 35% 이상으로 계획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적용	-
	라. 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최소화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발생	•공사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
	마. 바람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
	바.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 지역이 열섬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	-
	사. 대기질 · 미세먼지,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단기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	•방진망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
		온실가스 저감	○	•유입인구의 증가로 온실가스 증가		
	아. 친환경	폐기물발생량	○	•공사 시 건설폐재 및 폐유 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고,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원순환	최소화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자.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수립	-
	차.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 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카. 경관	Skyline보전	○	•인공구조물로 인한 도시경관 조망	•기존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
	터.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주변으로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일자산 등이 위치하고 있음	•공개공지 및 조경녹지 조성 •옥상녹화 등 휴게시설 배치	-
	파.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 북측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 일조의 영향 예상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
	하.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북측으로는 천호대로 (폭원 50m, 왕복 10차로)가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올림픽대로 (폭원 50m, 왕복 8차로)가 10분 거리에 위치함	•부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차량 및 보행동선 확보할 계획임 •공개공지를 통한 보행통로 확보	-
		자전거보관소	○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16.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기정

-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적격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등에 대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원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예정
-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 예정(151세대 임대주택 및 타 구역 재개발임대주택 활용)

■변경

-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적격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등에 대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원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예정
-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 예정(211세대 임대주택 및 타 구역 재개발임대주택 활용)

-이하여백-

2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656,383.6	-	656,383.6	2020.12.31. (서울시고시 제592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56,383.6	100.0	
주거지역	소 계	343,028.1	52.2	
	제3종일반주거지역	254,277.1	38.7	
	준주거지역	88,751.0	13.5	
상업지역	소 계	313,355.5	47.8	
	일반상업지역	271,578.5	41.4	
	근린상업지역	41,777.0	6.4	

2)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2) 공간시설: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가) 학교: 변경없음

나)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문화 시설	성내동 19-1 일원	지상2층 1,355.0 지상1층 545.0 지하1층 1,640.0 지하3층 819.1	-	2,560.1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2,560.1㎡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문화시설	성내동 19-1 일원	층수	지상2층~지하1층, 지하3층	지상2층, 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2,560.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지상2층, 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 수평투영면적(㎡): 2,560.1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4,447.8	• 건축계획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의 재배치 • 도시계획시설 입체 · 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2022.8.)에 따른 입체적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양식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 · 공용 · 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다) 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체육시설	성내동 19-1 일원	지하2층 6,255.0 지하3층 1,449.3	-	5,574.3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5,574.3㎡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 · 층고 · 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체육시설	성내동 19-1 일원	층수	지하2층~지하3층	지하2층~지하5층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5,574.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체육시설	• 체육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지하2층~지하5층 - 수평투영면적(㎡): 5,574.3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7,729.6	• 건축계획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의 재배치 • 도시계획시설 입체 · 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2022.8.)에 따른 입체적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양식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체육시설의 연면적은 전용 · 공용 · 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라)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면 적(㎡) 변 경	면 적(㎡)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성내동 19-1 일원	지하1층 305.0 지하3층 70.9	-	352.5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352.5㎡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성내동 19-1 일원	층수	지하1층, 지하3층	지상2층, 지하3층, 지하5층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352.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지상2층, 지하3층, 지하5층 - 수평투영면적(㎡): 352.5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387.1	• 건축계획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의 재배치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2022.8.)에 따른 입체적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양식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가 구	A1, A2, A3, B, C1, C2, C3, D1, D2, D3, E1, E2, E3, E4 F1, F2, F3, F4, G1, G2, G3, G4	

2) 획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변경없음

나)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동 명	위 치 지 번	획 지(㎡) 면 적	획 지(㎡) 계	계 획 내 용	비 고
C3	C-①	성내동	19-1일원	21,461.0	28,742.7	획지계획	C3특별계획구역
	C-②	성내동	179일원	7,281.7		획지계획	

다) 공동개발: 변경없음

라) 필지분할선: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4)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일반지역	교 차 로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기준 적용
	일반상업지역	60%이하[1)]		
	학교해제지역 (D2특별계획구역)	30%이하		

주1) 천호동 458-3번지외 7필지 청년주택 사업지의 경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호(2019.1.10.)에 의거 63% 이하 적용

나) 용적률 결정조서: 변경없음

5)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특별계획구역	C2		150m 이하	
	C3	획지①	150m 이하	
		획지②	120m 이하	
	D2		130m 이하	

주)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기준 적용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2020.12.31.) 이전 길동 일반상업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되는 최고높이와 관계없이 건축허가 된 허가높이를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최고높이로 본다.

나) 높이 완화계획: 변경없음

6)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변경없음

가)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3 특별 계획구역	획지①	천호대로	•5m	
		천호대로 162길	•4m~7m	
		천호대로 168가길	•3m	
		소로3-29	•3m	
	획지②	간선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양재대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경계로부터 3m)	
		12m이상 25m미만 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	
		10m미만 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2m	

주 1) 필지분할선이 계획 된 필지의 경우 필지분할선으로부터 건축선 적용

2) 4m미만 도로 및 막다른 도로에 대한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따른다.

3)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공개공지	-	•공개공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C3 특별계획구역 획지 ①
전면공지	천호대로	•5m(보도형 열린공간)	
	천호대로 162길	•4~7m(보도)	
	천호대로 168가길	•3m(보도)	
	소로 3-29	•3m(보도)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2)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상지 진출입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구조: 폭원 8m 이상 필로티 구조: 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

가)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A1, A2, A3, C2, C3, D2, D3, E3, E4, F3, F4, G1, G2, G3, G4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간선가로변 교통 흐름 고려
주차장	주 차 출입구	C3	2개소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

나)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C2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48번지 일대	31,760.1	-	31,760.1	서고시 제178호 (2001.06.02.)	
기 정	C3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19번지 일대	28,742.7	-	28,742.7	서고시 제254호 (2009.06.25.)	
기 정	D2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47번지 일대	10,175.0	-	10,175.0	서고시 제85호 (2007.04.05.)	

주) 본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이하여백-

1) C2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2) C3 특별계획구역: 변경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성내동 19번지 일원		
면적	• 28,742.7㎡		
용도지역	획지①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시)	신설
	획지②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획지①	• 순부담률 27.71% 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한함 • 도로: 소로 1-1(폭원 9m~12m), 중로3-3(폭원 12m~15m), 소로 3-29(폭원 7m~8m, 신설) ※ 도로 무상귀속 면적: 3,357.2㎡ • 공공기여 계획 ‣ 공공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강동구에 기부채납) 면적 - 체육시설: 1,292.3㎡(대지지분 577.8㎡+환산부지면적 714.5㎡) - 문화시설: 766.5㎡(대지지분 326.9㎡+환산부지면적 439.6㎡) - 사회복지시설: 62.7㎡(대지지분 28.2㎡+환산부지면적 34.5㎡)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1,947.8㎡(건물: 표준건축비 매입)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신설
	획지②	• 순부담률 15% 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지역에 한함 • 도로 - 획지 간 12m, 이면부 10m 도로 조성 •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과와 협의를 통해 결정) • 공공시설(천호대로변 및 강동역 연접지에 설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 구 및 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설 결정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른 부분개발 시 건축물 내 공공시설 가능 - 예시용도: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오피스,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가구 및 획지	획지①	• 21,461.0㎡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획지②	• 7,281.7㎡	
용 도	획지①	•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01조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제107조~109조 사회복지시설	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②	• 권장용도 (G) ※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 이상(지상층 20% 이상) 설치 시 인정 • 불허용도 (1)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획지①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도로 제외) - 기준(허용) 356.6% / 상한 800%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신설
		획지②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250% / 허용 350% / 상한 400% •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400% / 허용 400%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면적 대비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높 이	획지①	• 최고높이 150m 이하	변경
		획지②	• 최고높이 120m 이하	
기타	건축 한계선	획지①	• 기정: 천호대로 5m(변경 없음)	변경
			• 신설: 천호대로 162길(중로 3-3) 4~7m, 천호대로 168가길(소로 1-1) 3m, 소로 3-29 3m	
		획지②	• 천호대로변 5m. 이면도로변 2~3m, 우측연접부 3m	
	대지 내 공지	획지①	• 공개공지 설치: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신설
		획지②	•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기 타	획지①	• 비주거시설은 천호대로변 및 구역 내 도로에 면하게 설치 •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연면적은 전체 주거(공동주택 및 준주택 포함)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획지①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형(폭원 8m 이상) 및 필로티구조(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로 지정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최상층 개방공간(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하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하철5호선 강동역~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과 대상지를 연결할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구역 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획지②	• 비주거시설은 천호대로변 및 구역 내 도로에 면하게 설치 • 비주거시설 상층부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권장	

※ 특별계획구역(획지②)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에 대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용적률 완화항목을 적용하며,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지하공공보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성내동 19번지 일원	
면 적		• 28,742.7㎡	
용도지역	획지①	• 일반상업지역(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시)	
	획지②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획지①	• 순부담률 27.71% 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한함 • 도로: 소로 1-1(폭원 9m~12m), 중로3-3(폭원 12m~15m), 소로 3-29(폭원 7m~8m, 신설) ※ 도로 무상귀속 면적: 3,357.2㎡ • 공공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 공공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대지지분 포함, 강동구에 기부채납))	
	획지②	• 순부담률 15% 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지역에 한함 • 도로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획지 간 12m, 이면부 10m 도로 조성 •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과와 협의를 통해 결정) • 공공시설(천호대로변 및 강동역 연접지에 설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 구 및 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설 결정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른 부분개발 시 건축물 내 공공시설 가능 - 예시용도: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오피스,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가구 및 획지	획지①	• 21,461.0㎡(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획지②	• 7,281.7㎡	
용 도	획지①	•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01조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제107조~109조 사회복지시설	
	획지②	• 권장용도 (G) ※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 이상(지상층 20% 이상) 설치 시 인정 • 불허용도 (1)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획지①	• 일반상업지역(도로 제외) - 기준(허용) 356.6% / 상한 800%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획지②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250% / 허용 350% / 상한 400% •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400% / 허용 400%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면적 대비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높 이	획지①	• 최고높이 150m 이하	
		획지②	• 최고높이 120m 이하	
기타	건축 한계선	획지①	• 천호대로 5m, 천호대로 162길(중로 3-3) 4~7m, 천호대로 168가길(소로 1-1) 3m, 소로 3-29 3m	
		획지②	• 천호대로변 5m. 이면도로변 2~3m, 우측연접부 3m	
	대지 내 공지	획지①	• 공개공지 설치: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획지②	•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기 타	획지①	• 비주거시설은 천호대로변 및 구역 내 도로에 면하게 설치 • 획지①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형(폭원 8m 이상) 및 필로티구조(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로 지정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최상층 개방공간(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하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 지하연결통로①: 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과 사업대상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 신설 • 지하연결통로②: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②와 사업대상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 신설	신설
		획지②	• 비주거시설은 천호대로변 및 구역 내 도로에 면하게 설치 • 비주거시설 상층부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권장	

※ 특별계획구역(획지②)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에 대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용적률 완화항목을 적용하며,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지하연결통로①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주체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지하연결통로②는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② 사업구역계를 기준으로 각 획지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계 내 설치(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주체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지하연결통로① 및 지하연결통로②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도록 조성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계획내용: 변경없음

6.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련 사항: 변경없음

구 분	주 요 사 항	비 고
기존 건축물 적용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른다.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 이란 공간계획 대상 면적(건축 대지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 되는 선을 말한다. - 광로 2-5(천호대로) 5m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4~7m,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3m, 소로 3-29 3m	-
전면공지 (보도형 열린공간) 전면공지 (보도형)	•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지정에 의해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서 쌈지형 공지 또는 공개공지,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 다른 유형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와 연계하여 보도 등으로 조성 - 광로 2-5(천호대로) 5m(보도형 열린공간)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4~7m(보도),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3m(보도), 소로 3-29 3m(보도) ※ 전면공지 조성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 라 함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대지 안에 시민의 보행·휴식, 녹지공간의 연속적 조성 등을 위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한다. - 천호대로변과 소로 3-29 가각부에 설치	-
공공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폭원 8m 이상) 또는 필로티 구조(폭원 8m 이상, 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로 설치해야 한다. ※ 전면공지 조성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C3 특별계획구역(C-①)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강동구 성내동 19-1 일원	21,461.0 (28,742.7)	-	21,461.0 (28,742.7)	역세권 활성화사업

※ ( )의 면적은 C3특별계획구역의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변 경	변 경	변경후		
합 계		21,461.0	-	21,461.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065.2	-	3,065.2	14.3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92.0	-	292.0	1.3	
	일반상업지역	18,103.8	-	18,103.8	84.4	

2)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	주간선	7,200 (1,619)	천호 대교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	1971.04.07. (건설부고시 제198호)	천호대로
기정	소로	1	1	9 ~12	집산 도로	447 (211)	성내동 194	성내동 19-9	일반 도로	-	1969.01.18. (서울시고시 제3호)	-
기정	중로	3	3	12 ~15	집산 도로	100 (100)	성내동 19-9	광로 2-5 (성내동 19-1)	일반 도로	-	1992.10.24. (서울시고시 제1992-335호)	-
기정	소로	3	29	7~8	국지 도로	85 (85)	성내동 202-18	성내동 162-4	일반 도로	-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

※ 광로 2-5(천호대로)의 ( )는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이며, 그 이외 ( )는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연장임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2) 공공문화 · 체육시설: 변경

가) 학교: 변경없음

나)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면 적(㎡) 변 경	면 적(㎡)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문화시설	성내동 19-1 일원	지상2층 1,355.0 지상1층 545.0 지하1층 1,640.0 지하3층 819.1	-	2,560.1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2,560.1㎡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 · 층고 · 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문화시설	성내동 19-1 일원	층수	지상2층~지하1층, 지하3층	지상2층, 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2,560.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지상2층, 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 수평투영면적(㎡): 2,560.1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4,447.8	• 건축계획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의 재배치 • 도시계획시설 입체 · 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2022.8.)에 따른 입체적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양식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 · 공용 · 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다) 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면 적(㎡) 변 경	면 적(㎡)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체육시설	성내동 19-1 일원	지하2층 6,255.0 지하3층 1,449.3	-	5,574.3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5,574.3㎡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 · 층고 · 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체육시설	성내동 19-1 일원	층수	지하2층~지하3층	지하2층~지하5층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5,574.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체육시설	• 체육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지하2층~지하5층 - 수평투영면적(㎡): 5,574.3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7,729.6	• 건축계획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의 재배치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2022.8.)에 따른 입체적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양식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체육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라)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성내동 19-1 일원	지하1층 305.0 지하3층 70.9	-	352.5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352.5㎡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성내동 19-1 일원	층수	지하1층, 지하3층	지상2층, 지하3층, 지하5층	2022.11.24. (서울시고시 제2022-4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352.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지상2층, 지하3층, 지하5층 - 수평투영면적(㎡): 352.5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387.1	• 건축계획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의 재배치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2022.8.)에 따른 입체적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양식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

-이하여백-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획 지(㎡)		계 획 내 용	비 고
		동 명	지 번	면 적	계		
C3	C-①	성내동	19-1일원	21,461.0	28,742.7	획지계획	C3특별계획구역
	C-②	성내동	179일원	7,281.7		획지계획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C-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01조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제107조~109조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C-①	건폐율	60% 이하	좌동	-

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용적률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C-①	용적률	356.6%이하	-	800%이하	356.6%이하	-	800%이하	-

- 용적률 완화사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완화
- 기준(허용)용적률 356.6% 이하 → 상한용적률 800.0% 이하
- 공공기여율은 부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되 증가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공공기여 기준: 27.71%)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C-①	기정	공공기여	28.49%	-	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대지지분+건축물)
	변경		30.34%	-	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대지지분+건축물)

※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공공기여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비 고
C-①	공공기여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공사비 단가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 증가	-

3)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C-①	높이	150m 이하	•좌동	-

4)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변경없음

가)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C-①	천호대로	•5m	•좌동	-
	천호대로 162길	•4m~7m	•좌동	
	천호대로 168가길	•3m	•좌동	
	소로3-29	•3m	•좌동	

주 1) 필지분할선이 계획 된 필지의 경우 필지분할선으로부터 건축선 적용
2) 4m미만 도로 및 막다른 도로에 대한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따른다.
3)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C-①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천호대로변 거리변 건축물의 1층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	-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	
		설치시설 관련	•천호대로변 건축물 건축설비장비 도로변 노출 자제 •건축물 입면에 건축설비장비 비노출 노출 자제 •옥상부에 설비설치 가능 공간 확보 권장	
		야간조명	•10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기타 사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담장 설치 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하되 개방성을 고려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C-①	공개공지	-	•공개공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좌동	-
	전면공지	천호대로	•5m(보도형 열린공간)	•좌동	
		천호대로 162길	•4~7m(보도)	•좌동	
		천호대로 168가길	•3m(보도)	•좌동	
		소로 3-29	•3m(보도)	•좌동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2)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C-①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상지 진출입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	•좌동	-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구조: 폭원 8m 이상 •필로티 구조: 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	•좌동	

가)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C-①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동	-
	주차장	주 차 출입구	•2개소	•좌동	

나)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C-①	보행동선	공공보행통 로	•개방형 구조: 폭원 8m 이상 •필로티 구조: 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	•좌동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최상층 개방공간	성내동 19-1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카페 등) 설치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	일반인 에게 상시개방
지하공공 보도시설 (지하보행로)	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성내동 19-1 지하2층	강동역~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지하1층과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지하2층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보행로 신설	구역 외
지하주차장	성내동 19-1 건물 내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
한전선, 통신선 등의 지중화	성내동 19-1 건물 인근 도로 (천호대로 일대, 중로 3-3, 소로 1-1 일대, 소로 3-29)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

※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지하공공보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

■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C-①	최상층 개방공간		성내동 19-1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카페 등) 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	좌동	-
	지하 주차장		성내동 19-1 건물 내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좌동	
	한전선, 통신선 등의 지중화		성내동 19-1 건물 인근 도로 (천호대로 일대, 중로 3-3, 소로 1-1 일대, 소로 3-29)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좌동	
	지하 연결 통로	①	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성내동 19-1 지하2층	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과 사업대상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 신설	좌동	
		②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② ~성내동 19-1 지하2층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②와 사업대상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 신설	좌동	

※ 최상층 개방공간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하연결통로①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주체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지하연결통로②는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② 사업구역계를 기준으로 각 획지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계 내 설치(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주체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지하연결통로① 및 지하연결통로②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도록 조성

라.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주택의 규모별 비율

-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감정평가 금액(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여 부속토지 매입(서울시)
-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

■ 기정

건립규모 (전용면적)	전체세대수 (준주택 포함)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비 고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합 계	1,118	100.0	151	13.5	100.0	
40㎡ 이하	78	7.0	15	1.3	9.9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74㎡ 이하	424	37.9	39	3.5	25.8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85㎡ 이하	616	55.1	97	8.7	64.3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추첨순서는 임대주택 완료 후 분양주택 시행)

■ 변경

건립규모 (전용면적)	전체세대수 (준주택 포함)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비 고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합 계	1,084	100.0	211	19.5	100.0	
40㎡ 이하	68	6.3	41	3.8	19.4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59㎡ 이하	170	15.7	118	10.9	55.9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74㎡ 이하	220	20.3	33	3.0	15.7	
85㎡ 이하	550	50.7	19	1.8	9.0	
99㎡ 이하	76	7.0	-		-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추첨순서는 임대주택 완료 후 분양주택 시행)

-이하여백-

마.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생태환경	가.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나.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확보	○	•대상지 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생활환경	가.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임	•용도지역 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은 택지(획지) 및 정비기반시설(도로)로 계획	-
	나.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최소화	○	•사업대상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며, 대부분 평탄한 지형임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다. 물순환, 수리·수문	건축유형별 용도지역별 기준 적용	○	•생태면적률 35% 이상으로 계획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적용	-
	라. 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최소화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발생	•공사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
	마. 바람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
	바.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 지역이 열섬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	-
	사. 대기질·미세먼지,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단기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	•방진망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
		온실가스 저감	○	•유입인구의 증가로 온실가스 증가		
	아. 친환경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건설폐재 및 폐유 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고,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
	자.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수립	-
	차.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 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카. 경관	Skyline보전	○	•인공구조물로 인한 도시경관 조망	•기존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터.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주변으로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일자산 등이 위치하고 있음	•공개공지 및 조경녹지 조성 •옥상녹화 등 휴게시설 배치	-
	파.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 북측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 일조의 영향 예상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
	하.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북측으로는 천호대로 (폭원 50m, 왕복 10차로)가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올림픽대로 (폭원 50m, 왕복 8차로)가 10분 거리에 위치함	•부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차량 및 보행동선 확보할 계획임 •공개공지를 통한 보행통로 확보	-
		자전거보관소	○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4.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종합)(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위 치			• 성내동 19번지 일원	• 좌동	
면 적			• 28,742.7㎡	• 좌동	
용도지역		획지①	• 일반상업지역(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시)	• 좌동	
기반시설		획지①	• 순부담률 27.71% 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한함 • 도로: 소로 1-1(폭원 9m~12m), 중로3-3(폭원 12m~15m), 소로 3-29(폭원 7m~8m, 신설) ※ 도로 무상귀속 면적: 3,357.2㎡ • 공공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 공공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대지지분 포함, 강동구에 기부채납))	• 순부담률 30.34% 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한함 • 도로: 소로 1-1(폭원 9m~12m), 중로3-3(폭원 12m~15m), 소로 3-29(폭원 7m~8m, 신설) ▸ 도로 무상귀속 면적: 3,357.2㎡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1,954.4㎡(건물: 표준건축비 매입)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 공공시설 ▸ 도로(순부담면적): 1,522.2㎡ ▸ 공공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강동구에 기부채납) 면적 - 문화시설: 908.9㎡(대지지분 335.5㎡+ 환산부지면적 573.4㎡) - 체육시설: 1,495.7㎡(대지지분 583.1㎡+ 환산부지면적 912.6㎡) - 사회복지시설: 72.6㎡(대지지분 29.2㎡+ 환산부지면적 43.4㎡)	
가구 및 획지		획지①	• 21,461.0㎡(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 좌동	
용 도		획지①	•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01조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제107조~109조 사회복지시설	• 좌동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용적률	획지①	• 일반상업지역(도로 제외) - 기준(허용) 356.6% / 상한 800%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 좌동	
	높 이	획지①	• 최고높이 150m 이하	• 좌동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타	건축 한계선	획지①	• 천호대로 5m, 천호대로 162길(중로 3-3) 4~7m, 천호대로 168가길(소로 1-1) 3m, 소로 3-29 3m	• 좌동	
	대지 내 공지	획지①	• 공개공지 설치: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 좌동	
기타	기 타	획지①	• 비주거시설은 천호대로변 및 구역 내 도로에 면하게 설치 • 획지①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형(폭원 8m 이상) 및 필로티구조(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로 지정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최상층 개방공간(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하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 지하연결통로①: 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과 사업대상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 신설 • 지하연결통로②: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②와 사업대상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 신설	• 좌동	

※ 특별계획구역(획지②)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에 대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용적률 완화항목을 적용하며,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지하연결통로①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주체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지하연결통로②는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② 사업구역계를 기준으로 각 획지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계 내 설치(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주체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지하연결통로① 및 지하연결통로②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도록 조성

Ⅲ.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 7. 17.) 심의결과: 수정가결

구분	주 요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수정 사항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공공기여 : 5,953.8㎡ (30.34%) •도시계획시설 변경 : 문화시설(수평투영면적) : 2,560.1㎡ : 체육시설(수평투영면적) : 5,574.3㎡ : 사회복지시설(수평투영면적) : 352.5㎡ •세 대 수 : 전체 818세대 (임대 211세대 포함) ※ 임대 : 재개발의무 41, 기부채납 170 •오피스텔 : 266실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기 반영된 사항임	반영
조건 사항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천호대로변 주동(C, D, E동)의 높이계획은 일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통경축 추가 확대를 검토할 것.	•높이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기준 내에서 최대치까지 계획한 사항임 •통경축 추가 확대는 추후 건축심의 시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에 따른 공공주택 외의 공공주택 평형은 45㎡ 이상으로 계획할 것	•해당 기준에 따라 기반영 하였음	기반영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관련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하였으나, 기준 변경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시 조정하여 분담금 추산액을 재산출할 것.	•학교용지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관련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법규개정 후 반영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Ⅳ. 기타 관련사항은 도시관리계획[강동역 역세권활성화 정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따름

Ⅴ.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강동역 역세권활성화 정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도서참조: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4655)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8804)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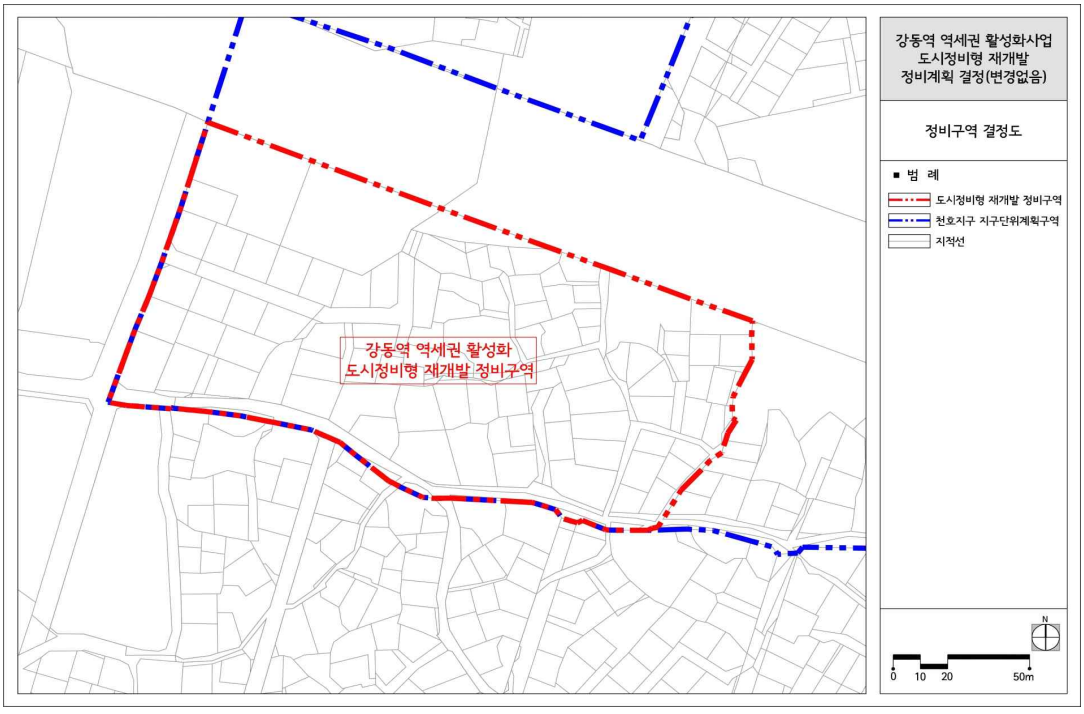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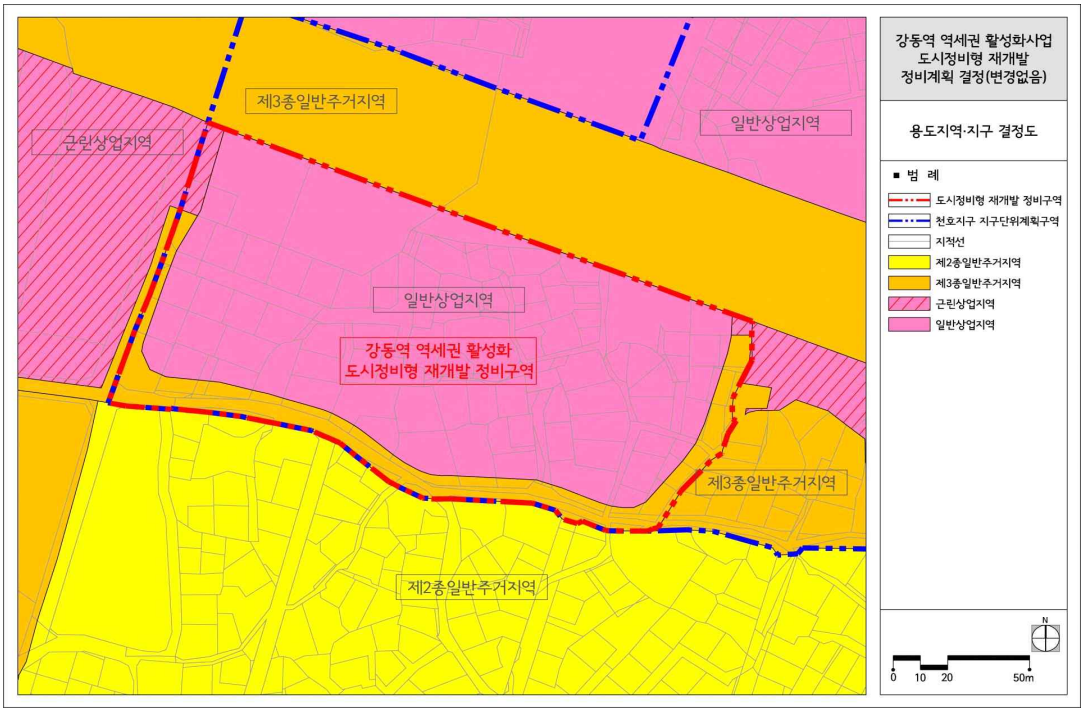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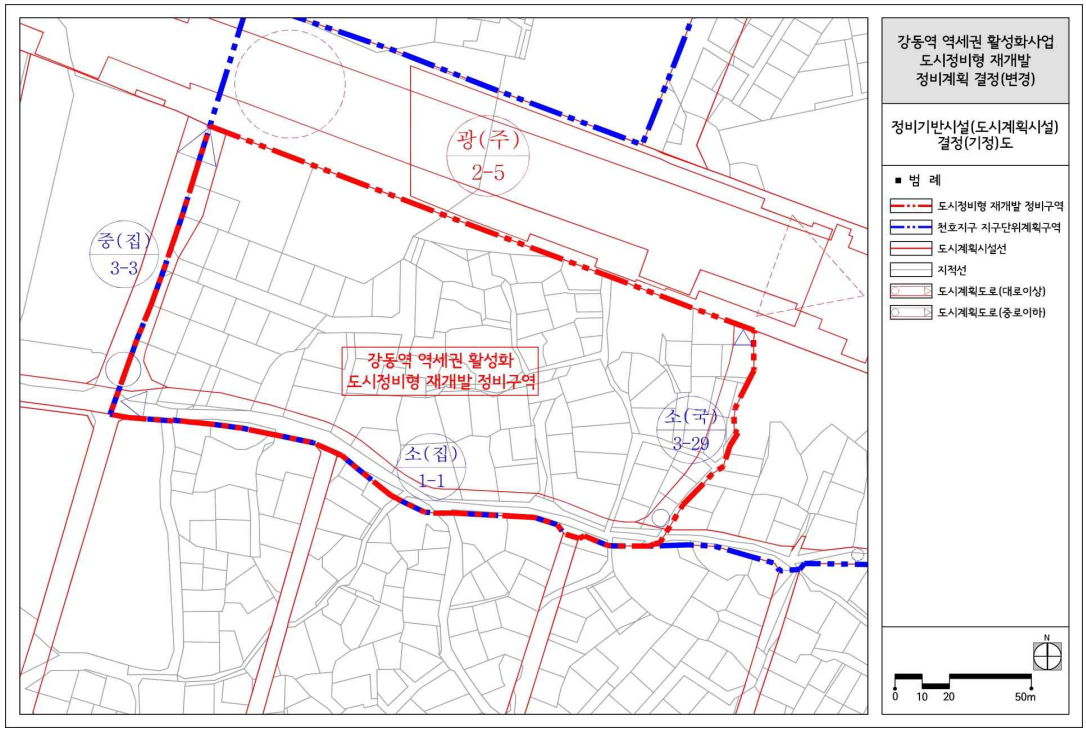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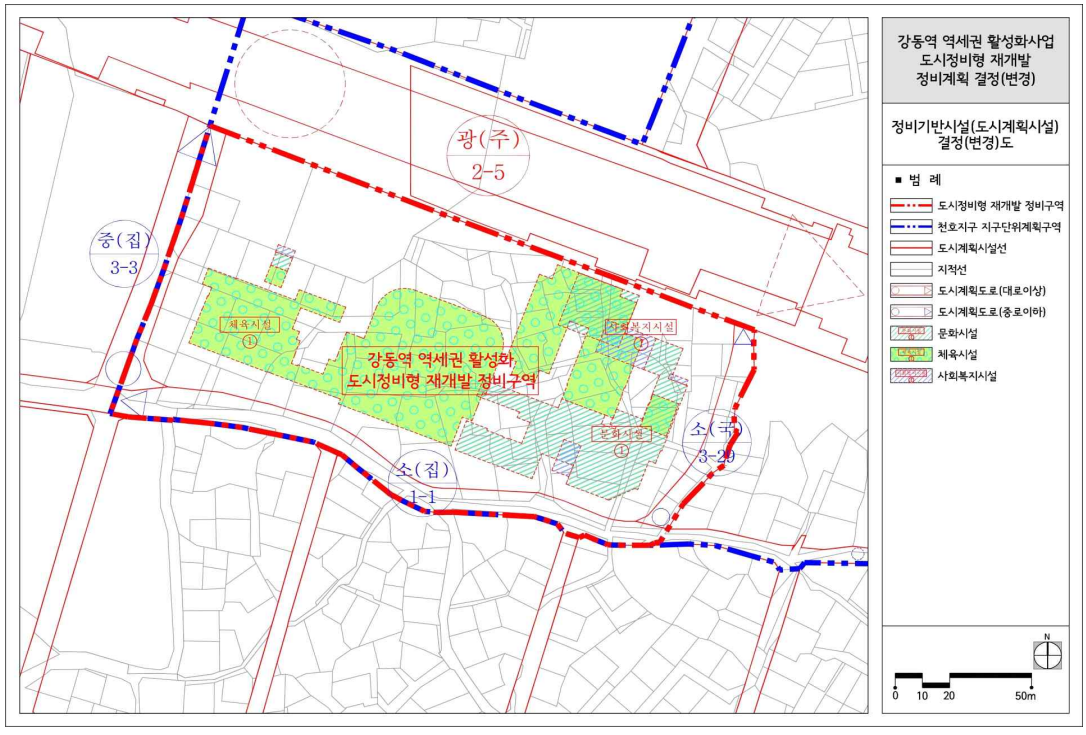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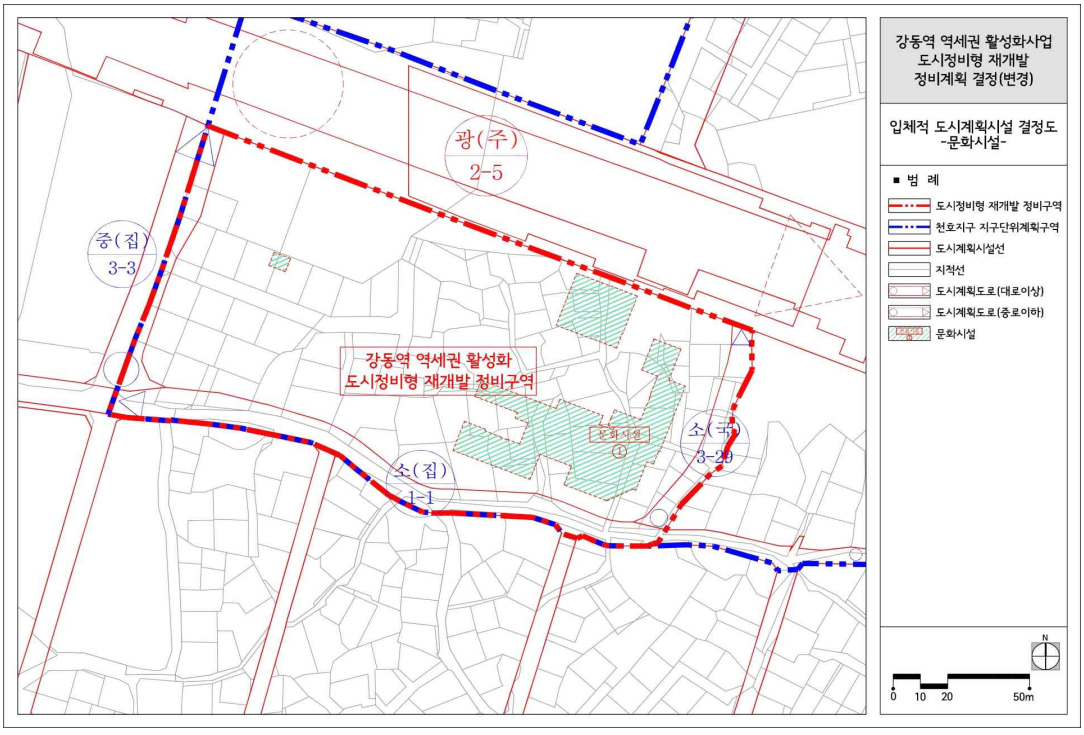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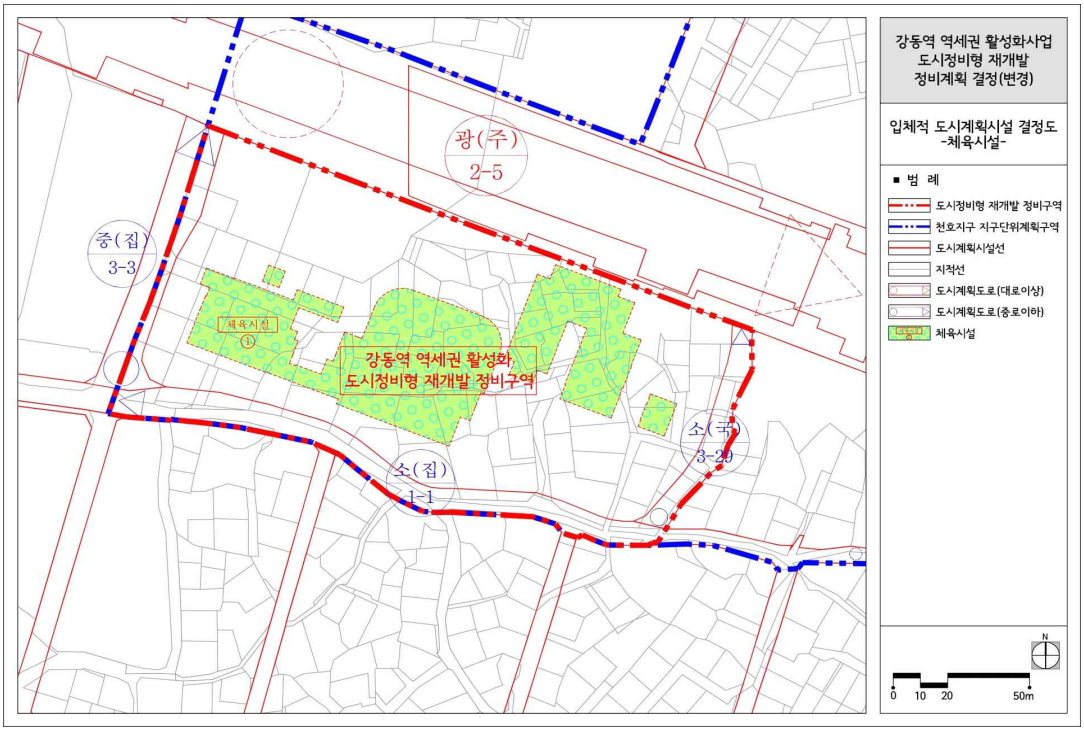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사회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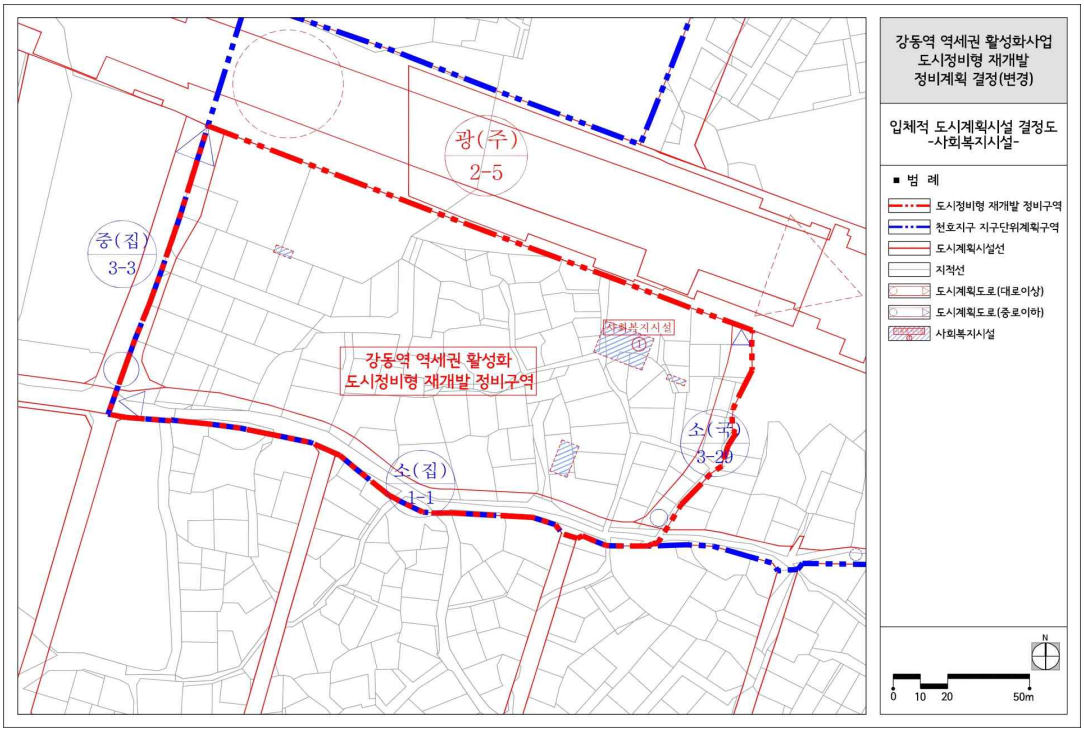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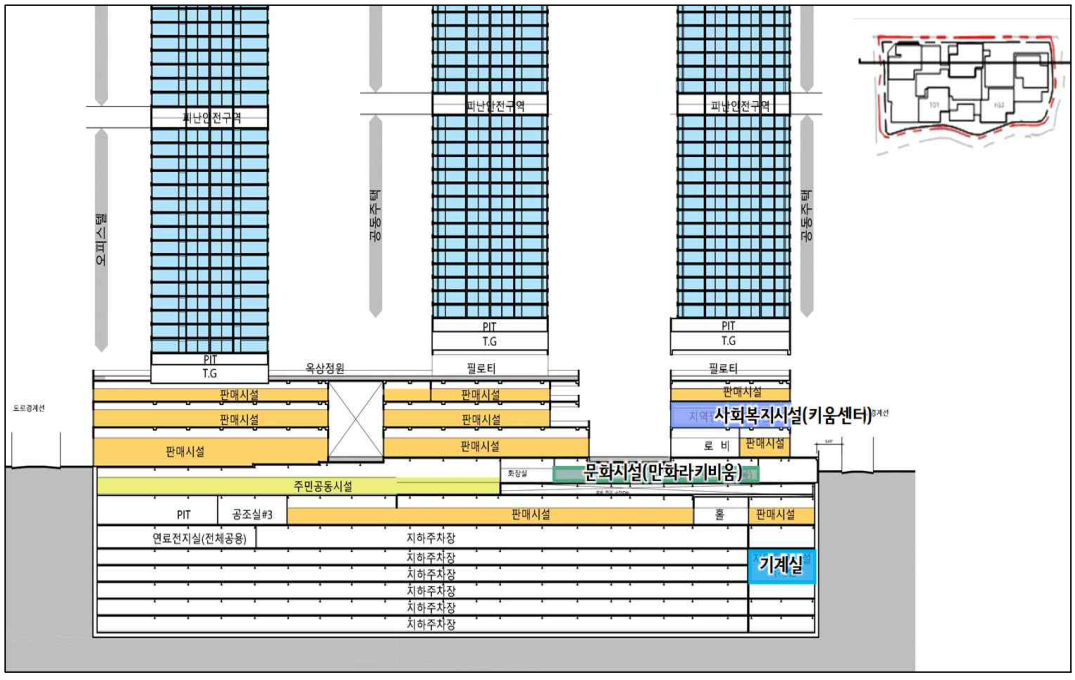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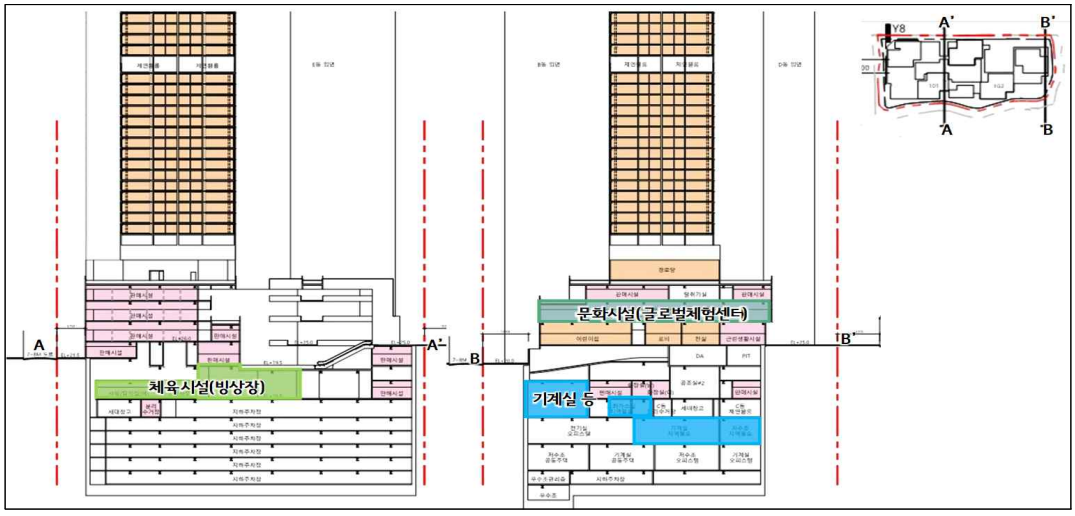

-층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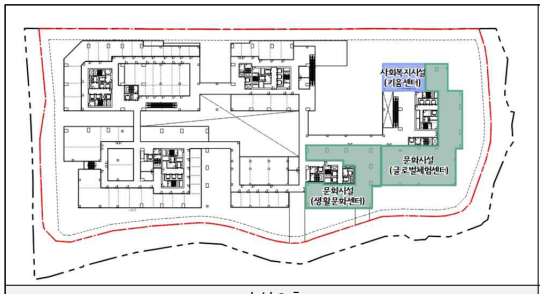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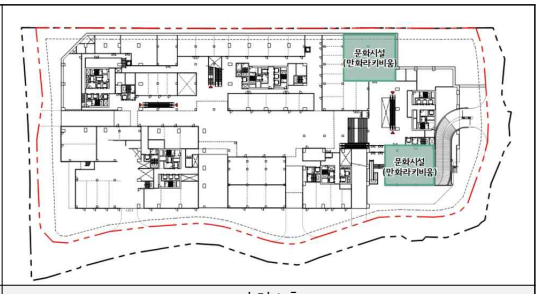

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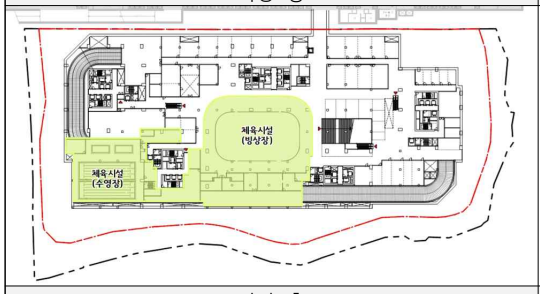

지하2층

지하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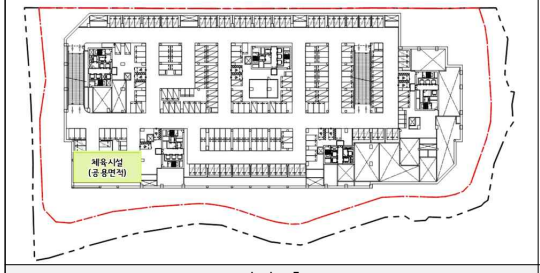

지하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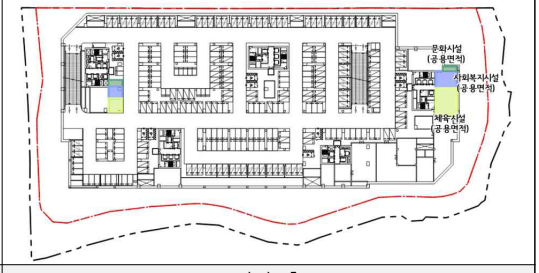

지하5층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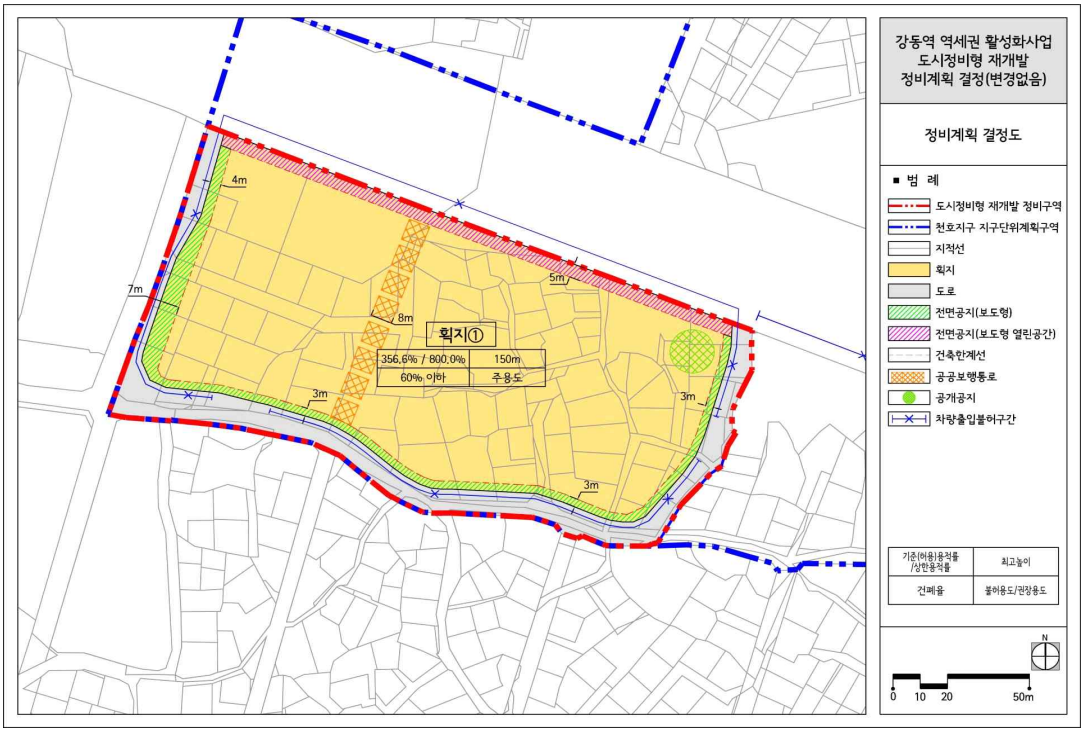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도
■ 범 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적선
획지
도로
전면공지(보도형)
전면공지(보도형 열린공간)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
기준(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불허용도/권장용도
획지①
356.6% / 800.0%
150m
60% 이하
주용도
4m
7m
8m
5m
3m
3m
3m
N
0 10 20 50m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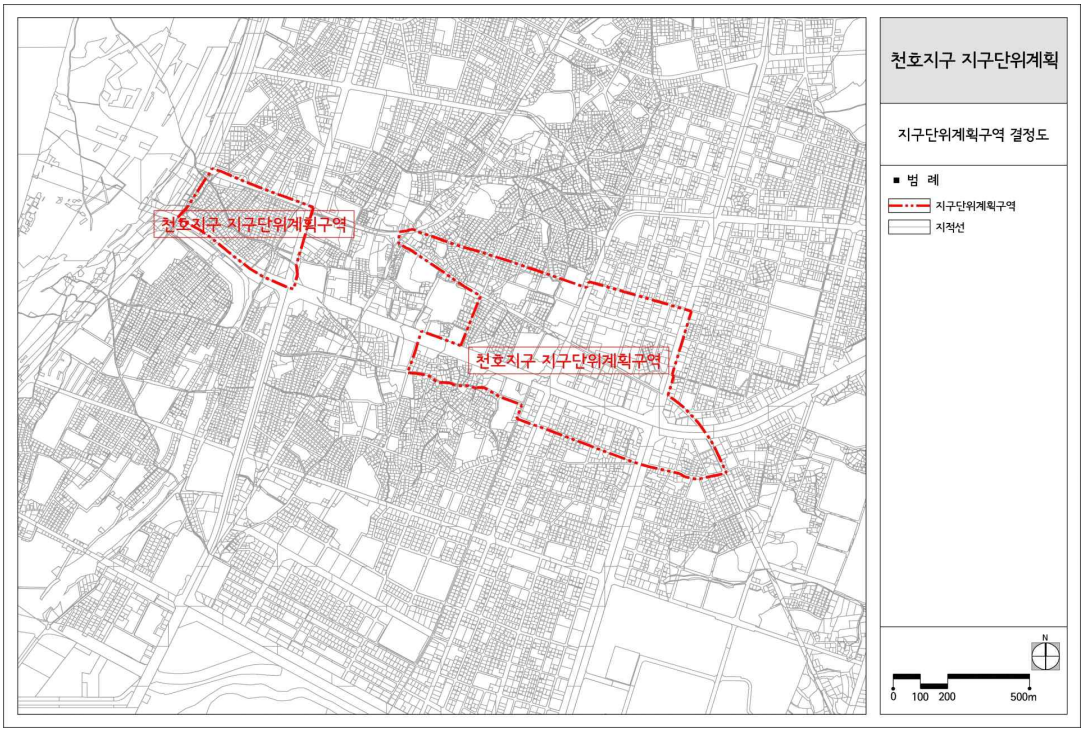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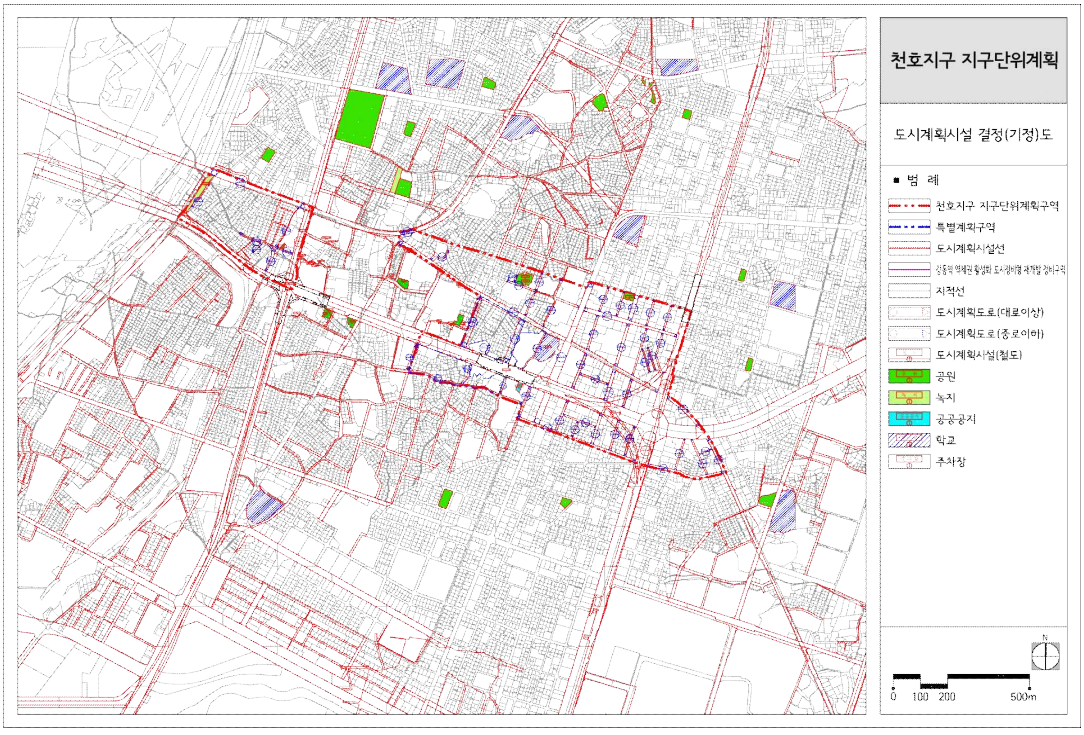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변경(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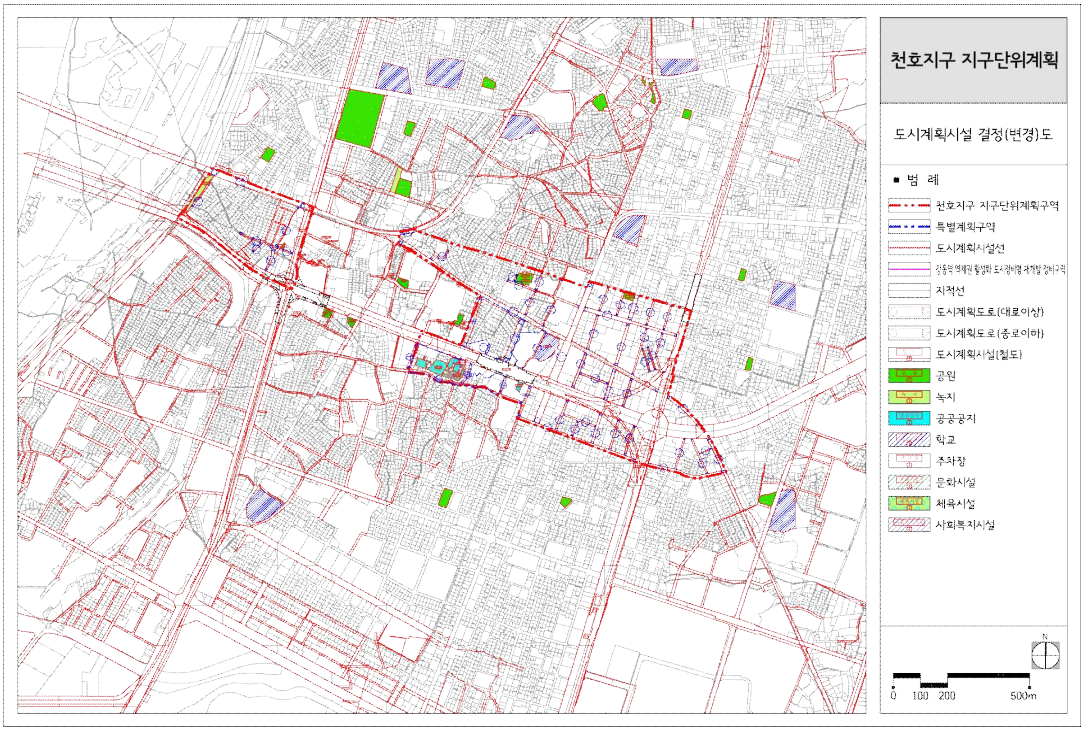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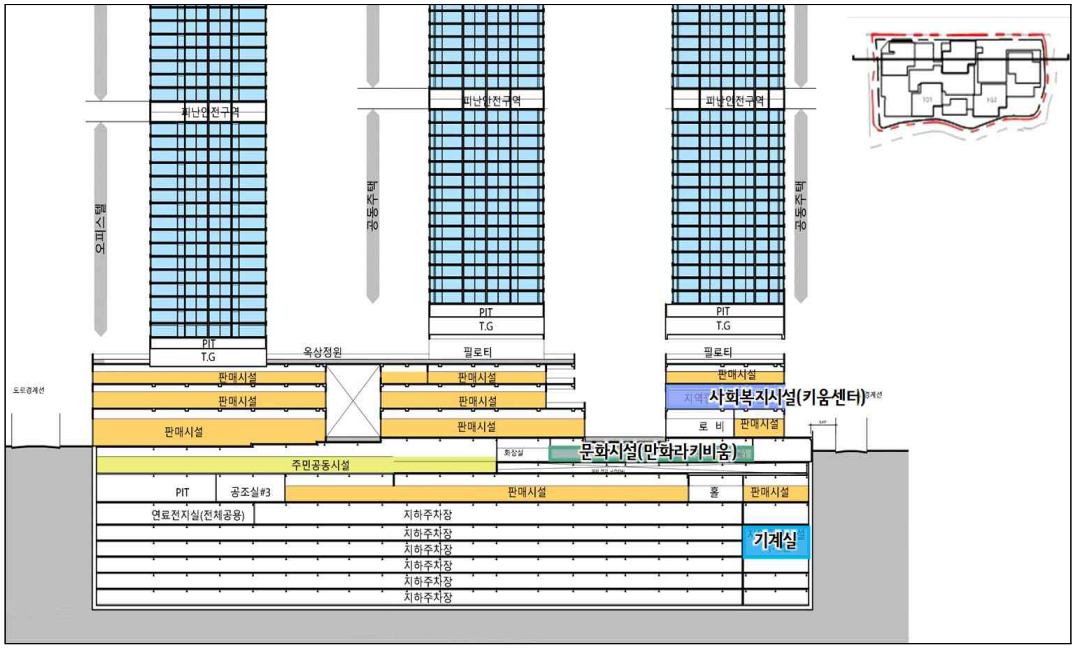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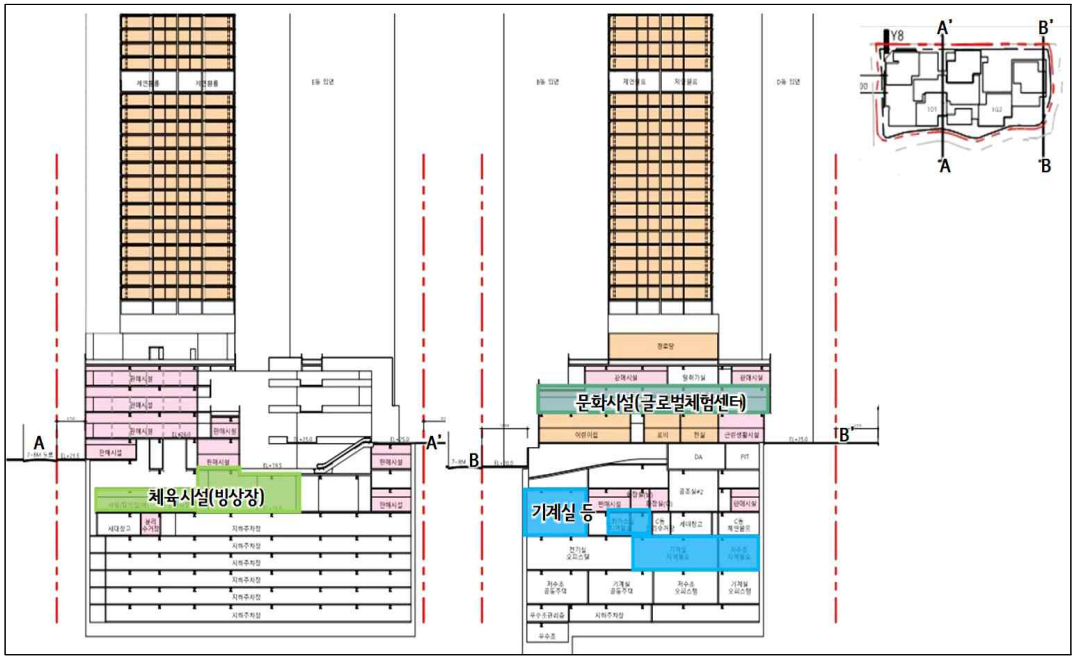

-층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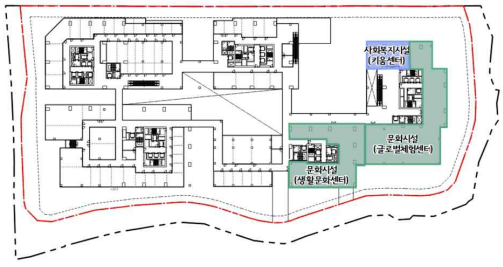

지상2층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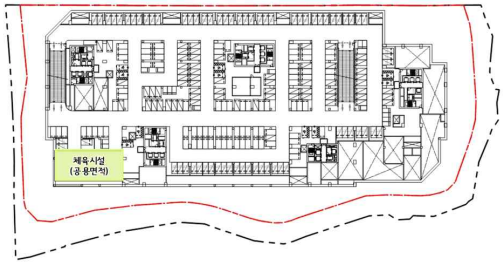

지하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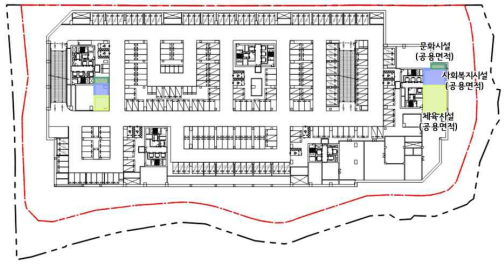

지하5층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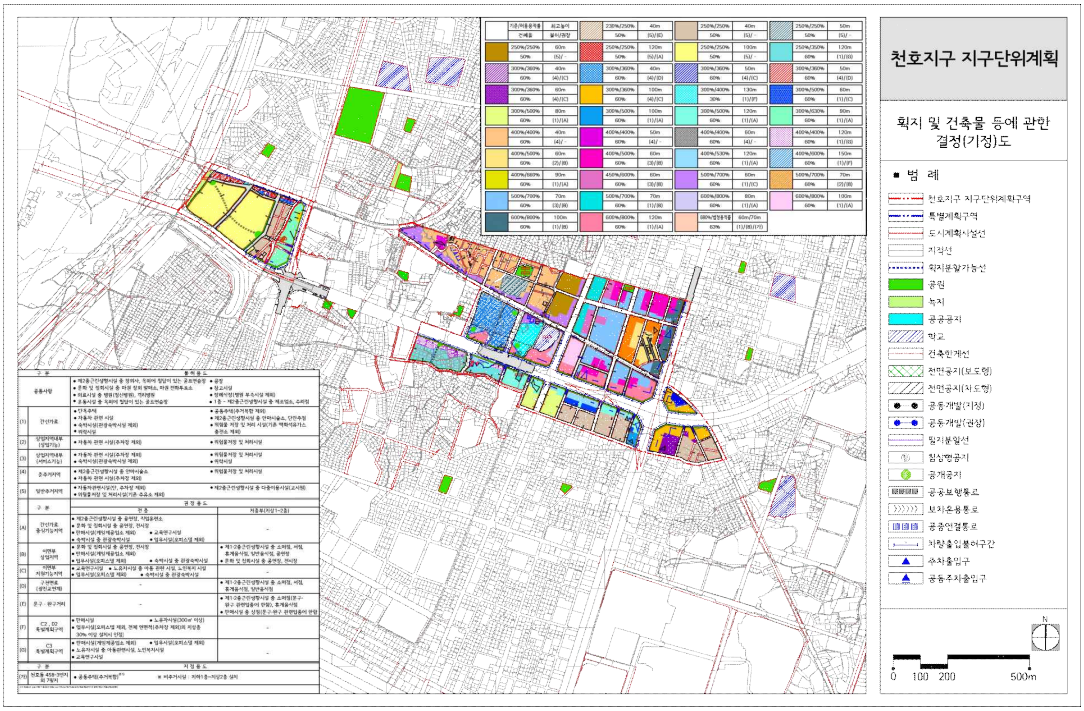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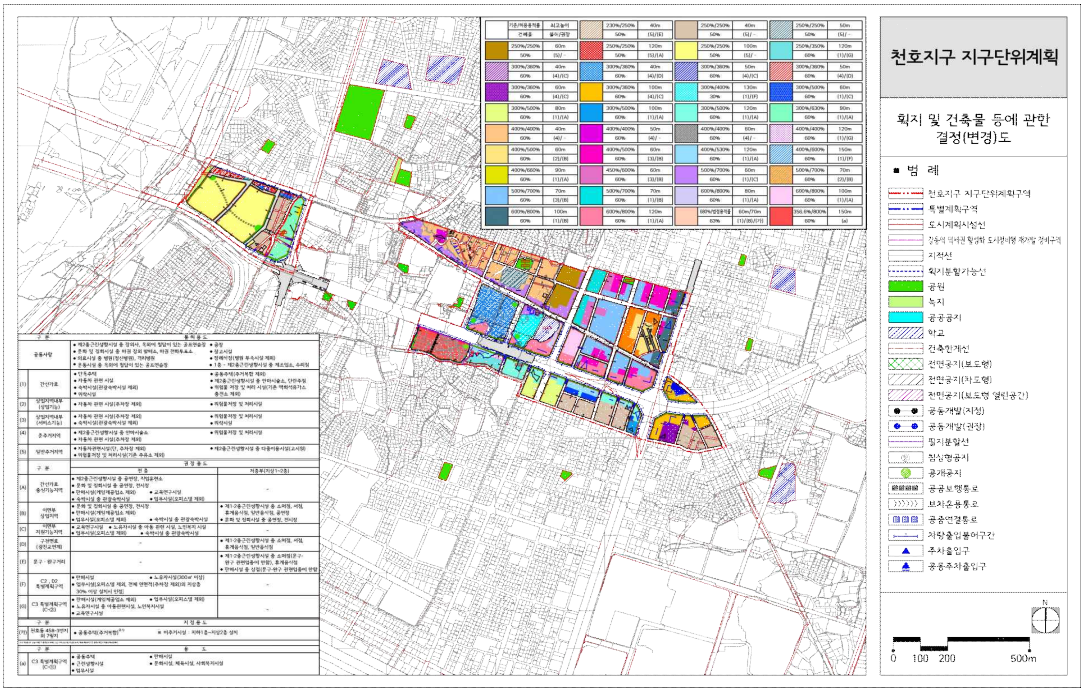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1호(2022.11.24.) 내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가 누락 되어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 해당내용 반영

□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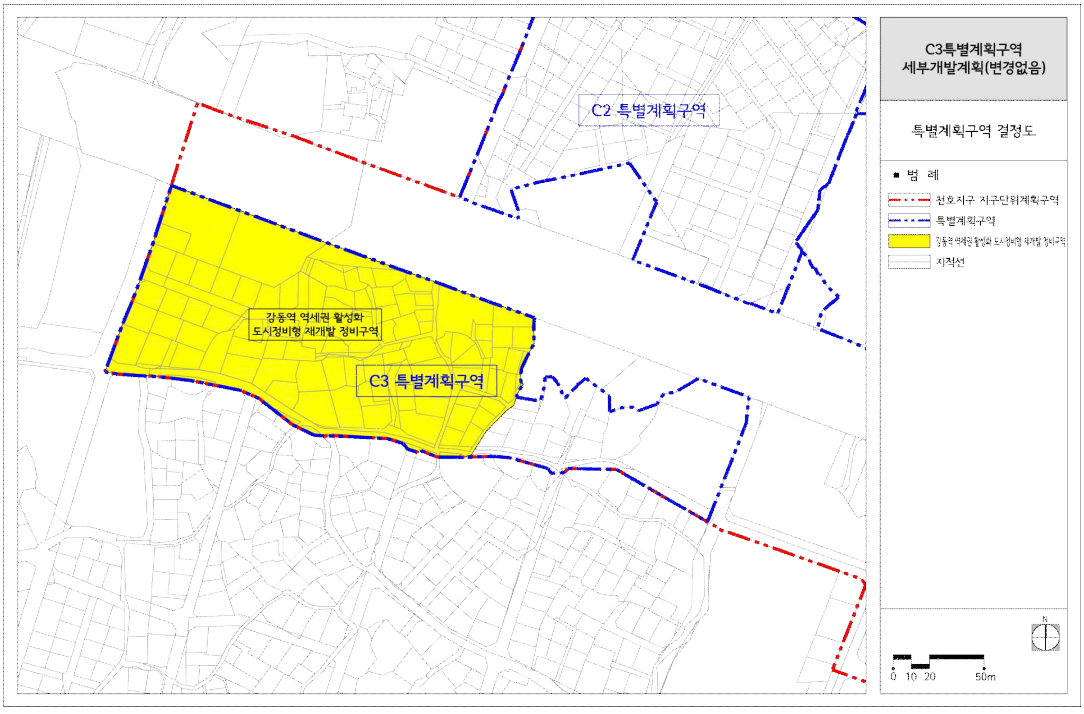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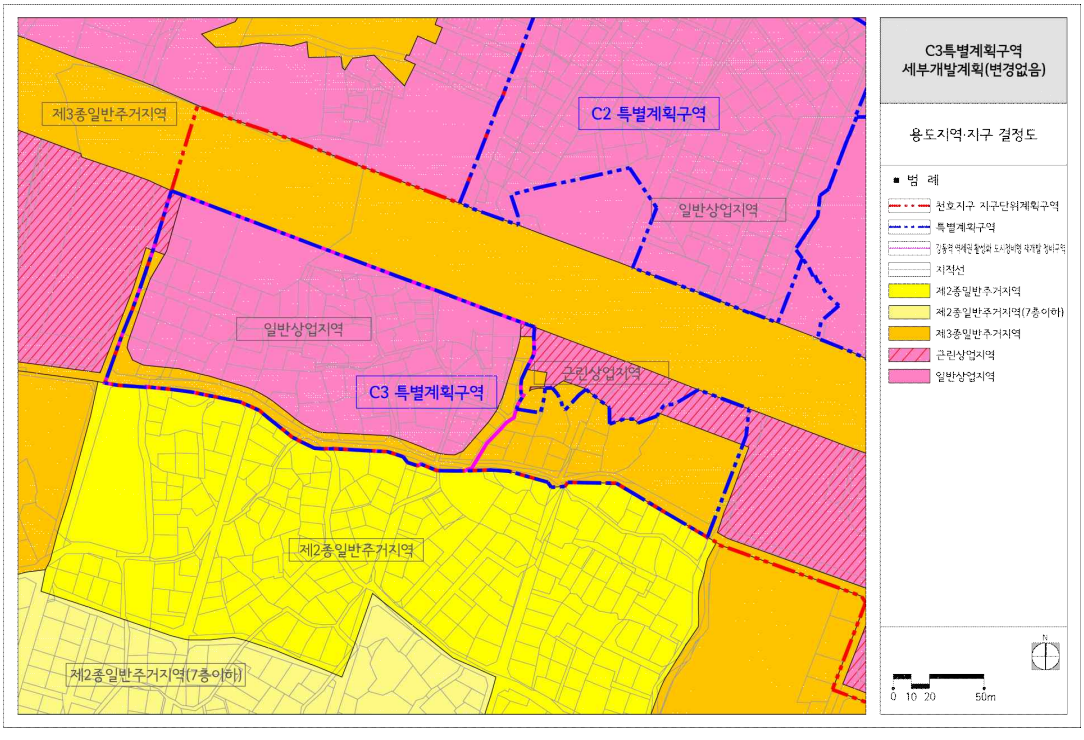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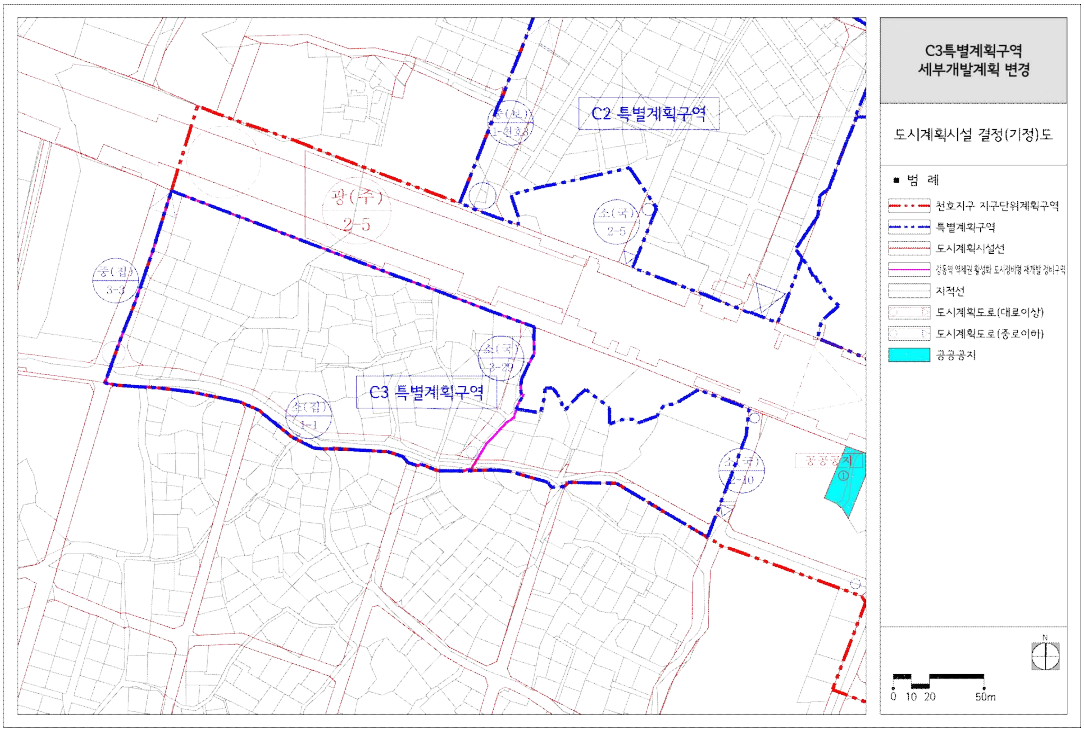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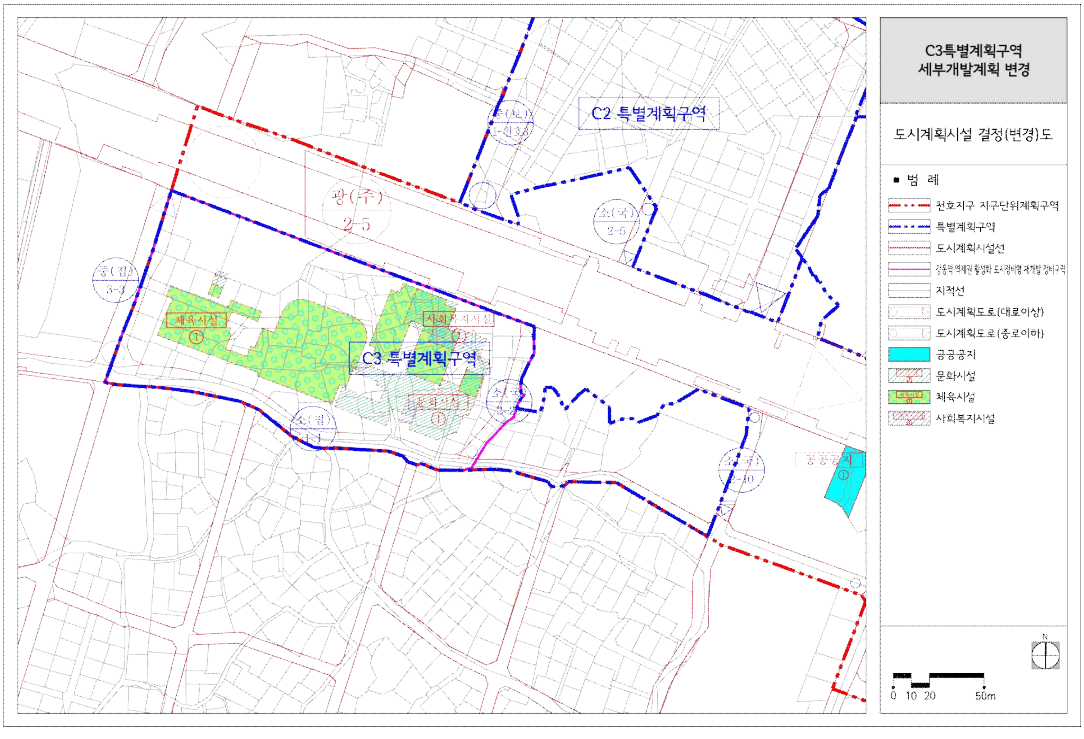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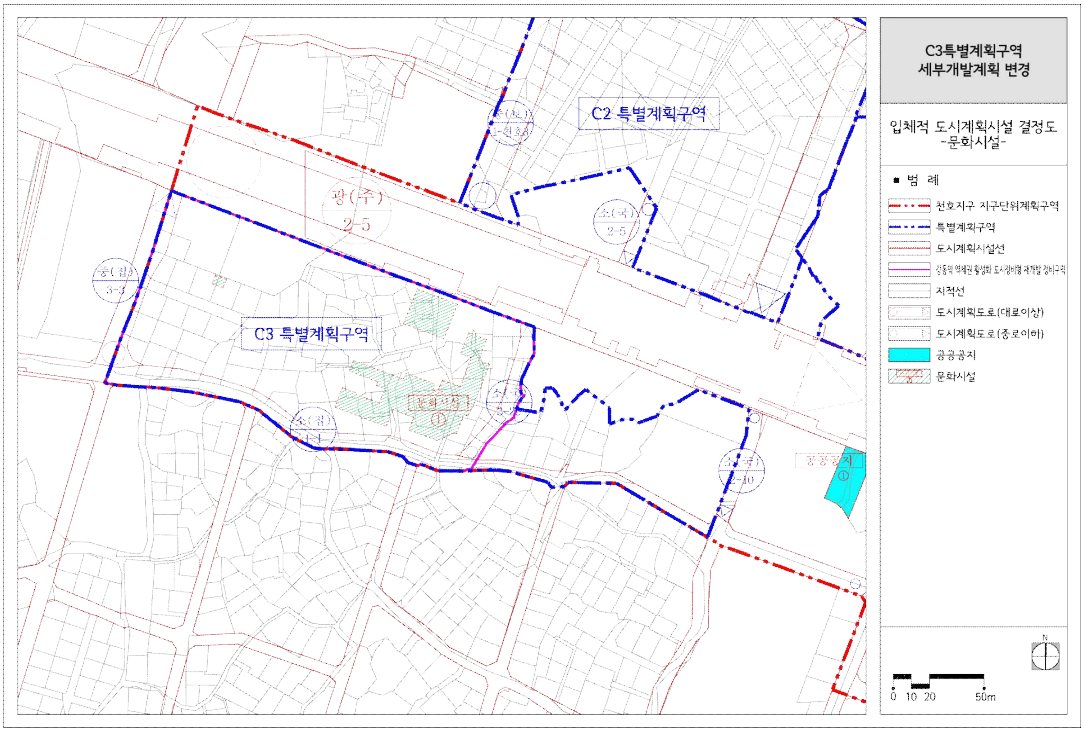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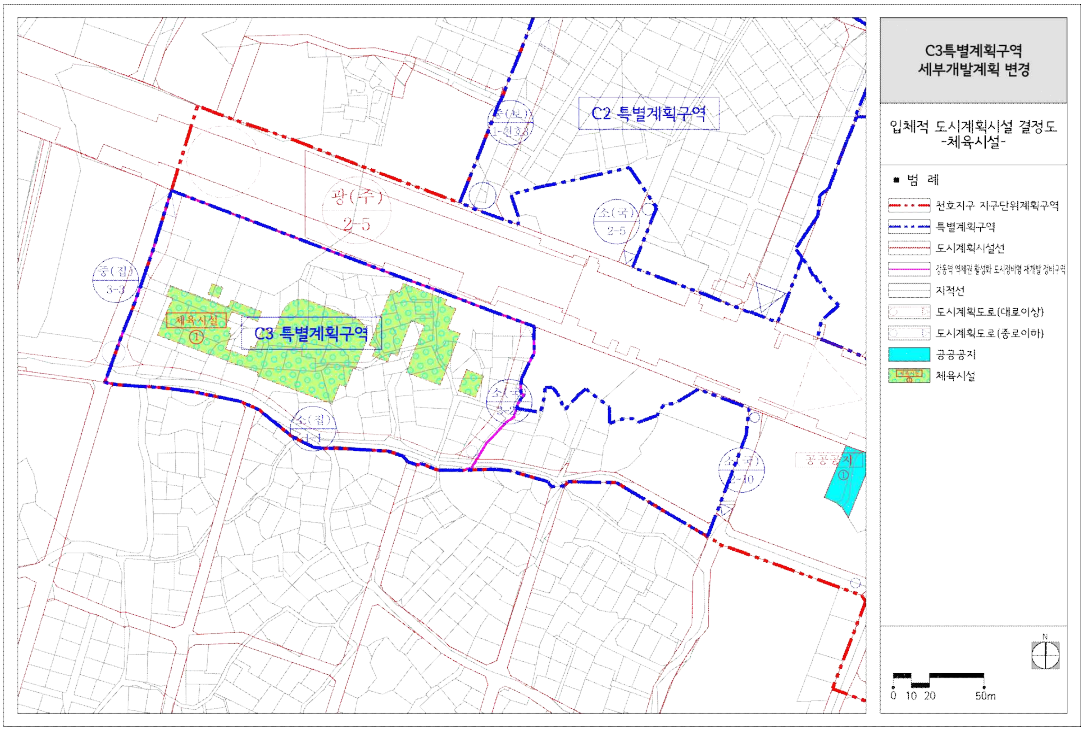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사회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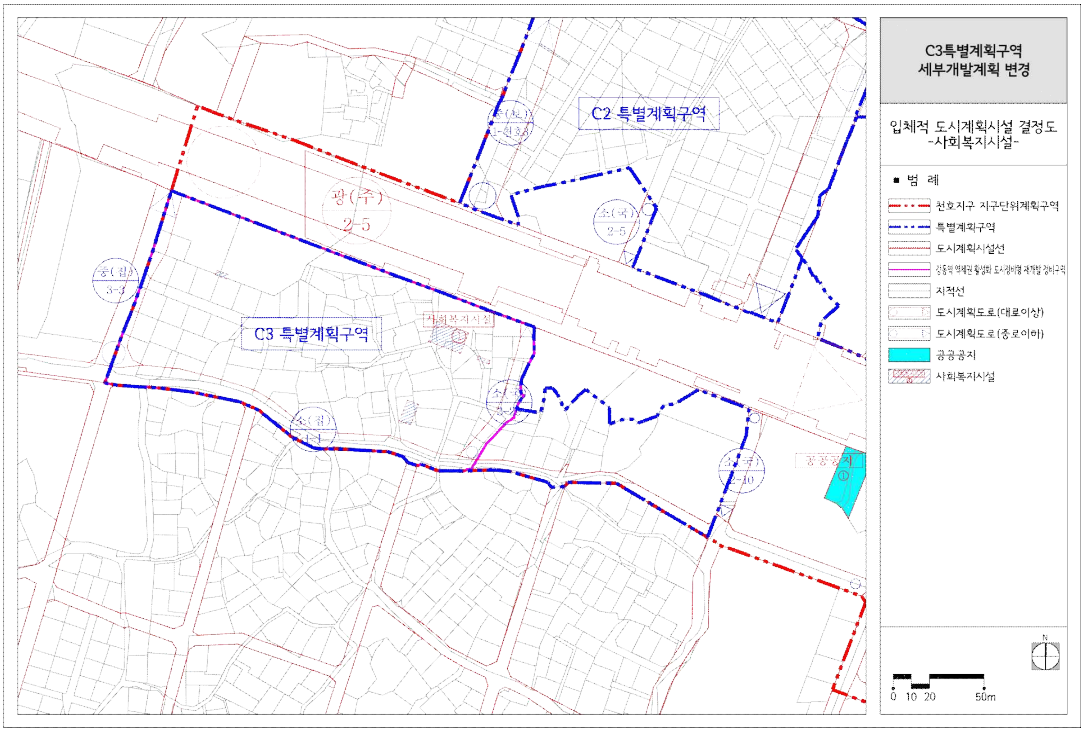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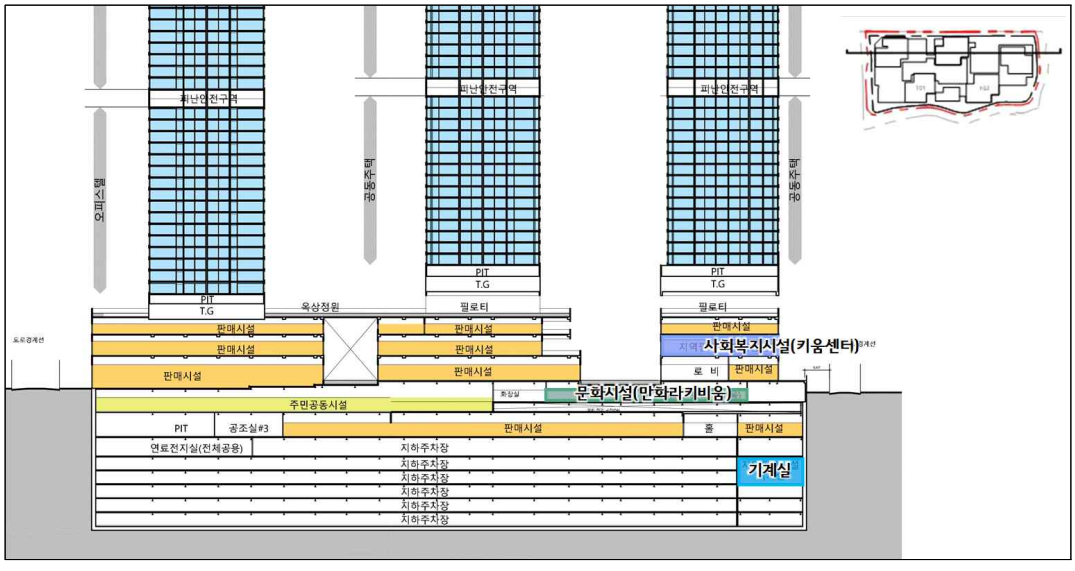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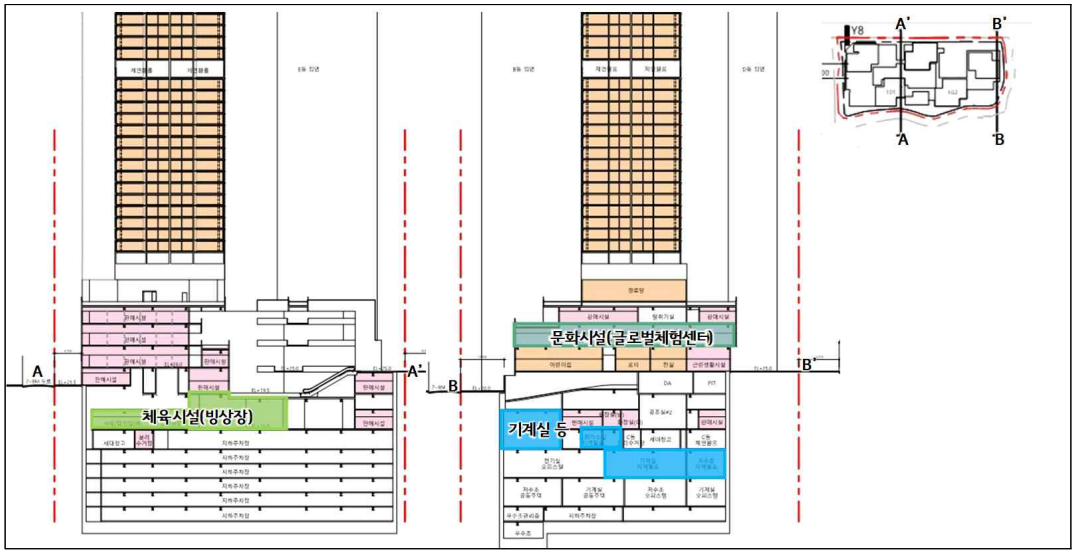
A
A'
B
B'
체육시설(빙상장)
문화시설(글로벌체험센터)
기계실 등

-층별 평면도

사회복지시설 (키움센터)
문화시설 (글로벌체험센터)
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
지상2층
문화시설 만화라키비움
문화시설 만화라키비움
지하1층
체육시설 (빙상장)
체육시설 (수영장)
지하2층
체육시설 (공용면적)
문화시설 (공용면적)
사회복지시설 (공용면적)
지하3층
체육시설 (공용면적)
지하4층
문화시설 (공용면적)
사회복지시설 (공용면적)
체육시설 (공용면적)
지하5층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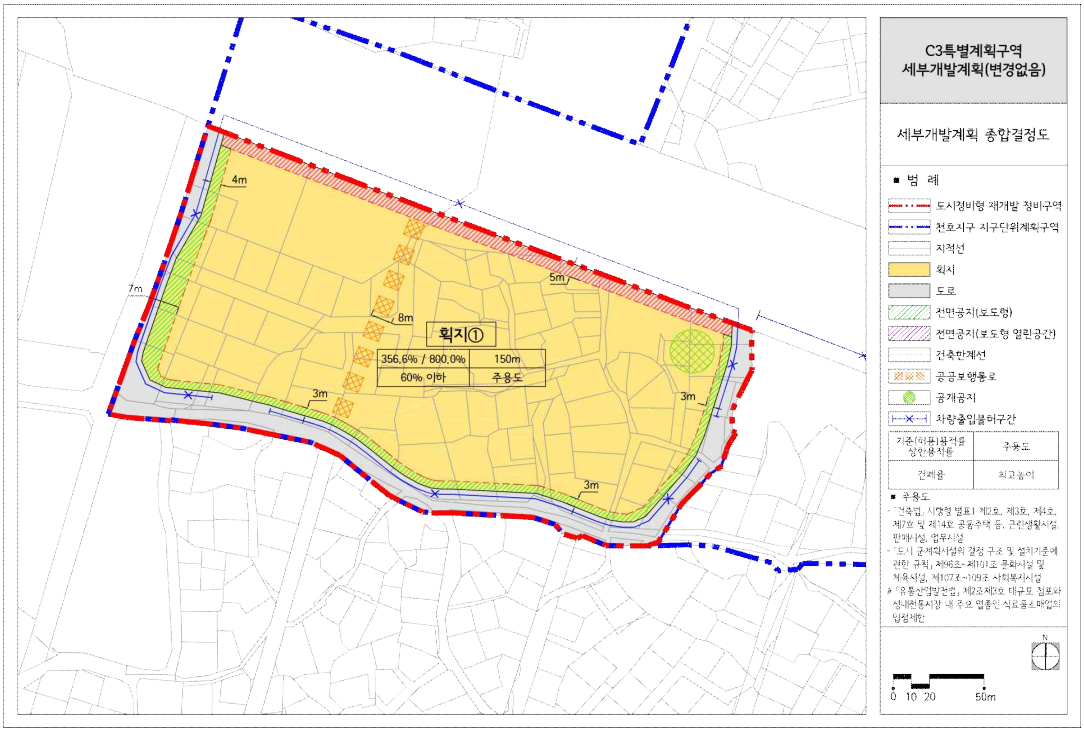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3호

신내4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대 일원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신내4 공공주택지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대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대행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성명 : 오세훈(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대
○ 대지면적 : 27,011.00㎡
○ 규 모 : 공동주택-지하4층/지상25층, 생활SOC-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 126,786.4556㎡
○ 용 도 :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7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생활SOC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1 ~ 2029.08

5.「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설계부(전화번호: 02-3410-769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 신내4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3일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원	주요지번 변경
② 대 지 면 적 (㎡)			51,683.0000	27,011.0000	감 24,672.0000
③ 건 축 면 적 (㎡)			23,085.5832	12,085.3969	감 11,000.1863
④ 건축 연면적 (㎡)			107,268.8635	126,786.4556	증 19,517.5921
⑤ 건 폐 율 (%)			44.67	44.74	증 0.07
⑥ 용 적 률 (%)			154.66	290.94	증 136.28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행복주택 아파트 3동 990세대 (지하1층, 지상15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아파트 7동 798세대 (지하4층, 지상25층)	증 4개동 감 192세대 증 지하3개층 증 지상10개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20A) 전용 20.35㎡형 : 378 세대	31A) 전용 31.97㎡형 : 210 세대	세대 평형 확대
			20B) 전용 20.96㎡형 : 247 세대	31AU) 전용 31.94㎡형 : 24세대	
			20BU) 전용 20.96㎡형 : 90 세대	51A) 전용 51.93㎡형 : 44 세대	
			42A) 전용 42.85㎡형 : 36 세대	51AU) 전용 51.99㎡형 : 7 세대	
			42B) 전용 42.97㎡형 : 16 세대	59A) 전용 59.97㎡형 : 16 세대	
			42AU) 전용 42.94㎡형 : 15 세대	59B) 전용 59.97㎡형 : 14 세대	
			44A) 전용 44.80㎡형 : 92 세대	59C) 전용 59.80㎡형 : 12 세대	
			44B) 전용 44.74㎡형 : 46 세대	59D) 전용 59.93㎡형 : 90 세대	
			53A) 전용 53.75㎡형 : 39 세대	59E) 전용 59.95㎡형 : 70 세대	
			53B) 전용 53.98㎡형 : 19 세대	59F) 전용 59.92㎡형 : 34 세대	
			53C) 전용 53.99㎡형 : 12 세대	59G) 전용 59.92㎡형 : 19 세대	
			-	59DU) 전용 59.93㎡형 : 5 세대	
			-	74A) 전용 74.98㎡형 : 32 세대	
			-	74B) 전용 74.98㎡형 : 11 세대	
			-	74C) 전용 74.98㎡형 : 29 세대	
			-	74D) 전용 74.96㎡형 : 14 세대	
			-	74E) 전용 74.96㎡형 : 15 세대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	74F) 전용 74.96㎡형 : 15 세대	
			-	74G) 전용 74.96㎡형 : 15 세대	
			-	84A) 전용 84.94㎡형 : 30 세대	
			-	84B) 전용 84.94㎡형 : 30 세대	
			-	84C) 전용 84.94㎡형 : 30 세대	
			-	84D) 전용 84.94㎡형 : 30 세대	
			-	84E) 전용 84.98㎡형 : 1 세대	
			-	84F) 전용 84.99㎡형 : 1 세대	
		계	총 990 세대	총 798 세대	감 192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01 ~ 2026.12	2020.01 ~ 2029.08	
⑨ 부대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224.9552 ㎡	215.6241 ㎡	감 9.3311
	경비실		36.7557 ㎡	35.7130 ㎡	감 1.0427
	용역원휴게실		33.7644 ㎡	43.7292 ㎡	증 9.9648
	다함께돌봄센터		139.9936 ㎡	167.7821 ㎡	증 27.7885
	작은도서관		263.8220 ㎡	424.8883 ㎡	증 161.0663
	경로당		-	192.8517 ㎡	증 192.8517
	키즈스테이션/맘스카페		-	128.9921 ㎡	기타부대복리시설 합계 전: 1,327.9740 후: 953.4269 감 374.5471
	주민공동시설-1 (401동 커뮤니티키친, 스터디카페, 스마트세탁방, 게스트하우스, 라운지 등)		1,359.1604 ㎡	-	
	주민공동시설-2 (402동 미디어스페이스, 커뮤니티키친, 스마트세탁방, 장난감대여소, 게스트하우스 등)		1,211.1991 ㎡	-	
	주민공동시설-2 (403동 워크스테이션, 커뮤니티키친, 스마트세탁방, 가족운동실, 게스트하우스 등)		1,648.3268 ㎡	-	
	주민공동시설-1 (일상지원센터)		86.6440 ㎡	92.7290 ㎡	
	주민공동시설-1 (워크스테이션)		-	63.7712 ㎡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주민공동시설-2 (커뮤니티키친/공유세탁방)	-		260.8027	㎡	
	주민공동시설-3 (커뮤니티 센터)	-		367.4655	㎡	
	주민공동시설-4 (미디어센터)	-		265.3638	㎡	
	(변경전) 피트니스센터 / (변경후) 주민공동시설-5	901.4838	㎡	944.5901	㎡	
	택배보관함	128.1789	㎡	-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	
	스카이라운지	172.0451	㎡	-		
	게스트하우스-1,2	-		478.0449	㎡	
	커뮤니티 라운지 (404동4층)	-		72.5749	㎡	
	옥외코어-1~5	-		235.5231	㎡	
	세대창고	-		2,020.9855	㎡	
	기계실	427.3146	㎡	88.4607	㎡	기전실 합계 전: 1,327.9740 후: 953.4269 감 374.5471
	연료전지기계실	158.6576	㎡	-		
	전기실/발전기실	276.5407	㎡	294.7247	㎡	
	소화펌프실	-		91.5441	㎡	
	정화조 관리층	-		171.4455	㎡	
	우수저수조 기계실/관리층	465.4611	㎡	307.2519	㎡	
	지하주차장	18,414.3234	㎡	39,638.2915	㎡	증 21,223.9681
	⑩ 공동저수시설	594	톤	504	톤	감 90톤
⑪ 생활 SOC	A플랫폼 (생활문화지원센터, 공공도서관)	3,945.7009	㎡	-		생활SOC 합계 전: 17,563.0159 후: 7,530.6792 감 10,032.3367
	B플랫폼 (다목적체육관, 주민건강센터)	5,728.5654	㎡	-		
	C플랫폼 (실내놀이방, 청소년문화공간)	1,646.7810	㎡	-		
	다목적 체육관	-		2,615.5720	㎡	
	체육관 사무실	-		71.8800	㎡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국공립 어린이집	853.5206	㎡	1,194.2658	㎡	
	청소년 독서실	-		980.1280	㎡	
	기타 생활SOC (문화 및 집회시설 SOC)	1,025.3697	㎡	336.0256	㎡	
	생활코리더-1	361.7574	㎡	-		
	생활코리더-2 (관리사무소, 실외기실, 창고포함)	1,400.6627	㎡	-		
	생활코리더-3	148.7897	㎡	-		
	문화코리더-1	1,416.0980	㎡	-		
	문화코리더-2	1,035.7705	㎡	-		
	공용면적	-		2,332.8078	㎡	
	기계실	198.2999	㎡	441.2700	㎡(펌프실포함)	기전실 합계 전: 434.1012 후: 897.1599 증 463.0587
	전기실/발전기실	235.8013	㎡	288.5800	㎡	
	지열기계실	-		99.5699	㎡	
	정화조관리층	-		67.7400	㎡	
	지하주차장	6,288.4069	㎡	3,762.0428	㎡	감 2,526.3641
	⑫ 공동저수시설	115	톤	216	톤	증 101톤
⑭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1	124.5231	㎡	99.8792	㎡	근린생활시설 합계 전: 17,563.0159 후: 7,530.6792 감 374.5471
	근린생활시설-2	581.1761	㎡	657.0809	㎡	
	근린생활시설-3	348.8558	㎡	-		
	근린생활시설-4	127.2844	㎡	-		
	소화펌프실	-		96.7598	㎡	증 96.7598
	정화조 관리층	-		28.6521	㎡	증 28.6521
	지하주차장	624.4178	㎡	394.9020	㎡	감 229.5158

구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⑬ 단위세대 면적	공공임대	31A	210	31.9768	15.0574	47.0342	32.4664	79.5005	
		31U	24	31.9474	15.0761	47.0235	32.4365	76.4600	주거약자
		51A	44	51.9334	23.9225	75.8559	52.7285	128.5844	
		51U	7	51.9990	23.8060	75.8050	52.7951	128.6001	주거약자
		59A	16	59.9707	26.8894	86.8601	60.8889	147.7490	
		59B	14	59.9707	26.8894	86.8601	60.8889	147.7490	
		59C	12	59.8017	27.1711	86.9728	60.7173	147.6901	
		59D	90	59.9396	26.8419	86.7815	60.8573	147.6387	
		59E	70	59.9514	27.2514	87.2028	60.8693	148.0721	
		59F	34	59.9259	27.5025	87.4284	60.8434	148.2718	
		59G	19	59.9259	27.5025	87.4284	60.8434	148.2718	
		59U	5	59.9301	26.8115	86.7416	60.8476	147.5893	주거약자
		74A	32	74.9862	35.1296	110.1158	76.1343	186.2501	
		74B	11	74.9862	35.1296	110.1158	76.1343	186.2501	
		74C	29	74.9862	35.1296	110.1158	76.1343	186.2501	
		74D	14	74.9686	33.3819	108.3505	76.1164	184.4669	
		74E	15	74.9686	33.3819	108.3505	76.1164	184.4669	
		74F	15	74.9686	33.3618	108.3304	76.1164	184.4468	
		74G	15	74.9686	33.3618	108.3304	76.1164	184.4468	
		84A	30	84.9476	37.0520	121.9996	86.2482	208.2478	
		84B	30	84.9476	37.0520	121.9996	86.2482	208.2478	
		84C	30	84.9476	37.0270	121.9746	86.2482	208.2228	
		84D	30	84.9476	37.0270	121.9746	86.2482	208.2228	
		84E	1	84.9895	40.8442	125.8337	86.2907	212.1244	
		84F	1	84.9938	40.9974	125.9912	86.2951	212.2862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00호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안)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

2.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 현재 도로명 : 서울둘레O코스길(붙임1 참고)
- 부여 사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둘레길 코스 명칭을 사용
○ 변경 도로명 : 서울둘레O길(붙임1 참고)
- 부여 사유 :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간결한 명칭으로 부여

3. 의견제출 및 방법
○ 도로명 변경(안)(붙임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11.14.까지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공간정보과
- 전자우편: sohee0523@seoul.go.kr / FAX: 02-768-8842
- 문의: 02-2133-2838

붙임1 **도로명 변경(안) 및 도로구간 조서**

○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 예비도로명: 서울둘레O길

○ 도로구간 조서

구분	도로명		유형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존	변경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변경	서울둘레6코스길	서울둘레6길	지상도로	길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50-11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7	9.2	1~8	광진구, 강동구
	서울둘레8코스길	서울둘레8길	지상도로	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43-15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8	9.1	2~8	송파구, 강남구
	서울둘레9코스길	서울둘레9길	지상도로	길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5	9.9	1~6	강남구, 서초구
	서울둘레11코스길	서울둘레11길	지상도로	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237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11-10	5.5	1~3	서초구, 관악구
	서울둘레14코스길	서울둘레14길	지상도로	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42-7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9-11	9.9	2~5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서울둘레15코스길	서울둘레15길	지상도로	길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9-11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99-9	7.6	2~9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둘레18코스길	서울둘레18길	지상도로	길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25-3	7.3	1~4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서울둘레19코스길	서울둘레19길	지상도로	길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25-3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642-5	5.8	1~3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서울둘레21코스길	서울둘레21길	지상도로	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4-42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9-3	7.3	1~4	강북구, 도봉구

○ 중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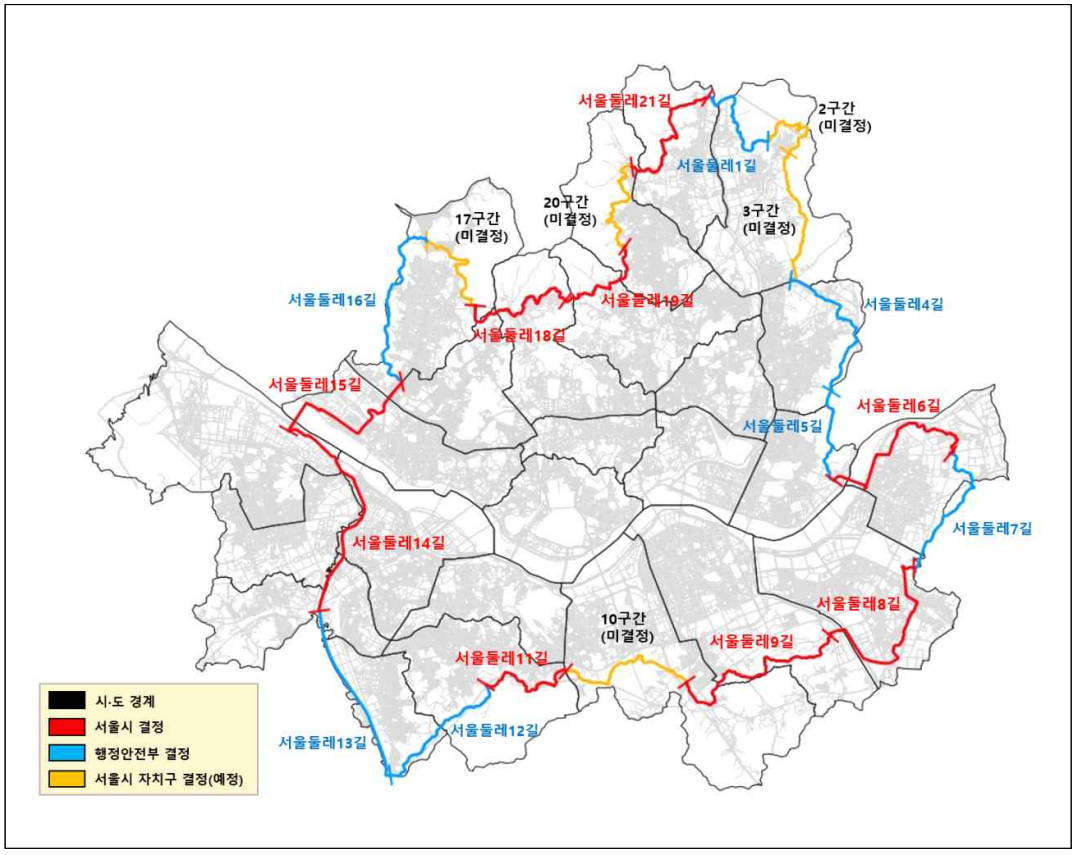
서울둘레21길
2구간
(미결정)
서울둘레1길
20구간
(미결정)
3구간
(미결정)
17구간
(미결정)
서울둘레16길
서울둘레19길
서울둘레4길
서울둘레18길
서울둘레15길
서울둘레6길
서울둘레5길
서울둘레14길
서울둘레7길
서울둘레8길
10구간
(미결정)
서울둘레9길
서울둘레11길
서울둘레12길
서울둘레13길
시·도 경계
서울시 결정
행정안전부 결정
서울시 자치구 결정(예정)

붙임2	의견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변경에 대한 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정	→	통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01호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

2. 의견제출 및 방법

○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붙임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11.14.까지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공간정보과
- 전자우편: sohee0523@seoul.go.kr / FAX: 02-768-8842
- 문의: 02-2133-2838

3.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 또는 기초조사 ▶ 구청장 ▶ 시울시장 ▶ 의견수렴 공고 ▶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붙임1	도로명 부여 조서

1. 양화한강공원

○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등포구
○ 연장: 5.9㎞
○ 예비도로명: 양화한강공원길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양화 한강공원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3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0-7	5.9	1.6 ~ 7.4	서울시 강서구, 영등포구	20	1~ 594

○ 중심선

2. 여의도한강공원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구
○ 연장: 4.5㎞
○ 예비도로명: 여의도한강공원길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여의도 한강공원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0-7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6-1	4.5	1.7 ~ 10.2	서울시 영등포구, 동작구	20	1~456

○ 중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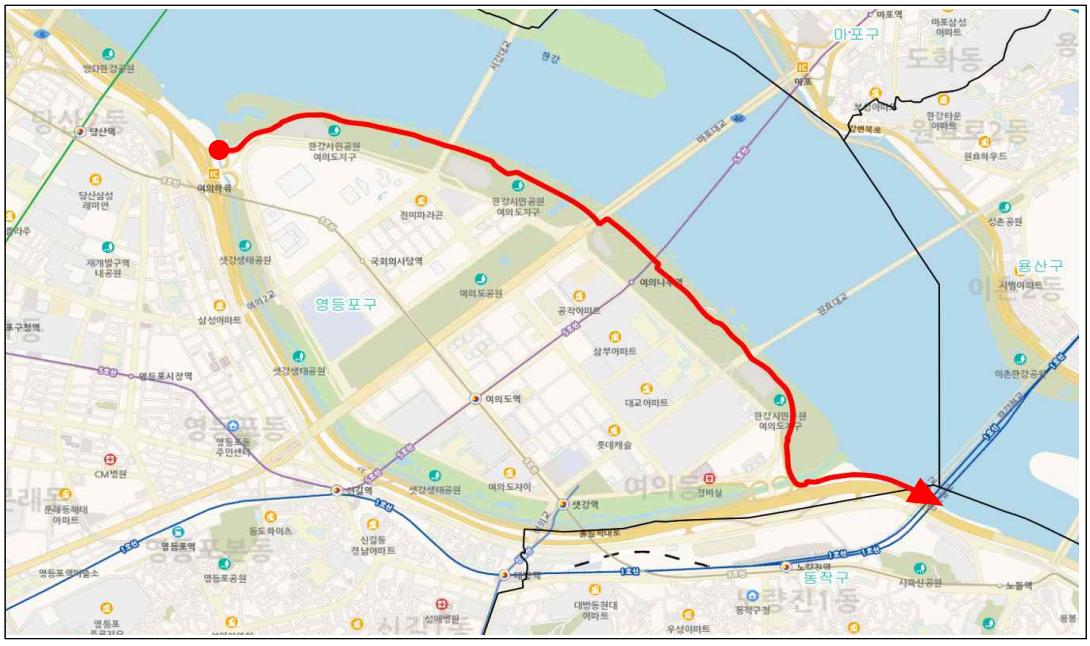

3. 반포한강공원

○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초구
○ 연장: 5.9㎞
○ 예비도로명: 반포한강공원길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반포 한강공원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6-1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6-1	5.9	1.8 ~ 12.2	서울시 동작구, 서초구	20	1~ 600

○ 중심선

4. 잠원한강공원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 연장: 5.4㎞
○ 예비도로명: 잠원한강공원길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잠원 한강공원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6-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40	5.4	1.8 ~ 6.9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20	1~ 546

○ 중심선

5. 잠실한강공원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 연장: 4.6㎞
○ 예비도로명: 잠실한강공원길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잠실 한강공원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4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	4.6	1.9 ~ 5.6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20	1~ 466

○ 중심선

6. 광나루한강공원

○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 연장: 10㎞
○ 예비도로명: 광나루한강공원길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광나루 한강공원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62-1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2	10	1.1 ~ 3.7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	20	1~ 1010

○ 중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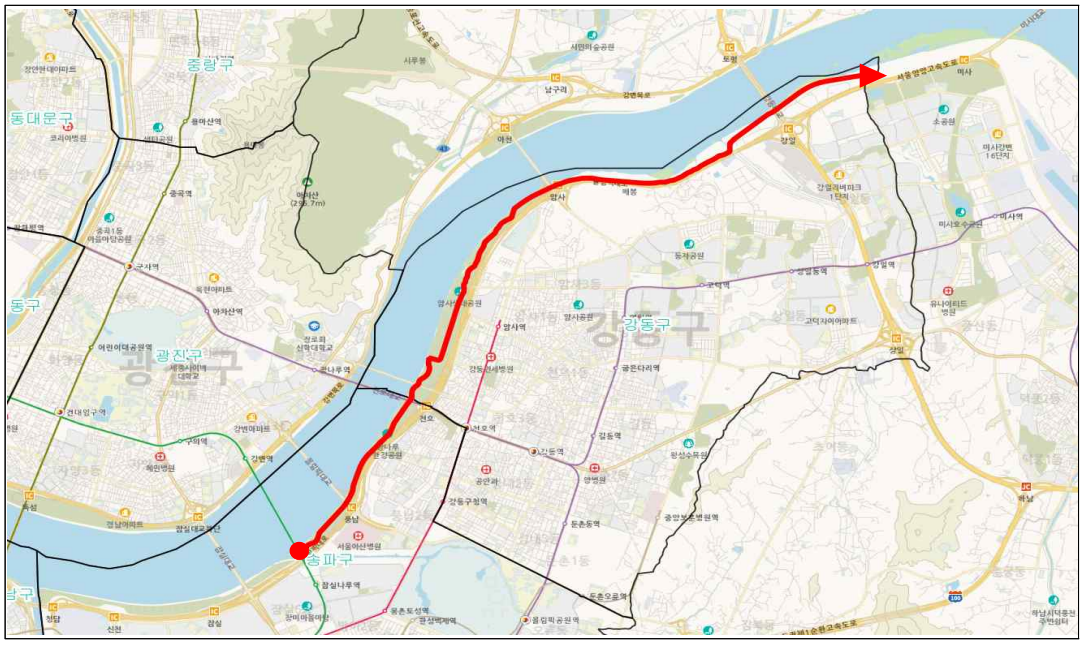

7. 뚝섬한강공원

○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 연장: 10.3㎞
○ 예비도로명: 뚝섬한강공원길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뚝섬 한강공원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4가 2-2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64	10.3	1.0 ~ 9.9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20	1~ 1030

○ 중심선

8. 이촌한강공원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동구
○ 연장: 9.3㎞
○ 예비도로명: 이촌한강공원길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이촌 한강공원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93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4가 2-2	9.3	1.5 ~ 6.1	서울시 용산구, 성동구	20	1~ 940

○ 중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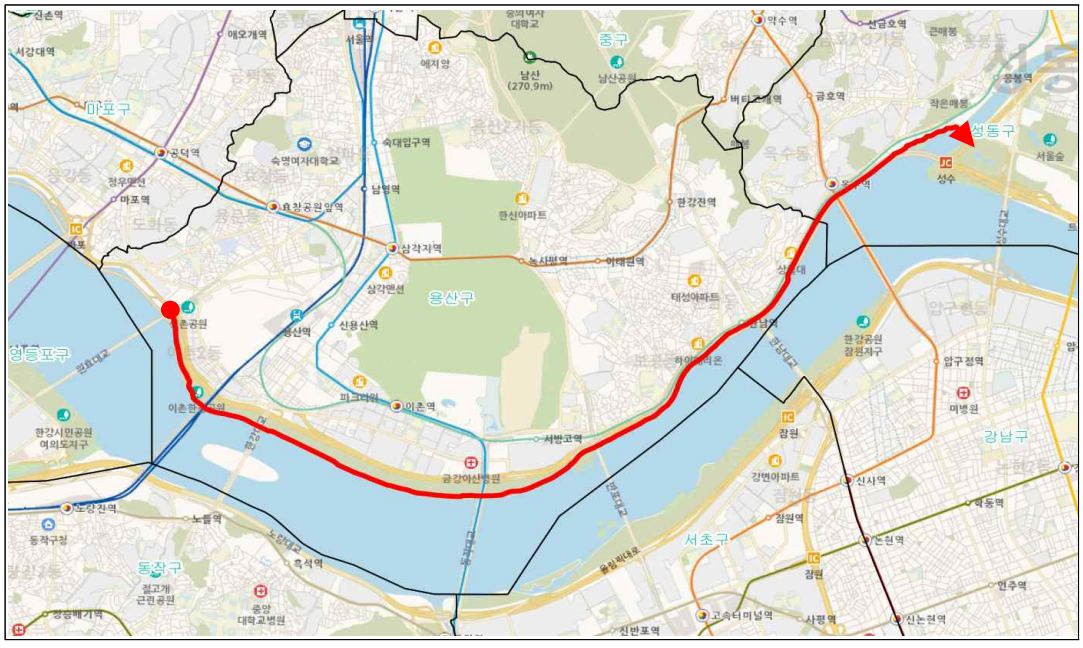

붙임2	의견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 (안)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 – 사유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정 → 통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10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인영(직인 도안)이 잘못 표기되어 변경함
2. 직인 등록 및 폐기 일자 : 2024. 10. 21.字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내용

가.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 10. 21.	인영(직인 도안)이 잘못 표기되어 변경
	정보시스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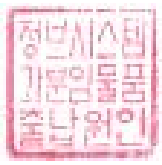		

나. 직인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 10. 21.	인영(직인 도안)이 잘못 표기되어 변경
	정보시스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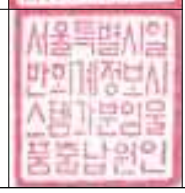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1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0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119356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30가길 8-2	수도요금	2022. 2월 등 16납기	16회	1,677,06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30가길 8-2	이기환	331212-1****** (2회송달 부재)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30가길 8-2	1,677,060원	2024.11.4.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강경문(☎02-3146-33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21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수시분 부과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9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	91가5526	대*광업(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07-09 12:07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462-1 동두천방면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2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4-07-12 13:35	마포02_월드컵경지장(월드컵로) 3차로	〃	〃
3	04러3985	LIN *ING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07-15 12:07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	〃
4	34소5609	유한회사 에*유엑스씨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4-07-15 06:46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	〃
5	49부1279	신*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07-20 17:31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3차로	〃	〃
6	04더8181	주-*슬에이치에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7-21 15:36	노원04_삼육대입구 3차로	〃	〃
7	01보6885	㈜*조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7-23 14:39	은평02_통일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8	01조1175	㈜*송지테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07-23 10:05	용산02_강변북로(구리) 3차로	〃	〃
9	01모1993	㈜*엔에스씨오알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7-26 11:53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5차로	〃	〃
10	서울73라5614	㈜*모스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07-27 18:04	경기도 안산시 서안산IC(안산방향) 4차로	〃	〃
11	01너3943	서*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4-07-28 12:29	용산03_강변북로(일산) 3차로	〃	〃
12	75더1281	남*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4-07-29 19:23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3차로	〃	〃
13	01버6507	김*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4-07-30 08:46	중랑01_북부간선도로 3차로	〃	〃
14	04고6363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07-30 15:55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3차로	〃	〃
15	02도1970	현*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4-07-31 14:15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	〃
16	25보4848	송*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07-31 13:44	경기도 수원시 산업단지입구(수원방면) 3차선	〃	〃
17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07-31 08:09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1차로	〃	〃
18	38서9258	정*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4-07-31 12:51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화도방면 2차로	〃	〃
19	91나7401	CH*UDHRY SAJID SALEEM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07-31 18:31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3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김석근(Tel 02-2133-3659) 끝.

붙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차량번호)	( )		생년월일	
	주 소	(☎)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부과번호	
	부과일자			과태료 금 액	
	위반내용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3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압류 내역

연번	대상자		체납 내역	압류 물건	압류일
	상호(대표자)	주소			
1	(주)오엔테크놀러지 (유*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아이티타워 11층 1109호(구로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체납액: 2,529,000원(총 2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243-13, 1동 113호	2024.09.20.
2	(주)서신엔지니어링 (오*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9, 5층, 지층 (방배동 대호빌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체납액: 3,476,000원(총 2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04-1, 1동 2219호	2024.09.26.

※ 체납액은 2024. 10. 31.기준이며, 가산금 등으로 실제 체납금액은 다를 수 있음.

4.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
5.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34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3.(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모켄건축 (홍대길)	건축공사업 01-44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1314호(역삼동, 삼일프라자)	2024.5.24.자 영업정지처분 종료일(2024.6.23.)까지도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이행요구 불이행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등록말소 (2024.11.29.)
서진종합건설㈜ (윤건진)	건축공사업 01-3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9, 서진플로렌스힐탑 제지1층, 제비01호(논현동)	2024.5.24.자 영업정지처분 종료일(2024.6.23.)까지도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이행요구 불이행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등록말소 (2024.11.29.)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36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확정부과 및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사전통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
나. 연 체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확정부과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김○호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0-14 - 점유기간 : 2021.10.28. ~ 2022.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26.0㎡, 5% - 확정부과 내역 : 9,818,590원	경기도 의정부시 태○로 40번길 10 300호
김○호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0-14 - 점유기간 : 2023.01.01. ~ 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26.0㎡, 5% - 확정부과 내역 : 8,007,480원	경기도 의정부시 태○로 40번길 10 300호
이○희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60-8 - 점유기간 : 2023.01.01. ~ 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7.0㎡, 2% - 확정부과 내역 : 385,390원	서울특별시 성○구 보○○로20길 40-30
㈜태○○앤씨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6-35 - 점유기간 : 2023.01.01. ~ 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3.8㎡, 5% - 확정부과 내역 : 1,557,010원	경기도 용○시 기○구 구○로 350 용인○○노밸리 ○동 7○○호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최O원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4 - 점유기간 : 2023.01.01. ~ 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10.0㎡, 2% - 확정부과 내역 : 1,192,800원	서울특별시 송O구 올OO로 90(잠O동, 잠O엘스) 120-4OO
윤O래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8-13 - 점유기간 : 2023.01.01. ~ 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4.0㎡, 5% - 확정부과 내역 : 1,163,520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OO로 1OO길 40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대 상 자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김O호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0-14 - 점유기간 : 2017.02.04. ~ 2021.10.27. - 점유면적 및 요율 : 26.0㎡, 5% - 독촉내역 : 38,012,480원(변상금: 30,736,730원, 연체료: 7,275,750원)	경기도 의정부시 태O로 40번길 10 3OO호
이O희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60-8 - 점유기간 : 2015.10.29. ~ 2022.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7.0㎡, 2% - 독촉내역 : 3,023,380원(변상금: 2,413,180원, 연체료: 610,200원)	서울특별시 성O구 보OO로2O길 40-30
㈜태OO앤씨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6-35 - 점유기간 : 2022.01.01. ~ 2022.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3.8㎡, 5% - 독촉내역 : 1,589,420원 (변상금 : 1,532,160원, 연체료 : 57,260원)	경기도 용O시 기O구 구O로 350 용인OO노밸리 O동 7OO호
최O원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4 - 점유기간 : 2017.03.11. ~ 2022.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10.0㎡, 2% - 독촉내역 : 6,631,960원 (변상금 : 6,393,010원, 연체료 : 238,950원)	서울특별시 송O구 올OO로 90(잠O동, 잠O엘스) 120-4OO
윤O래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8-13 - 점유기간 : 2018.07.01. ~ 2022.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4.0㎡, 5% - 독촉내역 : 6,156,630원 (변상금 : 4,847,390원, 연체료 : 1,309,240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OO로 1OO길 40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 (15일 간)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37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주소지 현장 확인한바 영업장 소재지 부존재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1.(목) ~ 2024. 11. 14.(목)
3. 통지사항
   1) 체 납 자: ㈜지정이앤씨(110111-3******)
   2)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1길 81, 4층(종암동, 성은빌딩)
   3) 처분원인:「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위반
      (기술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변경 신고 하지 아니함)
   4)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명세: 668,400원(과태료 600,000원, 가산금 68,400원)
      - 2024.10.23. 기준이며, 가산금 등으로 실제 체납금액은 다를 수 있음
   5) 압류물건: 자동차
      - 35*구78**, 2021년식, 모** (2024.10.15.압류등기)
   6) 등기번호: 1101050591113(재산압류예고서)
   * 주소지 현장 확인한바 영업장 소재지 부존재로 재산압류통지서는 미발송(공시송달로 대체)
   7) 송달불능사유: 수취인불명, 영업장 소재지 부존재
4.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고,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02-6981-7222),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72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58호

공유재산 변상금 확정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확정부과 및 납부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건　　명 : 공유재산 변상금 확정부과 및 납부독촉 공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 법적근거
가. 변 상 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
나.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가. 대상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반송사유
오○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25길 17-*, *동 ***호	1964.**.**	폐문부재

나. 내　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 공유재산(시유지) 무단점유 - 소 재 지 : 구로구 천왕동 43-5 - 점유기간 : 2017.11.17.~2022.08.11. - 점유면적 : 329㎡	○ 변상금 확정부과 및 납부독촉 : 금87,743,540원

※ 공시송달기간 : 2024.10.31.~ 2024.11.14.
※ 공시송달자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63호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1.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구역명: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110,234	증)881.2	111,115.2	2016.01.28. (서울시 고시 제2016-30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 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 구역명 변경 • 면적 변경 (110,234㎡→111,115.2㎡)	• 시정방향에 따라 구역명은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공고개요

1) 열람기간: 2024. 10. 31. ~ 11. 14.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이상)
2)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02-2133-1552)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03)
4) 의견제출: 열람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제출(별도 서식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02-2133-1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6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신*용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선마로 ***, *동 ***호(가산면)	일시: 2024-08-16 09:35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상행)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7m 초과	처분일: 2024. 9. 26. 과태료: 15만 원 납기일: 2024. 11. 30.
이*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 (성정동)	일시: 2024-08-19 08:49 장소: 벌말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11. 30.
오*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4가길 *-*(휘경동)	일시: 2024-08-26 09:41 장소: 흑석11구역 재개발 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임차인등의 관리의 무) 위반	처분일: 2024. 9.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11. 30.
고*석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운해로 ***-* (운남면)	일시: 2024-08-29 09:43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1m 초과	처분일: 2024.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11. 30.
황*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77번길 *, **호(불로동)	일시: 2024-08-30 14:50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총중량 5.33t 초과	처분일: 2024. 9. 26.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24. 11. 30.
전*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2길 **, 203호(화곡동)	일시: 2024-09-02 15:55 장소: 강변북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11.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곽*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일시: 2024-06-10 05:46 장소: 안양천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8. 2.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9. 30.
양*호	경기도 포천시 정자동1길 **-**, ***호 (선단동)	일시: 2024-06-11 08:22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축하중 1.17t 초과	처분일: 2024. 8. 2.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9. 30.
주*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25번길 **, ***동 **호(도화동)	일시: 2024-07-11 14:18 장소: 삼선5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임차인등의 관리의무) 위반	처분일: 2024. 8. 2.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9. 30.

4. 공고기간: 2024. 10. 31.~2024. 11. 13.
5. 납부기한: 2024. 11.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6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윤오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83 501동 110*호 (소흘읍)	위반일시: 2024-08-07 06:33 위반장소: 동작구 본동 258-1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62m, 초과값: 0.22m,경기89자900*)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9-27 납기일: 2024-11-30
변재혁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281 C동 51*호 (정왕동)	위반일시: 2024-08-10 09:17 위반장소: 용산구 원효로3가 277-1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m, 초과값: 0.2m,89저581*)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9-27 납기일: 2024-11-30
김병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6* (상동)	위반일시: 2024-08-13 10:24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481-6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5m, 초과값: 0.25m,경기07고852*)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9-27 납기일: 2024-11-30
박필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105동 310*호 (용현동)	위반일시: 2024-08-27 15:39 위반장소: 마포구 마포동 350-5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인천86아704*)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9-27 납기일: 2024-11-30
이종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722-1* (초월읍)	위반일시: 2024-09-03 15:45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1548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 11.3t, 초과값: 1.3t, 적발횟수: 2회,경기06소706*)	과태료: 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9-27 납기일: 2024-11-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7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2024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예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알리고자, 업체 소재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
2. 처분사전통지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 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주식회사 더플라우 (김성기, 박상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21-5)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6, 4층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업무정지 2회)	2024.11.20.(수) 14:00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변호사 김권규

- 처분근거 :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5] 2. 개별기준 나목 2차 위반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02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79호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공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도개요

○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 업소 중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아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상

○ 인정요건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원업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갱신 대상은 공표일 기준으로 2년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81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 · 본부 · 국
예산안 (2건)	1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 안 번 호	2297

제출년월일 : 2024년 11월 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	%
계	48,040,683,054	45,740,517,556	2,300,165,498	5.0
일반회계	34,383,882,275	33,049,200,567	1,334,681,708	4.0
특별회계	13,656,800,779	12,691,316,989	965,483,790	7.6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경호(☎2133-680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2298

제출년월일 : 2024년 11월 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2025 계획(안)	2024 계획	증 감	비율(%)
20개 기금 (28개 계정)	4,414,245,304	4,783,942,225	△369,696,921	△7.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8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0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8361261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260, 1동 112호	수도요금	2021. 10월 등 16납기	18	721,88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260, 1동 112호	박준우	811128-1****** (2회송달 부재)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260, 1동 112호	721,880원	2024.11.4.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강경문(☎02-3146-33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935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및 재산압류 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3.(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1) 체납자: 최○영(790203-2)
   2) 소재지번(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가길 **, ***동 ****호
   3) 처분원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반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배치통보일자 지연)
   4) 체납액: 금3,702,000(금삼백칠십만이천원)
      본세 3,000,000원, 가산금 702,000원
      * 기준일 2024. 10. 2.으로 실체 체납금액이 다를 수 있음.
   5) 압류재산: 부동산(집합건물)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번지 ********* ****호
   6) 등기번호: 11014-0195-3264(재산압류예고서),11014-0195-5739(재산압류통지서)
   7)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4.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02-6943-1424),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6943-1491)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7호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2024.7.11.)

소속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조진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410,001	124,615	0	534,616	
본인	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276번지 1,736.00㎡	130,000	0	0	130,000	변동없음
장녀	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1-30번지 32.00㎡ 중 12.80㎡	43,495	18,355	0	61,850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가액증가

장녀	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1-3번지 117.00㎡ 중 46.80㎡	159,030	73,566	0	232,596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가액증가
장녀	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1-4번지 57.00㎡ 중 22.80㎡	77,476	32,694	0	110,170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가액증가
▶ 건물(소계)			**2,628,000**	**21,000**	**11,000**	**2,638,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건물 84.97㎡	852,000	21,000	0	873,000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가액증가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건물 59.48㎡ 중 29.74㎡	475,000	0	0	475,000	변동없음
본인	아파트(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건물 132.73㎡	735,000	0	0	735,000	변동없음
장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84.70㎡	526,000	0	11,000	515,000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가액감소
장남	다세대주택(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60.90㎡	30,000	0	0	30,000	변동없음
장녀	단독주택(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건물 25.00㎡	10,000	0	0	10,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57,080**	**0**	**9,660**	**47,42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E300 4Matic 배기량(1,991cc)	35,430	0	7,010	28,420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액감소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렉스턴 스포츠 배기량(2,157cc)	21,650	0	2,650	19,000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액감소
▶ 현금(소계)			**45,000**	**6,000**	**0**	**51,000**	

본인		현금 증가	25,000	6,000	0	31,000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
배우자		현금	20,000	0	0	20,000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
▶ 예금(소계)			**1,358,597**	**651,917**	**597,288**	**1,413,226**	
본인		(주)KB손해보험 0(20,800 감소), (주)카카오페이증권 0(1 감소), DB손해보험(주) 8,911(1,114 증가), 교보생명보험 25,200, 국민은행 67, 농협생명보험 82,698(2,820 증가), 농협중앙회 50,897(822 증가), 삼성생명보험 60,000, 삼성증권 1, 삼성화재해상보험 35,643, 새마을금고중앙회 177,841(19,644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0(7,209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3,564(1,34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56,820(3,640 증가), 신한은행 511, 우리은행 102,161(32,683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9,712(2,038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46,050(856 증가)	683,128	279,708	242,760	720,076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 생활비사용, 만기해지 등으로 인한 가액감소
배우자		국민은행 5,598(144 증가), 농협중앙회 0(9,694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6,939(292 증가), 신한투자증권 7, 우체국 2,306(2,299 증가), 토스뱅크(주) 1,515(1,454 증가), 토스증권(주) 1,779(1,567 증가)	22,082	5,756	9,694	18,144	
장남		농협생명보험 65,273(1,400 증가), 농협중앙회 50,646(900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200(600 증가), 삼성생명보험 18,000, 새마을금고중앙회 129,066(13,768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0(4,967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6,518(2,058 증가), 신한은행	343,834	181,243	160,546	364,531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 생활비사용, 만기해지 등으로 인한 가액감소

		124(1,131 감소), 업비트 329(329 증가), 우리은행 16,408(619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0(12 감소), 케이뱅크 10,520(6,812 증가), 키움증권 3,319(3,309 증가), 한국투자증권 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26(50 증가)					
차남		국민은행 63(1 증가), 우리은행 14,101(588 증가), 토스뱅크(주) 40(40 증가)	13,575	641	12	14,204	
장녀		(주)KEB하나은행 1, IBK연금보험주식회사 19,000, KB증권 89(14 증가), 국민은행 3,317(4,124 감소), 농협생명보험 27,000(1,200 증가), 농협손해보험 20,000, 농협은행 24, 농협중앙회 342(1,200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142,919(20,509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0(19,294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6,519(2,058 증가), 신한은행 10(1 감소), 우리은행 16,898(1,07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52(61 증가)	295,978	184,569	184,276	296,271	
▶ 증권(소계)			**5,209**	**13,728**	**3,521**	**15,416**	
배우자	상장주식	HLB생명과학 143주(143주 증가), JW중외제약 36주(36주 증가), NI스틸 175주(175주 증가), 동운아나텍 30주(30주 증가), 동진쎄미켐 0주(30주 감소), 두산로보틱스 5주(5주 증가), 리가켐바이오 8주(8주 증가), 삼성전자보통주 14주(12주 증가), 성펑디벨롭먼트 0주(47주 감소), 솔루엠 38주(38주 증가), 시그네틱스 116주(116주 증가), 아이온큐 0주(61주 감소), 어보브반도체 0주(5주 감소), 에코프로비엠 7주(7주 증가), 우진 25주(25주 증가), 제주반도체 103주(103주 증가),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시스 0주(22주 감소), 퀄리타스반도체 42주(41주 증가), 퍼스텍보통주	3,693	12,383	3,496	12,580	증권가액변동으로 인한 가액변동

		0주(10주 감소), 폴라리스오피스 117주(117주 증가), 하이드로리튬 0주(113주 감소), 한국앤컴퍼니보통주 0주(10주 감소)					
장남	상장주식	NAVER보통주 4주(4주 증가), SOFITECHNOLOGIESINC 0주(2주 감소), 카카오게임즈 24주(24주 증가)	25	1,172	25	1,172	
장녀	상장주식	삼성전자 19주	1,491	173	0	1,664	
▶ 채권(소계)			**1,375,000**	**0**	**0**	**1,375,000**	
본인		사인간채권	1,335,000	0	0	1,335,000	변동없음
장남		사인간채권	30,000	0	0	30,000	변동없음
장녀		사인간채권	10,000	0	0	1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1,797,008**	**0**	**34,008**	**1,763,000**	
본인		사인간채무	500,000	0	0	500,000	변동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750,000	0	0	750,000	변동없음
배우자	금융채무	토스뱅크(주) 0(12,019 감소)	12,019	0	12,019	0	채무 전액상환
장남	금융채무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0(1,989 감소)	1,989	0	1,989	0	채무 전액상환

장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임대보증금	500,000	0	0	500,000	변동없음
장녀	금융채무	국민은행 13,000, 새마을금고중앙회 0(20,000 감소)	33,000	0	20,000	13,000	금융채무 중 일부 상환
▶ 가상자산(소계)			0	71	0	71	
장남		코스모스 8.326546개(8.326546개 증가)	0	71	0	71	투자로 인한 가액변동
총 계			4,081,879	817,331	587,461	4,311,749	증감액: 229,870천원 (가액변동: 125,128천원)

○ 퇴직(2024.7.19.)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직위	(전)사장		성명	이승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23,308**	**0**	**223,308**	**0**	
본인	전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번지 0.00㎡ (539.00㎡ 감소)	223,308	0	223,308 (350,000)	0	부동산(토지) 매매
▶ 건물(소계)			**924,938**	**0**	**0**	**924,938**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건물 133.78㎡ 중 66.89㎡	403,000	0	0	403,000	변동사유 없음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건물 133.78㎡ 중 66.89㎡	403,000	0	0	403,000	변동사유 없음
배우자	복합건물(주택+상가)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건물 25.14㎡	118,938	0	0	118,938	변동사유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000**	**71,600**	**0**	**74,60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SM5 배기량(2,000cc)	3,000	0	0	3,000	변동사유 없음
본인	자동차	2024년식 LEXUS 배기량(2,480cc) 증가	0	71,600 (71,600)	0	71,600	신규 차량 매입

▶ 예금(소계)			412,147	727,781	27,709	1,112,219	
본인		KB증권 10(263 감소), 교보생명보험 130,000(100,000 증가), 농협은행 70,242(10,876 감소), 농협중앙회 60,100(1,000 감소), 미래에셋생명보험 405,617(405,617 증가), 삼성생명보험 30,000, 삼성증권 154,394(154,394 증가), 우리은행 9,621(5,606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944(107 증가), 중소기업은행 31,944(780 감소)	243,067	665,724	12,919	895,872	부동산 매입, 퇴직 연금, 직계비속 취업에 따른 예금 등
배우자		KB증권 3, 교보생명보험 45,127,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59,077(2,393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3,070, 삼성증권 10,007(10,007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1(20,001 증가), 신한투자증권 18, 중소기업은행 21,805(7,112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000	163,819	39,210	13,921	189,108	
장남		(주)KEB하나은행 21(75 감소), KB증권 10,162(10,162 증가), 국민은행 806(74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051(4,051 증가), 신한은행 753(46 증가), 우리은행 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7,931(7,076 증가), 중소기업은행 3,500, 토스뱅크(주) 8(25 감소)	5,261	22,847	869	27,239	
▶ 증권(소계)			17,588	2,756	1	20,343	
본인	상장주식	LG에너지솔루션 1주(1주 증가), 두산에너빌리티 370주, 삼성전자 125주, 한국전력 100주	17,585	2,756	0	20,341	주식 가치 변경 및 거래에 따른 일부 변동
장남	상장주식	이트론 10주	3	0	1	2	
총 계			1,580,981	802,137	251,018	2,132,100	증감액: 551,119천원 (가액변동: 2,410천원)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24-131호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7차)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 11.5.12.)로 지정·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호(’ 15.4.23.)로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5호(’ 15.10.30.)로 복합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3호(’ 18.6.19.)로 복합시설 조성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45호(’ 20.12.24.)로 복합시설조성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2022-131호(’ 22.8.16.)로 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146호(’ 22.9.7.)로 사업계획변경승인(1차),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200호(’ 22.12.28.)로 사업계획변경 승인(2차),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31호(’ 23.2.28.)로 사업계획변경승인(3차),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70호(’ 23.5.1.)로 사업계획변경승인(4차),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 2023-137호(’ 23.9.6.)로 사업계획변경승인(5차),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174호(’ 23.11.6.)로 사업계획변경승인(6차) 처리된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용 산 구 청 장

1. 사 업 명(변경없음):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표 박종철
   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외 8필지(변경없음)
   나. 사업기간: 2022.08.16.~2027.02.12.(변경없음)
   다. 시행면적: 44,935㎡(변경없음)
   라. 건설주택의 규모 등

– 당초

사업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주택건설	대지면적	44,935㎡	-
	건축면적(건폐율)	25,970㎡(57.79%)	
	연 면 적(용적률)	479,631.0320㎡(599.98%)	
	주 용 도	공동주택(420세대), 오피스텔(776호),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주동수 및 층수	10개동, 지하7층/지상20층	
	사 업 비	13,810,338,811천원	

– 변경

사업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주택건설	대지면적	44,935㎡	연면적 599.7855㎡ 증가, 공동주택 1세대 감소, 근린생활시설 추가(용도변경)
	건축면적(건폐율)	25,970㎡(57.79%)	
	연 면 적(용적률)	480,230.8175㎡(599.98%)	
	주 용 도	공동주택(419세대), 오피스텔(776호),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주동수 및 층수	10개동, 지하7층/지상20층	
	사 업 비	13,812,886,043천원	

※ 연면적 및 공동주택 세대수 변경 사유
– 분양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세대 TYPE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변경(감소)
– 지상층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면적 변경(증가)

4. 기타 변경사항
가. 오피스텔 발코니 추가 및 층고 변경
나. 지하주차장 동선 변경
다. 조경 수목 및 포장 패턴 변경(수목 증가)
라. 기타 평면 레이아웃 변경 등

5.「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6. 관계도면: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용산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 참조

◈ 강서구고시 제2024-9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09.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강 서 구 청 장

가. 결정 취지

◎ 지하철 9호선 증미역과 인접 건물(가양동 449-19번지 소재)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설치를 통해 건물 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보행 편의를 개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	8	특수도로	3.6	가양동 449-19	가양동 449-19	지하도로	-	입체적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2-	• 지하도로 신설 - 폭원: 8m - 연장: 3.6m	• 지하철 9호선 증미역과 인접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설치를 통해 건물 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보행 편의를 개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2-	도로 (지하도로)	가양동 449-19	길이(m)	-	증) 3.6	3.6	-	-
				폭(m)	-	증) 8	8		
				높이(m)	-	-0.40~+6.70 (해수면기준)	-0.40~+6.70 (해수면기준)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도로 (지하도로)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 길이: 3.6m - 폭: 8m - 높이: -0.40m ~ +6.70m	·사유지 내 지하도로 부분에 대하여 입체적 결정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라. 관련도서: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678)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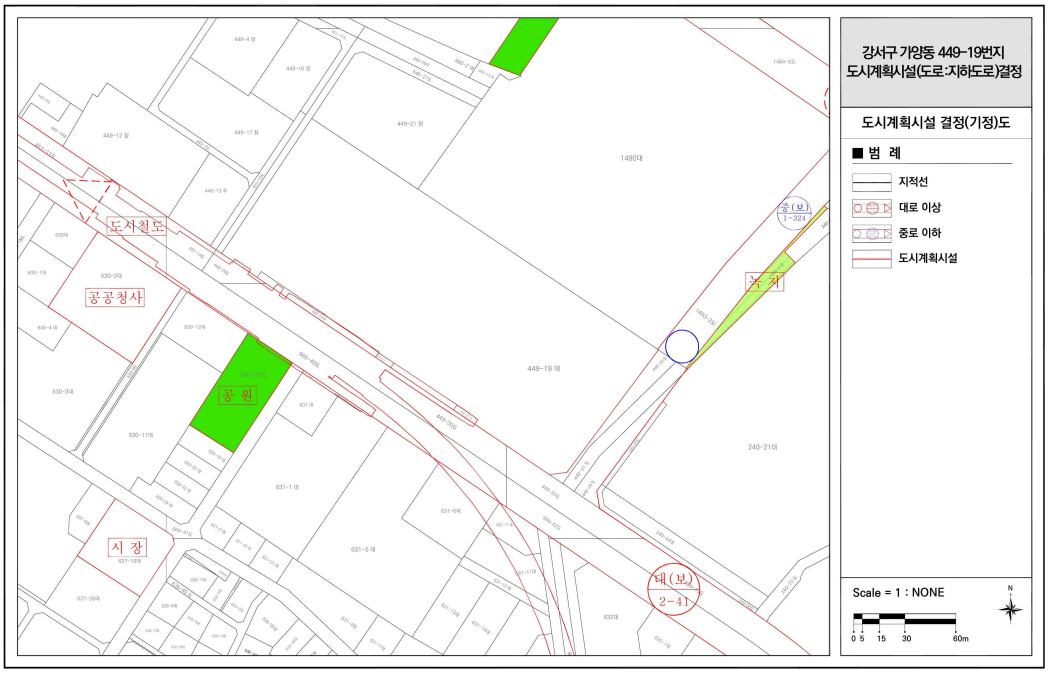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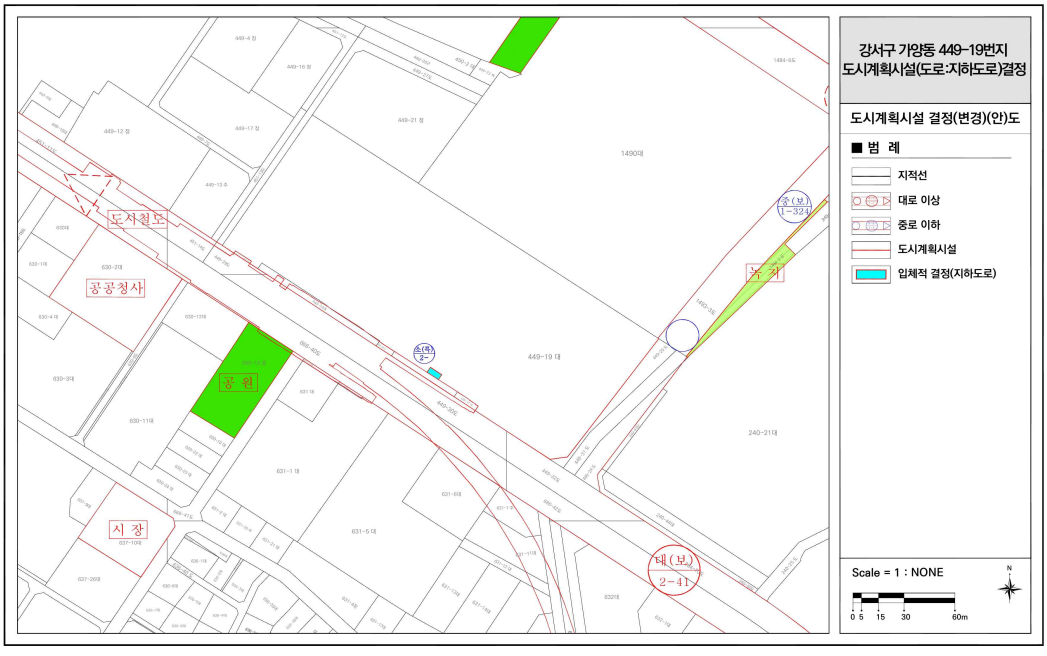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입체적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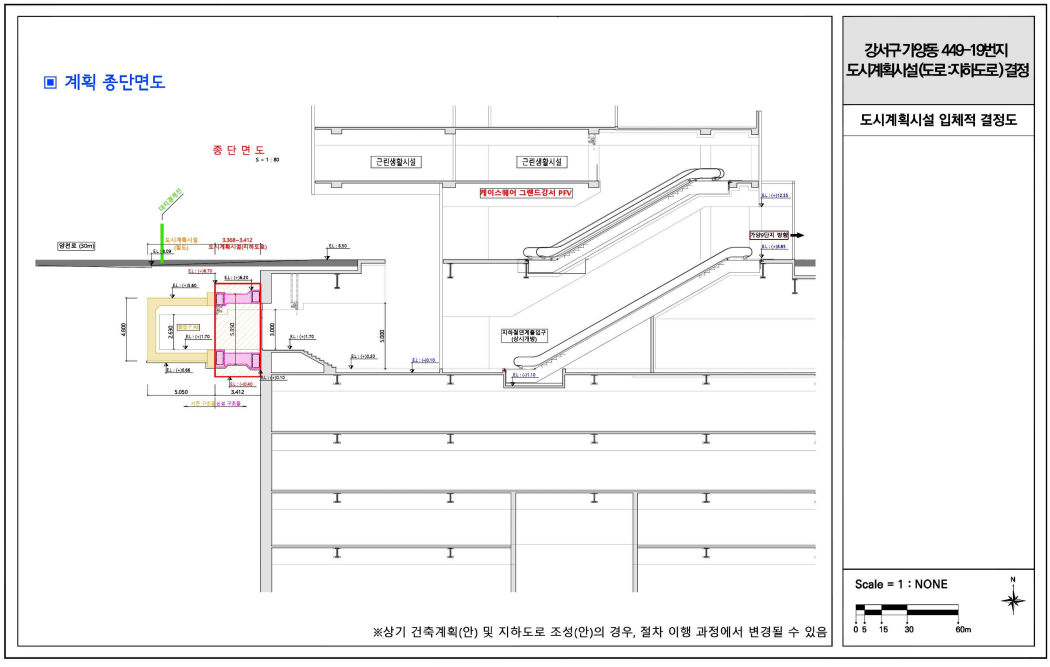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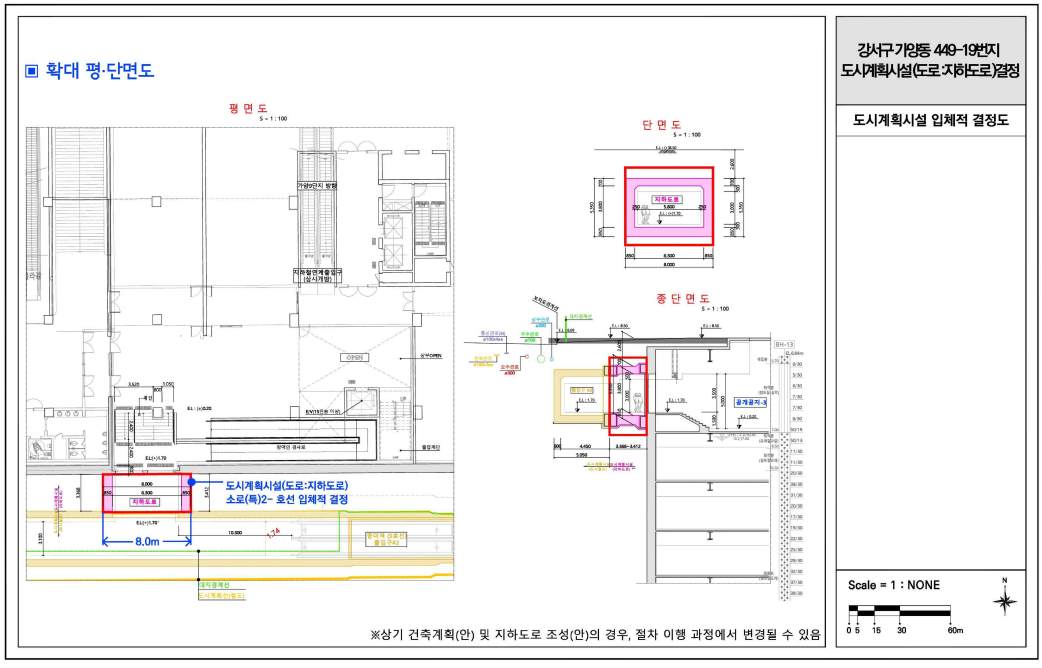

◈ 구로구고시 제2024-194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이용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04호(1997.9.2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05호(2022.03.10.)호로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3-41호(2023.03.16.)로 인가되고, 구로구 공고 제2024-1737호(2024. 10. 4.)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구로동 584-12번지에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의제처리하고, 같은 법 제88조 ·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청소년이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860-28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4-1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청소년이용시설)
2) 명 칭 : 구로동 584- 12 청소년이용시설 신축

다. 사업의 규모
1) 면 적 : 대지 : 651.60㎡ , 연면적 : 588.84㎡ , 건축면적 : 153.16㎡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청소년이용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문화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구로동 584-12	-	증) 651,6	651,6		

라. 사업시행자의 법인명 및 주소
1) 법인명 :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정재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2, 19층(역삼동, 대륭강남타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26년 7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권리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계			18,089	651.6			
1	구로동 584-12	대지	18,089	651.6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2, 19층 (역삼동, 대륭강남타워)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조서

연번	지번	건축물 용도	건축물 구조	건축물 연면적 (㎡)	소유자·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계				16,449.68			
1	구로동 584-12	정비 공장	철근 콘크리트 등	16,449.68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2, 19층 (역삼동, 대륭강남타워)	

사. 고 시 일 : 2024. 10.31(목)

□ 결정도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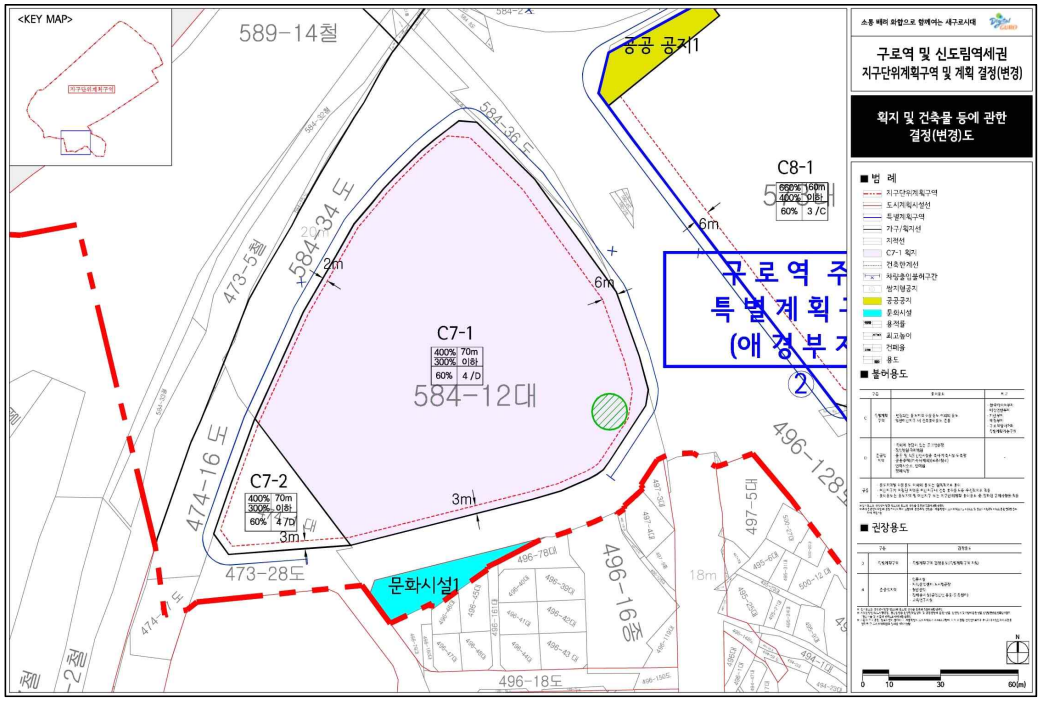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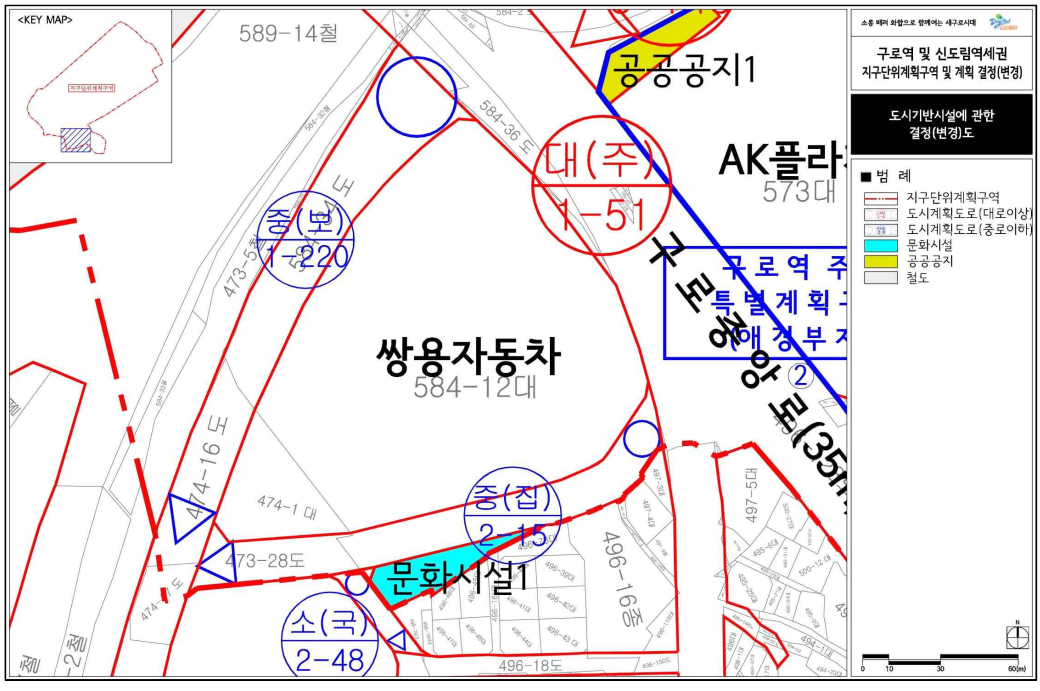

□ 위치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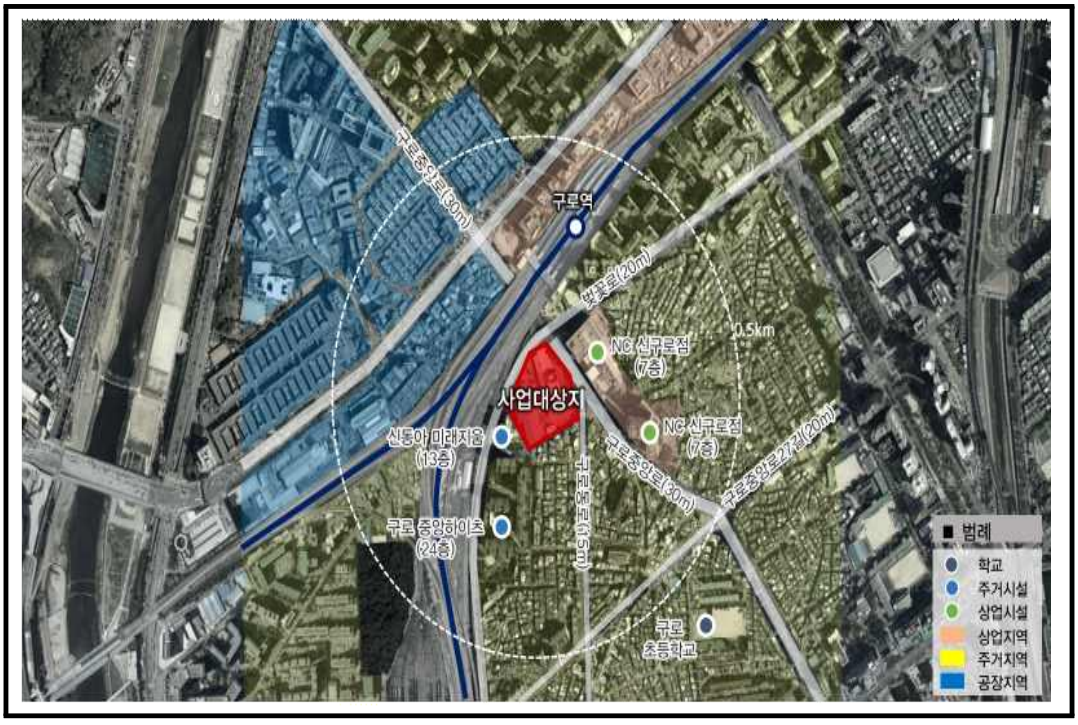
구로역
벚꽃로(20m)
0.5km
NC 신구로점 (7층)
사업대상지
NC 신구로점 (7층)
신동아 미래지움 (13층)
구로중앙로(30m)
구로중앙로27길(20m)
구로 중앙하이츠 (24층)
구로동로(15m)
구로 초등학교
범례
학교
주거시설
상업시설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장지역

□ 위치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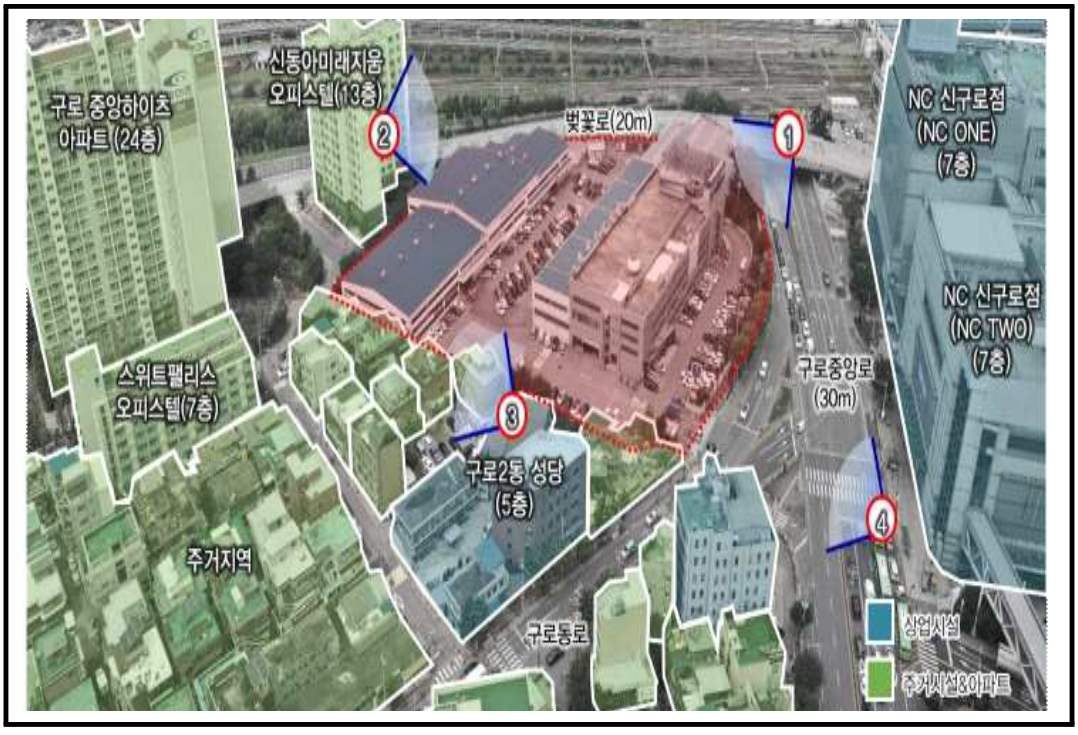
구로 중앙하이츠 아파트(24층)
신동아미래지움 오피스텔(13층)
벚꽃로(20m)
NC 신구로점 (NC ONE) (7층)
NC 신구로점 (NC TWO) (7층)
스위트펠리스 오피스텔(7층)
구로중앙로 (30m)
구로2동 성당 (5층)
주거지역
구로동로
상업시설
주거시설&아파트

◈ 강동구고시 제2024-1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198호(1971.04.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5호(2013.05.02.)『강동구 둔촌1동 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23호(2015.01.22.)『강동구 둔촌1동 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3-92호(2023.06.07.)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가. 도로

   - 광로 1-22(강동대로), 광로1-28(양재대로), 중로 1-210(양재대로84 · 88길), 중로 2-106(풍성로), 소로 3-1(신설도로)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③. 공공공지④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1) 광로 1-22(강동대로) 강동구 둔촌동 522-13 일원
2) 광로 1-28(양재대로) 강동구 둔촌동 520-1 일원
3) 중로 1-210(양재대로84 · 88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4) 중로 2-106(풍성로) 강동구 둔촌동 520-1 일원
5) 소로 3-1(신설도로) 강동구 둔촌동 180-1 일원
6) 공공공지③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7) 공공공지④ 강동구 둔촌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
2) 사업의 명칭: 둔촌주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 · 정비 · 개량 사업

다. 사업내용

1) 규모 및 내용

- 광로 1-22 (규모) 20,213.0㎡,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개량
- 광로 1-28 (규모) 17,206.9㎡,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확장 및 개량
- 중로 1-210 (규모) 14,476.8㎡,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확장
- 중로 2-106 (규모) 14,932.9㎡,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확장
- 소로 3-1 (규모) 1,627.4㎡,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 공공공지③ (규모) 2,385.6㎡, (내용) 식재, 시설물·구조물 설치 및 포장 공사
- 공공공지④ (규모) 715.9㎡, (내용) 식재, 시설물·구조물 설치 및 포장 공사

2) 사업대상

- 도로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광로	1	22	70-90	주 간선도로	2,500 (654)	둔촌동 514	둔촌동 대로 3-69	일반 도로	건고198호 (1971.4.7.)
광로	1	28	50~53	주 간선도로	13,250 (245)	천호동 103광장	과천시계	일반 도로	서고406호 ('84.2.14)
중로	1	210	24~25	국지도로	587 (587)	광로2-28 둔촌동 522-5	광로2-28 둔촌동 522-1	일반 도로	건고74호 ('79.3.8)
중로	2	106	15~23.5	보조 간선도로	3,000 (720)	풍납동 214-6	둔촌동 대로 3-69	일반 도로	건고198호 ('71.4.7)
소로	3	1	6	국지도로	272 (272)	둔촌동 114	둔촌동 202-3	일반 도로	서고135호 ('13.5.2)

주) ()는 정비구역 해당사항

- 공공공지

시설명	연번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공공공지	③	둔촌동 170-1	2,385.6	서고135호 ('13.5.2)
공공공지	④	둔촌동 174-1	715.9	서고135호 ('13.5.2)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1) 도로

- 광로 1-22(강동대로), 중로 1-210(양재대로84 · 88길), 중로 2-106(풍성로), 소로 3-1(신설도로)
  : 인가고시일 ~ 2024. 12. 31.(변경없음)
- 광로1-28(양재대로)
  : (기정)인가고시일 ~ 2024. 12. 31. (변경)인가고시일 ~ 2025.03.31.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③
  : (기정)인가고시일 ~ 2024. 12. 31. (변경)인가고시일 ~ 2025.03.31.
- 공공공지④
  : 인가고시일 ~ 2024. 12. 31.(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 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강동구 및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토 지 조 서

□ 광로 1-22(강동대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5필지		45,686.6	20,213.0						
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30	도로	8,547.7	623.0	서울특별시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13	도로	2,478.4	1,220.0	서울특별시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3-26	도로	2,778.5	2,772.0	서울특별시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34-3	도로	488.0	488.0	서울특별시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33-5	도로	489.0	489.0	서울특별시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1	도로	420.0	420.0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22-1	도로	435.0	435.0	서울특별시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37	도로	3,764.0	3,764.0	서울특별시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9	도로	72.0	72.0	서울특별시					
1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44	도로	1,440.0	1,440.0	서울특별시					
1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8	도로	122.0	122.0	서울특별시					
1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2	도로	140.0	140.0	서울특별시					
1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7-1	도로	2,496.0	2,496.0	서울특별시					
1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19	도로	149.0	149.0	서울특별시					
1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수도용지	21,867.0	5,583.0	서울특별시					

□ 광로 1-28(양재대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8필지		190,452.0	17,206.9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1	도로	3,935.0	744.0	서울특별시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8	도로	951.9	42.0	서울특별시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8	도로	9.0	9.0	서울특별시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444.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7	도로	3,902.5	1,084.0	서울특별시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0-4	도로	3,912.0	1,098.0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2	도로	2,182.6	93.0	서울특별시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2-1	대지	25,455.4	309.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1-6	도로	3,910.7	1,249.0	서울특별시					
1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3-14	도로	3,909.3	3,909.3	서울특별시					
1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7	도로	1,858.6	1,858.6	서울특별시					
1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13	도로	2,478.4	1,259.0	서울특별시					
1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3-26	도로	2,778.5	6.0	서울특별시					
14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43	도로	4,183.7	253.0	서울특별시					
15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44	도로	2,609.9	2,417.0	서울특별시					
16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28	도로	6,678.3	815.0	강동구					
17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30	도로	8,542.7	1,574.0	서울특별시					
1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9-22	도로	1,052.4	43.0	서울특별시					

□ 중로 1-210(양재대로84 · 88길)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1필지		355,263.4	14,476.8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504.7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2	도로	2,182.6	2,089.2	서울특별시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1	도로	1,344.8	1,344.5	강동구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2-1	대지	25,455.4	1,378.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5-3	도로	1,810.6	1,810.6	강동구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6-1	대지	110,449.2	1,747.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5-2	도로	1,939.1	1,939.1	강동구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2-5	대지	1,004.3	25.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3	도로	1,295.0	1,295.0	강동구					
1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5	도로	2,185.9	2,185.9	서울특별시					
1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4-1	대지	95,495.4	157.4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중로 2-106(풍성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9필지		260,335.0	14,932.9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1	도로	3,935.0	791.0	서울특별시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7	도로	3,650.0	1,679.9	강동구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11-6	도로	503.0	374.4	국토교통부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22-5	전	13.0	13.0	대한주택공사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62-7	도로	15.0	15.0	강동구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61-3	도로	1,801.0	809.3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12-5	도로	12,459.0	3,983.9	강동구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0	4,744.1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80-1	대지	125,858.0	2,522.3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소로 3-1(신설도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필지		125,858.0	1,627.4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80-1	대지	125,858.0	1,627.4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공공공지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2필지		207,596.7	3,101.9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2,385.7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4-1	대지	95,495.6	716.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강동구고시 제2024-17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151호(1991. 4. 1.)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26호(1993. 7.24.)로 변경 결정, 강동구고시 제2022-210호(2022.12.22.)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1호(2023. 4.27.)로 변경 결정 및 강동구 고시 제2023-116호(2023.07.1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5호선 둔촌동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2) 사업의 명칭: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 이설공사

다. 사업내용
1) 사업규모: 633.4㎡
2) 사업내용: 양재대로 확장에 따른 기존 보도에 설치된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3) 사업대상
- 철도(본선)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길동~마천)	강동구 길동 379 일대	송파구 마천동 226 일대	7,500	-	1991. 4. 1. (건고 제151호)	2023. 4. 27. (서울시고시 제151호)

- 철도(정거장)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둔촌동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416일대	6,349	1991. 4. 1. (건고 제151호)	2023. 4. 27. (서울시고시 제151호)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인가고시일 ~ 2024. 10. 31.
- (변 경) 인가고시일 ~ 2025. 3.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 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

별첨

토 지 조 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1,044.7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50-39	도로	8,529.1	535.6	강동구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50-40	도로	3,910.7	793.3	서울특별시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1	도로	3,935.0	235.9	서울특별시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8	도로	951.9	509.7	서울특별시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7	도로	3,902.5	3,229.8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7	도로	9.0	0	서울특별시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4-1331호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5호(2011.5.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된 「내자·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종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72)
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435.44	감)	2.001)	13,433.44	100.0	내자동 81번지 일대
주거 지역	소 계	11,857.19	증)	1,058.00	12,915.19	96.1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57.19	감)	10,825.00	1,032.19	7.7	
	준주거지역	-	증)	11,883.0	11,883.00	88.4	
상업 지역	소 계	1,578.25	감)	1,060.00	518.25	3.9	
	일반상업지역	1,578.25	감)	1,060.00	518.25	3.9	

1) 2011년 정비계획 결정 당시, 면적 오기로 인한 정정 [-2.0㎡]

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게재 생략
마. 관계도서 : 생략(종로구 도시개발과에 관련 공람도서 비치)
바.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향후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 광진구공고 제2024-119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2003-5호(2004.1.9.)로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6-66호(2016.3.10.)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기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지역일대 주차난 해소 및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
다. 열람(안)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	학교	초등학교	광진구 자양동 9-4일대	1,313.1	감)1,313.1	-	서고시 제5호 (2003.1.9.)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 학교시설 폐지 -면적: 1,313.1 m2 (폐지)	· 학교설립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설립계획이 취소, 도시계획시설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상실되어 서울특별시 성동 · 광진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폐지요청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	주차장	광진구 자양동 10-2 외 1필지	-	증) 1,313.1	1,313.1	-	-

■ 학교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면적: 1,313.1 m2 (신설)	· 지역일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 해소 및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끝.

◈ 동대문구공고 제2024-1368호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된 동대문구 용두동 33-1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	-	증)19,484.1	19,484.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484.1	-	19,484.1	100.0	용두역
주거지역	소 계	19,484.1	감)7,917.6	11,565.5	59.4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66.5	-	11,566.5	59.4	
	준주거지역	7,917.6	감)7,917.6	-	-	
일반상업지역		-	증)7,917.6	7,917.6	40.6	

○ 기타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 참조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5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도 열람가능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중랑구공고 제2024-1485호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308호(1996.11.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2-663호(2022.05.12.)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중 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2층)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	125,000	-	125,00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없음
6)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마.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제출
바.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 고시/공고 →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공고 제2024-140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5-10번지 일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호(2009.2.5.)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5호(2010.4.15.), 제2010-175(2010.5.13.)호, 강북구고시 제2010-50(2010.9.9.)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1(2011.12.29.)호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한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철도·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강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5)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철도:차량기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철도	차량기지	강북구 우이동 265-10번지 일대	13,473	-	13,473	서울시고시 제2009-44호('09.2.5.)	일부 주차장 중복결정 (164㎡)

○ 도시계획시설(철도:차량기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	철도	주차장 중복결정 (164㎡)	주변지역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 결정에 따른 일부구간 중복 결정

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안)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우이동 주차장	강북구 우이동 265-10번지 일대	-	증)1,148	1,148	-	도시계획시설(철도) 중복결정 (164㎡)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우이동 주차장	주차장 신설 (1,148㎡)	주변지역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 계획 주차장 내 일부공간 제설차량 주차장 공간으로 탄력적 활용

마.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바. 본 도시계획시설(철도·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철도)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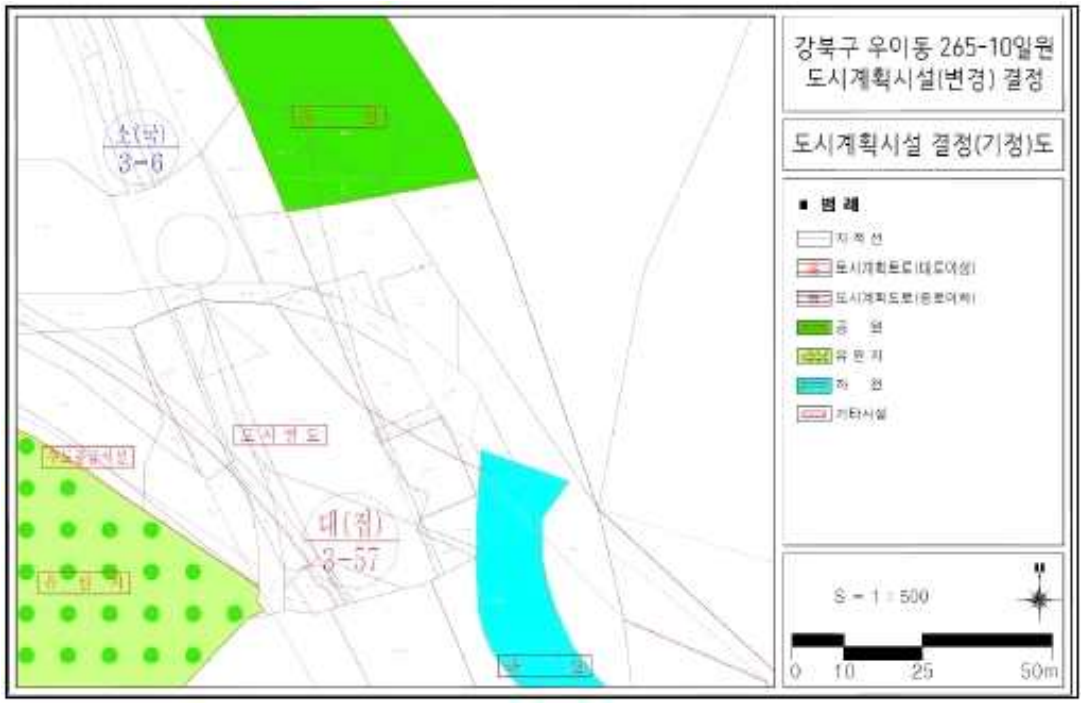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철도)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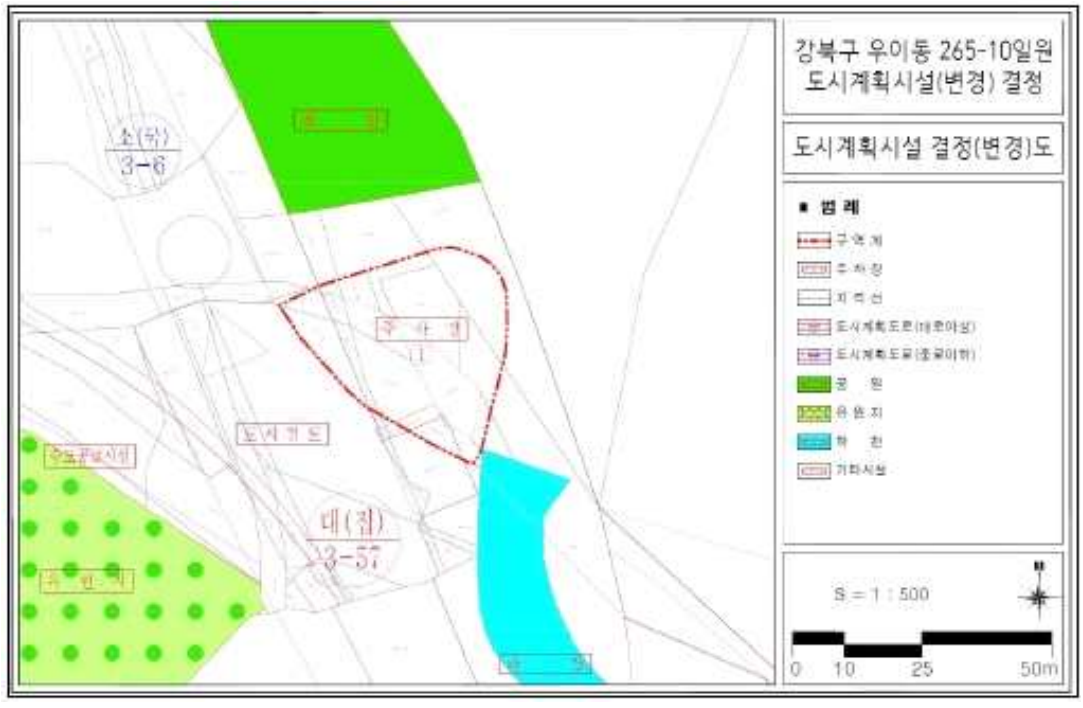

◈ 양천구공고 제2024-19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안)

양천구고시 제1998-9(1998.3.16.)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2620-3504)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	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482-11번지	1,013.2	-	1,013.2	양천구고시 제1998-9호 (1998.3.16.)	○ 중복결정 •지상 : 공공청사 - 지상4층 ~ 지하2층(일부) •지하 : 주차장 - 지하1층(일부) ~ 지하2층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 면적 : 1,013.2㎡(변경없음) • 조성범위 변경(지상→지하)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신월동 482-11번지를 신월2동 청사와 중복결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양천구 신월동 482-11번지	-	증) 1,013.2	1,013.2	-	○ 중복결정 •지상 : 공공청사 - 지상4층 ~ 지하2층(일부) •지하 : 주차장 - 지하1층(일부) ~ 지하2층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주차장과 중복결정 • 면적 : 1,013.2㎡(신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신월동 482-11번지를 신월2동 청사와 중복결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건축물의 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5.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2620-35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공고 제2024-1858호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77호(2021.12.31.)로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문화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위　　치: 서울특별시 신길동 205-136일원
2. 면　　적: 1,739.00㎡
3. 조성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39.00	1,059.62	-	-	-	132	-
기반	소 계	766.74	766.74	-	-	-	17	-
	도 로	14.33	14.33	-	-	-	-	-
	광 장	752.41	752.41	-	-	-	17	-
조경시설		-	-	-	-	-	-	-
휴양시설		260.38	260.38	-	-	-	11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32.50	32.50	-	-	-	1	-
관리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679.38	679.38	-	-	-	103	-
시설률 (법정 60%)		1,059.62㎡/1,739.00㎡*100=60.93%						

4.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02-2670-3757)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부.　끝.

조 성 계 획 도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기본설계용역

■ 범례

구 분	기호	시설명	면적(M2)	공작물	비 고
기반시설	산-1	도로	14.40		
	산-2	도로	371.45		
	산-3	도로	26.46		
	가-1	광장	389.08		
	계		801.39		
휴양시설	나-1	휴게쉼터	191.93		
	나-2	휴게쉼터	24.51		
	나-3	휴게쉼터	55.94		
	나-4	휴게쉼터	10.39		
	①	조형앞음벽		1	L=12.5M
	②	파고라		1	
	③	평의자		3	
	④	등의자		6	
	계		282.77	11	
운동시설	다-1	운동공간	32.50		
	⑤	운동파고라		1	
	계		32.50	1	
녹지 및 기타	라-1	녹지	59.84		
	라-2	녹지	321.28		
	라-3	녹지	20.78		
	라-4	녹지	84.90		
	라-5	녹지	3.14		
	라-6	녹지	132.40		
	⑥	종합안내판		1	
	⑦	시설안내판		1	
	⑧	부동수전		1	
	⑨	미스트폴		8	
	⑩	볼라드등		11	
	⑪	공원등		3	
	계		622.34	25	
합 계			1,739.00	37	

시설율	최초 : 64.21%	법정 : 제한없음
건폐율	최초 : -	법정 : 20% 이내

신길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1.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39.00	1,116.66	-	-	-	37	-
기반	소 계	801.39	801.39	-	-	-	-	-
	도 로	412.31	412.31	-	-	-	-	-
	광 장	389.08	389.08	-	-	-	-	-
조 경 시 설		-	-	-	-	-	-	-
휴 양 시 설		282.77	282.77	-	-	-	11	-
유 희 시 설		-	-	-	-	-	-	-
운 동 시 설		32.50	32.50	-	-	-	1	-
관 리 시 설		-	-	-	-	-	-	-
녹지 및 기타		622.34	-	-	-	-	25	-
시 설 률 (법정: 제한없음)		1,116.66㎡/1,739.00㎡ *100=64.21%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계				1,739.00	1,116.66	-	-	-	-	37
기반시설	소 계			801.39	801.39	-	-	-	-	-
	도 로	산-1		14.40	14.40	-	-	-	-	-
		산-2		371.45	371.45	-	-	-	-	-
		산-3		26.46	26.46	-	-	-	-	-
	광 장	가-1		389.08	389.08	-	-	-	-	-
휴양시설	소 계			282.77	282.77	-	-	-	-	11
	휴게쉼터-1	나-1		191.93	191.93	-	-	-	-	
	휴게쉼터-2	나-2		24.51	24.51	-	-	-	-	
	휴게쉼터-3	나-3		55.94	55.94	-	-	-	-	
	휴게쉼터-4	나-4		10.39	10.39	-	-	-	-	
	조형앉음벽	①				-	-	-	-	1
	파고라	②				-	-	-	-	1
	평의자	③				-	-	-	-	3
	등의자	④				-	-	-	-	6
운동시설	소 계			32.50	32.50	-	-	-	-	1
	운동공간	다-1		32.50	32.50	-	-	-	-	
	운동파고라	⑤				-	-	-	-	1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 계			622.34	-	-	-	-	-	25
	녹지 및 기타	라-1		59.84	-	-	-	-	-	
	녹지 및 기타	라-2		321.28	-	-	-	-	-	
	녹지 및 기타	라-3		20.78	-	-	-	-	-	
	녹지 및 기타	라-4		84.90	-	-	-	-	-	
	녹지 및 기타	라-5		3.14	-	-	-	-	-	
	녹지 및 기타	라-6		132.40	-	-	-	-	-	
	종합안내판	⑥				-	-	-	-	1
	시설안내판	⑦				-	-	-	-	1
	부동수전	⑧				-	-	-	-	1
	미스트폴	⑨				-	-	-	-	8
	볼라드등	⑩				-	-	-	-	11
	공원등	⑪				-	-	-	-	3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138.6	412.31				
신설	산책로	소 계			138.6	412.31				
신설	산책로	–	1	2.0	7.2	14.40	산책로	구역계	산-2	
신설	산책로	–	2	3.0	116.7	371.45	산책로	산-2	산-2	
신설	산책로	–	3	1.8	14.7	26.46	산책로	산-2	가-1	

◈ 동작구공고 제2024-199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149호(2021.7.8.)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오니,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6-1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명 칭 :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다. 사업규모
- 규 모 : 699.1㎡
- 용 도 : 공공공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 02-820-1984)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본동 46-1	대지	366.4	36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366.4/366.4				사용
2	본동 46-2	대지	140	1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	140/140				사용
3	본동 46-3	대지	129.7	129.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129.7/129.7				사용
4	본동 9-74	대지	63	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	63/63				사용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본동 9-8 (제1호)	건물 (1층)	연와조	39.7	상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길 ○○○	김○숙				
2	본동 9-8 (제2호)	건물 (1층)	연와조	29.8	창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	장○상				
3	본동 9-8 (제3호)	건물 (1층)	연와조	25.6	창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	장○상				
4	본동 9-8 (제4호)	건물 (1층)	연와조	29	상가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길 ○○○	김○숙				
5	본동 9-8 (제5호)	건물 (1층)	연와조	14.5	창고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윤○연				
6	본동 9-8 (제6호)	건물 (2층)	연와조	144.7	상가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윤○림, 송○선				
7	본동 9-30 (제2호)	건물 (1층)	세멘부럭조	34.1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서○원, 서○숙, 서○원				
8	본동 9-30 (제2호)	건물 (2층)	세멘부럭조	36.5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서○원, 서○숙, 서○원				
9	본동 9-30 (제1호)	건물 (1층)	목조	75.4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서○원, 서○숙, 서○원				
10	본동 9-30 (제1호)	건물 (2층)	목조	51.1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서○원, 서○숙, 서○원				
11	본동 9	건물 (1층)	철근조	117	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	이○수				기존무허가 건물
12	본동 9	건물 (2층)	철근조	117	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	이○수				기존무허가 건물

영 업 권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상호	영업권의 종류	영 업 주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본동 9-8 (제1호)	지상1층	한강손칼국수	한식점업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길 ○○○	김○숙				
2	본동 9-8 (제2호) 본동 9-8 (제3호)	지상1층	광수농수산	소매업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김○수				
3	본동 9-8 (제4호) 본동 9-8 (제5호)	지상1층	성실금속	건설업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최○진				
4	본동 9-8 (제6호)	지상2층	셈수학	출판업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송○선				
5	본동 9-8 (제6호)	지상2층	(사)전국주산수학 암산교육회	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윤○림				
6	본동 9-30 (제2호)	지상1층	일신전자	임가공업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최○영				

주민공람 의견서

(No.)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4">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td></tr>
<tr><td>공 람 기 간</td><td colspan="4">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td></tr>
<tr><td rowspan="4">의견 제출자
인 적 사 항</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2">주 소</td><td>거 주 지</td><td colspan="2"></td></tr>
<tr><td>물건지
(건물,토지,등)</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3">(핸드폰 :)</td></tr>
<tr><td>의 견 제 목</td><td colspan="4"></td></tr>
<tr><td>의 견 요 지</td><td colspan="4"></td></tr>
</table>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자 : (서명)

동작구청장 귀하

◈ 강남구공고 제2024-250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534호(1983.9.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호(2012.1.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강남구 고시 제2022-13호(2022.1.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일대 달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변경)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공간개발과(02-3423-6885)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달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없음) : 13,373㎡
라.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 강남구청장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기간(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사유 : 지장물 소유자와 보상협의 미완료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지장물) 조서(변경 없음)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변경 없음)
아. 설계도서(변경 없음)
자.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변경 없음)
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해당 없음
카. 법 제92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해당 없음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간개발과(☎ 02-3423-68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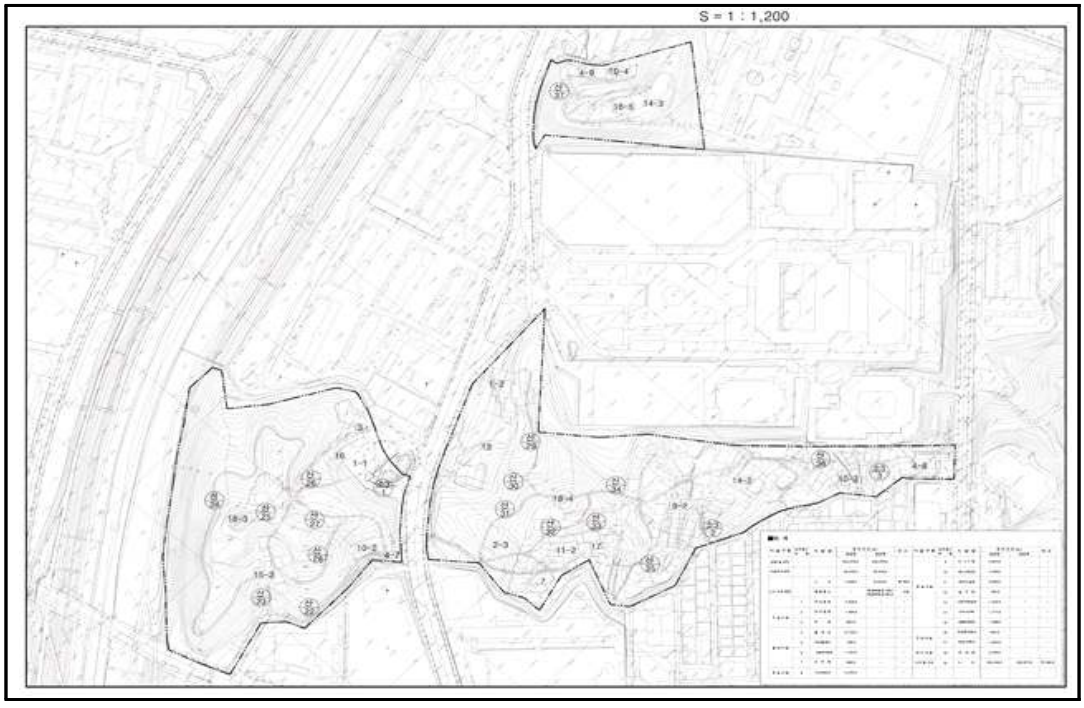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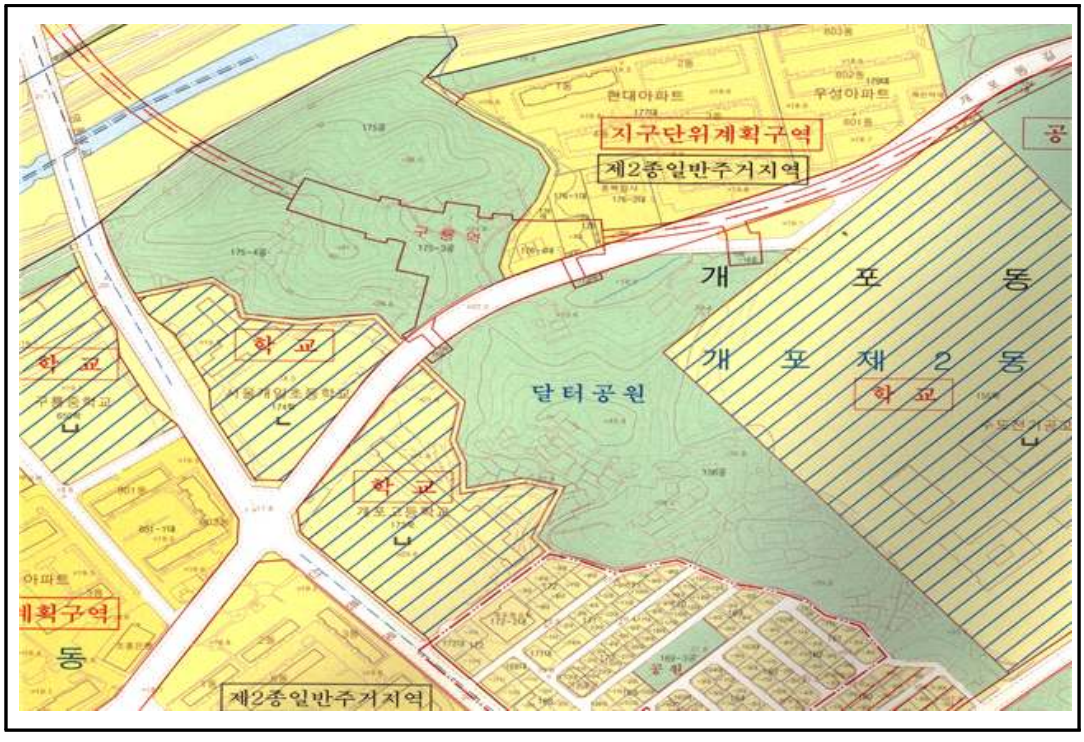

◈ 강동구공고 제2024-2124호

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역세권 일대의 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강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2024. 10. 31. ~ 2024. 11. 14.)
나.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02-3425-6032)
다. 열람내용
1) 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역세권 일대	-	증) 359,716.7	359,716.7	-
폐 지	굽은다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2번지	9,019.8	감) 9,019.8	-	서고 제2005-338호 (2005.11.10.)
폐 지	강동구 길동 367-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길동 367-1번지	1,541.5	감) 1,541.5	-	서고 제2021-62호 (2021.02.04.)
폐 지	강동구 길동 368-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길동 368-7번지	1,333.8	감) 1,333.8	-	서고 제2021-63호 (2021.02.04.)
폐 지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명일동 327-5, 6번지	1,772.2	감) 1,772.2	-	서고 제2022-285호 (2022.07.04.)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 관련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열람가능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는 강동구청 홈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4-2127호

도시관리계획(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8호(2014. 8. 14.)로 결정된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규정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강 동 구 청 장

1.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24. 10. 31. ~ 2024. 11. 14.)
2. 열람장소: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02-3425-6036)
3. 도시관리계획(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428-5번지 일원	143,223	증) 101,194	244,417	서고 제2014-288호 ('14.08.14.)	-
폐지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2,372	감) 2,372	-	서고 제2022-213호 ('22.05.12.)	

나.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게재생략

4. 관련도서: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5. 기타 관련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열람가능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는 강동구청 홈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수)레버리클럽서울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길 38-50	서울마리나 좌측 수변	무동력 3대 동력 1대	유선사업	2024.10.22.~ 2024.12.31.	2024. 10.2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골든블루 마리나 (대표 김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잠실수중보~행주대교 (한강)	수상 레저사업	폰툰 319㎡	2024.01.01. ~ 2024.12.31.	2024. 10.25.
(주)은예 반포지점 (대표 양미영)		가빛섬 ~ 예빛섬 사이 수상 구역	수상 레저사업	튜브스터 16대 구조선 1대	2024.3.29. ~ 2024.11.30	

◈ 미래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4-3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더스텔라 (대표 김천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05번기 48, 5층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27-6	둔치 1,079㎡	기반시설 공사	2024.10.25. ~ 2024.12.15.	2024.10.25.

사업소공고

◈ 강동소방서공고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강 동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시설관리업	제서울(강동)-2024-0001호 (2024.10.23.)	제일조은소방기술단 (221-14-05822)	유철재 (1983.08.2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42길 85 1층	02-478-11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76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강동소방서공고 제2024-2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강 동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제서울(강동)-2024-0002호 (2024.10.25.)	㈜콤파스이앤씨 (737-81-00718)	지용근 (1964.12.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24, 302호	02-482-01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76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3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7번지 외 4필지
 - 면 적 : 551.16㎡(일시 1,010.0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영등포·신길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 내 역 : 영등포 빗물펌프장(신설), 신길 빗물펌프장(증설)

5. 점용기간 : 2024.10.22. ~ 2029.10.21

6. 공사기간 : 2024.10.22.~ 2028.6.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427
 - 면 적 : 3.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 점용기간 : 2024.10.24. ~ 2029.10.23.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42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터 C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9, 4-9
 - 면 적 : 123㎡(일시 17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정거장 지하수 유출관로 설치
 - 내 역 : 압송관로 설치

5. 점용기간 : 2024.10.24. ~ 2029.10.23.

6. 공사기간 : 2024.10.24.~ 2024.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금천구(공원녹지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①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784-8, 784-20
 ②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784-8, 784-21, 784-7, 765-3, 784-4, 566-2
 - 면 적 : ①144.4㎡
 ②1,661.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데크 및 화단
 - 내 역 : ①데크(20×5m), 난간(37m) 등
 ②화단(110×15m), 포토존(2×2m) 2식, 가든아치(2.5×3m) 등

5. 점용기간 : 2024.10.14. ~ 2029.10.23.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45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금천구(주민안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14-44, 614-72, 707-3, 707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668-42, 668-24, 719-14, 719-18, 770-7, 732-3, 732-4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784-8, 565-2, 669, 672-11(총 15필지)
 - 면 적 : 16㎡(각 0.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주민안전 CCTV
 - 내 역 : CCTV 지주(H=6m) 20EA

5. 점용기간 : 2024.10.24. ~ 2029.10.23.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46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금천구(문화체육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①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672-13
②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673-3, 672, 673-12, 672-13
③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784-8
- 면 적 : ①907.0㎡ ②880㎡ ③35.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①족구장, ②축구장, ③간이사무실

5. 점용기간 : 2024.10.24. ~ 2025.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47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금천구(치수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14-65번지 등 68필지
(가산동 614-65, 535-121, 614-42, 535-123, 538-11, 614-56, 614-44, 539-6,541-3, 614-45, 614-71, 614-72,557-3, 557-2,562-3, 340-5, 571-6, 340-2, 707-3, 707, 707-1)
(독산동 668-46, 668-25, 668-47, 668-42, 668-24, 668-43, 679-4, 689-3, 871-66, 702-2, 704-2, 705-2, 871-79, 719-14, 719-5, 719-12, 719-19, 770-7, 770-4, 770-6, 732-2, 732-3, 732-4, 754-14, 733-28, 733-31, 733-30, 756-208)
(시흥동 784-7, 784-8, 569-2, 565-2, 585-2, 766-26, 669-1, 671, 669, 672-13, 672-11, 673-11, 673-3, 673-10, 673-2, 674-4, 674-2, 675-4, 675-3)
- 면 적 : 9,640.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구장3개소, 생활체육시설4개소, 화장실13개소, 기타(정자, 음수대, 물놀이장, 엘리베이터, 텃밭 등) 26개소, 가로등 181개소 등

5. 점용기간 : 2024.10.24. ~ 2025.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48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금천구(교통행정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732-3 번지(1필지)
 - 면 적 : 2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자전거 거치대 설치
 - 내 역 : 자전거 거치대(0.3~1.2m) 13EA

5. 점용기간 : 2024.10.24. ~ 2029.10.23.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2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26-9외 9필지
 - 면 적 : (당초) 영구 360.6㎡ 일시 2,919.9㎡
 (변경) 영구 377.6㎡ 일시 2,914.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열수송관 매설
 - 내 역 : (당초) 일시- 관로 가시설(L16.2m), 가도(889.1㎡), 가물막이(1766.3㎡), 압입기지((10.5×10.5) 2개소
 영구- 이중보온관 2열(D500mm, L40.22m), 강관케이싱(D1100mm, L82.85m), 콘크리트보호공(117.9㎡)
 (변경) 일시- 관로 가시설(L28.55m), 가도(857.23㎡), 가물막이(1766.28㎡), 압입기지(6.5×10.5) 2개소
 영구- 이중보온관 2열(D500mm, L46.41m), 강관케이싱(D1100mm, L86.41m), 콘크리트보호공(118.1㎡)

5. 점용기간 : 2024.05.20. ~ 2029.05.19.

6. 공사기간 : 2024.11.01. ~ 2025.05.14. (우기철 5.15. ~ 10.15. 공사금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장(광진성동지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7길 1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12
 - 면 적 : 1.5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전력공급 지상기기 설치

5. 점용기간 : 2024.10.25. ~ 2029.10.24.

6. 공사기간 : 2024.10.25. ~ 2024.12.30.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